

# 承政院日記 濟州記事 II

## － 顯宗代 －



# 발 간 사

이번에 발간된 《승정원일기》 제주기사(현종대)는 제주학연구센터가 제주학 연구와 제주학의 대중화를 위해 절실한 기초적인 원문 자료의 수집과 정리,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서 제주학 연구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한 제주역사 편찬 사업의 결과물입니다. 조선후기 제주의 주요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1차 사료인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제주 관련 기사를 추출하여 번역 정리한 소중한 성과입니다.

《승정원일기》는 조선시대 왕명 출납을 담당하던 승정원의 일기체 기록으로서, 국왕의 동정과 국정 운영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했으며, 정치의 주요 현안 자료나 지방에서 올린 상소문 등을 원문 그대로 수록한 1차 사료입니다. 《승정원일기》는 1999년 4월 국보 제303호로 지정되었고, 2001년 9월에는 유네스코(UNESCO)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총 3,245책에 2억4천250만자가 기록된 단일기록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편년체 역사 기록물로서, 888책 5천400만자의 《조선왕조실록》에 비해서도 무려 4배나 되는 분량입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2016년부터 《승정원일기》의 제주기사를 모두 수집하여 한문 원문, 한글 번역 및 주석까지 보충하는 역주 사업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작업 성과물을 제주학 아카이브에 탑재할 뿐만 아니라 왕대별로 묶어서 책자로도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책은 작년 효종대 제주기사 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작업으로서, 《승정원일기》 현종대(1659~1674) 제주기사를 수집하여 역주한 성과입니다.

본서에 소개된 《승정원일기》의 현종대 제주기사는 총 330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현종실록》과 《현종개수실록》에 수록된 제주기사가 38건, 45건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승정원일기》의 내용이 《조선왕조실록》보다 제주 역사를 더욱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목사를 비롯한 목민관들의

인사 및 동향, 마정(馬政), 진상, 유배인, 표류인, 자연재해 및 구휼, 납속과 면천 등 사회상과 관련된 기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출·정리된 《승정원일기》 제주 관련 기사들은 원문과 함께 제주학아카이브(<http://www.jst.re.kr/>)에 탑재하여 시민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출간서적과 인터넷 아카이브 탑재를 통해 제주학을 연구하는 국내외 학자 및 시민들에게 원문 1차사료를 쉽게 해독 정리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로 제공함으로써 제주학의 전문화 및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에 어려운 번역 및 주석 작업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홍기표, 김일우, 백종진, 오창명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책의 발간을 위해 애쓴 제주학연구센터 박찬식 센터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주학연구센터의 임승희 선생님은 사업의 기획부터 최종 출간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실무 책임을 다하여 주셨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앞으로도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번역자료집 후속편 발간을 비롯해서 제주역사 기초사료의 수집 정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제주연구원 원장 **김 동 전**

# 해 제

제주학연구센터는 2016년부터 제주역사 편찬사업의 일환으로 《승정원일기》의 제주 기사를 모두 수집하여 한문 원문, 한글 번역 및 주석까지 보충하는 역주 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였다.

이 작업에는 제주학 연구 및 역주 사업에 많은 성과를 낸 전공자 4인을 비상임 연구위원으로 위촉하여 역할분담을 하여 추진하였다. 2017년에는 첫 성과물로 《승정원일기》 효종대(1649~1659) 제주 기사를 발간하였다. 총 158건의 제주 기사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동일시기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제주 기사 39건의 4배에 달했다.

본서는 《승정원일기》 제주 기사 역주 사업의 두 번째 성과물이다. 효종대에 뒤이어 현종대(1659~1674) 제주 기사의 역주이다. 총 330건의 제주 기사가 확인되었는데, '제주'를 비롯한 5개 주제어의 기사는 제주(211), 대정(94), 정의(25), 추자(1)의 순이었다. 탐라 기사 1건은 제주 기사와 중복되어 제외하였다. '제주' 기사가 거의 2/3에 해당되어 상당수를 차지했고, '대정' 기사가 유독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대정 현감의 임명과정에서 왕과 대간 사이의 대립이 지속되었기 때문이었다.

《승정원일기》 현종대 제주 기사는 《조선왕조실록》 현종대 제주 기사와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여준다. 현종대 제주 기사를 검색한 결과 《승정원일기》는 330건인데 비해 《현종실록》은 38건, 《현종개수실록》은 45건에 불과했다. 거의 10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그만큼 《승정원일기》의 내용이 《조선왕조실록》보다 제주 역사를 보다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 《승정원일기》 현종대 제주 기사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승정원일기》 현종대 제주 기사 현황

구 분	제주	정의	대정	추자	탐라	계
현종 즉위년(1659)	6					6
현종 1년(1660)	10		3			13
현종 2년(1661)	5	3				8
현종 3년(1662)	14	2	1	1		18
현종 4년(1663)	3					3

구 분	제주	정의	대정	추자	탐라	계
현종 5년(1664)	16	1				17
현종 6년(1665)	17	6	2			25
현종 7년(1666)	14					14
현종 8년(1667)	17		78			95
현종 9년(1668)	11	4				15
현종 10년(1669)	14	3	1			18
현종 11년(1670)	27		3			30
현종 12년(1671)	13		2			15
현종 13년(1672)	27	5				32
현종 14년(1673)	15				(1)중복	15
현종 15년(1674)	2	1	3			6
계	211	25	93	1		330

《승정원일기》 현종대 제주기사에서는 다양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 목사를 비롯한 삼읍 수령이 교체될 때는 항상 체임진상마를 2~3필 올려 보냈는데, 제주목사와 제주관관은 3필, 정의현감과 대정현감은 2필이었다. 또 김만일(金萬鎰)의 후손들이 대대로 산마장감목관을 역임하였으며, 이들도 교체시에는 2필의 진상마를 올렸다.

제주 선유어사가 시재할 때 급제한 제주인들은 차후 왕이 주관하는 최종 시험인 전시에 곧바로 응시할 수 있는 특혜가 있었다(전시직부). 이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치러지는 과거시험인 식년시(子/卯/午/酉年)에서만 부여되었으며, 부정기시험인 별시나 증광시에는 응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별시의 경우에도 임금의 특명으로 전시직부를 치른 사실이 확인된다.

이런 사실 외에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제주목사를 비롯한 제주 삼읍 수령들의 임명 조건과 관련해 다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무기류 제작과 관련하여 제주 지역의 재료와 제작 기술이 뛰어났다.

먼저 제주목사의 임명조건과 관련한 사실이다. 제주목사는 청렴 근면한 자를 선임해야 하며, 타 지역의 목사와 달리 당상관으로 뽑아 파견해야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음의 기록에서 살펴볼 수 있다.

“대사헌 조복양과 집의 이후가 아뢰기를, ‘제주라는 고을은 멀리 바다 너머에 있는데 물산이 매우 많아 평소에 이익이 되는 소굴이라 불립니다. 예부터 꼭 청렴하고 근면한 사람으로 뽑았으니 그 뜻이 우연한 게 아닙니다.’라고 하였다(1662년/현종 3, 12월 16/18/19/22일).”

“좌의정 김수항이 또 아뢰기를, ‘제주목사는 전례에 따라 당상관으로 뽑아 파견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1673년/현종 14, 2월 19일).”

위에서 제주목사는 당상관 정3품으로 임명된 사실이 확인된다. 당상관이란 국정을 논의할 때 대청(堂)에 올라 왕과 함께 국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최고위 관직을 말한다. 즉 왕과 같은 자리에서 정치의 중대사를 논의하고 정치적 책임이 있는 관서의 장관을 맡은 품계의 사람들이다. 문신은 정3품의 통정대부 이상, 무신은 절충장군 이상이다. 이 때문에 정3품 당하관(통훈대부) 이하의 관리가 제주목사에 임명되면 항상 정3품 당상관(통정대부) 이상으로 품계를 올려주는 ‘가자(加資)’가 함께 이루어졌다. 1672년(현종 13) 2월(18일) 제주목사에 제수되면서 곧바로 통정대부로 가자된 윤계(尹埜)와 1673년(현종 14) 2월(20일) 역시 제주목사에 제수된 김흥운(金興運)을 통정대부에 가자한 사실이 그것이다.

한편 제주목사와 제주관관은 문무관을 서로 엇갈려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도 확인된다. 즉 목사나 판관 중 1인은 항상 문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제주의 학문 권장과 특히 소과(승보시) 시행을 주관할 책임자 선임 때문이었다. 아래에 관련 사실을 소개한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목사·판관을 아울러 문신으로 엇갈리게 임명하여 목사·판관 중에 항상 문관 한 사람은 남아있게 해서 향교 교수관과 더불어 해마다 승보시를 시행하여 학문을 권장하는 방도를 없애 버리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묘당으로 하여금 일러 조치케 하라.’고 하였다(1664년/현종5, 3월 26일).”

또한 제주 출신은 제주 수령에 임명할 수 없다는 상피제 규정 적용의 사례가 확인된다. 이는 제주 뿐 아니라 조선시대 모든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관리 임명의 원칙이었는데 역시 제주에서도 적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에 관련 기사를 소개한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대정현감 유옥과 정의현감 김여한은 모두 본도 해읍(海邑)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동시에 이 섬 안으로 부임 받았으니 세상 논의가 모두 부당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청컨대 대정현감 유옥과 정의현감 김여한을 모두 다른 사람으로 갈아 임명할 것을 명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사헌부에 답하기를, ‘아뢰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1665년/현종6, 6월 10일).”

이상 《승정원일기》 현종대 제주기사에서는 제주목사를 비롯한 제주 삼읍 수령의 임명과 관련한 여러 조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면 다음의 네 가지 사실로 요약된다. 첫째, 제주목사는 청렴 근면한 자로 선임해야 한다. 둘째, 타 지역의 목사와 달리 제주목사는 정3품의 당상관으로 임명했다. 셋째, 제주목사와 제주관관은 문무관을 서로 엇갈려 임명한다. 넷째, 제주 출신은 제주 수령에 임명할 수 없다는 상피제 규정이 적용되었다.

다음으로 제주가 무기 제작과 관련한 재료 및 기술이 뛰어난 사실을 알려주는 기사도 특이하다. 훈련도감의 창자루 제작은 매년 제주의 이년목을 베어 진상선에 올려 같이 보냈다는 기사 및 활의 제작과 재질은 제주가 매우 우수하였다는 기사가 그것이다. 다음에 소개한다.

“유혁연이 말하기를, ‘창자루로 합당한 이년목을 훈련도감에서는 매년 제주에서 가져다 씁니다. … 이후 진상선이 올라올 때 베어 가지고 신고 오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1667년/현종 8, 3월 3일).”

“유혁연이 말하기를, ‘제주에서 활을 만드는 것이 매우 정밀합니다. 활의 재질도 또한 좋습니다.’라고 하였다(1669년/현종 10, 1월 23일).”

당시 지중추부사로 어영대장을 겸임하고 있던 유혁연(柳赫然)은 창자루 및 활의 재료와 관련하여 제주의 이년목과 (녹)각이 좋은 재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활 제작과 관련해 제주 장인의 기술이 뛰어나다는 사실까지 언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공마, 추복(전복), 감굴류 외에 무기 제조와 관련한 재료까지 제주의 진상물목이 다양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승정원일기》 현종대 제주기사는 총 330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네 분야로 나누어보면 각각 224건, 56건, 31건, 19건의 사실이 확인된다. 이들 네 분야는 다시 18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보다 세밀하게 기록된 사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치는 인사(171), 추고(19), 형사(8), 유배(7), 기타(19)의 5주제로 나누었고, 경제는 세공마(22), 체임진상마(9), 산마감목관(5), 진상1(5), 진상2(12), 기타(3)의 6주제로 나누었다. 사회는 진휼(9), 재해(5), 재난 극복(4), 표류인(5), 기타(8)의 5주제로, 문화는 제주시재(15), 기술(2), 기타(2)의 3주제로 나누었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승정원일기》 현종대 제주기사는 총 330건 중 정치 분야가 224건으로 2/3에 해당한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인사 분야 기사가 171건으로 절반이 넘는다. 제주목민관 제수 관련 기사 71건과 교체 청원 및 서경 등과 관련한 기사가 100회에 해당되었다. 제주목민관 제수 대상은 제주목사(18), 제주관관(19), 대정현감(15), 정의현감(13), 제주교수(3), 제주심약(2), 제주시재이사(1) 등이었다. 이들의 제수 기사는 그들의 사은, 하직, 가자 등과 관련한 기사까지 포함한 것이다. 예컨대 제주목사에 제수 되면 이후 사은과 하직의 과정을 거쳐 임지인 제주로 출발하였는데, 동일인의 사은 또는 하직 기사가 수록된 경우가 많아서 그들이 서울을 떠난 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인사 관련 기사 중 관직 제수(71건)보다는 오히려 교체 청원 및 서경 등과 관련한 기사가 100건에 이를 정도로 많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1667년(현종 8) 3월 16일부터 동년 7월 22일까지 5개월간(윤4월 포함) 대정현감에 제수된 안숙에 대한 교체 청원 기사가 75건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왕(현종)과 양사(사헌부, 사간원) 관원 간의 지루하면서도 치열한 대립 과정이 여실히 기사화됐기 때문이다. 현종에게 직언을 하여 미움을 받은 사간원 관리(정언) 안숙(安塾)은 1667년 3월 14일 대정현감에 제수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종은 관리 임명의 필수 과정인 서경(署經)도 생략하고 곧바로 부임하라는 명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사헌부와 사간원의 전 관리들이 돌아가며 거의 매일 같이 철회하라는 계문을 올렸던 것이다.

결국 이 논란은 대신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현종이 철회 입장을 밝히면서 종료되었다. 조선시대 언론을 관장하던 언관의 세력에 왕도 어쩔 수 없었던 사실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표 2] 《승정원일기》 현종대 제주기사의 분류

구분	주제	간략 내용	기사 횟수
정치	인사	관직 제수(사은/하직 포함), 교체 청원 등	171
	추고	제주목사, 대정현감	19
	형사	일반 추안/추핵 처리	8
	유배	유배(정배) 및 유배인 이배	7
	기타	전 제주목사(관관) 실정 및 제주목사 장계 등	19
	소계		
경제	세공마	마필수, 운송료, 분급, 방목지 선정 등	22
	체임진상마	제주목사/제주관관(3필), 정의현감/대정현감(2필)	9
	산마감목관	진상마(2필), 임명	5
	진상1	감귤류(감자, 동정귤, 유감 등)	5
	진상2	결궁장피, 직모마장, 궁대(통개), 이년목, 표고, 추복, 감곽, 왜저, 무회목, 무환자, 백담, 치자, 오징어, 흑우	12
	기타	진상 감면/봉진관 추고/추자도 수세 성균관 귀속 청원	3
	소계		
사회	진휼	진휼미 이송 및 증당, 진휼 책임자	9
	재해	천동/한재/전염병/지진해일	5
	재난 극복	제주선유어사 파견, 응행절목	4
	표류(인)	네덜란드인, 제주군관 일본 표류	5
	기타	노비신공 감면 및 면천 등	8
	소계		
문화	제주시제	시권과차, 전시직부	15
	기술	'활' 제작	2
	기타	한라산 강향치제, 제주향교 위판 오기	2
	소계		
총계			330

그 밖에 기타 사항으로는 1672년(현종 13) 2월 20일 진휼에 공을 세운 제주 목민 관에 대한 공훈 기사와 1669년(현종 10) 10월 3일 제주목사로 재임 중 사망한 이인(李堧)에 대한 상여 호송 사실 기록도 눈에 띈다. 전자는 《현종실록》(1671/현종 12, 12월 24일)에 이미 제주선유어사 이하(李夏)의 서계(書啓)에 따라 특별히 명한 내

용이 그대로 시행된 기록이다. 실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목사 노정(盧錠)에게 가자하고 전 판관 최진남(崔鎭南)에게 준직(準職)을 제수하였는데, 노정은 정성으로 백성을 구제하고, 최진남은 백성에게 사랑을 끼쳤기 때문이다. 정의현감 이송로(李松老)에게도 진휼을 잘하였기 때문에 아마(兒馬)를 내렸다. 전 대정현감 정대주(鄭台周)는 진휼의 정사를 간사한 아전에게 일임하였으며 또 탐욕을 부려 법을 어긴 죄가 많았기 때문에 사형을 감면하여 정배(定配)하였다.” 이상의 내용 중 《승정원일기》에는 노정, 최진남, 이송로에 대한 동일한 포상 내용만 기록되어 있고, 정대주에 대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실은 《승정원일기》보다 오히려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이 더욱 상세하다고 할 만하다.

후자는 《조선왕조실록》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다. 제주목사 이인(李瑱)이 바다 밖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했는데 상여 운반이 어렵다고 하자, 현종이 그의 상여가 지나는 고을마다 담지군(擔持軍)을 차출하여 호송하라는 명을 내린 사실이다. 이와 동일한 사례가 1737년(영조 13) 윤9월에도 있었다. 당시 제주목사 김정(金儼)이 재임 중 사망하자 영조는 그의 운구가 경유하는 삼도의 각 읍과 역에 담(지)군을 배치하여 운구가 정지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교지를 내렸다. 70년 터울을 두고 제주목사로 재임 중 사망한 이인의 사례가 이후 김정의 사례에 그대로 적용되었던 것이다.

경제 분야 기사는 효종대의 제주기사와 비슷하게 세공마와 진상에 대한 사실이 대부분이다. 즉 중앙정부로 올려 보내는 마정 관련 36건과 진상품 관련 17건의 기사가 그것이다. 마정 관련 기사에서는 제주목민관을 지내고 이임할 때는 반드시 체임진상마를 사복시로 올려 보내는데 제주목사와 제주판관은 3필, 정의현감과 대정현감은 2필로 규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김만일의 후손으로 제주 산마장 감목관이 대대로 계승되고 있으며, 그때마다 역시 진상마를 2필 보냈던 사실도 확인된다. 이외에 세공마의 종류별 마필수, 운송로, 제주마 분급 규정, 제주마의 한성 주변 방목지 운용 등의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 부문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진상 기사에는 당시 제주 특산물의 다양한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흔히 알려진 감귤류(감자, 동정귤, 유감 등)와 표고, 추복, 감곽(미역) 외에도 결궁장피, 직모마장, 궁대(통개), 이년목, 왜저, 무회목, 무환자, 백랍, 치자, 오징어, 흑우 등의 진상품이 방물로 올려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물론 진상 물품과 관련해서는 《탐라지》 등 제주 관련 지리지 등에 소개되어 있지만, 특정 시기(17세기 중 후반) 제주 특산물의 종류와 비교 연구할 때, 그 수량의 정도 등을 연구할 때 본서의 활용도는 높아질 것이다.

특이한 사실은 1672년(현종 13) 윤7월 14일 기사에서 제주목사 윤계(尹楷)의 계문 가운데 정의현에 왜저(倭楮) 6백 근이 있다고 했는데 다만 거짓 장부만 있을 뿐이고 지금은 토산품이 없으니 필시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니 탕감해 줘야 한다는 김수흥(金壽興)의 건의에 현종이 승낙한 내용이다. 산닥나무인 왜저는 한지 재료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경상도 경주부, 울산군, 창원도호부, 거제현, 고성현과 황해도의 풍천도호부에서 진상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제주의 진상품 물목으로는 처음 확인되는데, 예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예전에는 진상품에 올려 있다가 생산이 끊겨 더 이상 진상품으로 올릴 수 없게 된 정황을 살펴볼 수 있다.

사회 분야 기사는 1670년(현종 11)부터 제주에 흉년과 역병이 일어나 제주민을 구휼하기 위한 여러 조처들이 시행되는 사황을 확인할 수 있다. 18건의 기사가 이와 관련된 사실들이다. 1671년 4월에는 제주 진휼을 총괄할 책임자(민정중)가 선임되고, 8월에는 제주 선유어사(이하)가 파견되었다. 경상도와 전라도 및 황해도까지 진휼미 총당의 명이 내려지고, 1671년 7월에는 15척의 진휼선이 제주를 향하다가 표류하여 제주에는 2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라도 고흥, 순천 등지로 떠밀려가거나 침몰(2척)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제주목사였던 노정과 정의현감 이송로가 1672년 2월 진휼의 공이 있다하여 상훈을 받았던 내용은 이미 앞에서 살펴 보았다.

그 밖에 제주에서도 납속과 면천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1672년(현종 13) 11월 18일에는 진휼미를 납속하여 면천의 혜택을 받는 기사가 있다. 당시 40석을 납속해야 면천이 가능한 사목이 있었음에도 20석을 내어 면천의 허락을 받으려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1673년(현종 14) 8월 14일 시비(寺婢) 승생(承生)은 납속으로 본인 면천 대신 시부모 증직을 청원하여 허락받는 사례가 등장한다. 다만 이때는 10석5두령의 액수로 면천이 가능하다는 언급이 있어서 당시 면천 지원자의 소속 및 성격에 따라 납속 액수가 달랐음이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문화 분야 기사는 제주시재 관련 사실이 다수 기록되어 있어 제주 유생들이 과거에 급제하는 과정을 보다 자세히 알 수 있게 해준다. 제주어사는 시재를 실시하기 위해 서울에서 미리 홍문관 대제학에게 시제(試題)를 받고 내려갔으며, 시제 실시 후 그 결과(시권)를 다시 서울에 올려 보내 역시 대제학의 성적 판정(과차)을 기다렸다. 그 후 급제자가 복시를 뛰어넘어 곧바로 왕이 주관하는 전시를 치르는 절차(전시직부)가 진행되며, 이들이 서울에 머무는 동안 경비 일체를 지원하

는 규정 역시 소개되어 있다. 전시직부의 경우는 3년마다 한 번씩 치르는 정기적 과거 시험인 식년시에만 적용되었던 사실도 확인된다. 다만 제주에서 올라온 시제급 제자(제주거자)는 절해고도에서 올라 왔기 때문에 별시 및 증광시와 같은 비정기적 과거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도록 왕의 특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제주의 '활' 제작기술과 재질이 우수했으며, 제주향교의 위판이 오기되어 이를 바로잡는 조치도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이상 조선후기 전 시기에 걸친 《승정원일기》의 제주기사 역주는 향후 제주사 연구에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할 수 있다. 특히 지난번 효종대 제주기사와 더불어 제주에 파견된 목민관들의 제수 및 교체 등 선임 과정 전반에 대한 세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마정, 진상 등의 경제 분야 역시 그 내용과 물품에 다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재해와 진흙 및 납속과 면천 등의 사회상 부문은 당시 제주의 실정을 속속들이 알려주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시 조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등이 확인된다. 제주에서 시행되는 과거와 그 급제자들이 서울에 올라가 최종 과거에 응시하기까지 구체적 정황을 《승정원일기》 현종대 제주기사를 통해 보다 세밀히 살펴볼 수 있다.

향후 제주학연구센터는 숙종대, 영·정조대 등 왕대별로 지속적인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역주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의 제주기사보다 10배 전후의 많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왕대별 지속적인 역주 작업이 마무리되면 제주 역사 연구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리라 판단된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제주 관련 다양한 사실들이 《승정원일기》 제주기사를 통해 제공될 것이다.

더 나아가 본 역주 사업은 역사 뿐 아니라 제주의 인문·자연 전 분야에 걸쳐 심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할 것이다. 독자 제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질책을 감히 구해본다.

2018년 8월

홍 기 표

## □ 일러두기

1. 본서는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역사편찬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2. 제주역사편찬사업은 조선시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의 제주기사를 모두 수집하여 연차별로 역주 계획을 수립하여 왕대별로 발간하고 있다.
3. 제주역사편찬사업은 첫 작업으로 2017년 《승정원일기》 효종대(1649~1659) 제주기사를 수집하여 역주하였다.
4. 본서는 《승정원일기》 효종대 제주기사에 뒤이어 두 번째로 《승정원일기》 현종대(1659~1674) 제주기사를 수집하여 역주하였다.
5. 제주기사의 채록은 ‘제주(濟州), 정의(旌義), 대정(大靜), 추자(楸子), 탐라(耽羅)’의 5개 주제어를 검색하여 수집하였다.
6. 역주 저본은 한국고전번역원 또는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승정원일기》의 ‘원문 탈초본’으로 삼았다. 단, ‘탈초본’ 상의 한자에 의문이 생기거나 ‘결자(缺字)’ 등은 원문과 대교하여 이를 각주로 밝혔다.
7. 본문은 원문, 역주 연도, 표제문, 역주문, 주제어의 순으로 기술하였다.
8. 역주자 및 분담 역주 분량은 다음과 같다.
  - 1) 김일우 : 1659년(현종 즉위) 7월 16일 ~ 1666년(현종 7) 8월 28일
  - 2) 백종진 : 1666년(현종 7) 9월 10일 ~ 1668년(현종 9) 3월 25일
  - 3) 홍기표 : 1668년(현종 9) 5월 11일 ~ 1669년(현종 10) 12월 26일
  - 4) 오창명 : 1670년(현종 11) 1월 27일 ~ 1672년(현종 13) 11월 18일
  - 5) 홍기표 : 1672년(현종 13) 11월 22일 ~ 1674년(현종 15) 7월 27일

# 목 차

발 간 사..... 3	2年 閏7月 3日(庚辰)..... 46
해 제..... 5	2年 10月 10日(丙辰)..... 47
일러두기..... 14	2年 10月 11日(丁巳)..... 48
	2年 10月 28日(甲戌)..... 49
<b>顯宗</b>	2年 11月 16日(辛卯)..... 50
	2年 12月 27日(壬申)..... 51
<b>1659年</b> ..... 21	
即位年 7月 16日(乙亥)..... 22	
即位年 8月 5日(癸巳) ..... 23	
即位年 10月 8日(乙未)..... 24	
即位年 11月 8日(乙丑)..... 25	
即位年 11月 12日(己巳) ..... 26	
即位年 11月 26日(癸未) ..... 27	
<b>1660年</b> ..... 29	
元年 1月 5日(辛酉) ..... 30	
元年 1月 28日(甲申)..... 31	
元年 2月 19日(甲辰)..... 32	
元年 2月 21日(丙午)..... 33	
元年 3月 20日(乙亥)..... 34	
元年 3月 23日(戊寅)..... 35	
元年 4月 12日(丙申)..... 36	
元年 5月 12日(丙寅)..... 37	
元年 7月 21日(甲戌)..... 38	
元年 7月 21日(甲戌)..... 39	
元年 7月 28日(辛巳)..... 40	
元年 10月 18日(庚子) ..... 41	
元年 10月 19日(辛丑) ..... 42	
<b>1661年</b> ..... 43	
2年 閏7月 2日(己卯)..... 44	
2年 閏7月 2日(己卯)..... 45	
	<b>1662年</b> ..... 53
	3年 1月 20日(甲午) ..... 54
	3年 4月 8日(辛亥)..... 55
	3年 4月 15日(戊午) ..... 56
	3年 6月 10日(辛亥) ..... 57
	3年 6月 21日(壬戌) ..... 58
	3年 7月 3日(甲戌)..... 59
	3年 7月 20日(辛卯) ..... 60
	3年 11月 23日(癸巳)..... 61
	3年 11月 26日(丙申)..... 62
	3年 11月 27日(丁酉)..... 63
	3年 12月 14日(癸丑)..... 64
	3年 12月 16日(乙卯)..... 65
	3年 12月 16日(乙卯)..... 66
	3年 12月 18日(丁巳)..... 67
	3年 12月 19日(戊午)..... 68
	3年 12月 21日(庚申)..... 69
	3年 12月 22日(辛酉)..... 70
	3年 12月 26日(乙丑)..... 71
	<b>1663年</b> ..... 73
	4年 4月 1日(戊戌)..... 74
	4年 8月 19日(甲寅) ..... 75
	4年 10月 12日(丙午)..... 76

**1664年** ..... 77

5年 2月 24日(丁巳) ..... 78

5年 3月 26日(戊子) ..... 79

5年 3月 26日(戊子) ..... 80

5年 5月 16日(丁丑) ..... 82

5年 閏6月 20日(庚辰) ..... 83

5年 8月 10日(己巳) ..... 84

5年 8月 11日(庚午) ..... 85

5年 10月 8日(丙寅) ..... 86

5年 10月 24日(壬午)..... 87

5年 11月 10日(丁酉)..... 88

5年 11月 11日(戊戌)..... 89

5年 11月 18日(乙巳)..... 90

5年 11月 23日(庚戌)..... 91

5年 12月 13日(庚午)..... 93

5年 12月 22日(己卯)..... 94

5年 12月 25日(壬午)..... 95

5年 12月 27日(甲申)..... 96

**1665年** ..... 97

6年 1月 5日(壬辰) ..... 98

6年 1月 7日(甲午) ..... 99

6年 1月 25日(壬子) ..... 100

6年 2月 2日(己未) ..... 101

6年 2月 7日(甲子) ..... 102

6年 2月 7日(甲子) ..... 103

6年 2月 8日(乙丑) ..... 104

6年 2月 10日(丁卯) ..... 105

6年 2月 11日(戊辰) ..... 106

6年 2月 21日(戊寅) ..... 107

6年 4月 2日(戊午) ..... 108

6年 5月 13日(戊戌) ..... 109

6年 6月 6日(辛酉) ..... 110

6年 6月 9日(甲子) ..... 111

6年 6月 10日(乙丑) ..... 113

6年 6月 11日(丙寅) ..... 114

6年 6月 11日(丙寅) ..... 115

6年 6月 11日(丙寅) ..... 116

6年 6月 13日(戊辰) ..... 117

6年 6月 14日(己巳) ..... 118

6年 7月 3日(丁亥)..... 119

6年 7月 4日(戊子)..... 120

6年 7月 6日(庚寅)..... 121

6年 9月 23日(丙午) ..... 122

6年 10月 4日(丙辰) ..... 123

**1666年** ..... 125

7年 1月 5日(丙戌)..... 126

7年 3月 20日(庚子) ..... 127

7年 4月 19日(己巳) ..... 128

7年 8月 13日(辛酉) ..... 129

7年 8月 18日(丙寅) ..... 131

7年 8月 28日(丙子) ..... 132

7年 9月 10日(丁亥) ..... 133

7年 9月 11日(戊子) ..... 134

7年 10月 21日(戊辰)..... 135

7年 10月 21日(戊辰)..... 136

7年 10月 22日(己巳)..... 137

7年 10月 24日(辛未)..... 138

7年 12月 5日(辛亥) ..... 139

7年 12月 26日(壬申)..... 140

**1667年** ..... 143

8年 1月 23日(戊子) ..... 144

8年 3月 3日(丁丑)..... 145

8年 3月 14日(戊子) ..... 146

8年 3月 14日(戊子) ..... 147

8年 3月 14日(戊子) ..... 148

8年 3月 16日(庚寅) ..... 149

8年 3月 17日(辛卯) ..... 151

8年 3月 20日(甲午) ..... 152

8年 3月 20日(甲午) ..... 153

8年 3月 20日(甲午) .....	154	8年 4月 23日(丁卯) .....	194
8年 3月 21日(乙未) .....	156	8年 4月 23日(丁卯) .....	195
8年 3月 21日(乙未) .....	157	8年 4月 23日(丁卯) .....	196
8年 3月 22日(丙申) .....	158	8年 4月 24日(戊辰) .....	197
8年 3月 25日(己亥) .....	159	8年 4月 24日(戊辰) .....	198
8年 3月 26日(庚子) .....	160	8年 4月 26日(庚午) .....	199
8年 3月 26日(庚子) .....	161	8年 4月 26日(庚午) .....	200
8年 3月 27日(辛丑) .....	162	8年 4月 27日(辛未) .....	201
8年 3月 27日(辛丑) .....	163	8年 4月 27日(辛未) .....	202
8年 3月 28日(壬寅) .....	164	8年 4月 28日(壬申) .....	203
8年 3月 28日(壬寅) .....	165	8年 4月 28日(壬申) .....	204
8年 4月 1日(乙巳) .....	166	8年 4月 29日(癸酉) .....	205
8年 4月 1日(乙巳) .....	167	8年 4月 29日(癸酉) .....	206
8年 4月 2日(丙午) .....	168	8年 閏4月 1日(乙亥) .....	208
8年 4月 2日(丙午) .....	169	8年 閏4月 1日(乙亥) .....	209
8年 4月 3日(丁未) .....	170	8年 閏4月 1日(乙亥) .....	210
8年 4月 3日(丁未) .....	171	8年 閏4月 2日(丙子) .....	211
8年 4月 5日(己酉) .....	172	8年 閏4月 2日(丙子) .....	212
8年 4月 5日(己酉) .....	173	8年 閏4月 3日(丁丑) .....	213
8年 4月 8日(壬子) .....	174	8年 閏4月 3日(丁丑) .....	214
8年 4月 8日(壬子) .....	175	8年 閏4月 6日(庚辰) .....	215
8年 4月 9日(癸丑) .....	176	8年 閏4月 8日(壬午) .....	216
8年 4月 10日(甲寅) .....	177	8年 閏4月 8日(壬午) .....	217
8年 4月 10日(甲寅) .....	178	8年 閏4月 8日(壬午) .....	219
8年 4月 11日(乙卯) .....	179	8年 閏4月 8日(壬午) .....	220
8年 4月 12日(丙辰) .....	180	8年 閏4月 8日(壬午) .....	221
8年 4月 13日(丁巳) .....	181	8年 閏4月 10日(甲申) .....	222
8年 4月 17日(辛酉) .....	182	8年 閏4月 10日(甲申) .....	223
8年 4月 17日(辛酉) .....	183	8年 閏4月 11日(乙酉) .....	224
8年 4月 18日(壬戌) .....	184	8年 閏4月 11日(乙酉) .....	225
8年 4月 18日(壬戌) .....	185	8年 閏4月 11日(乙酉) .....	226
8年 4月 19日(癸亥) .....	186	8年 閏4月 12日(丙戌) .....	227
8年 4月 19日(癸亥) .....	187	8年 閏4月 14日(戊子) .....	229
8年 4月 20日(甲子) .....	188	8年 閏4月 19日(癸巳) .....	230
8年 4月 20日(甲子) .....	189	8年 閏4月 19日(癸巳) .....	231
8年 4月 21日(乙丑) .....	190	8年 閏4月 20日(甲午) .....	232
8年 4月 21日(乙丑) .....	191	8年 5月 21日(甲子) .....	233
8年 4月 22日(丙寅) .....	192	8年 6月 21日(甲午) .....	234
8年 4月 22日(丙寅) .....	193	8年 6月 23日(丙申) .....	235

8年 7月 22日(甲子) .....	236
8年 7月 26日(戊辰) .....	237
8年 7月 30日(壬申) .....	238
8年 8月 3日(乙亥) .....	239
8年 8月 24日(丙申) .....	240
8年 8月 26日(戊戌) .....	242
8年 9月 15日(丙辰) .....	243
8年 10月 11日(壬午) .....	244

10年 8月 11日(辛未) .....	280
10年 10月 3日 .....	281
10年 10月 8日(戊辰) .....	282
10年 10月 16日(丙子) .....	283
10年 11月 16日(乙巳) .....	284
10年 12月 21日(庚辰) .....	285
10年 12月 26日(乙酉) .....	286

<b>1668年</b> .....	245
9年 1月 2日(辛丑) .....	246
9年 1月 27日(丙寅) .....	247
9年 2月 24日(癸巳) .....	248
9年 2月 28日(丁酉) .....	249
9年 3月 23日(辛酉) .....	250
9年 3月 25日(癸亥) .....	251
9年 5月 11日(戊申) .....	252
9年 5月 22日(己未) .....	253
9年 7月 5日(壬寅) .....	255
9年 7月 14日(辛亥) .....	257
9年 8月 8日(甲戌) .....	258
9年 8月 9日(乙亥) .....	259
9年 11月 20日(乙卯) .....	260
9年 12月 20日(甲申) .....	261
9年 12月 27日(辛卯) .....	262

<b>1670年</b> .....	287
11年 1月 27日(乙卯) .....	288
11年 閏2月 1日(戊子) .....	289
11年 閏2月 11日(戊戌) .....	290
11年 閏2月 12日(己亥) .....	291
11年 4月 12日(戊戌) .....	292
11年 4月 16日(壬寅) .....	293
11年 5月 25日(庚辰) .....	294
11年 6月 1日(丙戌) .....	295
11年 7月 1日(乙卯) .....	296
11年 7月 2日(丙辰) .....	297
11年 7月 8日(壬戌) .....	298
11年 8月 3日(丁亥) .....	299
11年 9月 9日(癸亥) .....	301
11年 9月 20日(甲戌) .....	302
11年 10月 3日(丁亥) .....	303
11年 10月 3日(丁亥) .....	304
11年 10月 4日(戊子) .....	307
11年 10月 13日(丁酉) .....	309
11年 10月 14日(戊戌) .....	311
11年 10月 18日(壬寅) .....	313
11年 10月 19日(癸卯) .....	314
11年 10月 19日(癸卯) .....	315
11年 10月 22日(丙午) .....	317
11年 10月 23日(丁未) .....	318
11年 10月 24日(戊申) .....	319
11年 11月 30日(癸未) .....	320
11年 12月 1日(甲申) .....	321
11年 12月 4日(丁亥) .....	322
11年 12月 8日(辛卯) .....	323

<b>1669年</b> .....	265
10年 1月 4日(戊戌) .....	266
10年 1月 12日(丙午) .....	267
10年 1月 16日(庚戌) .....	269
10年 1月 16日(庚戌) .....	270
10年 1月 18日(壬子) .....	271
10年 1月 23日(丁巳) .....	272
10年 3月 25日(戊午) .....	274
10年 5月 22日(甲寅) .....	275
10年 7月 18日(己酉) .....	277
10年 7月 23日(甲寅) .....	278
10年 8月 9日(己巳) .....	279

11年 12月 12日(乙未) ..... 324

**1671年** ..... 325

12年 1月 23日(乙亥)..... 326  
 12年 2月 2日(甲申) ..... 327  
 12年 4月 3日(甲申) ..... 328  
 12年 7月 26日(乙亥)..... 329  
 12年 8月 8日(丙戌) ..... 330  
 12年 8月 23日(辛丑)..... 331  
 12年 8月 23日(辛丑)..... 333  
 12年 9月 1日(己酉) ..... 334  
 12年 9月 12日(庚申)..... 335  
 12年 9月 15日(癸亥)..... 337  
 12年 9月 15日(癸亥)..... 338  
 12年 11月 6日(癸丑)..... 339  
 12年 12月 11日(戊子) ..... 340  
 12年 12月 12日(己丑) ..... 341

**1672年** ..... 343

13年 1月 25日(壬申)..... 344  
 13年 2月 6日(壬午) ..... 345  
 13年 2月 8日(甲申) ..... 346  
 13年 2月 12日(戊子)..... 347  
 13年 2月 18日(甲午)..... 349  
 13年 2月 18日(甲午)..... 350  
 13年 2月 18日(甲午)..... 351  
 13年 2月 18日(甲午)..... 352  
 13年 2月 20日(丙申)..... 353  
 13年 3月 3日(己酉) ..... 354  
 13年 4月 3日(戊寅) ..... 355  
 13年 4月 13日(戊子)..... 357  
 13年 6月 6日(庚辰) ..... 358  
 13年 7月 2日(乙巳) ..... 359  
 13年 7月 2日(乙巳) ..... 360  
 13年 7月 11日(甲寅)..... 361  
 13年 7月 25日(戊辰)..... 362  
 13年 閏7月 2日(乙亥) ..... 363  
 13年 閏7月 14日(丁亥)..... 364

13年 閏7月 14日(丁亥)..... 365

13年 8月 17日(己未)..... 366

13年 8月 19日(辛酉)..... 367

13年 9月 3日(乙亥) ..... 368

13年 9月 4日(丙子) ..... 369

13年 10月 12日(癸丑) ..... 370

13年 10月 14日(乙卯) ..... 371

13年 11月 8日(己卯)..... 372

13年 11月 18日(己丑) ..... 373

13年 11月 22日(癸巳) ..... 375

13年 12月 4日(乙巳)..... 378

13年 12月 13日(甲寅) ..... 380

13年 12月 30日(辛未) ..... 381

**1673年** ..... 383

14年 1月 8日(己卯) ..... 384

14年 1月 11日(壬午)..... 386

14年 1月 23日(甲午)..... 390

14年 2月 6日(丙午) ..... 392

14年 2月 9日(己酉) ..... 394

14年 2月 9日(己酉) ..... 395

14年 2月 19日(己未)..... 396

14年 2月 20日(辛酉)..... 398

14年 3月 20日(庚寅) ..... 399

14年 4月 20日(己未)..... 401

14年 5月 12日(辛巳)..... 402

14年 6月 12日(庚戌)..... 403

14年 7月 11日(戊寅)..... 404

14年 8月 14日(辛亥)..... 407

14年 8月 23日(庚申)..... 409

**1674年** ..... 411

15年 1月 4日(己巳) ..... 412

15年 1月 8日(癸酉) ..... 413

15年 2月 2日(丙申) ..... 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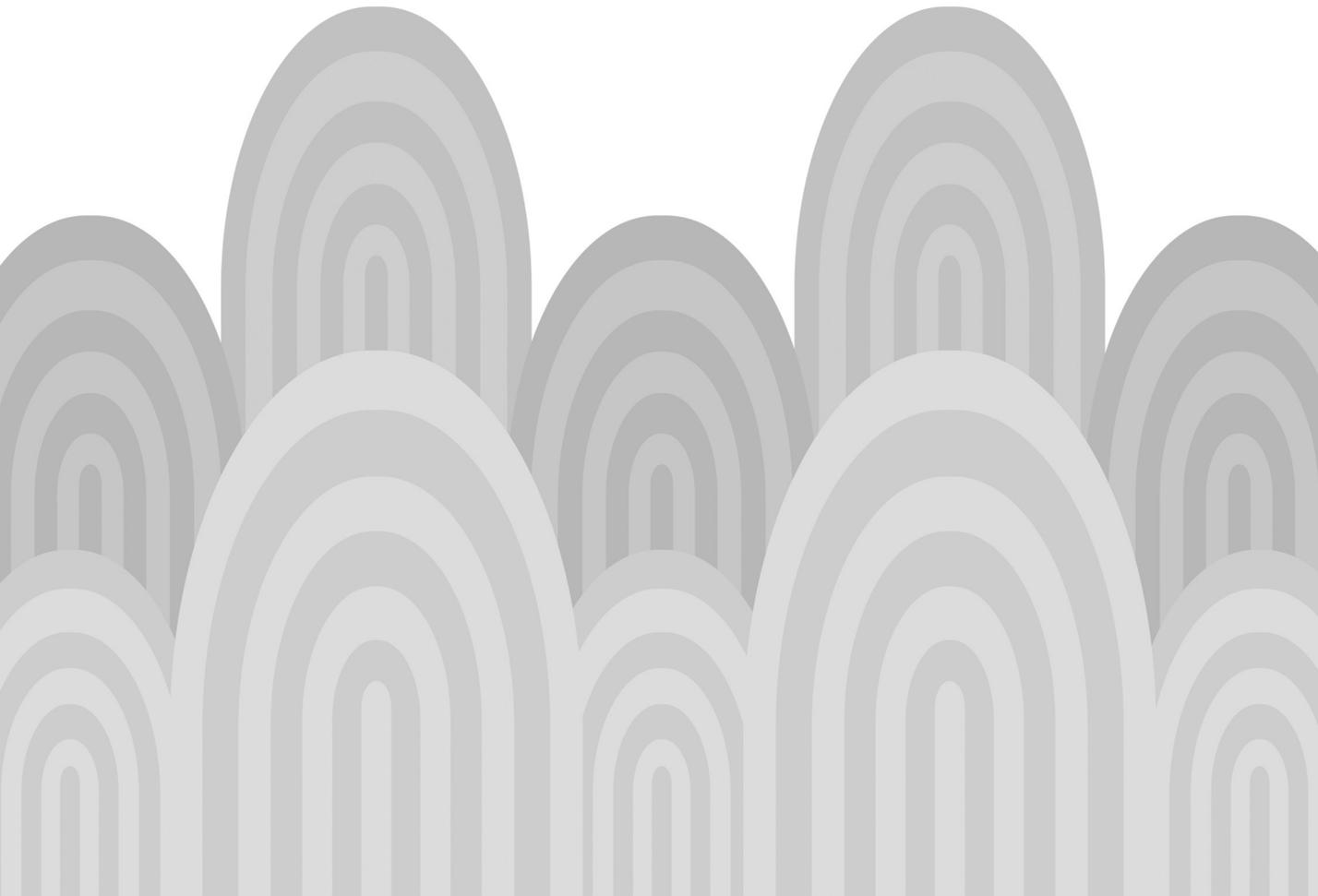
15年 3月 2日(丙寅) ..... 415

15年 5月 12日(乙亥)..... 416

15年 7月 27日(己丑)..... 417



1659年



❖ 順治 十六年 己亥 七月 十六日 乙亥

- 本院啓曰, 濟州七月朔殯殿進上烏賊魚, 全數色變, 考其封進日子, 則乃七月初六日也. 經霾致傷, 勢所固然, 海外封進之物, 曾無點退之規, 故不得已捧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以上司饗院臚錄】

❖ 현종 즉위년(1659) 기해년 7월 16일(을해)

□ 제주(濟州) 진상의 오적어(烏賊魚)가 변색됐으나,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사옹원(司饗院)의 계

- 사옹원(司饗院)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7월 초하루 빈전(殯殿)<sup>1)</sup>에 진상한 오적어<sup>2)</sup>는 모두가 색이 변해버렸습니다. 봉진(封進)한 날짜를 보니 바로 7월 초6일입니다. 흠비를 만나 상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다 건너에서 봉진한 물건은 일찍이 점퇴(點退)<sup>3)</sup>하는 규정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뜻을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사옹원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 빈전, 오적어, 점퇴.

1) 빈전(殯殿): 상여가 나갈 때까지 왕이나 왕비의 관을 모시던 곳. 경복궁 안에 있었음.

2) 오적어(烏賊魚): ‘오징어’를 말함.

3) 점퇴(點退): 받은 물건을 살펴봐 마음에 들지 아니한 것은 도로 물리침.

❖ 順治 十六年 己亥 八月 五日 癸巳

- 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今年濟州凶島[咎]馬二百二十餘匹, 今明當爲來到本寺矣. 此則不合於國用, 當依前例, 按據兒馬賜給承傳冊分給, 而自萬曆辛丑至于今, 有承傳而未受馬者, 至於三千有數百之多, 若無定式之事, 則將不勝其紛紜. 一從承傳年月先後, 以此分給, 毋或參錯於其間, 宜當. 此則自本寺舉行, 而但在前不量事理之人, 既受之後, 觀其馬品, 如不稱意, 則還爲點退, 侵辱官吏, 君賜之物, 何敢如是? 日後有此弊, 則別爲抄啓嚴治之意, 豫爲知委, 何如? 傳曰, 允.

❖ 현종 즉위년(1659) 기해년 8월 5일(계사)

- 임금의 하사품을 점퇴(點退)하며 관리를 모욕한 사람의 엄벌을 청하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 관원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올해 제주의 흉구마(凶咎馬)<sup>4)</sup>가 220필인데 금방 사복시에 당도하게 됩니다. 이들이 국용에 마땅치 않으면 의당 전례에 따르는데 어린 말을 내려줌에 근거를 뒤 이어져 내려온 기록물의 나뉘춤을 살펴보니 1601년(선조 34)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말을 못 받은 자가 거의 3천 수백 명에 이릅니다. 만일 규칙을 정해놓지 않으면 의견이 분분해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이어져 내려온 연월의 선후에 따라 분급해서 불공정한 허점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번 본 관아에서 일을 거행하고 있는데 단지 일의 사정도 헤아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 이미 말을 수령하고는 그 품질을 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도로 물리면서 관리까지 욕보이고 있으니, 임금이 내린 물건인데도 어찌 감히 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뒤로는 이런 폐해가 있으면 별도로 그 자를 가려내 아뢰어서 엄히 다스리겠다고 미리 명을 내려 알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택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 흉구마.

4) 흉구마(凶咎馬): 본래의 용도에 쓰지 못하는 흠이 있는 말로 잡역(雜役)에 쓸 목적으로 올려 보내던 말.

❖ 順治 十六年 己亥 十月 八日 乙未

- 洪葦, 以義禁府言啓曰, 近日判義禁府事李時昉, 連在陳疏中, 又被臺論, 久未行公, 濟州罪人放未放公事, 全南道查覈狀啓, 及領敦寧府事李景奭劄子, 既已啓下. 且各人等照律公事及閱堦刑推窮覈之舉, 俱係重大, 揆以事例, 臣等不敢獨爲舉行, 待判義禁出仕後, 竝爲回啓舉行之意, 敢啓. 傳曰, 允.

❖ 현종 즉위년(1659) 기해년 10월 8일(을미)

□ 제주(濟州) 죄인의 석방여부 관련 처리 이시방(李時昉)의 출사(出仕) 후 회계(回啓)하려 함을 알리는 의금부의 계

- 홍위(洪葦)가 의금부의 말로써 아뢰기를, “요즘에 판의금부사 이시방(李時昉)이 잇달아 소(疏)를 올렸는데 대간의 논박을 받아 오래 공무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濟州) 죄인의 석방여부 처사는 전남도(全南道)의 사핵(查覈) 장계와 영돈령부사 이경석(李景奭)의 차자(劄子)가 이미 그 재가가 내려졌습니다. 또한 각각의 사람들에게 법을 적용하는 공무와 민우(閱堦)를 심문하여 속속들이 밝히는 일은 모두가 중대하므로 사례를 살펴보니 신등이 감히 혼자 거행할 수 없어 ‘판의금’이 출사한 후에 아울러서 다시 아뢴다는 뜻으로 감히 아뢰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홍위, 이시방, 이경석, 제주, 민우.

❖ 順治 十六年 己亥 十一月 八日 乙丑

- 金壽恒, 以禮曹言, 啓曰, 今冬至各道方物看品, 則濟州牧使所貢方物, 未及來到. 雖是海外, 未及期限, 殊無敬謹封進之意, 牧使李禴請推考. 傳曰, 允.

❖ 현종 즉위년(1659) 기해년 11월 8일(을축)

- 동지물선(冬至物膳)을 기한 내 미납한 제주목사(濟州牧使) 이괴(李禴)의 허물을 따져 물을 것을 청하는 예조의 계
- 김수항(金壽恒)이 예조의 말로써 아뢰기를, “올 동지 때 각 도의 방물(方物)을 살펴보니 제주목사가 올린 방물이 아직도 도달치 못했는데, 비록 바다 밖이라 하더라도 그 기한을 어겼으니 공경하고 삼가면서 봉진하려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목사 이괴(李禴)<sup>5)</sup>를 추고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김수항, 제주목사, 이괴.

---

5) 이괴(1607~1666): 본관 연안(延安). 자 자방(子方). 1631년(인조 9) 별시문과 급제. 1636년 병자호란 때 소현세자(昭顯世子)가 인질로 청나라에 갈 때 따라갔고, 이때의 행적과 관련해 일시 과직된 적도 있음. 이후 여러 곳의 수령을 거치고 1658년(효종 9) 4월~1660년(현종 1) 5월 제주목사 재임. 이때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를 둬. 제주의 영혜사(永惠祠)에 제향(祭享). 특히, 그 성명 가운데 “禴”(괴)가 “회”로 오독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함. 저술 《장수당기(藏修堂記)》.

❖ 順治 十六年 己亥 十一月 十二日 己巳

- 金壽恒啓曰, 邊地守令, 雖許直狀啓, 不等待罪, 自是體例, 而濟州牧使李禕, 以進上柑子代封事狀啓中, 乃敢偃然待罪, 有違事體, 請推考. 傳曰, 允.

❖ 현종 즉위년(1659) 기해년 11월 12일(기사)

- 사리에 맞지 않게 대죄(待罪)한다는 장계를 올린 제주목사(濟州牧使) 이괴(李禕)의 허물을 따져 물을 것을 청하는 김수항(金壽恒)의 계
- 김수항(金壽恒)이 아뢰기를, “변방 수령이 비록 임금께 바로 올리는 장계에서도 감히 ‘대죄(待罪)’한다고 하지 않음이 본래 관리의 예의이거늘, 제주목사 이괴(李禕)가 진상 올릴 감자(柑子) 대신 다른 물건을 올리는 장계에 감히 바로 ‘대죄’라고 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추고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김수항, 제주목사, 이괴, 감자.

❖ 順治 十六年 己亥 十一月 二十六日 癸未

- 吳挺緯, 以禮曹言啓曰, 曾前三名日方物停罷之時, 濟州則結弓獐皮二十張, 織毛馬糞一部, 竝爲依例封進矣. 今番則只封弓袋筒筒, 而獐皮馬糞, 不爲封進. 大概本州方物, 與他道監兵營有異, 此等三種之外, 無他封進物種, 弓袋筒筒, 則雖在外物椒減之所當依處教, 他道一體封進, 至於獐皮馬糞, 則應在權減不【缺二字】中, 而在前亦爲依例封進, 未知其【缺二字】此不封之意, 必由於行會停罷之故, 而自前封進之物, 則今闕封進, 亦欠事例, 使之追後封進何如? 傳曰, 依例爲之. 【以上燼餘】

❖ 현종 즉위년(1659) 기해년 11월 26일(계미)

□ 제주(濟州)의 방물봉진(方物封進)에 대한 예조(禮曹)의 계

- 오정위(吳挺緯)가 예조의 말로써 아뢰기를, “예전에 지난 삼명일(三名日)<sup>6)</sup>의 방물을 정파(停罷)할 때, 제주의 경우는 결궁장피(結弓獐皮)<sup>7)</sup> 20장과 직모마장(織毛馬糞)<sup>8)</sup> 1부를 함께 전례대로 봉진했었는데 지금 보니 활집과 화살집만 봉진하고 장피나 마장은 바치지 않았습니다. 대개 제주의 방물은 다른 도의 감영·병영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세 가지 물건 외에 달리 바치는 것은 없습니다. 활집과 화살집은 외물(外物)이기는 하나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처분 내리신대로 타도(他道)에서 모두 봉진하게 하고, 대신 장피와 마장은 임시로 감하지만 정파<sup>9)</sup>하지 않는【2자가 빠짐】물종에 두도록 해 전례대로 봉진해왔는데, 저들은 그【2자가 빠짐】당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번 봉진하지 않은 뜻은 반드시 지방 수령과의 의논(行會)<sup>10)</sup>을 통해 정파(停罷)하기로 한 것이기에 전부터 봉진한 물건을 이번 봉진에서는 빠졌고 또한 사례에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봉진하도록 함이 어떠신지요?”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전례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이상은 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오정위, 제주, 결궁장피, 직모마장.

6) 삼명일(三名日): 임금의 탄신일, 정월 초하루, 동지를 이르던 말.

7) 결궁장피(結弓獐皮): 활에 매는 노루 가죽.

8) 직모마장(織毛馬糞): 털로 짠 장식.

9) 본 원문 기사의 ‘缺二字’는 ‘停罷’로 판단됨. 이를 굳이 번역하자면 ‘(봉진을) 정파하지 않는 것 중에’라고 할 수 있음.

10) 행회(行會): 조정의 영을 시행하기 위해 인근지방 수령들이 모여 의논하는 일.



1660年



❖ 順治 十七年 庚子 一月 五日 辛酉

○ 濟州牧使書目, 十二月初二日子時量, 天動緣由事.

❖ 현종 1년(1660) 경자년 1월 5일(신유)

□ 하늘이 진동한 연유에 대한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서목(書目)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서목(書目)<sup>11)</sup>은 '12월 초2일 자시(子時) 경에 하늘이 움직인 연유'의 일이었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목사, 서목, 천동

---

11) 서목(書目): 상급관청에 보고하는 계문이나 첩정에 첨부하는 것으로 간략하게 일의 내용을 적은 문서.

❖ 順治 十七年 庚子 一月 二十八日 甲申

○ 吏曹, 有政. 以尹絳爲禮曹判書 …… 李萬枚爲濟州判官 …… 吏曹望筒.

❖ 現宗 1년(1660) 경자년 1월 28일(갑신)

□ 이만지(李萬枝)<sup>12)</sup>를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함

○ 이조(吏曹)에서 정사<sup>13)</sup>가 있었다. 윤강(尹絳)을 예조판서로, <중략> 이만지(李萬枝)를 제주판관으로 삼고 <중략>, 이조에서 망통(望筒)<sup>14)</sup>으로 추천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윤강, 이만지, 제주판관, 망통.

---

12) 국사편찬위원회 한자 원문은 ‘이만매(李萬枚)’로 되어 있으나, 현종대 제주 판관을 역임했던 인물은 ‘이만지(李萬枝)’이므로 교열자가 바로잡음.

13) 정사(政事): 정치·행정 관련 일을 포괄하는 의미를 지니기도 하나, 여기서는 관직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일을 말함.

14) 망통(望筒): 벼슬아치를 발탁할 때, 추천하기 위해 3명의 후보자를 적어놓은 종이.

❖ 順治 十七年 庚子 二月 十九日 甲辰

- 【缺】啓曰, 濟州牧使李禕, 遞任【缺】依前禾毛色別單書入, 而內廐立養【缺】. 傳曰, 知道.

❖ 현종 1년(1660) 경자년 2월 19일(갑진)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괴(李禕)의 체임(遞任) 진상마(進上馬)를 별단에 써서 들인다는 계
- 【빠짐】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이괴(李禕)가 체임하면서 【빠짐】 전례대로 말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으로 써들여 내구(內廐)에서 기르도록 함이 【빠짐】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이괴, 제주목사.

❖ 順治 十七年 庚子 二月 二十一日 丙午

- 吏批, 有政. 以金萬基·吳始壽爲司憲府持平 …… 李枝馨爲濟州牧使 …… 吏曹望筒.

❖ 現宗 1년(1660) 경자년 2월 21일(병오)

이지형(李枝馨)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이비(吏批)<sup>15)</sup>에 의한 정사가 있었다. 김만기(金萬基)와 오시수(吳始壽)를 사헌부지평으로, <중략> 이지형(李枝馨)<sup>16)</sup>을 제주목사로 삼았다. <중략> 이조에서 망통으로 추천한 것이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김만기, 오시수, 제주목사, 이지형, 망통.

---

15) 이비(吏批): 문관의 인사 전형을 담당하는 전형위원회로 이조의 당상인 판서, 참판, 참의와 승지 1인으로 구성됨.

16) 이지형(?~?): 인조 때 제주목사를 지낸 이진경(李眞卿)의 아들. 무신출신으로 1660년(현종 1) 2월 제주목사로 부임하고, 이후 전라감사의 요구에 따라 제주 곡식 4천석을 호남 연안의 기근 지역으로 수송해 진휼하는데 씀. 1662년(현종 3) 8월 제주를 떠남.

❖ 順治 十七年 庚子 三月 二十日 乙亥

- 趙胤錫, 以司僕寺提調意啓曰, 大靜縣監李尙稷遞任, 進上馬二匹上來, 依前禾毛色別單書入, 而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현종 1년(1660) 경자년 3월 20일(을해)

- 대정현감(大靜縣監) 이상직(李尙稷)의 진상마 2필을 내구(內廐)에서 기르자는 사복시의 계
- 조윤석(趙胤錫)이 사복시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대정현감 이상직(李尙稷)<sup>17)</sup>의 체임(遞任) 진상마 2필이 올라왔으니 전례에 의해 나이와 털색을 별단에 써서 들고 내구에서 기르게 하자는 뜻을 감히 아뢰옵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조윤석, 대정현감, 이상직, 진상마.

---

17) 이상직(?~?): 무과출신으로 1658년(효종 9) 2월 대정현감으로 부임하고, 1660년(현종 1) 6월 이임. 그 가운데 1659년(효종 10) 흉년으로 기아자가 많이 속출하자, 조정에 구호곡을 요청해 구휼에 나선 적이 있음.

❖ 順治 十七年 庚子 三月 二十三日 戊寅

○ 全南監司書目, …… 濟州呈 以大靜縣監李尙稷治績查問馳啓事. …….

❖ 현종 1년(1660) 경자년 3월 23일(무인)

□ 大正현감(大靜縣監) 이상직(李尙稷)의 치적을 조사해 빨리 알림 등의 일에 관한 전남감사(全南監司)의 서목

○ 전남감사의 서목에, <중략> 제주의 소장은 대정현감 이상직(李尙稷)의 치적을 조사하여 급히 아뢰는 일이었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전남감사, 제주, 대정현감, 이상직.

❖ 順治 十七年 庚子 四月 十二日 丙申

○ 謝恩, 醴泉郡守安應呂, …… 大靜縣監柳邇.

❖ 현종 1년(1660) 경자년 4월 12일(병신)

□ 大靜縣監(大靜縣監) 유욱(柳邇)이 사은함

○ 예천군수(醴泉郡守) 안응려(安應呂), <중략> 大靜縣監 유욱(柳邇)이 사은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예천, 안응려, 大靜縣監, 유욱.

❖ 順治 十七年 庚子 五月 十二日 丙寅

○ 下直, 德川郡守李栢齡, 大靜縣監柳颺.

❖ **현종 1년(1660) 경자년 5월 12일(병인)**

□ 大靜縣監(大靜縣監) 유욱(柳颺)이 하직함

○ 덕천군수(德川郡守) 이백령(李栢齡)과 大靜縣監(大靜縣監) 유욱(柳颺)이 하직 인사를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덕천, 이백령, 大靜縣監, 유욱.

❖ 順治 十七年 庚子 七月 二十一日 甲戌

- 又啓曰, 今此濟州牧使李枝馨, 進上馬上送啓本二度, 年月之下, 俱無餘紙可踏啓字, 殊欠詳察之意, 推考, 何如? 傳曰, 允.

❖ 현종 1년(1660) 경자년 7월 21일(갑술)

- 연월(年月) 아래에 ‘계(啓) 자를 를 넣을 여지가 없이 계본(啓本) 2통을 올린 제주 목사(濟州牧使) 이지형(李枝馨)의 허물을 추궁하자는 홍처윤(洪處尹)의 계
- [홍처윤(洪處尹)이] 또 아뢰기를, “이번에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지형(李枝馨)이 진상마를 올려 보내는 계본에 두 번 모두 ‘年月’아래 ‘啓’ 자도 찍을 여백을 안 남겼으니,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흠이 매우 큼니다. 추고하는 것이 어떠합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홍처윤, 제주목사, 이지형, 진상마.

❖ 順治 十七年 庚子 七月 二十一日 甲戌

- 又以司僕寺官員，以提調意啓曰，濟州年例進上馬八匹，三名日進上馬六十匹，匈奴馬四十匹，及上年歲貢馬，船中故失代徵馬一匹，共一百九匹先到，禾毛色，別單書入之意，敢啓。傳曰，知道。

❖ 현종 1년(1660) 경자년 7월 21일(갑술)

□ 제주(濟州)의 진상마 109필을 별단에 기재·등록했다는 사복시 관원의 계

- 또한 사복시 관원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연례 진상마 8필, 삼명일 진상마 60필, 흥구마 40필과 작년 세공마 중 배에서 죽은 말 대신 징수한 1필, 모두 109필이 먼저 도착했으니 말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에다 써서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 진상마, 흥구마.

❖ 順治 十七年 庚子 七月 二十八日 辛巳

- 洪處尹, 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濟州後運歲貢馬二百匹, 來于本寺, 禾毛色, 別單開錄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현종 1년(1660) 경자년 7월 28일(신사)

- 후운(後運) 제주(濟州) 세공마를 별단의 끝에 추가로 기재하겠다는 홍처윤(洪處尹)의 계
- 홍처윤(洪處尹)이 사복시 관원이 전한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중에 운송한 세공마 2백필이 본 관청에 왔으니 말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의 끝에 추가로 써 넣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홍처윤, 제주, 세공마.

❖ 順治 十七年 庚子 十月 十八日 庚子

- 辰時, 上御興政堂, 下直守令引見. 入侍, 右副承旨閔熙, …… 順天府使鄭世輔 …… 上曰, 汝始爲守令耶? 世輔曰, 小臣, 前爲金溝倅矣. 上曰, 金溝, 無難爲之事歟? 世輔曰, 濟州進上及監兵營進上上來時, 夫馬策立, 爲難矣. 上曰, 然則金溝, 是湖南要衝之地也. 世輔曰, 凡諸進上輸運時, 以金溝夫馬, 交遞於礪山地矣. 故金溝之民, 以此難支. …… 遂罷出. 【以上燼餘】

❖ 현종 1년(1660) 경자년 10월 18일(경자)

□ 흥정당(興政堂)에서 하직 수령들을 인견하여 문답을 나눔

- 진시(辰時)에 임금이 흥정당에 나아가 하직수령들을 인견하였다. 입시한 신하는 우부승지 민희(閔熙) <중략> 순천부사 정세보(鄭世輔),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처음 어디 수령을 하였느냐?”라고 하였다. 정세보가 아뢰기를, “소신은 이전에 금구(金溝) 수령이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금구에서 어려운 일이 없었는가?”라고 하였다. 세보가 아뢰기를, “제주의 진상과 감·병영의 진상이 올라올 때, 마부와 말에 대한 대책 세우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금구가 호남의 요충지로다.”라고 하였다. 세보가 아뢰기를, “대체로 여러 진상을 수송할 때 금구의 마부와 말은 여산(礪山) 지경에서야 교체되므로, 금구 백성이 이 때문에 어려워합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드디어 끝나고 나갔다. 【이상은 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흥정당, 민희, 정세보, 금구, 제주, 여산.

❖ 順治 十七年 庚子 十月 十九日 辛丑

○ 午時, 上御興政堂, 大臣·備局堂上, 引見. 領議政鄭太和 …… 入侍 …… 上曰, 然則營將不可率爾停罷矣. 太和曰, 教養官, 則其設已久, 而未知其有【缺半行】教養官, 如有一毫補益, 【缺半行】言耶? 洪命夏曰, 【缺半行】濟州, 則與他道有異, 其處教養官, 不可竝罷也. 上曰, 西北路·濟州外, 教養官, 皆可罷焉. …….

❖ 현종 1년(1660) 경자년 10월 19일(신축)

□ 대신(大臣)과 비국당상(備局堂上) 인견(引見) 때 정태화(鄭太和) 등이 구황(救荒) 방책 등에 대하여 논의함

○ 오시(午時)에 임금이 흥정당(興政堂)에 나아가 대신(大臣)·비변사(備邊司) 당상(堂上)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정태화(鄭太和)<sup>18)</sup>, <중략> 입시하였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영장(營將)을 느닷없이 정과(停罷)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교양관은 설치한 지가 오래되었지만 【행의 절반이 빠짐】 있음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교양관이 혹시 털끝만큼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행의 절반이 빠짐】 말입니까?”라고 하였다. 홍명하(洪命夏)가 아뢰기를, “【행의 절반이 빠짐】 제주(濟州)는 타도(他道)와는 달라서 그 곳의 교양관을 함께 파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서북로(平安道)와 제주 외의 교양관은 모두 혁파하는 게 옳다.”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흥정당, 정태화, 교양관, 홍명하, 제주.

18) 정태화(1602~1673): 본관 동래(東萊). 자 유춘(囿春). 호 양파(陽坡). 1624년(인조 6) 문과급제. 이어 승문원정자로 벼슬살이 시작한 뒤, 1649년(인조 27) 48세의 나이로 우의정에 오르기까지, 육조의 참의·참판, 한성부우윤·대사간, 평안도·경상도의 관찰사, 도승지 등을 역임. 1651년(효종 2)부터 1673년(현종 14)까지 20여 년 동안 5차례나 영의정을 지내면서 효종과 현종을 보필함. 사후 현종의 묘정에 배향됨. 저서 《양파유고》·《양파연기》. 시조 1수 전함. 시호는 애초 익헌(翼憲)이었으나, 뒤에 충익(忠翼)으로 바꿈.

1661年



❖ 順治 十八年 辛丑 閏七月 二日 己卯

- 鄭萬和啓曰, 濟州牧使李枝馨, 今辛丑年歲貢馬【一字缺】送啓本二度, 其姓名皆付籤封進, 此曾所未有之事, 殊甚駭異, 自【半行缺】推考. 傳曰, 允.

❖ 현종 2년(1661) 신축년 윤 7월 2일(기묘)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지형(李枝馨)의 허물을 추궁할 것을 청하는 정만화(鄭萬和)의 계
- 정만화(鄭萬和)가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지형(李枝馨)은 올해 신축년 세공마를 【1자가 빠짐】 보낸다는 계(啓)의 문건에 2회나 그 성명을 부침(付籤)<sup>19)</sup>하여 봉진하였습니다. 이는 일찍이 없던 일로써 매우 해괴합니다. 【행의 절반이 빠짐】 추고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정만화, 제주목사, 이지형, 세공마.

---

19) 부침(付籤): 문서나 서적 등과 같은데서 고칠 곳이나 부정확한 곳, 또는 참고로 삼을만한 부분에 표시하기 위하여 종이쪽지를 붙이는 일.

❖ 順治 十八年 辛丑 閏七月 二日 己卯

- 鄭萬和, 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言啓曰, 濟州先運馬一百六十八匹內, 年例馬八匹, 三名日進上馬六十匹, 凶咎馬一百匹, 而其中雌馬二匹, 到康津逃逸, 雄馬二匹, 雌馬二匹, 則病留於康津, 來到本寺者, 合一百六十二匹, 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현종 2년(1661) 신축년 윤 7월 2일(기묘)

- 사복시에 도착한 제주(濟州) 선운마(先運馬)의 수량을 별단에 써서 들이겠다는 정만화(鄭萬和)의 계
- 정만화(鄭萬和)가 사복시 관원이 전한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먼저 운송한 말 168필은 연례마 8필, 삼명일 진상마 60필, 흥구마 100필입니다. 그 중 암말 2필이 강진(康津)에 도착하자 도망했고, 암수 각각 2필은 병으로 강진에 머물러 본시(사복시)에 도착한 것이 모두 162필입니다. 말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에 써서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정만화, 제주, 연례마, 삼명일 진상마, 흥구마, 강진.

❖ 順治十八年辛丑閏七月三日庚辰

- 鄭萬和, 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言啓曰, 濟州先運年例三名日進上馬賜給外, 四十【缺】今姑放牧於箭串, 凶咎馬賜給二匹外, 依上年【缺】兒馬帖, 年月久近案, 次【缺】爲抄出, 熟馬帖, 願受人處, 亦爲分給, 何如? 傳曰, 允.

❖ 현종 2년(1661) 신축년 윤 7월 3일(경진)

□ 숙마첩(熟馬帖)의 말을 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분급할 것 청하는 사복시의 계

- 정만화(鄭萬和)가 사복시 관원이 전한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에서 먼저 운반한 연례·삼명일 진상마에서 사급(賜給)한 것 외 40필을 【빠짐】 우선 ‘전곶(箭串)’<sup>20)</sup>에 방목하고, 흥구마로 사급한 2필 외의 말은 작년 ‘아마첩(兒馬帖)’<sup>21)</sup> 내 연월의 선후기록에 따르고, 다음 ‘숙마첩(熟馬帖)’<sup>22)</sup>에서 뽑은 【빠짐】것 중에서 받길 원하는 자들에게도 또한 분급(分給)함이 어떠하신지요?”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정만화, 제주, 연례마, 삼명일 진상마, 흥구마, 전곶, 아마첩, 숙마첩.

20) 전곶(箭串): 현 서울 성동구 행당동. ‘살곶’이라고도 했음.

21) 아마첩(兒馬帖): 길들지 않은 말에게 부여된 증서

22) 숙마첩(熟馬帖): 길들인 말에게 부여된 증서

❖ 順治 十八年 辛丑 十月 十日

- 朴世模, 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旌義縣監金益堅遞任, 進上馬二匹上來, 禾毛色別單書入, 而內廐留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現宗 2年(1661) 신축년 10월 10일(병진)

- 정의현감(旌義縣監) 김익견(金益堅)의 체임 진상마 2필을 내구(內廐)에서 기르겠다는 사복시의 계
- 박세모(朴世模)가 사복시 관원이 전한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정의현감(旌義縣監) 김익견(金益堅)<sup>23)</sup>의 체임 진상마 2필이 올라오니 나이와 털색을 별단에 써서 들고 내구(內廐)에 머물게 해 기르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박세모, 정의현감, 김익견, 체임 진상마.

---

23) 김익견(?~?): 본관 청풍(淸風), 무과출신. 1624년(인조 2) 이괄의 난 때 임금을 공주로 호종한 적이 있음. 이후 무과급제.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도 남한산성으로 호종함. 1659년(효종 10) 6월 정의현감으로 부임, 1661년(현종 2) 11월 이임.

❖ 順治 十八年 辛丑 十月 十一日 丁巳

○ 以李俊耆爲司諫 …… 吳尙勳爲旌義縣監 …….

❖ 현종 2년(1661) 신축년 10월 11일(정사)

□ 오상훈(吳尙勳)을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함

○ 이준구(李俊耆)<sup>24)</sup>를 사간(司諫)으로, <중략> 오상훈(吳尙勳)<sup>25)</sup>을 정의현감(旌義縣監)으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이준구, 오상훈, 정의현감

---

24) 이준구(1609~1676): 본관 성주(星州). 자 자교(子喬). 1637년(인조 15) 문과급제. 이후 정언·지평·사간을 거치고, 이어 계속 여러 관직을 역임함. 예송(禮訟)이 일어나자 서인 편에 섰으며, 1674년(숙종 즉위년) 예송을 둘러싼 정쟁에서 서인의 몰락과 함께 파직됨.

25) 오상훈(?~?): 1661년(현종 2) 12월 정의현감으로 임명되었고, 다음해 10월 부친상을 당해 떠남.

❖ 順治 十八年 辛丑 十月 二十八日 甲戌

○ 下直, 旌義縣監吳【一字缺】勳.

❖ 現宗 2年(1661) 신축년 10월 28일(갑술)

□ 정의현감(旌義縣監) 오상훈(吳尙勳)이 하직함

○ 정의현감(旌義縣監) 오【1자가 빠짐】훈<sup>26)</sup>이 하직인사를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정의현감, 오상훈.

---

26) 吳【一字缺】勳: 오상훈(吳尙勳). 본서 1661년(현종 2) 10월 11일 정사일 기록에 의하면 정의현감으로 제수된 인물은 오상훈으로 되어 있어 역주자가 보충함.

❖ 順治 十八年 辛丑 十一月 十六日 辛卯

- 鄭麟卿, 以備邊司言啓曰, 因全南監司李泰淵狀啓, 濟州三邑所儲皮穀一萬石, 許令船運, 分賑沿海飢民, 待秋成還捧, 入送本州事, 覆啓蒙允矣. 今者取考該曹會案, 則三邑米太皮穀都數, 不滿三萬石, 島民救濟, 似難移給萬石之穀於他處, 粘目中一萬石, 以四千石付標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현종 2년(1661) 신축년 11월 16일(신묘)

□ 제주(濟州) 삼읍(三邑)의 곡식이 많지 않아 다른 곳에 1만석 보내기 어렵다는 비변사의 계

- 정인경(鄭麟卿)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전남감사 이태연(李泰淵)<sup>27)</sup>의 장계에 따르면 제주(濟州) 삼읍(三邑)이 저장한 걸곡식 1만석을 배로 운송하도록 해 연해(沿海)의 굶주린 자에게 나눠 진휼하고 가을 추수를 기다려 받기로 하고 본주로 보내는 일은 다시 아뢰어 윤허를 받았습니다. 최근 해당 관아의 회의록을 받아보니, 삼읍의 쌀·콩·걸곡식의 총수가 3만석도 안 돼 도민(島民) 구제도 힘들 듯 합니다. 1만석을 다른 곳에서 옮겨서 지급하기로 하고, 문건에 덧붙인 목록의 1만석 가운데 4천석을 부치라는 뜻을 표시하는 표지 붙일 것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정인경, 이태연, 제주 삼읍.

---

27) 이태연(1615~1669): 본관 한산(韓山). 자 정숙(靜叔). 호 늘재(訥齋). 1642년(인조 20) 문과급제. 이후 여러 관직을 거치던 중 1650년(효종 1) 공산현감·수찬을 지내고, 김자점(金自點)의 일파로 탄핵을 받아 파직 당하였다가, 1652년(효종 3) 재등용됨. 이후에도 여러 번 파직과 복직의 과정을 거치면서 1661년(현종 2) 전라도관찰사로 나아감. 이어 승지·병조참의도 지냄.

❖ 順治 十八年 辛丑 十二月 二十七日 壬申

○ 全南道褒貶, 濟州判官李萬枝, 中. 【諫院朝報】

❖ 現宗 2年(1661) 신축년 12월 27일(임신)

□ 제주판관(濟州判官) 이만지(李萬枝)의 근무성적 평가

○ 전남도(全南道)에서 행한 지방관의 근무성적 평가에서 제주판관 이만지(李萬枝)<sup>28)</sup>를 ‘중’으로 평가하였다. 【사간원 조보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전남도, 제주판관, 이만지.

---

28) 이만지(?~?): 1660년(현종 1) 4월 제주판관으로 왔다가 1662년(현종 3) 8월 떠남. 이때 제주의 유학자 김진용(金晉鎔)의 건의에 따라 고득중(高得宗)의 옛 집터에 장수당(藏修堂)을 세우고, 자체들을 교육 시킴. 또한 1678년(숙종 4) 5월~1679년(숙종 5) 7월 정의현감도 지냄.



1662年



❖ 康熙 一年 壬寅 一月 二十日 甲午

- 又啓曰, 年前濟州漂到蠻人, 置之京中不便, 故竝送于全南兵營, 官給口糧, 除已物故者外, 時存之數, 尙二十三名矣. 卽接全南監司李泰淵所報, 則兵營是康津地方, 以康津會付之米, 題給蠻人之料, 而本縣尤甚飢荒, 還上所捧之米, 僅至六十六石零, 將來賑濟之資, 猶患不足, 蠻人所食, 無以爲繼, 此類移置他邑稍實處云. 事勢誠如所報, 令本道監司, 參量多少, 移置於左水營及左道大邑, 而着意防禁, 無橫行閭里之弊, 宜當. 以此意分付, 何如? 傳曰, 允. 【備局臚錄】

❖ 현종 3년(1662) 임인년 1월 20일(갑오)

- 표류해 온 만인(蠻人)에게 식량을 내줌으로 발생한 문제를 엄금할 것 청하는 게
- 또 아뢰기를, “1년 전 제주(濟州)로 표류해 다다른 만인(蠻人)을 서울에 안치하기가 불편하니 전남 병영(兵營)으로 모두 보내고 관에서 식량을 주었습니다. 이미 죽은 자를 제외하고 그 때 남은 수가 여전히 23명입니다. 바로 전남감사 이태연(李泰淵)의 보고를 받아본 즉 ‘병영은 강진(康津) 지방인데 강진에 회부(會付)한 쌀로 만인들에게 지급하라고 지시는 내렸지만, 본현(강진현)이 더욱 기근과 흉년이 심해 환자(還上)로 받은 쌀이 겨우 66석령 밖에 안 되니 곧 다가올 진휼·구제(賑濟)에는 오히려 걱정해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만인 먹이기를 도저히 계속할 수 없어 이들 무리를 다른 읍의 좀 나은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합니다. 형편이 진실로 보고한 것과 같으니, 전남감사에게 영을 내려 그 양의 다소를 헤아려서 좌수영(左水營)과 좌도(左道)의 큰 고을로 옮겨 일에 뜻을 두고 행동거지를 삼가케 함으로, 여기저기를 떠도는 폐단을 없게 함이 마땅합니다. 이 뜻으로 분부를 내리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비변사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 표도만인, 전남병영, 이태연, 강진, 좌수영.

❖ 康熙 一年 壬寅 四月 八日 辛亥

- 尹飛卿, 以刑曹言啓曰, 賊人春龍·繼善·丫赤·武仁等結案啓目判付內, 殺越人命之賊, 旣不待時, 則以此爲例, 終爲謬規是旃, 武仁段, 初不自告, 似無其功是在果, 捕捉丫赤之功, 係於後路, 特爲減死, 絕島定配事, 判下矣. 武仁段, 卽爲旌義定配, 而春龍·繼善·丫赤三賊, 則卽日當爲梟示. 【數行缺】

❖ 현종 3년(1662) 임인년 4월 8일(신해)

□ 도적 무인(武仁)을 정의현(旌義縣)에 정배하는 형조의 계

- 윤비경(尹飛卿)이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도적 춘룡(春龍)·계선(繼善)·아적(丫赤)·무인(武仁) 등에 대한 결안(結案)<sup>29)</sup>을 담은 형조의 계목(啓目)에 대하여 비답(批答)한 판부(判付)<sup>30)</sup>내에 사람 목숨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은 도적은 원래 부대시참(不待時斬)<sup>31)</sup>이고, 이것이 상례인데, 결국 잘못된 규정이었습니다. 무인은 처음에는 스스로 고하지 않아 그 공이 없는 듯 했으나 아적을 잡은 공으로 감형할 방도와 관계가 있으니 특별히 사형을 감해주고 절도(絶島)에 정배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인은 즉시 정의현(旌義縣)으로 정배하고 춘룡과 계선, 아적 등 3명은 바로 그 날 목을 베어 나무 위에 매달았습니다.” 【여러 행이 빠짐】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윤비경, 춘룡, 계선, 아적, 무인, 정의현. 정배.

29) 결안(結案): 죄인 심문서.

30) 판부(判付): 처리할 안건이나 조율해야 하는 형사 사건 등에 대하여 임금이 판결하여 내린 것[判下]을 적은 것임.

31) 부대시참(不待時斬): 법으로 정한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참형을 집행하는 일. 참형은 추분 이후 춘분 이전 사이에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역모 따위의 중죄는 이에 구애받지 않았음. 반대말로는 대시참(待時斬)을 들 수 있음.

❖ 康熙 一年 壬寅 四月 十五日 戊午

- 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濟州牧使李枝馨遞任, 進上馬三疋上來, 禾毛色別單書入, 而依前例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현종 3년(1662) 임인년 4월 15일(무오)

- 제주(濟州)에서 진상한 말의 나이·털색을 써 들이고 내구(內廐)에서 기르겠다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 관원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지형(李枝馨)의 체임 진상마 3필이 올라와 있으니 나이와 털색을 별단에 써서 들이고, 전례대로 내구(內廐)에서 기르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목사, 이지형, 체임 진상마, 내구.

❖ 康熙 一年 壬寅 六月 十日 辛亥

- 俞場, 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濟州判官李萬枚遞任, 進上馬三匹上來, 依前禾毛色別單以入, 而內廐留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현종 3년(1662) 임인년 6월 10일(신해)

- 제주판관(濟州判官) 이만지(李萬枝)<sup>32)</sup>의 체임 진상마를 내구(內廐)에서 기르겠다는 사복시의 계
- 유창(俞場)이 사복시관원이 전한 제조의 뜻을 아뢰기를, “제주판관(濟州判官) 이만지(李萬枝)의 체임 진상마 3필이 올라와 있으니 전례대로 별단에 나이와 털색을 써서 들고 내구(內廐)에서 기르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유창, 제주판관, 이만지, 체임 진상마, 내구.

---

32) 국사편찬위원회 한자 원문은 ‘이만매(李萬枚)’로 되어 있으나, 현종대 제주 판관을 역임했던 인물은 ‘이만지(李萬枝)’이므로 교열자가 바로잡음.

❖ 康熙 一年 壬寅 六月 二十一 壬戌

○ 以宋浚吉爲大司憲, …… 羅八紀爲濟州判官, …….

❖ 현종 3년(1662) 임인년 6월 21일(임술)

□ 나팔기(羅八紀)를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함

○ 송준길(宋浚吉)을 대사헌(大司憲)으로, <중략> 나팔기(羅八紀)<sup>33)</sup>를 제주판관(濟州判官)으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송준길, 나팔기, 제주판관.

---

33) 나팔기(1623~1676): 본관 나주(羅州). 자 숙거(叔舉). 호 월암(月岩). 1651년(효종 2) 무과급제. 이후 선전관(宣傳官), 사헌부감찰을 거쳐 남포현감을 지내다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관직에서 물러남. 얼마 후 조정에서 다시 불러 제주목사 겸 판관 등도 거침. 효종이 북벌 계획을 수립할 때 뽑은 여덟 장사 중 한 사람. 전북 김제시 백산면 하정리의 학당서원에 배향됨.

❖ 康熙 一年 壬寅 七月 三日 甲戌

○ 下直, 濟州牧使李翊漢.

❖ 現宗 3年(1662) 임인년 7월 3일(갑술)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익한(李翊漢)이 하직함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익한(李翊漢)<sup>34)</sup>이 하직 인사를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목사, 이익한.

---

34) 이익한(1609~1668): 본관 전주(全州). 자 치흠(稚欽). 호 향파(香坡). 1651년(효종 2) 식년문과 장원 급제 출신. 급제 이후 여러 관직을 거치던 중 1662년(현종 3) 8월 제주목사로 부임했다가 이듬해 3월 떠남.

❖ 康熙 一年 壬寅 七月 二十日 辛卯

- 下直, 寧海府使李尙逸, 洪原縣監愼亨胤, 濟州判官羅八紀, 神方仇非萬戶韓義虎.

❖ 현종 3년(1662) 임인년 7월 20일(신묘)

□ 제주판관(濟州判官) 나팔기(羅八紀) 등이 하직함

- 영해부사(寧海府使) 이상일(李尙逸), 홍원현감(洪原縣監) 신형운(愼亨胤), 제주판관(濟州判官) 나팔기(羅八紀), 신방구비만호(神方仇非萬戶) 한의호(韓義虎)가 하직인사를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판관, 나팔기.

❖ 康熙 一年 壬寅 十一月 二十三日 癸巳

- 領相啓曰, 御營軍, ……又啓曰, 濟州牧使有關, 武弁中當擇清白者差送, 而擬望之人乏小, □宇亮, 素有清白之操, 欲爲差遣, 【缺下數行】…….

❖ 현종 3년(1662) 임인년 11월 23일(계사)

□ 제주목사(濟州牧使)로 홍우량(洪宇亮)을 추천함

- 영상(領相)이 아뢰기를, “어영군은 <중략>, 또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가 꺾어졌으니 무관 중에서 의당 청백한 자를 뽑아 보내려 했지만 의망된 자는 부족합니다. 홍우량(洪宇亮)<sup>35)</sup>이 평소 청백한 지조가 있어 뽑아 보내려 합니다. 【아래로 여러 행이 빠짐】”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목사, 홍우량.

---

35) □宇亮: 홍우량(洪宇亮). 역주자가 ‘홍(洪)’을 보충함. 1650년(효종 1) 3월 제주관관으로 부임하고, 1651년(효종 2) 6월 파직되어 떠남. 1665년(현종 6) 11월 제주목사로도 왔다가 1667년(현종 8) 5월 떠남.

❖ 康熙 一年 壬寅 十一月 二十六日

- 洪處厚啓曰, 濟州牧使李翊漢, 旌義縣定配罪人梁戒達【缺】本不爲着署, 難免不察之失. 請推考. 傳曰, 允.

❖ 현종 3년(1662) 임인년 11월 26일(병신)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익한(李翊漢)의 허물 추궁을 청하는 홍처후(洪處厚)의 계

- 홍처후(洪處厚)가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익한(李翊漢)이 정의현(旌義縣)에 정배된 죄인 양계달(梁戒達)의 【빠짐】문서에 서명〔着署〕을 하지 않았으므로, 세심히 살피지 않은 잘못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추고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홍처후, 제주목사, 이익한, 정의현, 양계달.

❖ 康熙 一年 壬寅 十一月 二十七日 丁酉

- 以俞棨爲藝文提學, 朴以昭<sup>核</sup>[朴而昭]爲濟州牧使, ……【吏曹政軸】

❖ 현종 3년(1662) 임인년 11월 27일(정유)

□ 박이명(朴以昭)를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유계(俞棨)를 예문제학(藝文提學)으로, 박이명(朴以昭)<sup>36)</sup>를 제주목사로 삼았다. <하략>. 【이조 정축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유계, 박이명, 제주목사.

---

36) 박이명(1615~1676): 본관 울산(蔚山). 자 용회(用晦). 호 청계거사(淸溪居士). 1644년(인조 22) 무과 급제. 1662년(현종 3) 제주목사로 제수됨, 이후 충청수사, 경상좌수사, 전라병사 등을 두루 역임. 묘는 울산군 온양면 남창리의 선산에 있음.

❖ 康熙 一年 壬寅 十二月 十四日 癸丑

- 鄭楹, 以成均館官員, 以知館事意啓曰, 本館乃多士所會之地, 自祖宗朝, 以養士爲重, 前後賜與之地, 其數甚多. 如全南道扶安則蝟島, 羅州則都草島, 靈光則角里島·鵲島·紫雲坪, 靈岩則楸子島, 及京畿, 江華·仁川·喬桐等地, 俱有斜水收稅, 明白文書, 今至數百年矣 …….

❖ 현종 3년(1662) 임인년 12월 14일(계축)

□ 위도(蝟島) 및 추자도(楸子島) 수세(收稅)의 환급을 청하는 성균관의 계

- 정익(鄭楹)이 성균관 관원이 전한 지관사(知館事)의 뜻으로 아뢰기를, “본 성균관은 많은 선비가 모인 곳으로 창업 때부터 선비 양성을 중하게 여겨 전후로 내려준 땅은 그 수가 매우 많았습니다. 전남도(全南道) 같은 경우, 부안(扶安)의 위도(蝟島), 나주(羅州)의 도초도(都草島), 영광(靈光)의 각리도(角里島)·작도(鵲島)·자운평(紫雲坪), 영암(靈岩)의 추자도(楸子島)이고, 경기(京畿)에는 강화(江華)·인천(仁川)·교동(喬桐) 등의 땅이니, 모두 군(郡)의 경계에 걸쳐 있는 곳이어서 세금을 거두었고, 문서에 명백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이 되었습니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 주제어: 정익, 전남도, 부안, 위도, 나주, 도초도, 영광, 각리도, 작도, 자운평, 영암, 추자도, 강화, 인천, 교동.

❖ 康熙 一年 壬寅 十二月 十六日 乙卯

○ 下直, 旌義縣監任湜.

❖ 현종 3년(1662) 임인년 12월 16일(을묘)

□ 정의현감(旌義縣監) 임식(任湜)이 하직함

○ 정의현감(旌義縣監) 임식(任湜)<sup>37)</sup>이 하직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정의현감, 임식.

---

37) 임식(?~?): 1663년(현종 4) 1월 정의현감으로 부임했고, 1665년(현종 6) 8월에 떠남.

❖ 康熙 一年 壬寅 十二月 十六日 乙卯

- 大司憲趙復陽, 執義李扈啓曰, …… 濟州爲邑, 邈在海外, 物產衆多, 素稱利窟, 從前必擇廉謹之人, 意非偶然. 新除授牧使朴以昭<sup>核</sup>[朴而昭], 累經闖任, 未聞善狀, 曾爲江界府使, 多有濫滑之名. 如此之人, 不可委以絕島窮民, 濟州牧使朴以昭<sup>核</sup>[朴而昭], 請命罷職, 其代以廉名著聞之人, 極擇差送, …… 答曰, 不允. 邊將邊倅, 未聞有以遞差論劾也.

❖ 현종 3년(1662) 임인년 12월 16일(을묘)

- 새로 제수된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이명(朴以昭)의 파직을 청하는 조복양(趙復陽) 등의 계

- 대사헌 조복양(趙復陽)과 집의 이후(李扈)가 아뢰기를, “〈중략〉 제주(濟州)라는 고을은 멀리 바다 너머에 있는데 물산이 매우 많아 평소에 ‘이익이 되는 소굴’이라 불립니다. 예부터 꼭 청렴하고 근면한 사람으로 뽑았으니 그 뜻이 우연한 게 아닙니다. 새로 목사로 제수된 박이명(朴以昭)은 수사나 병사(闖任)를 누차 역임했지만 아직까지 잘했다는 평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찍이 강계부사(江界府使)가 되어선 ‘교활함이 넘쳐난다’는 이름도 남겼습니다. 이 같은 자에게 절도의 곤궁한 백성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이명의 파직을 명하고 그 대신 청렴하고 저명하다는 자를 잘 골라 뽑아 보내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변방의 장수와 수령을 교체하자고 논핵(論劾)하는 일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 주제어: 조복양, 이후, 제주목사, 박이명, 강계부사, 제주목사.

❖ 康熙 一年 壬寅 十二月 十八日 丁巳

- 大司憲趙復陽, 執義李扈啓曰, …… 濟州之地, 邈在海外, 人民尠少, 不能聊生, 物產衆多, 素稱利窟, 從前必擇廉謹之人, 意非偶然. 新除授牧使朴以昭[朴而昭], 累經闔任, 未聞善狀. 曾爲江界府使, 多有濫滑之名, 如此之人, 不可委以絕島窮民, 濟州牧使朴以昭<sup>稜</sup>[朴而昭], 請命罷職, 其代以廉名著聞之人, 極擇差送. …… 答曰, 勿煩, □□.

❖ 현종 3년(1662) 임인년 12월 18일(정사)

□ 새로 제수된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이명(朴以昭)의 파직을 청하는 조복양(趙復陽) 등의 계

- 대사헌 조복양(趙復陽)과 집의 이후(李扈)가 아뢰기를, “〈중략〉 제주(濟州)라는 땅은 멀리 바다 너머에 있는데 사람들이 드물고 편안히 살 수가 없기는 하나 물산이 매우 많아 평소애 ‘이익이 되는 소굴’이라 불리니 예부터 반드시 청렴근면한 자를 뽑아 보내는 뜻은 필시 우연이 아닙니다. 새로 제수된 목사 박이명(朴以昭)은 수사나 병사(闔任)를 누차 역임했지만 아직까지 잘했다는 평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찍이 강계부사(江界府使)가 되어선 ‘교활함이 넘쳐난다’는 이름도 남겼습니다. 이 같은 자에게 절도의 곤궁한 백성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이명의 파직을 명하고, 그 대신청렴하고 저명하다는 자를 잘 골라 뽑아 보내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sup>38)</sup>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조복양, 이후, 제주목사, 박이명, 강계부사.

38) □□: 규장각 원문에는 보이지 않음.

❖ 康熙 一年 壬寅 十二月 十九日 戊午

- 大司憲趙復陽·執義李扈啓曰, …… 濟州之地, 邈在海外, 人民尠少, 不能聊生, 而物產衆多, 素稱利窟, 從前必擇廉謹之人, 意非偶然. 新除授牧使朴以昭<sup>校</sup>[朴而昭], 屢經闔任, 未聞善狀, 曾爲江界府使, 多有濫滑之名, 如此之人, 不可委以絕島窮民. 濟州牧使朴以昭<sup>校</sup>[朴而昭], 請命罷職, 其代以廉名著聞人, 極擇差送. …… 答曰, 不允. 朴以昭<sup>校</sup>[朴而昭]事, 更加詳審處之.

❖ 현종 3년(1662) 임인년 12월 19일(무오)

□ 새로 제수된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이명(朴以昭)의 파직을 청하는 조복양(趙復陽) 등의 계

- 대사헌 조복양(趙復陽)과 집의 이후(李扈)가 아뢰기를, “〈중략〉 제주(濟州)라는 땅은 멀리 바다 너머에 있는데 사람들이 적고 편안히 살 수가 없기는 하나 물산이 매우 많아 평소에 ‘이익이 되는 소굴’이라 불리니 예부터 반드시 청렴근면한 자를 뽑아 보내는 뜻은 필시 우연이 아닙니다. 새로 제수된 목사 박이명(朴以昭)은 수사나 병사(閔任)를 누차 역임했지만 아직까지 잘했다는 평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찍이 강계부사(江界府使)가 되어선 ‘교활함이 넘쳐난다’는 이름도 남겼습니다. 이 같은 자에게 절도의 곤궁한 백성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제주 목사 박이명의 파직을 명하고, 그 대신청렴하고 저명하다는 자를 잘 골라 뽑아 보내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박이명의 일은 더 상세히 살펴서 처리하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조복양, 이후, 제주목사, 박이명, 강계부사.

❖ 康熙 一年 壬寅 十二月 二十一日 庚申

○ 下直, 慶州府尹鄭基豐, 大靜縣監郭聖衢.

❖ 現中 3年(1662) 임인년 12월 21일(경신)

□ 大靜縣監(大靜縣監) 곽성구(郭聖衢) 등이 하직함

○ 경주부윤(慶州府尹) 정기풍(鄭基豐)과 대정현감(大靜縣監) 곽성구(郭聖衢)<sup>39)</sup>가 하직인사를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경주부윤, 정기풍, 대정현감, 곽성구.

---

39) 곽성구(?~?): 1663년(현종 4) 1월 대정현감으로 부임하고, 1665년(현종 6) 8월에 떠남.

❖ 康熙 一年 壬寅 十二月 二十二日 辛酉

- 大司憲趙復陽, 執義李扈啓曰, …… 朴以昭<sup>核</sup>[朴而昭]貪猾之狀, 臣等論之悉矣, 雖不可以流傳之言, 遽加重律, 而罷職之請, 實爲未勘, 而聖批久不允從, 臣等竊惑焉. 海外絕島, 隔遠王化, 貧殘之民, 無所控告, 物產之衆, 號爲利窟, 今若不慎擇其人, 而以昭之貪名, 著聞如此, 而因爲差遣, 則是棄絕域之窮民, 而任使剝割也, 寧可有是理哉? 濟州牧使朴以昭<sup>核</sup>[朴而昭], 請命罷職, 其代以廉名表著之人, 極擇差送 …… 答曰, 不允. 出仕事及朴以昭<sup>核</sup>[朴而昭]事, 依啓.

❖ 현종 3년(1662) 임인년 12월 22일(신유)

□ 새로 제수된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이명(朴以昭)의 파직을 청하는 조복양(趙復陽) 등의 계

- 대사헌 조복양(趙復陽)과 집의 이후(李扈)가 아뢰기를, “〈중략〉 박이명(朴以昭)의 탐학과 교활한 정상은 신 등이 논하기를 다했고, 비록 소문으로 전해들은 말을 가지고 중한 율을 가할 수는 없지만 파직을 청한 것은 실로 가벼운 별입니다. 성상께서 오래 살피시고 ‘윤허하지 않는다.’고 하니 신 등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바다 너머 절도는 왕의 교화가 아주 멀어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이 도움을 당길 곳도 없습니다. 물산은 많아 ‘이익의 소굴’이라고 불립니다. 이제 만약 마땅한 사람을 조심하여 뽑지 않고 (박)이명<sup>40)</sup>의 탐욕스런 명성이 드러나고 알려진 것이 이와 같은데 이로써 뽑아 보낸다면 이것은 먼 곳의 곤궁한 백성을 버리는 것이 되고 임무를 맡겨 백성의 살코기를 베도록 하는 격이니, 어찌 이런 다스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이명은 파직하고 그 대신 청렴하고 저명하다는 자를 잘 골라 뽑아 보내기를 청합니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출사하는 일과 박이명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목사, 박이명.

40) 以昭: 국사편찬위원회 활자본은 ‘昭’로 되어 있으나 ‘昭’이 옳아 역주자가 바로 잡음.

❖ 康熙 一年 壬寅 十二月 二十六日 乙丑

○ 李端相爲舍人, …… 李重信爲濟州牧使, …….

❖ 現宗 3年(1662) 임인년 12월 26일(을축)

□ 이중신(李重信)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이단상(李端相)을 사인(舍人)으로, <중략> 이중신(李重信)<sup>41)</sup>을 제주목사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이단상, 제주목사, 이중신.

---

41) 이중신(?~?): 1663년(현종 4) 3월 제주목사로 부임하고, 1665년(현종 6) 11월에 떠남.



1663年



❖ 康熙 二年 癸卯 四月 一日 戊戌

○ 有政. 以金徽爲戶曹參判, …… 濟州審藥玄禹成, …… 竝單付.

❖ 현종 4년(1663) 계묘년 4월 1일(무술)

□ 현우성(玄禹成)을 제주심약(濟州審藥)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김휘(金徽)<sup>42)</sup>를 호조참판(戶曹參判)으로, <중략> 제주 심약(濟州審藥)<sup>43)</sup>으로 현우성(玄禹成)을 삼았다. <중략> 모두 단부(單付)<sup>44)</sup>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김휘, 제주심약, 현우성.

---

42) 김휘(1607~1677): 본관 안동(安東). 자 돈미(敦美). 호 사휴정(四休亭), 만은(晩隱). 1642년(인조 20) 문과급제하고, 그 해에 관직에 나아감. 여러 벼슬을 거치면서 1666년(현종 7) 남인의 탄핵으로 삭직되었으나, 그 뒤 복직되어 1668년(현종 9) 형조참판, 이어 대사헌이 됨. 숙종이 즉위한 뒤 1675년(숙종 1) 이조판서에 오르기도 함. 그림에 능함.

43) 심약(審藥): 궁중(宮中)에 바치는 약재(藥材)를 심사·감독하기 위하여 팔도에 파견하던 종9품 벼슬.

44) 단부(單付): 한 사람만을 추천해 임명함을 이룸.

❖ 康熙 二年 癸卯 八月 十九日 甲寅

- 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今年諸牧場<sup>牧</sup>點馬□出之舉, 竝皆停止, 分養列邑, 以爲明年國用者, 只是濟州三名日進上馬, 及歲貢馬, 而卽今見存都數, 僅一百九十一疋. 此則勢雖分給於帖子, 凶咎馬及駑駘馬竝九十一疋, 當以兒馬, 賜給承傳人給之矣. 兒馬帖載案, 至於一千九百餘張之多, 其中來呈帖子, 考其年月久近, 一從馬毛色成籍, 次第呼名出給, 本寺官員, 亦無容私之地, 而在前或有既受之後, 馬不稱意, 則還授該吏, 辱及官員, 事之司駭, 莫甚於此. 今後有如此之弊, 則隨現指名, 入啓處置之意, 豫爲知委施行, 何如? 傳曰, 允. 【諫院朝報】

❖ 현종 4년(1663) 계묘년 8월 19일(갑인)

- 진상마(進上馬)를 도리에 맞게 분배·처리함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의 처벌을 청하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 관원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금년 여러 목장의 말을 점고하여 내보내는<sup>45)</sup> 일을 모두 중지해야 합니다. 여러 읍에 나누어 길러 다음해 국용(國用)에 사용할 용도로 삼았던 것은 오직 제주(濟州)에서 올라오는 삼명일 진상마와 세공마 뿐인데, 이제 남은 총수를 보니 겨우 191필에 불과합니다. 이러니 형세가 비록 증서를 나눠줘야 하나 흥구마와 노태마(駑駘馬)를 합쳐봐야 91필인지라, 마땅히 어린 말을 승전인(承傳人)에게 내려주어야 하겠습니까. 어린 말들을 기록해 놓은 문서들이 1,900여 장에 이를 정도로 많으니 받아들인 증서 가운데 시간이 멀고 가까움을 살펴 모두 말의 털색으로 장부를 만들어서 차례대로 불러서 내어주고, 본시(사복시)의 관원이라 해도 역시 사사로움을 용납할 형편이 아닙니다. 이전에 이미 받은 후에 혹 말이 맘에 들지 않았던 경우가 있다면 해당 아전에게 돌려주는데 모욕이 우리 사복시의 관원에게 미쳤으니 해괴한 일이 이보다 심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후로 이 같은 폐단이 발생한다면 보이는 대로 지명해서 임금께 글로 아뢰어 조치할 뜻을 미리 알려서 시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사간원 조보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 삼명일 진상마, 세공마, 흥구마, 노태마.

45) ‘出’ 앞의 글자가 한 자 빠졌는데 아마 ‘送出’이 아닐까 함.

❖ 康熙 二年 癸卯 十月 十二日(丙午)

- 李泰淵, 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濟州山馬監牧官金大吉差定之後, 所當依他牧場例, 每年二匹擇出封進, 而非但海外事勢與陸地有異, 馬匹元數亦不多, 間一年二匹封進事, 分付矣. 今見其所報, 則分付未到之前, 擇得一馬, 已爲□爲先上送云, 觀其體品, 不至超凡, 而移【缺】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현종 4년(1663) 계묘년 10월 12일(병오)

□ 제주마(濟州馬)를 봉진할 때 털색 등을 별단에 써놓겠다는 이태연(李泰淵)의 계

- 이태연(李泰淵)이 사복시 관원이 전한 제조의 뜻을 아뢰기를, “제주(濟州)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sup>46)</sup>에 김대길(金大吉)<sup>47)</sup>을 임명한 후 ‘마땅히 다른 목장의 예에 따라 매년 말 2필을 가려 뽑아 봉진해야하지만 바다 밖 일인지라 육지와는 다름이 있을 뿐만 아니고 마필의 원래 숫자 역시 많지 않으니, 일 년을 사이에 두고 말 2필을 봉진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한 내용을 보니 분부가 도착하기도 전에 한 마리를 가려 뽑아 이미 □해 먼저 올려 보낸다고 합니다. 그 체품(體品)을 보아하니 범상함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빠짐】으로 옮겨 털색을 별단에 써서 들일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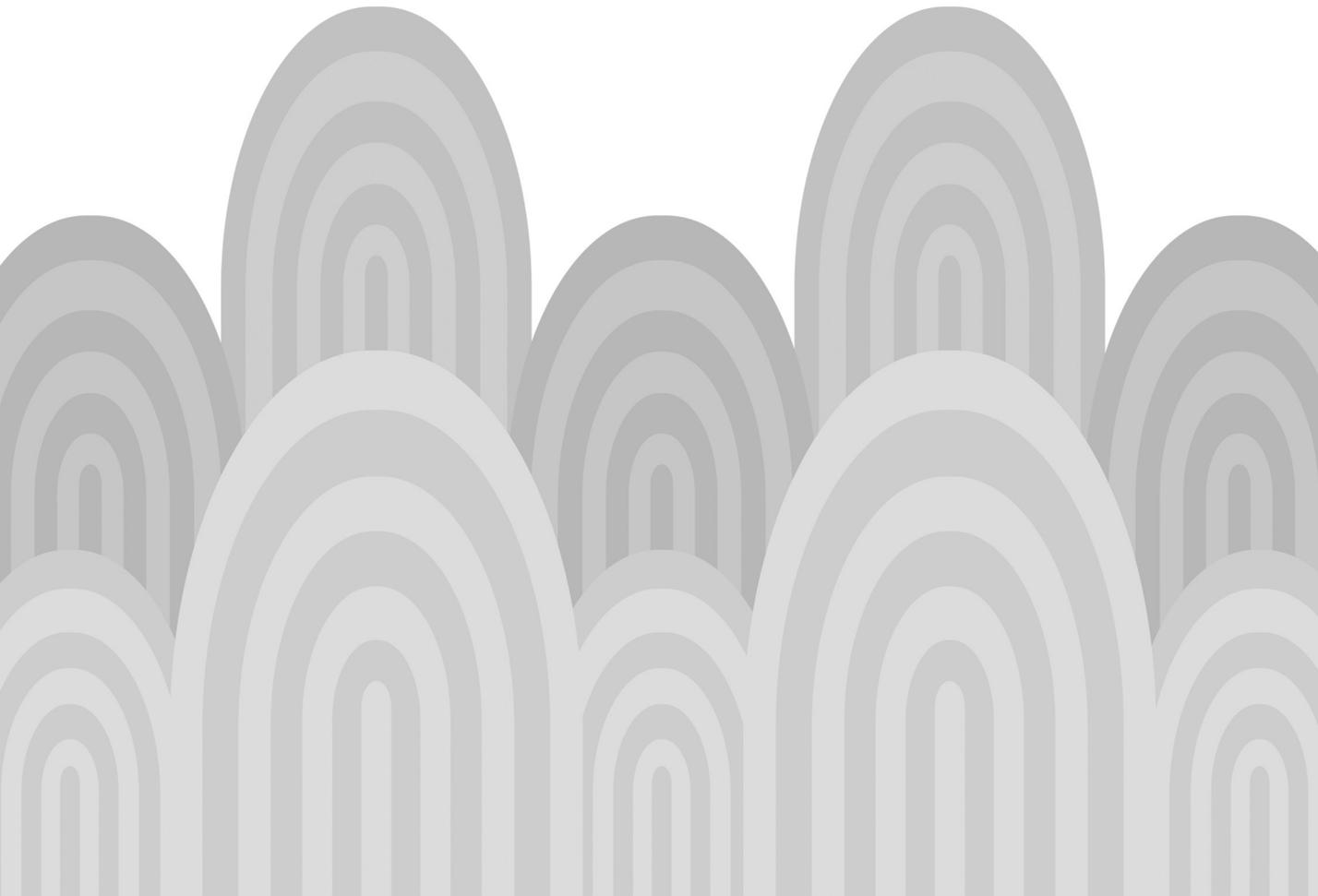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이태연, 제주, 산마감목관, 김대길.

46)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 헌마공신(獻馬功臣) 김만일(金萬鎰)은 국가에 수차례 말을 바쳤고, 그의 3남 대길(大吉)도 1659년(효종 10) 208필의 말을 바쳤거니와 이를 계기로 산마감목관제가 신설됨. 이는 김만일의 개인목장과 기존 국영목장의 땅 일부를 합쳐 산마장(山馬場)을 조성하고, 이를 관할·감독하는 종6품 산마감목관을 김대길을 비롯해 95명에 달하는 김만일의 후손들로 하여금 200여 년 동안 세습케 하였음에서도 확인됨.

47) 김대길(1608~1668): 본관 경주. 자 경보(慶甫). 호 장진. 현 남원읍 의귀리 출신. 헌마공신 김만일의 셋째 아들. 1630년(인조 8) 무과급제. 1659년(효종 10) 말 208필을 조정에 바친 것으로 계기로 제주 산마감목관제가 신설되고, 초대산마감목관으로 나아감.

1664年



❖ 康熙三年甲辰二月二十四日丁巳

- 昨日常參時, 正言宋昌所啓, 近來贓法不嚴, 因此坐廢者絕少, 故貪污之輩, 無所懲戢, 誠可寒心, 新除授忠清水使朴而瞻, 性本麁獷, 到處剝割, 傳播之說, 不勝狼藉, 乃是貪婪之特甚者, 曾爲濟州牧使, 亦以論罷, 而纔過一年, 又除閩帥之任, 物情皆以爲駭, 忠清水使朴而瞻, 請命罷職. 上曰, 不允.

❖ 현종 5년(1664) 갑진년 2월 24일(정사)

□ 박이첨(朴而瞻)의 파직을 요청한 송창(宋昌)의 계

- 어제 임금에게 국무를 아뢴 때, 정언(正言) 송창(宋昌)이 아뢴 바는, “근래 들어 장물에 대한 법규가 엄하지 않아 이로 인해 연좌되어 처벌 당한 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탐오한 무리들이 징계·제지되는 바가 없으니 진실로 한심스럽습니다. 새로 충청수사(忠淸水使)에 제수된 박이첨(朴而瞻)은 성정이 본시 더럽고 교활하여 가는 곳마다 백성들의 고혈을 빨다는 것은 널리 퍼진 이야기로 여기저기 흩어져 어지러움이 그지없습니다. 이런데도 탐함과 욕심 부림이 특히 심한 자를 일찍이 제주목사(濟州牧使)를 삼았다가 역시 논란으로 파직되었었는데 겨우 일 년 뒤 다시 지방 절도사의 임무를 제수한다니 물정(物情)이 모두 해괴하다고 여기고 있으니 충청수사 박이첨은 청컨대 파직을 명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송창, 충청수사, 박이첨, 제주목사.

❖ 康熙 三年 甲辰 三月 二十六日 戊子

- 備邊司啓曰, 忠淸監司李翊漢引見時所啓, 小臣壬寅年爲濟州牧使, 居官八朔, 知廢瘼者多矣, 每欲陳達而未果, 今當出去, 敢此仰達. 濟州僻在海外, 遠於王化, 故仁祖朝, 別遣御史, 文武試才, 而本土人吳暹中選, 自上特命殿試, 島中之人, 至今以爲美談. 其後久無此舉, 人情缺然, 依先朝故事, 別遣御史試才, 以爲激勸之地, 似好矣. 上曰, 令廟堂稟處.

❖ 顯宗 5年(1664) 갑진년 3월 26일(무자)

□ 제주(濟州)에 어사(御史)를 보내 시재(試才)하는 문제에 대한 비변사의 계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충청감사 이익한(李翊漢)을 인견(引見)하였을 때 그가 아뢴 바는, ‘제가 임인년에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되어 8개월을 부임했었는데 버려져 앓은 사람이 매우 많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매번 아뢰려 하였으나 그렇지 못했었는데 지금 떠나게 되어 감히 이렇게 우러러 아뢰니다. 제주(濟州)는 바다 밖 궁벽한 곳에 있어 임금의 교화로부터 멀니다. 그래서 인조(仁祖) 때 어사를 별도로 파견하여 문무의 시재(試才)를 시행하였는데 본토인인 오섬(吳暹)이 선발에 급제하여 임금께서 전시(殿試)에 직접 응시하라는 특전의 명을 내리자 섬 안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미답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 오랫동안 이런 조치가 없어 인정(人情)이 서운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선대 임금의 옛 일에 따라 별도로 어사를 파견하여 시재(試才)함으로써 권장하고 격려하는 방도로 삼는다면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아뢰어 조치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목사, 이익한, 별견어사, 시재, 오섬.

❖ 康熙 三年 甲辰 三月 二十六日 戊子

- 又所啓, 本州風俗, 不爲業文, 專事射獵, 其中或不無願學之人, 而無勸課之道, 何能成就乎? 文官牧使時, 則與校授, 課製儒生, 歲取陞補二人, 而武臣牧使時, 則廢閣不行, 人情失望. 臣之愚意, 牧使·判官竝爲文臣交差, 牧使·判官中, 常存文官一員, 與校授歲爲陞補, 不廢勸獎之道, 似好矣. 上曰, 令廟堂稟處. 又所啓, 本州戰船之數, 不可勝言, 若或有可用之時, 則民弊有不暇論, 而波濤險惡, 異於他海, 戰船不能運用, 當初戰船之設, 本爲禦敵, 而徒傷民力, 臨亂無用, 似當變通之事矣. 上曰, 令廟堂從長稟處事, 命下矣. 濟州試才御史, 曾在祖宗朝, 亦有別爲差遣之時, 今亦遵依舊例, 以爲激勸文武之地, 而入送早晚, 試才節目, 令該曹稟旨舉行, 宜當. 牧使·判官, 竝爲文武交差一款, 亦令該曹依此舉行, 至於戰船, 則無實用而有巨弊之由, 曾前受任之人亦啓聞, 而自古設置, 其意有在, 有難猝變, 故至今持難, 而目見之人, 如是陳達, 從容博詢於曾經牧使之人, 更爲議處, 何如? 答曰, 允.【備局騰錄】

❖ 현종 5년(1664) 갑진년 3월 26일(무자)

□ 유생(儒生)의 제술시재(製述試才), 전선(戰船)의 임기응변적 활용 등에 대한 비변사의 계

- 또한 아뢴 바는, “본주(제주)의 풍속은 문장을 업으로 삼는 일 없이 오로지 사냥만을 일삼는데 그 중 혹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없지 않지만 학업을 권장하는 방도가 없으니 어찌 능히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문관이 목사일 때는 향교 교수와 더불어 가르쳐 주고 유생에게 달마다 제술(製述)로서 시재(試才)해 해마다 승보시(陞補試)로 두 사람을 뽑는데 무신이 목사일 때는 문을 닫아버려 시행하지 않으니 사람들의 정서가 실망하곤 합니다. 저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목사·관관을 아울러 문신으로 엇갈리게 임명하여 목사·관관 중에 항상 문관 한 사람은 남아 있게 해서 향교 교수와 더불어 가르쳐주고 해마다 승보시를 시행하여 학문을 권장하는 방도를 없애 버리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라고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일러 조치케 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아뢴 바의 것은, 본주(제주) 전선(戰船)의 수는 말로 다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만약 혹시 사용해야 할 때가 있더라도 민폐가 되니 애깃거리가 못되고, 파도가 험악해 다른 지역의 바다와 달리 전선을 운용할 수도 없으니 당초 전선을 배치했던 것은 본시 적을 방어하기 위함인데 헛되이 백성들의 여력만을 상하게 하고, 변고에 임해서

는 쓸모가 없으니 마땅히 임기응변적으로 활용해야 할 일일 듯 싶습니다 라고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일러 조치케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주시재어사(濟州試才御史)는 일찍이 선대왕들께서도 역시 별도로 파견했던 적이 있었으니 지금 역시 구례에 따라 문무를 권장하는 방도로 삼아야 할 것이니, 조만간 시재절목(試才節目)을 들여 보내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아뢰어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목사·판관을 아울러 문무를 엇갈리게 임명 하자는 조목 역시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기준에 의해 거행하게끔 하고, 전선에 대해서는 실용성이 없으며 커다란 폐단의 빌미가 되고, 일찍이 전에 부임했던 사람도 역시 아뢰었지만, 옛부터 설치할 의도가 있으니,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힘들게 유지해 왔는데 직접 눈으로 목격한 이가 이와 같이 아뢰니 조용히 목사의 직을 거쳤던 이들에게 널리 물어 다시 의논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지요?”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비변사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승보시, 제주시재어사.

❖ 康熙 三年 甲辰 五月 十六日 丁丑

- 今日受鍼時, 禮曹判書洪重普, 都承旨南龍翼所啓. 上曰, 前日陳疏儒生, 旣已解停, 卽爲入齋事, 令同知館事開諭. 禮曹判書洪重普所啓, 因忠淸監司李翊漢拜辭時, 榻前所啓, 濟州御史差送事, 定奪矣. 卽當差遣, 而聞渡海風便, 入宜於秋, 而出宜於春, 且卽今農務方劇, 待秋差送, 何如? 上曰, 依爲之. 【已上朝報】

❖ 현종 5년(1664) 갑진년 5월 16일(정축)

□ 제주어사(濟州御史)를 뽑아 보내는 일 등에 대한 홍중보(洪重普)와 남용익(南龍翼)의 계

- 오늘 침을 맞을 때 예조판서 홍중보(洪重普)<sup>48)</sup>와 도승지 남용익(南龍翼)<sup>49)</sup>이 아뢴 바에, 임금이 말하기를, “전날 상소 올린 유생은 이미 처분을 풀어주었으니 즉시 입재(入齋)하게 할 일을 동지관사(同知館事)로 하여금 타이르도록 하라.” 라고 하였다. 예조판서 홍중보가 아뢴 바는, “충청감사(忠淸監司) 이익한(李翊漢)이 하직인사를 드릴 때 어전에서 아뢰었던 제주어사(濟州御史)를 파견하는 일은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마땅히 즉시 파견해야겠는데 바다를 건널 때 바람의 형편이 제주로 들어가는 것은 가을이 적당하고 나오는 것은 봄이 적당하다고 들었고, 또한 지금은 농사일이 매우 바쁠 철이니 가을을 기다려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대로 하라.” 라고 하였다. 【이상은 조보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홍중보, 남용익, 이익한, 제주어사.

48) 홍중보(1612~1671): 본관 남양(南陽). 자 원백(遠伯). 호 이천(梨川). 1645년(인조 23) 문과급제. 이후 춘추관·세자시강원·사헌부·사간원과 성산(城山)현감 등을 거치고, 병조·공조·형조·예조의 참관도 지낸 뒤, 도승지를 네 번, 대사헌을 세 번, 대사간을 두 번이나 역임. 1669년(현종 10) 우의정에 오름. 시호 충익(忠翼).

49) 남용익(1628~1692): 본관 의령(宜寧). 자 운경(雲卿). 호 호곡(壺谷). 1648년(인조 26) 문과급제. 성균관전적을 거쳐 대사간, 대사성을 역임. 1689년(숙종 15) 소의장씨(昭儀張氏)가 왕자를 낳아 숙종이 그를 원자로 삼으려 하자, 여기에 극언으로 반대하다가 명천으로 유배되어 3년 뒤 그곳에서 죽음. 저서 《기아(箕雅)》·《부상록(扶桑錄)》·《호곡집(壺谷集)》. 시호 문헌(文憲).

❖ 康熙 三年 甲辰 閏六月 二十日 庚辰

- 又以兵曹言啓曰, 濟州試才御史, 旣已差出, 規矩單子, 依近日江都·南漢例, 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已上燼餘】

❖ 현종 5년(1664) 갑진년 윤 6월 20일(경진)

- 제주시재어사(濟州試才御史)의 규구단자(規矩單子)를 강도(江都) 등의 예에 따라 써 들이도록 하겠다는 병조(兵曹)의 계
- 또한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시재어사(濟州試才御史)는 이미 차출(差出)하였으니 규구단자(規矩單子)는 근일 강도(江都)와 남한(南漢)의 예에 따라 써서 들일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시재어사, 규구단자, 강도, 남한.

❖ 康熙 三年 甲辰 八月 十日 己巳

○ 吏批, 以洪命夏爲軍器寺都提調, …… 鄭士湛爲濟州審藥, …… .【以上政軸】

❖ 현종 5년(1664) 갑진년 8월 10일(기사)

□ 정사담(鄭士湛)을 제주심약(濟州審藥)에 제수함

○ 이비(吏批)에 의하여, “홍명하(洪命夏)를 군기시(軍器寺) 도제조(都提調)로, 〈중략〉, 정사담(鄭士湛)을 제주심약(濟州審藥)으로 삼았다. 〈하략〉. 【이상은 이조 정축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홍명하, 정사담, 제주심약.

❖ 康熙 三年 甲辰 八月 十一日 庚午

○ 濟州試才御史, 尹深出去.

❖ 現宗 5年(1664) 갑진년 8월 11일(경오)

□ 제주시재어사(濟州試才御史)로 윤심(尹深)이 나감

○ 제주시재어사(濟州試才御史) 윤심(尹深)<sup>50)</sup>이 떠났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시재어사, 윤심.

---

50) 윤심(1633~1692): 본관 파평(坡平). 자 현통(玄通). 호 징암(懲庵). 1660년(현종 1) 문과급제. 이어 홍문관정자·봉교·지평·부교리·부수찬·이조좌랑 등을 거침. 1664년(현종 5) 관직에서 물러났으나, 다시 제주시재어사(濟州試才御史)가 되어 제주의 문·무사(文·武士)를 시험함. 이후에도 여러 관직을 거치면서 유배·과직·재기용을 수차례 겪으면서 1689년(숙종 15) 공조판서, 이어 병조판서를 거쳐 지돈녕부사에 이름. 예서에 뛰어났으며, 비문도 많이 전함.

❖ 康熙 三年 甲辰 十月 八日 丙寅

○ 傳曰, 以義禁府宋之濂海南縣定配單子, 旌義縣改付標以入. 【以上禁府謄錄】

❖ 현종 5년(1664) 갑진년 10월 8일(병인)

□ 송지렴(宋之濂)에 대한 정배 단자(定配單子)를 정의현(旌義縣)으로 다시 표시의 표지를 붙여 들이라는 전교

○ 전교하기를, “의금부의 송지렴(宋之濂)을 해남현(海南縣)에 정배(定配)한다는 단자를 정의현(旌義縣)으로 고쳐 표지를 붙여 들이라.”라고 하였다. 【이상은 의금부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송지렴, 해남현, 정의현, 정배.

❖ 康熙 三年 甲辰 十月 二十四日 壬午

- 【缺】即伏見濟州牧使李重信九月朔進上啓【缺】當書王大妃殿，而只以大妃殿書之，至於大殿，有但書進上二字，而書以大殿，凡進上別單子，自有規式矣，諉以絕島之人未諳體例，任他違誤，則終無歸正之時，請濟州牧使李重信推考。傳曰，允。

❖ 현종 5년(1664) 갑진년 10월 24일(임오)

□ 진상별단자(進上別單子)의 법식을 어긴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중신(李重信)의 허물 추궁을 청함

- 【빠짐】“이제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중신(李重信)이 9월삭 진상(進上) 계문을 보니 【빠짐】마땅히 왕대비전(王大妃殿)에도 편지를 써 올려야 되는데도 다만 대비전(大妃殿)에만 편지를 올렸습니다. 대전(大殿)에 대해서는 다만 진상(進上)이라는 두 글자만 써야 하나, 대전(大殿)이라 썼습니다. 무릇 진상별단자(進上別單子)는 처음부터 정해진 격식이 있는 것입니다. 절도(絶島)의 사람이어서 체례(體例)를 알지 못함으로 돌리고, 잘못을 방치한다면 끝내 바로 잡을 기약이 없으니, 청컨대 제주목사 이중신을 추고하길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목사, 진상별단자, 이중신.

❖ 康熙 三年 甲辰 十一月 十日 丁酉

- 李天基啓曰, 濟州御史, 旣已收聚試券上來矣. 大提學命招, 科次以入乎? 敢稟. 傳曰, 命招, 科次以入可也.

❖ 현종 5년(1664) 갑진년 11월 10일(정유)

- 제주(濟州)에서 보낸 과거시험 답안지의 급제자의 성적 등급을 올릴지 여부를 묻는 이천기(李天基)의 계
- 이천기(李天基)가 아뢰기를, “제주어사(濟州御史)가 이미 과거시험의 답안지를 거둬 올라왔습니다. 대제학을 불러들여 급제자의 성적등급을 매겨서 아뢰니까? 감히 여쭙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명령으로 불러들여 성적등급을 매겨서 들임이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이천기, 제주어사.

❖ 康熙 三年 甲辰 十一月 十一日 戊戌

- 李天基啓曰, 濟州儒生製述科次事, 命下矣. 卽者大提學, 送言于本院曰, 自前提學有同參之規, 今無提學, 須以副提學牌招同參之意, 啓稟云, 副提學李慶億, 卽爲牌招, 何如? 傳曰, 允.

❖ 現宗 5년(1664) 갑진년 11월 11일(무술)

□ 제주(濟州) 유생(儒生)의 제술(製述) 과거시험 답안지의 성적·등급 매김에 대한 이천기(李天基)의 계

- 이천기(李天基)가 아뢰기를, “제주(濟州) 유생(儒生)들이 제술(製述) 과거시험 답안지의 성적·등급 매김의 일은 내리셨습니다. 방금 대제학이 본원(승정원)에 말을 전해 이르기를, ‘이전부터 제학이 동참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 제학이 없으니 모름지기 부제학을 승지에게 시켜 불러들여 동참시킬 뜻을 아뢰어 조치한다’고 합니다. 부제학 이경억(李慶億)<sup>51)</sup>을 즉시 승지에게 시켜 불러들임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이천기, 제주 유생, 이경억.

---

51) 이경억(1620~1673): 본관 경주. 자 석이(錫而). 호 화곡(華谷). 1644년(인조 22) 정시문과 장원급제. 1672년(현종 13) 우의정과 좌의정도 지냄. 수업이 길고 풍채가 아름다워 일견 미남자였으나 일 처리가 명백해 다른 사람들의 사스러운 뜻이 간여치 못함. 저서 《화곡유고》. 시호 문익(文翼).

❖ 康熙三年甲辰十一月十八日乙巳

- 李天基, 以禮曹言啓曰, 因濟州御史尹深別單書啓, 濟州鄉校兩廡位版誤書之處, 卽令該曹釐正事, 自備局覆啓, 蒙允矣. 別單中誤書某位版, 不爲書啓, 故問于御史尹深, 則以爲西廡位版梁父侯公肩定, 誤以梁文侯書之, 祈鄉侯罕父黑, 誤以罕文墨書之, 東廡位版枝江侯公孫龍, 誤以公龍孫書之, 本州教授牒報如此云, 取考大會典·文獻通考兩冊, 則位版三處誤書, 果如本州教授宋尙周牒報, 宜令本州急速舉行, 改題時, 不可無告由之舉【缺二行】.

❖ 현종 5년(1664) 갑진년 11월 18일(을사)

□ 제주향교(濟州鄉校)의 동무·서무의 위판(位版)에 3군데나 잘못 쓰였음으로 다시 쓸 때 고유(告由)해야 한다는 예조의 계

- 이천기(李天基)가 예조의 말로써 아뢰기를, “제주어사(濟州御史) 윤심(尹深)의 별단서계(別單書啓)에 따르면 제주향교의 동무·서무의 위판(位版)에 틀리게 쓴 부분을 즉시 해당 관청에게 바로잡도록 한 일은 처음 비변사에서 복계(覆啓)하여 윤허를 받았다고 합니다. 별단 가운데 잘못된 글의 위판이 어느 것인지는 글로 알리지 않았기에 어사 윤심에게 물었는데 서무의 위판 가운데 ‘양부후공견정’(梁父侯公肩定)을 ‘양문후’(梁文侯)로, ‘기향후한부흑’(祈鄉侯罕父黑)을 ‘한문묵’(罕文墨)으로 잘못 썼으며, 동무의 위판에서도 ‘지강후공손룡’(枝江侯公孫龍)을 ‘공용손’(公龍孫)으로 잘못 썼습니다. 본주(本州) 교수의 첩보도 이와 같다고 합니다. 《대회전(大會典)》·《문헌통고(文獻通考)》 두 책을 취해 살펴보니 위판 세 곳이 잘못 썼습니다. 과연 본주 교수 송상주(宋尙周) 첩보의 지적과 같으니 마땅히 본주에 급히 시행하라고 하시되 고쳐 쓸 때, 고유(告由)하는 행사가 없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2행이 빠짐】.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이천기, 제주어사, 윤심, 제주향교, 송상주, 대회전, 문헌통고.

❖ 康熙 三年 甲辰 十一月 二十三日 庚戌

-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 引見, 入侍領議政鄭太和, …… 許積曰, 守禦廳牙兵, 其數將至三千, 自今定數爲當矣. 上曰, 守禦廳牙兵時存數外, 勿爲加定, 可也. 上仍曰, 咸鏡科擧, 十四歲兒得參, 予嘗異之, 欲問而未果耳. 金壽興對曰, 小臣問於金壽恒, 則以爲渠雖云十四歲, 而觀其容貌, 則可十七八矣. 然其爲人頗壯健云矣. 上曰, 以何技得參耶? 壽興曰, 六兩入格耳. 又曰, 見濟州試才榜, 則亦有十三歲兒, 雖不得入格, 而善騎藝云矣. 上曰, 古詩云, 胡兒十歲能騎馬, 然則十三歲前, 亦有能騎馬者矣. …….

❖ 현종 5년(1664) 갑진년 11월 23일(경술)

- 희정당(熙政堂)에서 인견할 때 정태화(鄭太和) 등이 입시하여 강도(江都) 보관 실록(實錄)의 보결(補缺), 총융청(摠戎廳)의 둔전(屯田), 민정중(閔鼎重)의 장계 등에 대해 논의함
-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가 대신과 비변사(備邊司) 당상(堂上)들을 인견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정태화(鄭太和) 등이 입시하였다. <중략> 허적(許積)<sup>52)</sup>이 말하기를, “수어청(守禦廳) 아병(牙兵)의 수가 무려 삼천에 달하는데 지금부터는 숫자를 정해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수어청 아병의 현재 인원수 외에 더 정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이어서 말하기를, “함경도의 과거에 14세의 아이가 참석했다하니 내가 일찍부터 이채롭게 여겼다. 묻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였다. 김수흥(金壽興)이 대답해 말하기를, “저가 김수항(金壽恒)에게 물어보니 그 아이가 비록 14세라고 하지만 그 용모를 살펴보니 17~18세 정도로 보여 그 사람됨이 꺾이나 건장하였다고 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떤 기예로 과거에 참여하였다고 하던가?”라고 하였다. 김수흥이 말하기를, “육량전(六兩箭)으로 입격(入格)하였다 합니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제주시재방(濟州試才榜)을 보니 역시 13세의 아이가 있었는데

52) 허적(1610~1680): 본관 양천(陽川). 자 여차(汝車). 호 묵재(默齋)·휴옹(休翁). 1637년(인조 15) 문과 급제. 이후 여러 관직을 거치던 가운데 1647년(인조 25) 일본사신 다이라[平成辛]를 위법으로 접대한 죄목으로 파직되었다가 다시 등용됨. 1664년(현종 5) 우의정, 이어 좌의정으로 나아감. 1671년(현종 12) 영의정이 되었으나 이듬해 송시열(宋時烈)의 논척을 받아 영중추부사로 전임됨. 1674년(숙종 즉위년) 다시 영의정에 복직. 1680년(숙종 6) 서자 허견(許堅)의 모역사건에 휘말려 들어 사사(賜死)되었으나, 9년 후 혐의를 벗고, 관작도 추복됨.

데 비록 입격(入格)에 이르지지는 못했으나 기추(騎芻)를 매우 잘했다고 합니다.”  
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고시(古詩)에 이르기를 ‘오랑캐 아이들은 열 살  
이면 기마에 능하다.’라고 하였으니, 13세 이전이라도 역시 기마에 능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정태화, 허적, 수어청, 함경도, 김수흥, 김수항, 육량전, 기추, 제주시재.

❖ 康熙 三年 甲辰 十二月 十三日 庚午

- 引見時, 領議政鄭太和所啓, 領敦寧府事金佑明上疏末端所陳事, 令廟堂議處事, 命下矣. …… 兵曹判書洪重普所啓, 江邊試才事, 何以爲之? 上曰, 試才御史送之, 而只取武藝, 依濟州例可也. …… 【備局謄錄】

❖ 現宗 5年(1664) 갑진년 12월 13일(경오)

- 인견할 때 정태화(鄭太和) 등이 입시하여 김우명(金佑明)이 올린 상소에서 거론된 여러 문제를 논의함.
- 인견 할 때, 영의정 정태화(鄭太和)가 아뢴 바는,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우명(金佑明)<sup>53)</sup>의 상소 끝부분에 진술한 바의 일에 대해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의논해서 처리할 일’이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중략> 병조판서 홍중보(洪重普)가 아뢴 바는, “(평안도) 강변(江邊)에서 시재(試才)의 일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시재어사(試才御史)를 보내되 다만 무예로만 인재를 취하고 제주의 사례에 따라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하략>. 【비변사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정덕화, 김우명, 홍중보, 시재어사, 제주.

---

53) 김우명(1619~1675): 본관 청풍(淸風). 자 이정(以定). 딸 현종의 비. 1642년(인조 20) 진사시 합격. 이후 관직에 나섰고, 1659년 현종이 즉위하자 국구(國舅)로서 청풍부원군(淸風府院君)에 봉해지고, 영돈녕부사가 됨. 이어 오위도총관과 호위대장도 겸함. 서인으로서 남인인 허적(許積)에 동조한 적이 있었으나, 결국에는 남인과의 알력이 심해져 벼슬을 그만두고 두문불출하기에 이름. 시호 충익(忠翼).

❖ 康熙 三年 甲辰 十二月 二十二日 己卯

○ 有政. 吏批, 以金千鎰爲結城縣監, …… 金時輝爲濟州判官, …….

❖ 현종 5년(1664) 갑진년 12월 22일(기묘)

□ 김시휘(金時輝)을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의하여, 김천일(金千鎰)<sup>54)</sup>을 결성현감(結城縣監)으로, 〈중략〉 김시휘(金時輝)을 제주판관(濟州判官)으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김천일, 김시휘, 제주판관.

---

54) 김천일(1622~1696): 본관 선산(善山). 자 백강(伯剛). 호 송천(松川). 1653년(효종 4) 문과급제. 이후 여러 관직을 거치고 1664년(현종 54) 공조좌랑, 결성현감으로 있다가 이듬해 청안현감으로 나아감. 그 다음 해에 업무는 아랫사람들에게 위임하고 자기는 술이나 먹는 등 문제가 있으니 파직시키라는 감사의 보고에 의해 파직됨. 이후 재등용되어 전적과 예조좌랑, 함평현감, 풍기군수, 예빈시정 등을 지냄.

❖ 康熙 三年 甲辰 十二月 二十五日 壬午

- 答院曰, 不允. 前啓末端二件事, 依啓. 濟州判官金時輝遞差, 洪陽營將柳炳然罪, 本道查問處置事.

❖ 현종 5년(1664) 갑진년 12월 25일(임오)

사간원(司諫院)에 대한 비답(批答)

- 임금이 사간원(司諫院)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전에 올린 계(啓)의 말단(末端)에 언급한 두 건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제주판관(濟州判官)을 김시휘(金時輝)로 교체·임명하는 일과 홍양영장(洪陽營將) 유병연(柳炳然)의 죄는 본도에서 조사하여 처리할 일이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판관, 김시휘, 홍양, 유병연.

❖ 康熙 三年 甲辰 十二月 二十七日 甲申

○ 有政. 吏批, 以李鳴東爲厚陵參奉, …… 李德耆爲濟州判官 …….

❖ 현종 5년(1664) 갑진년 12월 27일(갑신)

□ 이덕구(李德耆)를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함

○ 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의하여, “이명동(李鳴東)을 후릉참봉(厚陵參奉)으로, <중략> 이덕구(李德耆)를 제주판관(濟州判官)으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이명동, 후릉, 이덕구, 제주판관.

1665年



❖ 康熙 四年 乙巳 一月 五日 壬辰

- 【疊書】 備忘記, 濟州儒生製述入格, 副司果文英後·文徵後, 幼學高弘進, 竝直赴殿試.

❖ 현종 6년(1665) 을사년 1월 5일(임진)

□ 문영후(文英後) 등을 전시(殿試)에 직접 응시케 하라는 비망기

- 【잘못 거둬 씌<sup>55)</sup> 비망기(備忘記)<sup>56)</sup>로 전교하기를, “제주(濟州) 유생(儒生) 중 제술(製述)에 뽑힌 부사과(副司果) 문영후(文英後)<sup>57)</sup>·문징후(文徵後)<sup>58)</sup>, 유학(幼學) 고흥진(高弘進)<sup>59)</sup>을 모두 곧바로 전시(殿試)에 응시케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 유생, 문영후, 문징후, 고흥진.

55) 첩서(疊書): 글씨 쓸 때 잘못하여 같은 글자나 글귀를 거둬 씌.

56) 비망기(備忘記): 임금이 명령이나 의견을 적어서 승지에게 전하던 문서.

57) 문영후(1629~1684): 본관 남평. 자 인경(仁卿). 현 애월읍 어음리 출신. 1666년(현종 7) 식년시 문과에 급제하고, 이후 여러 관직을 거침.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부역의 균등 배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해 민폐제거에 나서서 상당한 성과도 올림. 시문과 글씨에 능함. 특히, 복서(卜筮)에 뛰어남. 그래서 풍채가 뛰어난 양유성(梁有成, 1684~1761), 풍수지리에 밝은 고흥진(高弘進), 의술로 유명한 진국태(秦國泰, 1680~1745)와 함께 ‘담라사절’(耽羅四絶)이라고 일컬어진 적도 있음.

58) 문징후(1632~?): 본관 남평(南平). 자 중구(仲口). 현 애월읍 어음리 출신. 1664년(현종 5) 8월 제주시 재어사 윤심이 제주에 와 시취할 때 종형(從兄) 문영후와 함께 급제함. 1666년(현종 7) 식년문과 전시에 급제함. 이후 구례현감을 거쳐 제주에 와 교수로 재직함.

59) 고흥진(1602~1682): 본관 제주. 자 퇴이(退而). 현 제주시 이호동 출신. 1618년(광해군 10) 폐모론(廢母論)에 반대해 제주에 유배 온 이익(李瀾)의 문하에서 명도암 김진용(金晉鎔)과 함께 사사함. 1653년(효종 4) 이원진(李元鎭)이 펴낸 《담라지》의 감교(監校)를 맡았음. 1664년(현종 5) 8월 제주시재어사 윤심이 제주에 와 시취할 때 급제하고, 1666년(현종 7) 식년문과 전시에 급제함.

❖ 康熙 四年 乙巳 一月 七日 甲午

- 院啓, 臣等以義州府尹姜裕後賞加改正事, …… 頃於北關設科時, 纔有三人賜第之命, 而伏見備忘記, 又有濟州儒生文榮後等三人, 竝賜直赴殿試之命, 臣等固知聖上此舉, 實出於聳動南北之盛意, 而第念海外一島之試才, 與關北一道之設科, 自有輕重之分, 而今此恩賜之命, 彼此無別, 論以事體, 不可無參酌之道, 況入格三人, 竝賜及第, 非但前例所無, 恩賞重典, 亦不可濫施, 居首儒生文榮後外, 其餘二人, 請還寢直赴殿試之命, …….

❖ 현종 6년(1665) 을사년 1월 7일(갑오)

□ 제주(濟州) 유생(儒生) 직부전시(直赴殿試)의 인원 감축을 청하는 사간원(司諫院) 의 계

- 사간원(司諫院)에서 아뢰기를, “신 등이 의주부윤(義州府尹) 강유후(姜裕後)에게 상으로 품계를 올려준 것을 바로 잡는 일에 대해서는, <중략> 지난 번 함경도에 과거를 베풀 때, 겨우 3인만이 사제(賜第)<sup>60)</sup>의 명을 받았는데, 이번에 비망기를 삼가 살펴보니 또 제주(濟州) 유생(儒生) 문영후(文榮後) 등 3인을 아울러 전시에 직부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신 등은 진실로 성상의 이런 조치가 실제 남북의 사람들을 진작시키려는 진실된 뜻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있으나, 단지 바다 밖 한 섬에서의 시재와 함경도 일도에 과거를 시행하는 일을 생각한다면, 진실로 경중의 구분이 있어야 하거늘, 이번 이런 은사(恩賜)의 명은 서로 간에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일의 이치로 논의하자면, 참작하는 마음 씩씩이가 없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 하물며 입격한 3인 모두에게 급제(及第)를 내린다면 비단 전례가 없었을 뿐 만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고 상을 주는 일은 신중하게 해야 하고, 역시 지나치게 베푸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수석을 차지한 문영후를 제외한 2인은 전시(殿試)에 직부(直赴)하라는 명령을 거두어주시기를 청합니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의주, 제주유생, 문영후.

60) 사제(賜第): 임금의 명령으로 특별히 과거에 급제한 사람과 똑같은 자격을 주는 일.

❖ 康熙 四年 乙巳 一月 二十五日 壬子

- 又以兵曹言啓曰, 江邊試才時, 只取武藝, 依濟州例施行事, 傳教矣, 濟州試才規矩相考, 則六兩三矢百步柳葉五矢一巡二中, 騎芻一次二中落點矣, 以此磨鍊於事目中, 何如? 傳曰, 試才規矩書入, 落點後舉行可也.

❖ 현종 6년(1665) 을사년 1월 25일(임자)

□ 제주(濟州)의 예에 따라 시재(試才)의 기준과 법식(規矩) 바꿀 것을 청하는 병조(兵曹)의 계

- 또한 병조의 말로써 아뢰기를, “함경도에서 시재(試才)할 때, 단지 무예로만 인재를 취하고 제주(濟州)의 사례에 따라 할 일을 전교하였습니다. 제주시재의 기준과 법식을 살펴보니 육량전(六兩箭) 3시(矢)와, 100보 유엽전(柳葉箭) 5시(矢)를 1순(巡)에 2중(中), 기추(騎芻)는 1차(次)에 2중(中)이면 낙점(落點)입니다. 이렇게 사목(事目) 내용을 마련하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시재(試才)의 기준과 법식을 글로 써서 들이고, 낙점 후에 거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강변시재, 제주시재, 육량전, 유엽전, 기추.

❖ 康熙 四年 乙巳 二月 二日 己未

- 院前啓曰, 義州府尹姜裕後賞加改正事, 濟州儒生還收直赴殿試之命事, …… 無城上疏姑停.

❖ 현종 6년(1665) 을사년 2월 2일(기미)

□ 제주(濟州) 유생(儒生) 직부전시(直赴殿試) 환수에 대한 사간원의 전계(前啓)

- 사간원이 일전에 아뢰기를, “의주부윤(義州府尹) 강유후(姜裕後)에게 상으로 품계를 올린 것을 바로잡는 일, 제주(濟州) 유생(儒生)을 전시(殿試)에 직부(直赴)하라는 명을 거두어들이는 일, 〈중략〉 등은 성상소(城上疏)<sup>61)</sup>가 없으므로 우선 멈추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 유생, 직부전시, 성상소.

---

61) 성상소(城上疏):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원이 대궐문 위에서 백관을 감찰하고 공사(公事)를 출납(出納)하던 곳을 말함.

❖ 康熙 四年 乙巳 二月 七日 甲子

- 吏曹啓曰, 濟州判官李德耆, 除授已久, 尙未肅謝, 聞其所患非輕, 而既無呈狀之事, 本州係是海外絶遠之地, 人所厭避, 故臣曹不敢輕易啓遞矣. 大臣又言其不合之狀, 毋論病重與否, 勢難仍令赴任, 濟州判官李德耆, 改差, 何如? 傳曰, 允.

❖ 현종 6년(1665) 을사년 2월 7일(갑자)

□ 제주판관(濟州判官) 이덕구(李德耆)를 갈아치움을 청하는 이조의 계

- 이조에서 아뢰기를, “제주판관(濟州判官) 이덕구(李德耆)는 제수 받은 지가 한참 됐는데 아직도 숙배(肅拜)·사은(謝恩)치 않고, 앉고 있는 병에 대해 들어보니까 가볍지가 않으나, 아직 문건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본주(제주)가 해외 까마득하면 땅인 관계로 사람들이 부임하기를 싫어하고 피하여 그 때문에 신이 속한 부서(이조)에서 감히 가볍게 바꾸어 교체하도록 아뢴 수가 없습니다. 대신들 역시 그 부당한 실상을 얘기하며, 중병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추세는 부임의 명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하니, 제주판관 이덕구를 갈아치우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판관, 이덕구.

❖ 康熙 四年 乙巳 二月 七日 甲子

- 引見時, 領議政鄭太和所啓, …… 左議政洪□□所啓, …… 又所啓, 濟州判官事, 前後問安班中, 李領府事, 屢言其病重可遞之狀, 而吏曹堂上, 不得處置, 事甚未便, 諸堂上, 竝令推考, 何如? 上曰, 吏曹堂上推考. 【以上朝報】

❖ 현종 6년(1665) 을사년 2월 7일(갑자)

□ 인견할 때 정태화(鄭太和) 등과 제주판관(濟州判官)의 교체 등에 대해 논의함

- 인견 때, 영의정 정태화(鄭太和)가 아뢴, <중략> 좌의정(左議政) 홍(洪)□□가 아뢴, <중략> 또한 (洪□□가) 아뢴, “제주판관(濟州判官)에 관한 일을 앞뒤로 문안한 양반 중에 이(李) 영부사(領府事)가 누차 그 병이 중하여 갈아치울 만한 실상을 말했는데도 이조(吏曹) 당상(堂上)들이 처리해주지 않아서 일이 심히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당상들을 아울러 추고하라고 명하시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조 당상들을 추고하라.”라고 하였다. 【이상 조보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정태화, 제주판관

❖ 康熙 四年 乙巳 二月 八日 乙丑

○ 吏批, 李弘淵·李星徵爲承旨, …… 鄭叔周爲濟州判官, …….

❖ 현종 6년(1665) 을사년 2월 8일(을축)

□ 정숙주(鄭叔周)를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함

○ 이비(吏批)에 의하며, “이홍연(李弘淵)과 이성징(李星徵)을 승지로, 〈중략〉 정숙주(鄭叔周)<sup>62</sup>를 제주판관(濟州判官)으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이홍연, 이성징, 정숙주, 제주판관.

---

62) 정숙주(1607~1665): 본관 영일(迎日). 자 자정(子楨). 전주 출신. 1653년(효종 4) 별시문과 급제. 이후 유력자의 비위를 자주 비꼰 결과 한직에서만 맴 돛. 그 뒤 남인 허적(許積)이 물러나자, 전적·감찰·예조좌랑·병조좌랑 등의 요직과 보령·강진·순천 등의 현감, 제주판관 등을 역임함. 이속(吏屬)들에게는 엄했으나, 백성들에게는 사랑으로 대함. 높은 관직에 오르지는 못했으나, 백성들을 사랑하였으며, 의리를 중히 여김.

❖ 康熙 四年 乙巳 二月 十日 丁卯

- 院前啓. 【措語見上】 請韓山郡守申嵩耇罷職不敘. 新啓, 濟州判官, 以文官差遣, 意非偶然, 必須得人以送, 可以有彈壓, 新除授判官鄭叔舟, 素無聲稱, 性且嗜酒, 不合海外治中之任, 請命遞差, 其代, 各別擇送. 黃州乃西路重地, 素稱難治, 自前擇送, 其意有在, 而新除授判官金時輝, 人既卑微, 且乏已試之能, 頃者除拜濟州判官, 以不稱見遞於臺論, 彈墨未乾, 旋授此任, 物議爲駭, 請命遞差. 前啓, 還收李程罷職事, 宋時喆等削職事, 金錫胄罷職事, 停啓. 答院曰, 不允. 遞差事, 依啓. 【以上朝報】

❖ 현종 6년(1665) 을사년 2월 10일(정묘)

□ 정숙주(鄭叔舟) 등의 교체를 청하는 사간원(司諫院)의 계

- 사간원이 전에 올리기를, “【같은 말이 앞에 보임】 한산군수(韓山郡守) 신송구(申嵩耇)를 파직하고 다시 등용치 말 것을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새로이 아뢰기를, “제주판관(濟州判官)을 문관으로 뽑아 보내는 일은 뜻이 우연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적당한 사람을 얻어서 보내야만 제어가 가능할 것입니다. 새로 제주판관을 제수 받은 정숙주(鄭叔舟)는 평소부터 칭찬의 소문이 없고, 성격 또한 술을 좋아하여 바다 밖 수령을 보좌하는 소임에 맞지 않습니다. 청컨대, 교체를 명하시고 그 대신 각별하게 사람을 골라 보내십시오. 황주(黃州)는 서로(西路)의 중요한 땅입니다. 평소부터 다스리기 어려운 땅이라고 하는데 이전부터 사람을 골라 파견하는 것은 그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 판관으로 제수 받은 김시휘(金時輝)는 사람됨이 원래 저속하고 볼품이 없고, 또한 능력이 모자라다고 검증되었습니다. 지난 번 제주판관으로 제배되었으나 알맞지 않다는 대간의 논의로 교체됐는데, 탄핵의 글이 채 마르기도 전에 이 직임에 돌려 제배하시니 세상 논의가 해괴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교체하도록 명령내리기를 청합니다. 전에 아뢴 바 이정(李程)을 파직하는 일, 송시철(宋時喆) 등을 삭직(削職)하는 일, 김석주(金錫胄)를 파직하는 일 등은 거둬들이고, 잠시 계(啓)를 멈추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해 말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 체차(遞差)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이상은 조보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한산, 신송구, 제주판관, 정숙주, 황주, 김시휘, 이정, 송시철, 김석주.

❖ 康熙 四年 乙巳 二月 十一日 戊辰

- 有政. 吏批, 以崔鎮南爲濟州判官, 鄭華齊爲黃州判官, 李時術爲刑曹參議, 姜瑜·沈槐爲承旨.

❖ 현종 6년(1665) 을사년 2월 11일(무진)

최진남(崔鎮南)을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의하여, “최진남(崔鎮南)<sup>63</sup>을 제주판관(濟州判官), 정화제(鄭華齊)를 황주판관(黃州判官), 이시술(李時術)을 형조참의(刑曹參議), 강유(姜瑜)와 심황(沈槐)을 승지(承旨)로 삼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최진남, 제주판관, 황주판관

---

63) 최진남(1626~?): 본관 대구(大丘). 자 자중(子重). 1654년(효종 5) 식년시 문과급제. 1665년(현종 6) 6월 제주판관으로 부임해 와 1667년(현종 8) 8월 물러남. 이때 가락천 동쪽의 충암묘(沖庵廟)를 장수당(藏修堂) 남쪽으로 옮기고 굴림서원(楡林書院)이라고 함. 저술은 충암묘를 옮기면서 지은 〈충암묘이건기(沖庵廟移建記)〉가 전함.

❖ 康熙 四年 乙巳 二月 二十一日 戊寅

○ 謝恩, 濟州判官崔鎮南, 工曹正郎權順昌, 副修撰張善澂, 學錄李循先.

❖ 현종 6년(1665) 을사년 2월 21일(무인)

□ 제주판관(濟州判官) 최진남(崔鎮南) 등이 사은함

○ 제주판관(濟州判官) 최진남(崔鎮南), 공조정랑(工曹正郎) 권순창(權順昌), 부수찬(副修撰) 장선징(張善澂), 학록(學錄) 이순선(李循先)이 사은(謝恩)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판관, 최진남, 권순창, 장선징, 이순선.

❖ 康熙 四年 乙巳 四月 二日 戊午

○ 下直, 南原府使金益烈, 濟州判官崔鎮南.

❖ 현종 6년(1665) 을사년 4월 2일(무오)

□ 제주판관(濟州判官) 최진남(崔鎮南) 등이 하직함

○ 남원부사(南原府使) 김익렬(金益烈)과 제주판관(濟州判官) 최진남(崔鎮南)이 하직(下直)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남원부사, 김익렬, 제주판관, 최진남.

❖ 康熙 四年 乙巳 五月 十三日 戊戌

- 朴世模, 以司饗院官員, 以提調意啓曰, 【缺】日所捧濟州五月朔別進上大殿膳狀中, 【缺】六十貼書填, 而計數則二百四十貼也. 臣心甚致訝, 考【缺】錄及上年捧上冊, 則所捧之數, 本非差誤, 而膳狀中二百之二字, 四十字之四字, 填寫違錯, 以致如此, 依前【缺】數捧進, 而膳狀書寫封進之際, 難免不謹致察之失, 當路封進官, 請推考. 傳曰, 允.

❖ 현종 6년(1665) 을사년 5월 13일(무술)

□ 진상단자(進上單子)를 잘못 작성한 봉진관(捧進官)의 허물 추궁을 청하는 박세모(朴世模)의 계

- 박세모(朴世模)가 사옹원 관원이 전한 제조(提調)의 뜻으로 아뢰기를, “【빠짐】일, 제주(濟州) 5월삭 별진상(別進上)을 봉진한 바, 대전의 선장(膳狀) 중, 【빠짐】60첩(貼)에 서전(書填)<sup>64</sup>을 붙였으나 수를 헤아려 본 즉 240첩이었습니다. 신이 속으로 매우 의아하게 여겨 【빠짐】록과 작년 봉상책(捧上冊)을 살펴보니 봉진한 바의 숫자가 본래 착오가 아니라, 선장(膳狀) 중 ‘이백(二百)’의 ‘이(二)’자와 ‘사십(四十)’의 글자에서 ‘사(四)’를 써 넣은 것이 앞뒤가 맞지 않아서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앞 사례의 【빠짐】숫자대로 봉진하는데 선장(膳狀)에 글을 써넣어 봉진할 때 조심해서 살피지 않는 실수는 면하기 어려우니 당로(當路)의 봉진관(封進官)을 청컨대 추고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택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박세모, 제주.

64) 서전(書填): 전량(錢糧)·발병(發兵)·발마(發馬)·검시(檢屍)·사형 등 주요 공문서 내용의 위조를 막기 위해 발송 공문을 접어서 붙이고, 그 이음새 부분에 글자를 써 넣는 것을 말함.

❖ 康熙 四年 乙巳 六月 六日 辛酉

○ 下直, 南陽縣監閔著重, 旌義縣監金汝翰, 大靜縣監柳沃.

❖ 현종 6년(1665) 을사년 6월 6일(신유)

□ 정의현감(旌義縣監) 김여한(金汝翰), 대정현감(大靜縣監) 유옥(柳沃)이 하직함

○ 남양현감(南陽縣監) 민시중(閔著重), 정의현감(旌義縣監) 김여한(金汝翰), 대정현감(大靜縣監) 유옥(柳沃)이 하직(下直)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정의현감, 김여한, 대정현감, 유옥.

## ❖ 康熙 四年 乙巳 六月 九日 甲子

- 備邊司啓曰, 咸鏡監司閔鼎重, …… 又啓曰, 以禮曹東萊府使狀啓回啓, 令本司, 更議稟處事, 命下矣. 曾見濟州牧使李重信狀啓, 則其所帶軍官金元祥·許定兩人, 聞喪出去, 飄風不知去處云云, 此人等所乘之船, 必飄到於日本地方, 而金元祥·許定等, 既是軍官, 則與商賈·漁人有異, 其自稱有官職之人, 亦不足怪, 日本之以此借重, 欲以奉行護送, 其接待之弊, 姑爲可慮, 而自我力辦其僞稱之狀, 以示必欲防塞之色, 亦涉未安, 我國軍官之尊卑, 館倭輩無不慣知, 只以此是濟州之軍官, 其自稱某島之鎮守, 實是虛語. 領來差倭之備員與否, 任他島中所爲, 而接待之禮, 自有已行之例, 不必自我豫爲固爭等意, 措辭開諭宜當, 以此行會, 何如? 入啓還下. 【以上備局謄錄】

## ❖ 현종 6년(1665) 을사년 6월 9일(갑자)

### □ 제주군관(濟州軍官)의 표류와 환송해 온 일본 사신 접대에 대한 비변사의 계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함경감사(咸鏡監司) 민정중이 <중략> 아뢰기를, “예조에서 동래부사의 장계(狀啓)에 회계(回啓)하는 일은 본사(비변사)에서 다시 의논한 뒤, 알려져서 처리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일찍이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충신(李重信)의 장계를 보니 그가 데리고 있던 군관 김원상(金元祥)과 허정(許定) 두 사람이 상이 났음을 듣고 섬을 떠났는데 거센 바람에 간 곳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 등이 승선했던 배는 반드시 일본지방으로 표류해 닿았을 터인데 김원상·허정 등은 이미 군관인지라 장사꾼이나 어부와는 달리 아마도 관직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칭한다고 해도 역시 괴이한 일이 아닙니다. 일본이 이 일로써 도움을 얻고자 봉행(奉行)하여 호송(護送)하려 하니 그 접대의 폐해가 다만 우려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애써 위칭(僞稱)하는 정황을 캐물어 반드시 금지하고자 하는 기색을 드러낸다면 역시 바다를 건너는 일이 편안하지 못할 듯합니다. 우리나라 군관(軍官)의 존비(尊卑)는 관왜(館倭)<sup>65)</sup>의 무리가 훤히 꿰고 있는데 다만 이들은 제주의 군관일 뿐인데도 이들 스스로 어떤 섬을 진수(鎭守)하는 사람이라고 자칭한다니, 실로 맹랑한 말입니다. 일본 지역으로 표류한 우리나라 사람을 데리고 오는 대마도 사신(差倭)이 데려올 인원의 여부는 대마도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이들 대마도 사신에 대한 접대의 예는 처음부

65) 관왜(館倭): 조선시대 동래에 있던 왜관(倭館)을 관리하던 왜인

터 이미 행했던 사례대로 한다면 스스로 우리가 예상해 굳이 다룰 필요가 없고, 글로서 타이름이 마땅합니다. 이를 알리고 실행하는 방법을 도모함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에게 아뢰고자 올린 것을 도로 내렸다. 【이상은 비변사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목사, 이증신, 김원상, 허정, 군관, 차왜.

❖ 康熙 四年 乙巳 六月 十日 乙丑

- 府啓. 守令家在不遠之地, 則自不無貽弊之端, 從前因此遞改, 其意有在. 大靜縣監柳沃, 旌義縣監金汝翰, 俱以居在本道海邑之人, 同時授任於一島之中, 物議皆以爲不當, 請大靜縣監柳沃, 旌義縣監金汝翰, 竝命遞差. …… 答府曰, 依啓.

❖ 현종 6년(1665) 을사년 6월 10일(을축)

□ 大靜縣監(大靜縣監) 유옥(柳沃)과 정의현감(旌義縣監) 김여한(金汝翰)의 교체함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수령의 집이 (부임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면 반드시 폐를 끼치는 빌미가 되곤 합니다. 이전부터 이 때문에 교체하여 바꾼 것은 그만한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大靜縣監(大靜縣監) 유옥(柳沃)과 정의현감(旌義縣監) 김여한(金汝翰)은 모두 본도(本道) 해읍(海邑)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동시에 이 섬 안으로 부임 받았으니 물의(物議)가 모두 부당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청컨대 大靜縣監 유옥과 정의현감 김여한은 아울러 다른 사람으로 갈아 임명할 것을 명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임금이 사헌부에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大靜縣監, 유옥, 정의현감, 김여한.

❖ 康熙 四年 乙巳 六月 十一日 丙寅

- 今六月初十日召對時, 上曰, 以禮曹粘目, 東萊府使狀啓, 金元祥·許定等事, 令東萊府使, 開諭館倭曰, 元祥·許定, 俱是濟州牧使軍官, 與漁人·商賈有間, 而亦非官員之比, 護來差倭別送與否, 非本國所知, 自島中雖差送某人, 自我接待, 已有漂風人領來差倭之例. 使之以此意, 傳通島中, 必自本府防塞事, 分付東萊府使. 【以上備局謄錄】

❖ 현종 6년(1665) 을사년 6월 11일(병인)

□ 김원상(金元祥) 등의 처리에 대해 동래부사(東萊府使)에게 분부함

- 이번 6월 초 10일 임금을 알현할 때, 임금이 말하기를, “예조에서 서류에 붙인 동래부사(東萊府使) 장계의 김원상(金元祥)·허정(許定) 등에 관한 일은 동래부사에게 명하여 관왜(館倭)에게 깨우쳐 타일러 말하기를, ‘원상·허정은 모두 제주 목사(濟州牧使)의 군관(軍官)으로 어부나 장사치와는 구별이 되나 역시 관원의 부류는 아니다. 호송에 대마도 사신을 별도로 보내는 여부는 본국이 알 바가 아니다. 처음부터 대마도에서 비록 어떤 사람을 보내든지 우리의 접대는 이미 바람에 표류한 이들을 호송해 오는 대마도 사신의 예가 있고, 이것으로 하겠다는 뜻을 대마도에 알려 전하게 하고, 처음부터 본부(本府)가 막을 일이다’라고 하고, 동래부사에게 분부하였다.”고 하였다. 【이상은 비변사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동래부사, 김원상, 허정, 군관, 차왜.

❖ 康熙 四年 乙巳 六月 十一日 丙寅

- 畿監司書目. 重林呈, 以旌義縣監金汝翰, 大靜縣監柳沃等下去時, 至盤乳驛, 侵責驛卒, 令該曹稟處事.

❖ 현종 6년(1665) 을사년 6월 11일(병인)

- 정의현감(旌義縣監) 김여한(金汝翰) 등이 반유역(盤乳驛)의 역졸에게 물품을 요구했음에 해당부서에서 조치할 것을 청하는 경기감사(京畿監司)의 서목(書目)
- 경기감사의 서목(書目)은, “중림(中林)에서 정의현감(旌義縣監) 김여한(金汝翰)과 대정현감(大靜縣監) 유옥(柳沃) 등이 내려갈 때 반유역(盤乳驛)에 이르러서 역졸에게 트집을 잡아 물품을 요구했으니, 해당부서로 하여금 아뢰어 조치하라는 일”이었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중림, 정의현감, 김여한, 대정현감, 유옥, 반유역.

❖ 康熙 四年 乙巳 六月 十一日 丙寅

○ 권령爲刑曹參議, …… 禹汝度爲旌義縣監, …… 李以時爲大靜縣監, …….

❖ 현종 6년(1665) 을사년 6월 11일(병인)

□ 우여도(禹汝度)를 정의현감(旌義縣監)으로, 이이시(李以時)를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함

○ 권령(權嶺)을 형조참의(刑曹參議)로, <중략> 우여도(禹汝度)를 정의현감(旌義縣監)으로, <중략> 이이시(李以時)를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권령, 우여도, 정의현감, 이이시, 대정현감.

❖ 康熙 四年 乙巳 六月 十三日 戊辰

○ 謝恩, 兵曹正郎李敏敍, 訓練都正黃道昌, 大靜縣監李以時.

❖ 현종 6년(1665) 을사년 6월 13일(무진)

□ 大靜縣監(大靜縣監) 이이시(李以時) 등이 사은함

○ 병조좌랑(兵曹正郎) 이민서(李敏敍)<sup>66)</sup>, 훈련도감(訓練都正) 황도창(黃道昌), 대정현감(大靜縣監) 이이시(李以時)가 사은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이민서, 황도창, 대정현감, 이이시.

---

66) 이민서(1633~1688): 본관 전주(全州). 자 이충(彝仲). 호 서하(西河). 1652년(효종 3) 문과급제. 현종 초 수찬으로 있을 때는 허적(許積)을 탄핵하다가 병조좌랑에 진직됨. 이후 이조·호조참의도 지내고, 광주목사(光州牧使)로 있을 때 병으로 사직했으나, 다시 관직에 나아가 예조·호조·이조의 판서도 차례로 역임한 뒤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가 됨. 저서 《서하집》. 시호 문간(文簡).

❖ 康熙 四年 乙巳 六月 十四日 己巳

- 謝恩, 副摠管朴世模, 刑曹參議權玲, 旌義縣監禹汝度 …….

❖ 현종 6년(1665) 을사년 6월 14일(기사)

정의현감(旌義縣監) 우여도(禹汝度) 등이 사은함

- 부총관(副摠管) 박세모(朴世模), 형조참의 권령(權玲), 정의현감(旌義縣監) 우여도(禹汝度)가 사은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박세모, 권령, 정의현감, 우여도.

❖ 康熙 四年 乙巳 七月 三日 丁亥

○ 有政. 吏批, 以李猶龍爲務安縣監, …… 洪宇亮爲濟州牧使, …….

❖ 현종 6년(1665) 을사년 7월 3일(정해)

□ 홍우량(洪宇亮)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의하여, 이유룡(李猶龍)을 무안현감으로, <중략> 홍우량(洪宇亮)<sup>67)</sup>을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이유룡, 홍우량, 제주목사.

---

67) 홍우량(?~?): 무과급제. 1650년(효종 1) 3월 제주판관으로 부임하고, 1651년(효종 2) 6월 파직되어 떠남. 1665년(현종 6) 11월 제주목사로도 왔다가 1667년(현종 8) 5월 떠남. 이때 북수각(北水閣)과 홍문(虹門)을 중수하는 한편, 동성문인 제중루(濟衆樓)를 중수하면서 연상루(延祥樓)라 개칭함.

❖ 康熙 四年 乙巳 七月 四日 戊子

○ 謝恩, 持平洪柱國, …… 大靜縣監李以時, …….

❖ 現宗 6年(1665) 을사년 7월 4일(무자)

□ 大靜縣監(大靜縣監) 이이시(李以時) 등이 사은함

○ 지평(持平) 홍주국(洪柱國)<sup>68)</sup>, 〈중략〉 大靜縣監(大靜縣監) 이이시(李以時) 등이 사은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홍주국, 대정현감, 이이시.

---

68) 홍주국(1623~1680): 본관 풍산(豊山). 자 국경(國卿). 호 범옹(泛翁)·죽리(竹里). 1662년(현종 3) 문과급제. 1671년(현종 12) 부응교, 이어 세자시강원을 지냄. 1674년(숙종 즉위년) 예조참의가 되었으나 제2차 북상문제와 관련해 남인의 탄핵으로 파직되었다가 남인이 1680년 경신대출척으로 실각하자 다시 기용되어 안악현감을 지냄. 저서 《범옹집》 9권.

❖ 康熙 四年 乙巳 七月 六日 庚寅

○ 下直, 旌義縣監禹汝度, 南原府使李慣.

❖ 현종 6년(1665) 을사년 7월 6일(경인)

□ 정의현감(旌義縣監) 우여도(禹汝度) 등이 하직함

○ 정의현감(旌義縣監) 우여도(禹汝度), 남원부사(南原府使) 이관(李慣)<sup>69</sup>이 하직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정의현감, 우여도, 이관.

---

69) 이관(1624~1692): 본관 연안(延安). 자 중습(仲習). 1655년(효종 6) 전설(典設)로 등용되고, 그 뒤 형조좌랑·호조좌랑·호조정랑 등을 지내면서 낭관으로 10여년을 지냄. 이후 경주부윤을 지낼 때 선정을 베푼 공으로, 왕으로부터 칭찬하는 글과 말 한필을 하사받음. 1688년(숙종 14)에는 총융사·공조참관을 역임하고, 이듬해 나주목사로 내려갔다가 병으로 해직되고, 이어 안동목사를 제수하였으나 부임을 꺼려 파직됨.

❖ 康熙 四年 乙巳 九月 二十三日 丙午

○ 謝恩, 濟州牧使洪宇亮, 星州牧使李之翼, 郭山郡守高處明.

❖ 현종 6년(1665) 을사년 9월 23일(병오)

□ 제주목사(濟州牧使) 홍우량(洪宇亮) 등이 사은함

○ 제주목사(濟州牧使) 홍우량(洪宇亮), 성주목사(星州牧使) 이지익(李之翼), 광산군수(郭山郡守) 고처명(高處明)이 사은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목사, 홍우량, 이지익, 고처명.

❖ 康熙 四年 乙巳 十月 四日 丙辰

○ 下直, 濟州牧使洪宇亮, 鎭安縣監李奎明.

❖ 현종 6년(1665) 을사년 10월 4일(병진)

□ 제주목사(濟州牧使) 홍우량(洪宇亮) 등이 하직함

○ 제주목사(濟州牧使) 홍우량(洪宇亮), 진안현감(鎭安縣監) 이규명(李奎明)이 하직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목사, 홍우량, 이규명.



1666年



❖ 康熙 五年 丙午 一月 五日 丙戌

- 司饗院啓曰, 濟州十一月朔各殿柑子進上, 今日來到, 本院點檢捧入之際, 中宮殿所封中, 洞庭橘一閣一百六十箇, 全數闕封, 招問陪持人, 則去十二月十八日來到康津地, 經宿之時, 果爲見失云, 莫重進上, 不謹陪來, 至於遺失, 極爲驚駭. 當該陪持人, 令攸司, 依律重治, 何如? 傳曰, 允. 【以上司饗騰錄】

❖ 현종 7년(1666) 병오년 1월 5일(병술)

- 중궁전(中宮殿) 진상 감자(柑子) 등의 물품을 유실한 배지인(陪持人)을 유사(攸司)로 하여금 법에 의거 무겁게 다스릴 것을 청하는 사용원의 계
- 사용원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 11월삭 각 전(殿)의 감자(柑子) 진상이 오늘 도착하였습니다. 본원에서 봉입을 점검할 때, 중궁전으로 봉입된 것 중, 동정굴(洞庭橘) 일각(一閣) 160개가 봉진에서 빠졌기에 가지고 온 사람을 문초하였더니 지난 12월 18일 강진(康津) 땅에 도착하여 하룻밤을 잘 때 과일이 분실되었다고 합니다. 진상은 막중한 일인데 조심해서 가져오지 못해 분실되기에 이르렀으니 매우 놀랍고 해괴한 일입니다. 마땅히 가지고 온 사람을 유사에게 명하여 법에 의해 무겁게 다스리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윤택한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사용원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 진상, 감자, 동정굴, 강진.

❖ 康熙 五年 丙午 三月 二十日 庚子

- 金萬基, 以備邊司言啓曰, 全羅監司閔維重, 濟州牧使洪宇寬狀啓, 啓下本司, 皆是事係變通, 而領相, 以嶺儒之疏, 不得行公, 右相, 病未出仕, 趁未覆啓之意, 敢啓. 傳曰, 知道.

❖ 현종 7년(1666) 병오년 3월 20일(경자)

- 전라감사(全羅監司) 등이 올린 장계에 대해 복계(覆啓)할 수가 없다는 비변사의 계
- 김만기(金萬基)가 비변사의 말로써 아뢰기를, “전라감사(全羅監司) 민유중(閔維重)<sup>70)</sup>, 제주목사 홍우량(洪宇亮)<sup>71)</sup>의 장계를 본사(비변사)에 계하(啓下)하였습니 다만 모두 일이 변통(變通)에 연계되어 있는데 영상(領相)은 영남 유생의 장소 때문에 공무를 집행할 수 없으며 우상(右相)은 병으로 출사하지 못해 제때에 복계(覆啓)하지 못함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김만기, 전라감사, 민유중, 홍우량, 제주목사.

---

70) 민유중(1630~1687): 본관 여흥(驪興). 자 지숙(持叔). 호 둔촌(屯村). 숙종의 비 인현왕후(仁顯王后)의 아버지. 1651년(효종 2) 문과급제. 이후 여러 관직을 거치면서 1665년(현종 6) 전라도관찰사로 발탁되어 당상관에 오름. 1671년부터 형조판서·대사헌 등의 요직을 맡음. 숙종 즉위와 1680년(숙종 6) 경신대출척에 따른 남인의 부침에 따라 유배와 재등용을 겪으면서 서인 정권을 주도함. 1681년(숙종 7) 국구(國舅)가 되자 여양부원군(驪陽府院君), 돈녕부영사(敦寧府領事)가 됨. 점차 외척으로서 정권을 오로지 한다는 비난이 일어 관직에서 물러나 두문불출하다가 죽음. 저서 《민문정유집(閔文貞遺集)》. 시호 문정(文貞).

71) 홍우량(洪宇亮): 활자 원문에는 홍우관(洪宇寬)으로 잘못 쓰여 있어서 교열자가 바로 잡음.

❖ 康熙 五年 丙午 四月 十九日 己巳

- 左副承旨臣宋時喆, 同副承旨臣金宇亨等, 同日辰時成貼狀啓. …… 濟州牧使洪宇【缺】罪人高義重, 大靜縣到配事啓本一度, 合三度段, 姑爲留院緣由, 竝以馳啓爲白臥乎事, 啓下本院.

❖ 현종 7년(1666) 병오년 4월 19일(기사)

- 제주목사(濟州牧使) 홍우량(洪宇亮)이 고의중(高義重)을 대정현(大靜縣)으로 도배한 장계 등의 성첩(成貼)
- 좌부승지(左副承旨) 신 송시철(宋時喆)<sup>72)</sup>, 동부승지(同副承旨) 신 김우형(金宇亨)<sup>73)</sup> 등은 같은 날 진시(辰時)에 장계를 성첩(成貼)하였습니다. <중략> 제주목사 홍우량(洪宇【빠진】)<sup>74)</sup>이 죄인 고의중(高義重)을 대정현으로 도배(到配)한 일에 대한 계본(啓本) 한 부 등, 합해 3부는 우선 본원(승정원)에 둔 연유 등을 아울러 빨리 임금께 보고할 것을 본원에 계하(啓下)하였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송시철, 김우형, 제주목사, 홍우량, 고의중, 대정현.

---

72) 송시철(1610~1673): 본관 여산(礪山). 자 숙보(叔保). 호 설촌(雪村). 1633년(인조 11) 사마시합격 후 헌릉참봉(獻陵參奉) 등을 거치면서, 1653년(효종 4) 문과급제. 1661년(현종 2) 이후에는 사간원헌납·사헌부의 장령·집의 등을 역임함. 이때 수차례 정론(正論)으로 시비를 가림. 1667년(현종 8) 동부승지가 되고 원주목사로 내려가 향교를 수축하고 늪회(廩饌: 쌀과 음식)를 지급하여 문운(文運)을 크게 일으켰거니와, 흥년에는 요역과 부역을 덜어주어 민심을 회복시킴.

73) 김우형(1616~1694): 본관 광산(光山). 자는 도상(道常). 호 기오당(寄傲堂). 1650년(효종 1) 문과급제. 1669년(현종 10) 좌부승지, 이듬해 도승지를 지냄. 이어 경기도관찰사·한성부판윤·개성유수에 나아갔고, 1694년(숙종 20) 형조판서를 거쳐 기로소에 들어감. 저서 《옥산유고(玉山遺稿)》. 시호 정혜(貞惠).

74) 빠진 글자는 제주목사 홍우량의 ‘량(亮)’자임.

## ❖ 康熙 五年 丙午 八月 十三日 辛酉

- 辰時, 上御興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時, 入侍, 領議政鄭太和, 判尹金佐明, …… 記事官崔後尙·李敏采. …… 金佐明曰, 諸島馬, 久無點馬捉來之事, 故雖有可用之馬, 老死於島中, 亦可惜矣. 上曰, 每三年一番點馬, 乃是規例. 而近年點馬, 既甚稀罕, 故諸場馬匹, 多有老死者. 今後除出把夫馬外, 每年牧場, 大者則一處, 小者則二處, 六疇以上, 不爲分養, 直爲捉送, 以備國用, 可也. 上曰, 濟州年例進上馬, 每於草衰之後上送, 多致瘦瘠. 故趁早上送事, 不啻丁寧申飭, 而今始上來, 其怠緩之習, 不可不懲. 濟州牧使洪宇亮, 推考, 可也. 柳赫然曰, 濟州馬上來者, 例□箭串累日之後, 方始捉給於軍兵, 故多致瘦瘠矣. 上曰, 今後則差備賜給之後, 勿使出放箭串, 直爲分給軍兵之意, 分付司僕寺, 可也, …… 【已上燼餘】

## ❖ 현종 7년(1666) 병오년 8월 13일(신유)

### □ 제주(濟州)의 연례진상마(年例進上馬) 처리에 대해 논의함

- 이날 진시(辰時)에 임금이 흥정당(興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변사 당상과의 인견 때, 입시(入侍)는 영의정 정태화(鄭太和), 판윤 김좌명(金佐明)<sup>75)</sup>, <중략> 기사관 최후상(崔後尙)·이민채(李敏采) 등이 하였다. <중략> 김좌명이 아뢰기를, “여러 섬들에서 오랫동안 점마(點馬)하더라도 잡아오는 일이 없어 비록 쓸 만한 말이 있어도 섬 안에서 늙어 죽고 있다니 매우 애석한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매 삼년마다 한 번의 점마는 규례인데도 최근의 점마는 매우 드물게 행해져 여러 목마장에서 늙어 죽는 말들이 많은 것이니 지금부터는 숫말(把夫馬)을 제외하고 매 해마다 목장 가운데 큰 데는 한 곳, 작은 데는 두 곳에서 6살 이상의 말을 나누어 기르지 않고 바로 잡아들여 보내게 해 국용(國用)에 대비케 함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에서 연례대로 진상하는 말들이 매년 풀들이 시든 다음에 올라오니 비쩍 마르게 되는 것이

75) 김좌명(1616~1671): 본관 청풍(淸風). 자 일정(一正). 호 귀계(歸溪), 또는 귀천(歸川). 1644년(인조 22) 문과급제. 1662년(현종 3) 공조판서·예조판서를 역임할 때, 전라도 산군(山郡)의 대동법이 중단된 것을 재차 주창, 시행케 함, 아버지 유언에 따라 《전라도대동사목(全羅道大同事目)》도 전라감사 서필원(徐必遠)과 함께 주관·발표함. 호조·병조판서도 지냄. 이때 서리(胥吏)의 부정이 줄었고, 군율이 엄격하고 공정했음. 현종의 비인 명성왕후(明聖王后)의 큰아버지인데도 조정에서는 믿고 중용함. 영의정·청릉부원군(淸陵府院君)에 각각 추증됨. 현종 묘정 배향. 저서 《귀계유고(歸溪遺稿)》. 시호 충숙(忠肅).

많다. 이에 좀 더 일찍 올려 보내는 일을 단단히 타일러 경계토록 할 뿐만 아니고, 지금 처음 올라오는 대로 그 태만한 버릇을 징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주목사(濟州牧使) 홍우량(洪宇亮)의 허물을 추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유혁연(柳赫然)<sup>76)</sup>이 아뢰기를, “제주 말 중에 올라온 것들은 예에 따라 살곳이(箭串)에서 며칠 데리고 있다가 비로소 잡고는 군의 병사들에게 나눠주는 예에 따르기 때문에 비적 마르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부터는 나누어 줄 것을 준비한 이후로는 살곳이에 방목치 못하게 하여 바로 군의 병사들에게 나눠주라는 뜻을 사복시에게 분부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라고 하였다. <하략>. 【이상은 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흥정당, 정태화, 김좌명, 최후상, 이민채, 제주목사, 홍우량, 유혁연, 살곳이, 연례진상마.

---

76) 유혁연(1616~1680): 본관 진주(晉州). 자 회이(晦爾). 호 야당(野堂). 1644년(인조 22) 무과급제. 효종 때 북벌과 관련해 승지로 발탁되고, 그 뒤 이완(李浣)과 더불어 쌓벽을 이루면서 효종의 북벌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숙종 때 남인이 숙청될 때 이에 연루되어 경상도 영해로 유배됨. 무예에 뛰어났던 한편, 전략·군사 행정면에서도 재능이 뛰어남.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집권하자 신원되어 영의정에 추증됨. 시호 무민(武愍).

❖ 康熙 五年 丙午 八月 十八日 丙寅

○ 又以司僕寺官員，以提調意啓曰，上年各邑分養馬，今五六月間，始爲上來，而提調臣許積，適有引入之事，臣重普，身病方重，其時僉正，亦以臺論，久未行公。故各廳將士，不得卽爲分給，姑令放牧於箭串矣。新到濟州封進馬，則雖有將來，皆以兒馬，不合於卽今戰馬，武士輩亦不願受。當出往箭串，以前日放牧分養馬，分給軍兵，而提調臣許積，方在陳筭辭職之中，□重普，雖不敢一向引入，力疾出仕，病後氣力，尙難遠出郊外，而訓練大將李浣，亦以身病陳疏，不得進去，不得已依前使本寺僉正，趁明日出往箭串，與中軍別將，眼同捉出，均一分給，何如？傳曰，允

❖ 현종 7년(1666) 병오년 8월 18일(병인)

□ 분양마(分養馬) 분급(分給)에 관한 사복시(司僕寺)의 계

○ 사복시 관원이 전한 제조(提調)의 뜻으로 아뢰기를, “작년 각 읍의 분양마가 지금 오·유월 사이에 비로소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제조를 맡은 신 허적(許積)이 마침 인입(引入)의 처지에 있었고, 신 홍중보(洪重普)<sup>77)</sup>도 신병이 바야흐로 위중해졌는데 그 때 첨정(僉正)조차 역시 대론(臺論)으로 인해 오랫동안 공무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각 청의 장교와 사병에게 즉시 나눠줄 수가 없어서 우선 살곳이(箭串)에 방목하여 두라고 명령을 내려 두었습니다. 새로 도착한 제주(濟州) 봉진마의 경우는 비록 장래가 있다 해도 모두 어린 말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마(戰馬)로 사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고, 무사(武士)들도 또한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땅히 살곳이로 가서 전일에 방목하였던 분양마를 군병들에게 분급해줘야 하는데 제조인 신 허적이 바야흐로 차자를 올려 사직을 청하는 중에 있으며, □중보 역시 감히 계속해서 인입할 수 없어서 병을 무릅쓰고 출사하려 하였지만 병치레 뒤의 기력이 아직도 교외 밖으로 멀리 나가기가 어렵고, 훈련대장 이완(李浣)도 역시 신병으로 상소를 올려 공무를 볼 수가 없는지라 부득이 전례대로 본사 첨정으로 하여금 내일 급히 살곳이로 보내어 중군별장(中軍別將)과 더불어 증인으로 참석하게 하여 균일하게 나눠주심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분양마, 허적, 홍중보, 살곳이, 이완, 제주진상마.

77) 홍중보(洪重普): 원문에는 중보(重普)로 되어 있어 교열자가 홍중보로 바꿈.

❖ 康熙 五年 丙午 八月 二十八日 丙子

- 忠淸兵使李元老, 會寧府使李重信, 密陽府使李東稷, 陝川郡守洪處源引見時, 會寧府使李重信所啓, 臣聞北路舉子之言, 則今年凶荒, 特甚, 民不聊生, 渠等出來之時, 五升布一疋, 直穀數升, 艱備糧資, 僅得來到, 入京之後, 得糧無路, 不得還歸, 勢將行乞, 以待明春, 始可入去云, 據此可知其飢饉之狀矣. 都承旨吳挺緯曰, 臣亦聞此言, 招備局更問以前例, 則□□濟州子弟, 有給糧之規. 北路之人, 則曾前或有覓給留京糧資之時, 而無例給歸糧之事云矣, 北路之人, 似當變通之道矣. 上曰, 令備邊司考例爲之. ……【已上備局謄錄】

❖ 현종 7년(1666) 병오년 8월 28일(병자)

□ 이원로(李元老) 등의 인견(引見) 때, 북로(北路)의 거자(舉子)에 대한 급량(給糧)의 일 등에 대해 이중신(李重信) 등과 논의함

- 충청병사(忠淸兵使) 이원로(李元老), 회령부사(會寧府使) 이중신(李重信), 밀양부사(密陽府使) 이동직(李東稷), 합천군수(陝川郡守) 홍처원(洪處源)을 인견할 때, 회령부사 이중신이 아뢴 바는, “신이 북로(北路)의 거자(舉子)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금년은 흉년이 특히 심해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데 자신들이 떠나올 때, 오승포(五升布) 한 필이 곡식 몇 승(升)에 불과한지라 어렵게 여비를 마련해서 간신히 도착했고, 서울에 들어온 이후에도 양식을 얻을 길이 없어 돌아갈 수 없으니 형편이 장차 구걸에 나서야 할 판입니다. 내년 봄을 기다려야 비로소 들어갈 수 있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 굶주림의 실상을 능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도승지 오정위(吳挺緯)가 말하기를, “신 또한 이 말을 들었습니다. 비국(備局)을 불러 다시 전례(前例)를 물어보니, □□제주자제(濟州子弟) 일 경우는 양식을 제공하는 규정이 있는데 북로의 사람들은 일찍이 전에 혹 서울에 머무르면 양식을 제공해줄 때가 있었지만 돌아갈 때 양식을 주었던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북로의 사람들은 변통(變通)의 방도를 써야함이 마땅할 듯싶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변사로 하여금 전례를 살펴 시행케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이상은 비변사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김일우 역주/ 2017>

△ 주제어: 이원로, 이중신, 이동직, 홍처원, 오정위, 제주자제.

❖ 康熙 五年 丙午 九月 十日 丁亥

○ 上曰, 然則嶺東全減. …… 上謂許積曰, 司僕馬, 準五百匹云者, 指何馬也? 積曰, 今年濟州歲貢馬, 其【缺】數明年國用, 實爲可慮. 故各道牧場馬, 本寺, 直【缺】計準五百匹, 八方各邑, 受去分養事, 已爲行移, 於原襄之嶺東, 咸鏡之南道, 尤甚失稔, 民皆流散, 【缺】邑南道各邑, 則勿爲分養, 咸興牧場馬, 亦令勿爲捉來. …….

❖ 현종 7년(1666) 병오년 9월 10일(정해)

□ 허적(許積) 등이 입시하여 제주세공마가 ○○하여<sup>78)</sup> 8도의 말을 받아가서 분양하는 일 등에 대해 논의함

○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영동은 전면 감하라.”라고 하였다. <중략> 임금이 허적(許積)<sup>79)</sup>에게 말하기를, “사복시의 말을 5백 필 채웠다고 하는데, 어느 말을 가리키는 것이냐?”라고 하였다. 허적이 말하기를, “금년 제주세공마 【빠짐】 내년 나라에서 쓸 것이 실로 염려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각도의 목장마를 본시(本寺)가 바로 【빠짐】 5백 필을 팔도의 각 읍에서 받아가서 분양하는 일에 대해 이미 행이(行移)<sup>80)</sup> 하였는데, 원양(原襄)<sup>81)</sup>의 영동과 함경(咸鏡)의 남도에는 흉년이 더욱 심하여 백성들이 모두 흩어져 【빠짐】 읍, 남도의 각 읍에는 분양하지 말고, 함흥의 목장마는 또한 잡아오지 말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세공마, 허적.

78) ○○하여: 원문에 글자가 빠져 있음. 문맥상 '부족하여'의 뜻인 듯함.

79) 허적(1610~1680): 본관 양천(陽川). 자 여차(汝車). 호 묵재(默齋), 휴옹(休翁). 1637년(인조 15) 문과 급제.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역임.

80) 행이(行移): 행문이첩(行文移牒). 관청에서 문서를 발송하여 조회(照會)하는 것을 뜻함.

81) 원양(原襄): 강원도(江原道). 효종에서 정조 연간에 불리던 강원도의 호칭.

❖ 康熙 五年 丙午 九月 十一日 戊子

- 上御興政堂. 大臣, 兵曹判書, 疏決廳·刑曹堂上, 三司 各一員引見入侍時 …… 武申以妻娣之妻, 潛奸率逃罪, 濟州定配. 上曰, 何年定配耶? 【缺】放之矣. 奴壬金, 官庫穿墻偷米罪, 濟州定配. 上曰, 穿墻雖惡, 【缺】久, 放之. 奴六上以與賊交通罪, 旌義充軍. 積曰, 先朝, 非以六上, 爲大罪, 【缺】. 上曰, 放之. …… 【以上燼餘】

❖ 현종 7년(1666) 병오년 9월 11일(무자)

□ 흥정당에서 대신 등을 인견할 때 허적(許積) 등이 입시하여 무신(武申) 등에 대해 소결(疏決)함

- 임금이 흥정당(興政堂)<sup>82)</sup>에 나아갔다. 대신, 병조판서, 소결청(疏決廳)<sup>83)</sup>·형조당상(刑曹堂上), 삼사(三司) 각 1원(員)을 인견(引見)<sup>84)</sup>하여 입시(入侍)<sup>85)</sup>한 자리이다. <중략> 무신(武申)은 처남의 처와 몰래 간통하고 데리고 도망간 죄로 제주(濟州)에 정배(定配)되었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어느 해에 정배되었느냐?” 【빠짐】“석방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노(奴) 임금(壬金)은 관아의 창고에 담을 뚫어 쌀을 훔친 죄로 제주에 정배되었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담을 뚫은 것은 비록 악한 일이지만 【빠짐】오래되었으니 석방하여라.”라고 하였다. 노(奴) 육상(六上)은 오랑캐와 내통한 죄로 정의(旌義)에 충군(充軍)<sup>86)</sup>되었는데, 허적(許積)<sup>87)</sup>이 말하기를, “선조(先朝)에서는 육상과 같은 일을 큰 죄로 삼지 않았습니다. 【빠짐】.”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풀어주어라.”라고 하였다. <하략>. 【이상은 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무신, 임금, 육상, 정의, 제주, 정배, 허적.

82) 흥정당(興政堂): 경희궁(慶熙宮)의 내전(內殿)인 회상전(會祥殿) 남쪽에 있던, 신료를 접견하고 강연(講筵)을 베풀던 곳.

83) 소결청(疏決廳): 소결(疏決)을 위해 입시로 설치한 관아. 소결은 국가에서 특별한 경우에 전국의 죄수를 다시 심리하여 너그럽게 처결하는 것.

84) 인견(引見):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불러 보는 것. 예식을 갖추어 신하를 불러 봄.

85) 입시(入侍): 대궐에 들어가서 임금을 뵈던 일.

86) 충군(充軍): 조선시대 죄를 범한 자를 고된 천역(賤役)인 수군(水軍)이나 국경수비대 등에 복무하도록 한 형벌로 신분의 고하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차등이 있었음.

87) 허적(1610~1680): 본관 양천(陽川). 자 여차(汝車). 호는 묵재(默齋)·휴옹(休翁). 1637년(인조 15) 문과 급제. 호조판서, 좌의정, 영의정 역임. 남인의 영수로, 1680년(숙종 6) 서자 허견(許堅)의 역모사건으로 사사(賜死)됨.

❖ 康熙 五年 丙午 十月 二十一日 戊辰

- 李俊耆啓曰, 卽伏見濟州牧使洪禹亮狀啓二度及八月朔膳狀四度, 盡爲沈濕, 當該陪持人不謹齋來之狀, 殊甚可駭. 令攸司, 從重推治, 以爲懲後之地, 何如? 傳曰, 允.

❖ 현종 7년(1666) 병오년 10월 21일(무진)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올린 장계가 훼손되었으니 관련자를 처벌하자는 이준구(李俊耆)의 계

- 이준구(李俊耆)<sup>88)</sup>가 아뢰기를, “지금 삼가 제주목사(濟州牧使) 홍우량(洪宇亮)<sup>89)</sup>의 장계(狀啓) 2통과 8월 삭선장(朔膳狀)<sup>90)</sup> 4통을 보니, 모두 습기가 배어 축축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배지인(陪持人)<sup>91)</sup>이 삼가 하지 않고 가지고 온 꼴이 자못 심히 놀랄 만합니다. 담당 관사로 하여금 중중추치(從重推治)<sup>92)</sup>하게 하여 뒷사람을 경계하는 것으로 삼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이준구, 홍우량, 삭선장, 제주목사.

88) 이준구(1609~1676): 본관 성주(星州). 자 자교(子喬). 1637년(인조 15) 문과 급제. 예조참의, 형조참판, 예조참판 역임.

89) 홍우량(?~?): 현종 때의 제주목사. 1665년(현종 6) 11월에 도입하고 1667년(현종 8) 5월에 교체되어 떠남. 이전, 제주관관으로 1650년(효종 1) 3월에 도입하여 1651년(효종 2) 6월에 파직되어 떠남. 원문에는 홍우량의 ‘우(宇)’가 ‘우(禹)’로 되어 있어 교열자가 바로 잡음.

90) 삭선장(朔膳狀): 진상하는 삭선(朔膳)의 물종(物種)을 적은 단자(單子). 삭선은 매달 1일에 각 도(道)에서 나는 물건으로 차리는 수라상임.

91) 배지인(陪持人): 지방 관아에서 임금께 올리는 장계나 진상물을 가지고 가는 사람.

92) 중중추치(從重推治): 두 가지 이상의 죄가 한꺼번에 드러났을 때 그중에서 더 무거운 죄에 따라 처벌하는 것.

❖ 康熙 五年 丙午 十月 二十一日 戊辰

- 鄭繼胄, 以司饗院官員, 以監膳提調意啓曰, 當日所捧濟州八月朔進上物種中, 王大妃殿·大殿·中宮殿所捧撻鰻·烏志魚色變生綠, 膳狀單子, 亦爲濕傷, 所見極爲未安. 招問陪持人, 則行到近京之地, 馬跌沈水, 以致如此云, 陪持難免不謹之責, 自本院從重治罪, 其進上, 則越海遠來之物, 不得不捧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현종 7년(1666) 병오년 10월 21일(무진)

□ 제주에서 올린 진상 물종이 습기가 배어 상했으나 바다를 건너온 것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옹원의 계

- 정계주(鄭繼胄)<sup>93)</sup>가 사옹원(司饗院)<sup>94)</sup> 관원으로, 감선제조(監膳提調)의 뜻으로 아뢰기를, “당일 거두어 받아들인, 제주(濟州)에서 올린 8월삭 진상 물종 중 왕대비전·대전·중궁전에 올리는 추복(撻鰻)·오지어(烏志魚)의 색이 변해서 푸른빛이 났습니다. 선장단자(膳狀單子)<sup>95)</sup> 또한 습기가 배어 상하여 보기에 심히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배지인(陪持人)을 초문(招問)<sup>96)</sup>해 보니 여정이 서울 근처에 이르렀을 때 말이 거꾸러져 물에 빠져 이와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배지에 삼가지 않은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니, 본원(本院)으로부터 종종치죄(從重治罪)하고, 그 진상물은 바다를 건너 멀리서 온 물건이니 거두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 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정계주, 사옹원, 제주, 추복, 오지어.

93) 정계주(1606~1670): 본관 연일(延日), 자 자술(子述). 1650년(효종 1) 문과 급제. 집의, 사간, 승지, 호조참의 역임.

94) 사옹원(司饗院): 조선시대 임금의 식사와 대궐 안의 식사 공급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95) 선장단자(膳狀單子): 선장단자(膳狀單子). 삭선의 물목을 적은 단자. 바로 앞의 ‘1666년(현종 7) 병오년 10월 21일(무진)’ 기사 참조.

96) 초문(招問): 죄인을 불러 들어 심문함.

❖ 康熙 五年 丙午 十月 二十二日 己巳

- 鄭繼胄啓曰, 卽見全羅監司啓本, 則濟州牧使洪宇亮之祖, 可臣之臣字, 書以信字, 宰相之名, 兩處誤書, 而朦然不察, 殊極可駭. 全羅監司洪處厚, 請推考. 傳曰, 允.

❖ 현종 7년(1666) 병오년 10월 22일(기사)

- 계본에 제주목사 홍우량(洪宇亮)의 할아버지 이름자를 잘못 쓴 홍처후(洪處厚)의 추고(推考)를 청하는 정계주(鄭繼胄)의 계
- 정계주(鄭繼胄)<sup>97</sup>가 아뢰기를, “전라감사의 계본을 즉시 보니, 제주목사 홍우량(洪宇亮)<sup>98</sup>의 할아버지인 가신(可臣)의 신(臣)자를 신(信)자로 썼습니다. 재상의 이름을 두 곳이나 잘못 쓸 정도로 어리석게 살피지 못했으니 심히 놀랄 만합니다. 전라감사 홍처후(洪處厚)<sup>99</sup>를 추고(推考)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정계주, 홍우량, 홍처후.

97) 정계주(1606~1670): 본관 연일(延日). 자 자술(子述). 1650년(효종 1) 문과 급제. 집의, 사간, 호조참의 역임.

98) 홍우량(?~?): 본관 남양(南陽). 자 희숙(熙叔). 1637년(인조 15) 무과 급제. 제주관관(1650.3~1651.6), 제주목사(1665.11~1667.5), 경상도좌수사 역임.

99) 홍처후(1599~1673): 본관 남양(南陽). 자 덕재(德載). 호 성암(醒菴). 시호 충장(忠莊). 1629년(인조 7) 문과 급제. 함경도관찰사, 경기도관찰사, 공조참판 역임.

❖ 康熙 五年 丙午 十月 二十四日 辛未

- 備邊司啓曰, 卽見東萊府使安纘狀啓, 則所謂阿蘭陀人, 似指頃年濟州漂到南蠻人而言也. 此蠻人, 自訓府, 曾已下送於全羅兵營及順天等五邑, 而厥後連以物故報知, 未知其時存幾許. 年前查問生存實數于全羅監司, 則以十六名成冊上送矣, 今聞八名, 今年夏秋間, 乘小船逃日本五島云, 雖未知某接置蠻人之入來, 而本道尙未文報, 殊甚可駭. 姑先查出逃亡與否後, 處置何如? 答曰, 允.

❖ 현종 7년(1666) 병오년 10월 24일(기사)

□ 일본으로 도망간 아란타인의 조사를 묻는 비변사의 계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지금 동래부사(東萊府使) 안진(安纘)<sup>100</sup>의 장계를 보니, 아란타인(阿蘭陀人)<sup>101</sup>으로 일컬어지는 이들은 몇 해 전에 제주(濟州)에 표도(漂到)했던 남만인(南蠻人)을 가리켜서 하는 말인 듯합니다. 이 만인(蠻人)은 훈련도감에서 일찍이 전라병영(全羅兵營)과 순천(順天) 등의 다섯 읍으로 내려 보냈고, 그 후 연이어서 사망하였다고 보고하여 알렸지만 그 당시 몇 명이나 생존하고 있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몇 해 전 생존해 있는 실제 수를 전라감사에게 사문(査問)하니, 16명으로 성책(成冊)하여 올려 보냈습니다. 지금 들으니, 8명이 금년 여름과 가을 사이에 작은 배를 타고 일본 오도(五島)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비록 어디에 접치(接置)한 만인이 들어왔는지 알지 못했다고는 하나 본도(本道)에서 아직까지도 문서로 보고하지 않았으니 심히 놀랄 만한 일입니다. 우선 먼저 도망 여부를 조사하여 밝혀낸 후에 처리하는 것이 어떠합니까?”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아란타인, 안진, 표도, 오도, 남만인, 순천.

100) 안진(1617~1685): 본관 죽산(竹山). 자 율보(栗浦). 호 학촌(鶴村). 1652년(효종 3) 문과 급제. 대사간, 예조참판 역임. 효행으로 이름났고, 문장에도 능하였음. 윤휴(尹鑄)와 친구를 끊고 송시열(宋時烈)을 비호함.

101) 아란타인(阿蘭陀人): 네덜란드인. 여기서는 1653년(효종 4) 8월 제주에 표류한 하멜을 비롯한 네덜란드인 36명을 가리킴. 이들을 훈련도감에 소속시켰다가 전라 병영과 순천(順天) 등 5개 읍으로 내려 보냈는데, 그중 하멜을 비롯한 8명이 일본으로 탈출하였음.

❖ 康熙 五年 丙午 十二月 五日 辛亥

- 府啓. …… 驪州牧使金壽翼, 曾在先朝, 以濟州牧使, 爲御使所案, 仍以廢錮幾數十年, 到今衰老且甚, 尤無可取, 而該曹不顧公議, 復加收錄, 至畀字牧之任, 其在爲法, 豈容如是? 請驪州牧使金壽翼罷職, 吏曹當該堂上郎廳竝推考. …….

❖ 현종 7년(1666) 병오년 12월 5일(신해)

□ 제주목사 당시 폐고(廢錮)된 여주목사 김수익(金壽翼)의 파직 등을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 <중략> “여주목사 김수익(金壽翼)<sup>102)</sup>이 일찍이 선조(先朝)에 제주목사로 있으면서 어사의 안찰(案察)로 인하여 폐고(廢錮)된 지가 수 십 년으로 지금은 심히 쇠약하고 늙어 더욱 취할 것이 없는데, 해조(該曹)에서는 공의(公議)를 살피지 않고 다시 수록(收錄)을 가하여 자목(字牧)의 임무를 주었으니, 그 법을 집행함에 있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청컨대, 여주목사 김수익을 파직하고 이조의 당해 당상과 낭청을 아울러 추고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sup>103)</sup>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목사, 김수익, 여주목사, 파직.

102) 김수익(1600~1673): 본관 안동(安東). 자 성로(星老). 호 청악(靑岳). 시호 충경(忠景). 1630년(인조 8) 문과 급제. 병조참의, 제주목사(1649. 9~1651. 7) 역임. 저서 《남악집(南岳集)》.

103) 《현종실록》권 13, 현종 7년(1666) 12월 5일.

❖ 康熙 五年 丙午 十二月 二十六日 壬申

- 持平元萬里啓曰, 臣伏見吏曹參議尹鏞疏辭, 不勝驚愕之至. 吳翹·金壽翼貪污不法之狀, 該府之文案尙在, 先朝之判教極嚴, 臣請略陳其概焉. …… 金壽益, 爲濟州牧使, 亦以買馬匹, 徵納眞珠, 國恤張燈, 率妾縱觀等罪, 朝廷別遣御史, 按驗實狀, 累次刑訊, 終被遠配之律, 則啓辭所謂先朝廢錮之人者, 據其實事, 而尹鏞, 曾居銓職, 旣不能詳慎於取舍之際, 及今臺啓旣發之後, 猶不知非, 乃反曲爲游辭, 一則曰爲下官孔訐, 坐廢十五年, 不當以暗昧之罪, 永棄明時, …… 臣忝據臺閣 欲糾銓曹用人之失, 而致意外之人言, 何敢自以爲是乎? 且堂后誤薦之罪, 在例應罷, 一啓卽停, 恐非得當, 臣於習儀, 議定連啓之意, 而同僚不卽發簡相通, 致此起鬧之端, 臣亦不敢晏然, 請命遞斥臣職. 答曰, 勿辭, 退待物論.

❖ 현종 7년(1666) 병오년 12월 26일(임신)

□ 전 제주목사 김수익(金壽翼) 등의 문제에 대한 윤집(尹鏞)의 상소에 대해 반박하고 자신의 체척(遞斥)을 청하는 원만리(元萬里)의 계

- 지평 원만리(元萬里)<sup>104</sup>)가 아뢰기를, “신이 삼가 이조참의 윤집(尹鏞)의 소사(疏辭)를 보고는 놀라움을 이루다 할 수 없었습니다. 오빈(吳翹)과 김수익(金壽翼)이 탐오(貪污)하여 법을 어긴 실상에 대해서는 해부(該府)에 문안(文案)이 아직 남아있고, 선조(先朝)에서 내린 판교(判教)가 지엄했으니, 신이 청컨대 그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략> 김수익은 제주목사가 되어 또한 말을 사들이고 진주를 징납(徵納)하였으며, 국상 중에 등불을 사방에 걸어두고 첩을 거느리고 멋대로 즐겼다는 등의 죄로 조정에서 특별히 어사를 파견하여 실상을 조사하였는데, 누차 형신(刑訊)을 받고 결국 먼 곳으로의 유배형을 당하였으니, 계사(啓辭)에 이른바 선조(先朝)에 폐고(廢錮)된 사람이라는 것은 실제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윤집은 일찍이 전조(銓曹)의 직임에 있으면서 취사선택을 할 때에 능히 자세하고 신중하지 못했고, 지금 대간(臺諫)의 논계(論啓)가 발의된 후에도 오히려 잘못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변명을 하고 있으니, 하나에 대해서는 ‘하관(下官)에게 크게 비방을 당하여 15년 동안 폐고 되었으니, 애매(曖昧)한 죄를 가지고 밝은 시대에 영원히 버려지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략> 신은 대각(臺閣)의 자리에 있으면서 전조(銓曹)가 사람을 쓴 잘못을 바

104) 원만리(1624~1672): 본관 원주(原州). 자 중거(仲舉). 호 청재(聽齋).

로잡으려다가 뜻밖에 타인의 말을 불러왔으니, 어찌 감히 스스로를 옳다하겠습니까? 또한 당후(堂后)가 사람을 잘못 천거한 죄는 으레 응당 파직에 있는데, 한번 아뢰고 즉시 그친다면 마땅함을 얻지 못할까 하여 신은 의절(儀節)을 익힐 때에 의론하여 연계(連啓)할 뜻을 정하였는데 동료가 즉시 간통(簡通)<sup>105)</sup> 하지 않아서 이처럼 소요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신 또한 감히 태연히 있을 수 없으니, 청컨대 신의 직책을 체척(遞斥)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사직하지 말고 물러나 물론(物論)을 기다려라.”라고 하였다.<sup>106)</sup>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목사, 김수익, 윤집, 원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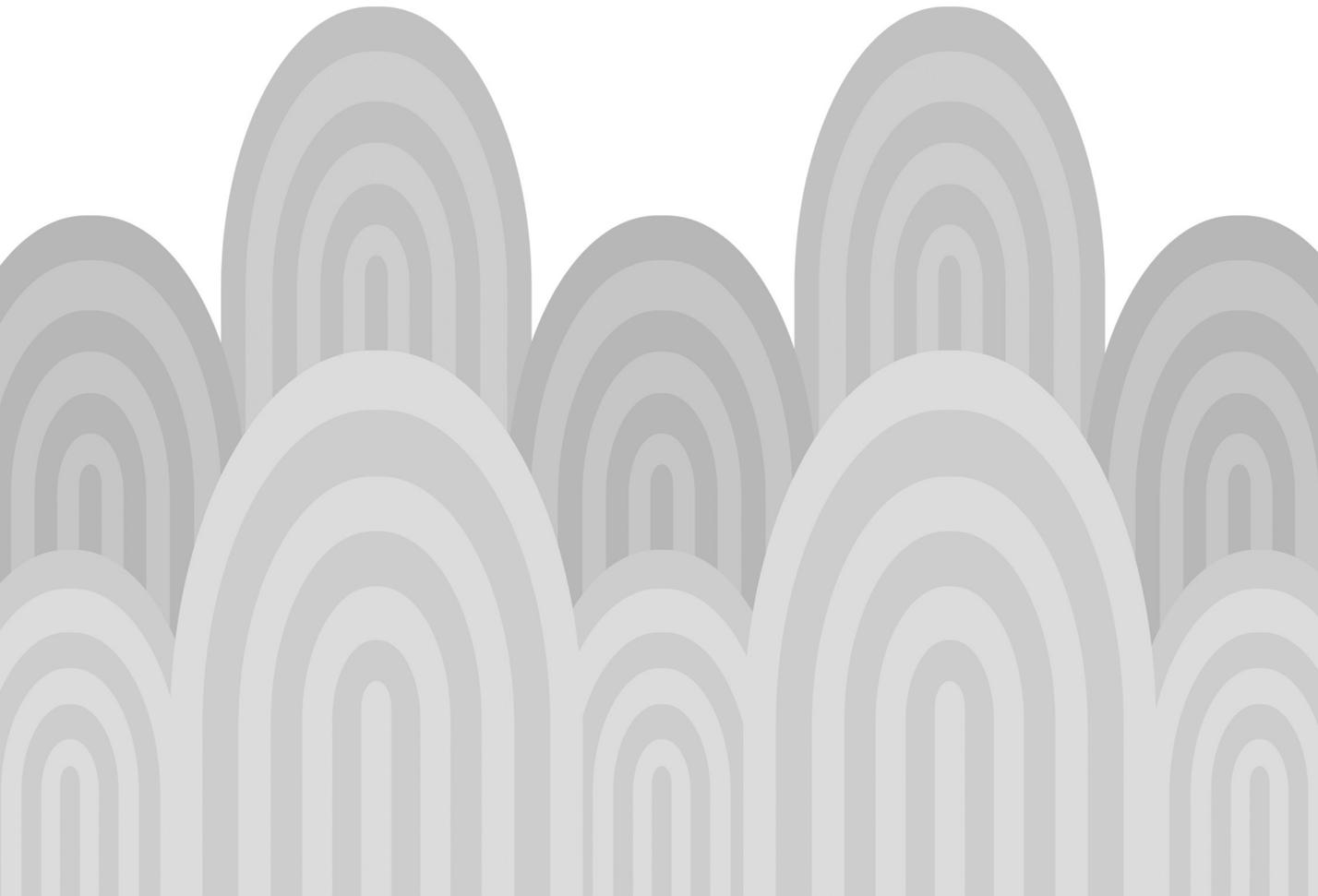
---

105) 간통(簡通): 대각(臺閣)의 관원이 자기의 뜻을 글로 써서 서로 통(通)함.

106) 《헌종실록》권 13, 현종 7년(1666) 12월 27일.



1667年



❖ 康熙 六年 丁未 一月 二十三日 戊子

- 李元禎, 以禮曹言啓曰, 王世子册禮翌日, 陳賀各道方物, 諸道既已封進, 而其中濟州牧使·全羅左水使所封方物, 未來到, 殊甚非矣, 竝推考, 何如? 傳曰, 允.

❖ 현종 8년(1667) 정미년 1월 23일(무자)

□ 진하 방물을 보내지 않은 제주목사와 전라좌수사의 추고를 청하는 예조의 계

- 이원정(李元禎)<sup>107)</sup>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왕세자의 책례(册禮)<sup>108)</sup> 다음날, 진하(陳賀)하는 각도(各道)의 방물(方物)을 여러 도는 이미 봉진(封進)하였는데, 그 중에 제주목사(濟州牧使)와 전라좌수사(全羅左水使)가 봉진해야 할 방물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니, 모두 추고(推考)<sup>109)</sup>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이원정, 책례, 제주목사, 전라좌수사.

---

107) 이원정(1622~1680): 본관 광주(廣州). 자 사징(士徵). 호 귀암(歸巖). 시호 문익(文翼). 1652년(효종 3) 문과에 급제. 대사간, 이조 판서 역임. 1680년(숙종 6)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유배되어 장살됨. 후에 신원되어 영의정에 추증.

108) 책례(册禮): 왕비, 세자, 세자빈, 세손, 세손빈 등을 책봉(册封)하는 의식.

109) 추고(推考): 벼슬아치의 허물을 추문(推問)하여 고찰함.

❖ 康熙 六年 丁未 三月 三日 丁丑

- 金壽恒曰,【數字缺】陀事, 觀金謹行手本, 則與當初所言有異矣. …… 柳赫然曰, 槍柄可合二年木, 訓局則年例取用於濟州, 而本廳則無前規矣. 雖無前規, 日後進上船上來時, 斫取載送事分付, 何如? 上曰, 依爲之. …… 【以上燼餘】

❖ 현종 8년(1667) 정미년 3월 3일(정축)

□ 창자루로 쓸 이년목을 제주(濟州)에서 가져오게 하는 등의 일에 대해 유혁연(柳赫然) 등과 논의함

- 김수항(金壽恒)이 말하기를, “【몇 글자가 빠짐】 김근행(金謹行)의 수본(手本)을 보면, 당초 얘기했던 것과는 다릅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유혁연(柳赫然)<sup>110)</sup>이 말하기를, “창자루로 합당한 이년목(二年木)<sup>111)</sup>을 훈련도감에서는 매년 제주에서 가져다 쓰는데, 본청(本廳)에는 예전 규례에 없는 일입니다. 비록 예전의 규례에 없다고는 하나 이후 진상선이 올라 올 때 베어 가지고 신고 오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하략>. 【이상은 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김수항, 김근행, 이년목, 유혁연.

---

110) 유혁연(1616~1680): 본관 진주(晉州), 자 회이(晦爾). 호 야당(野堂). 시호 무민(武愍). 1644년(인조 22) 무과 급제. 삼도수군통제사, 포도대장, 공조판서 등 역임. 1680년(숙종 6)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에 연루되어 영해(寧海)에 유배된 뒤 대정(大靜)으로 위리안치 되었다가 사사(賜死)됨. 뒤에 신원되어 영의정에 추증됨.

111) 이년목(二年木): 가시나무과에 속하는 나무. 튼튼하고 가벼우면서도 탄력이 있어 창자루, 화살대 등을 만드는 목재로 많이 사용되었음.

❖ 康熙 六年 丁未 三月 十四日 戊子

- 兵批, 判書金佐明都監進, 參判張善澂病, 參議金益炆病, 參知朴挺進, 右承旨閔點進. …… 高弘進爲濟州教授 …….

❖ 現宗 8年(1667) 정미년 3월 14일(무자)

□ 고흥진(高弘進)을 제주교수(濟州教授)에 제수함

- 병비(兵批)<sup>112)</sup>에, 판서 김좌명(金佐明)은 도감(都監)으로 참석했고, 참관 장선징(張善澂)은 병이 났고, 참의 김익경(金益炆)은 병이 났고, 참지 박정(朴挺)은 참석했고, 우승지 민점(閔點)은 참석했다. <중략> 고흥진(高弘進)<sup>113)</sup>을 제주교수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김좌명, 장선징, 김익경, 박정, 민점, 고흥진, 제주교수.

---

112) 병비(兵批): 무관의 인사 전형을 담당하는 전형위원회. 병조의 당상인 판서, 참관, 참의, 참지, 승지 1인으로 구성됨.

113) 고흥진(1602~1682): 본관 제주(濟州), 자 퇴이(退而). 1664년(현종 5) 문과 급제. 제주시 이호동 가물개 출신. 풍수지리에 밝아 탐라사절(耽羅四絶)의 하나로 일컬어짐.

❖ 康熙 六年 丁未 三月 十四日 戊子

- 傳于吏批曰, 前正言安塾, 大靜縣監除授, 前大靜縣監, 遞付京職, 以呂聖齊·蘇斗山爲副護軍.

❖ 現종 8년(1667) 정미년 3월 14일(무자)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하는 전교

- 이비(吏批)<sup>114)</sup>에 전교하기를, “전 정언 안숙(安塾)<sup>115)</sup>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하고, 전 대정현감을 경직(京職)에 체부(遞付)하고, 여성제(呂聖齊)와 소두산(蘇斗山)을 부호군(副護軍)<sup>116)</sup>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여성제, 소두산.

---

114) 이비(吏批): 문관의 인사 전형을 담당하는 전형위원회. 이조의 당상인 판서, 참판, 참의와 승지 1인으로 구성됨.

115) 안숙(1624~1668): 본관 순흥(順興). 자 학이(學而). 1665년(현종 6) 문과 급제. 정언, 지평 역임.

116) 부호군(副護軍): 5위(五衛)의 종4품직. 실직(實職)을 받지 않은 문관과 무관, 음관을 임명하였음.

❖ 康熙 六年 丁未 三月 十四日 戊子

○ 傳于宋時喆曰, 大靜縣監安塾, 除署經今日內下送.

❖ 현종 8년(1667) 정미년 3월 14일(무자)

□ 大靜縣監(大靜縣監) 안숙(安塾)의 서경(署經)을 생략하라는 전교

○ 송시철(宋時喆)<sup>117)</sup>에게 전교하기를, “大靜縣監(大靜縣監) 안숙(安塾)의 서경(署經)<sup>118)</sup>을 생략하고 오늘내로 내려 보내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송시철, 안숙, 대정현감, 서경.

---

117) 송시철(1610~1673): 본관 여산(礪山). 자 숙보(叔保). 호 설촌(雪村). 1653년(효종 4) 문과 급제. 사헌부 장령, 사간원 헌납, 사헌부 장령 등 역임.

118) 서경(署經): 관원이 될 사람의 신원을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

❖ 康熙 六年 丁未 三月 十六日 庚寅

- 持平李叔達啓曰, 請還收前執義李翻, 前掌令朴增輝·申命圭, 前持平俞樾·李夏, 前獻納金澄遠竄, 前正言趙聖輔安置之命. …… 前正言安塾之論, 不過以臺閣上體例相規而已, 非欲更爲起鬪於已停之論, 則觀其啓辭, 亦可見矣. 殿下, 不諒其本情, 斥之以深奸, 繼之以補外, 其有乖於大聖人優容之道, 爲如何哉? 噫. 近日言事之臣, 少忤聖心, 輒加竄逐, 南荒北塞, 行譴相望, 景象之索莫, 朝野之愁怛, 固已甚矣, 而塾, 又以言責之職, 略陳糾正之論, 而雷威遽震, 斥逐於海外絕域之地, 臣竊恐自此殿下之朝, 更無一人以言聞於上者, 言路杜絕, 寢默成風, 則甚非國家之福也. 請還收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 答曰, 不允. 末端事, 依啓.

❖ 현종 8년(1667) 정미년 3월 16일(경인)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이숙달(李叔達)의 계

- 지평 이숙달(李叔達)<sup>119)</sup>이 아뢰기를, “청컨대 전 집의 이숙(李翻), 전 장령 박증휘(朴增輝)·신명규(申命圭), 전 지평 유현(俞樾)·이하(李夏), 전 헌납 김정(金澄)을 먼 곳으로 귀양 보내고, 전 정언 조성보(趙聖輔)를 안치(安置)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어 주십시오. <중략> 전 정언 안숙(安塾)의 논의는 대각(臺閣)<sup>120)</sup>의 체통과 규례로써 잘못을 서로 경계하는 것에 불과할 뿐으로, 이미 그친 논의에 대해 다시 소란을 일으키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은 그 계사(啓辭)<sup>121)</sup>를 보면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전하께서 그 본뜻을 헤아리지 않고 심히 간사한 자로 여겨 물리치고, 이어서 외직으로 좌천시키면 대성인(大聖人)<sup>122)</sup>이 우대하고 용납하는 도리에 어그러짐이 있게 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근래 언사(言事)를 맡은 신하가 조금이라도 성심(聖心)을 거스르면, 갑자기 먼 곳으로 귀양을 보내버려 남녘과 북녘의 변경에서 견책을 받아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으니, 경상(景象)의 삭막함과 조야(朝野)의 근심이 참으로 매우 심합니다. 그런데 안숙이 또 직언(直言)하는 직책으로 잘못을 바로잡는 논의를 간략히 진술하였다고 해서 임금의 위엄

119) 이숙달(1617~1670): 본관 전주(全州). 자 순원(舜元). 1660년(현종 1) 문과 급제. 정언, 지평, 장령 역임.

120) 대각(臺閣): 대간(臺諫)과 같은 말로, 사헌부와 사간원을 아울러 이르는 말.

121) 계사(啓辭): 공사(公事)나 논죄(論罪)에 관하여 임금에게 아뢴 말이나 글을 말함.

122) 대성인(大聖人): 여기서는 효종(孝宗)을 가리킴.

으로 갑자기 진노하여 바다 밖의 아주 먼 곳으로 물리쳐 쫓아버리시니, 신은 저  
으기 이 전하의 조정에서부터 다시는 한 사람도 전하에게 한 마디 말도 아뢴 자  
가 없을까 두렵습니다. 언로(言路)가 막히고, 침묵의 풍토가 성행하면 심히 나라  
의 복이 아닙니다. 청컨대, 안숙을 대정현감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  
어 주십시오. <중략>” 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말단(末端)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이숙달, 이숙, 박증휘, 신명규, 유현, 이하, 김정, 조성보, 안숙, 대정현감.

❖ 康熙 六年 丁未 三月 十七日 辛卯

- 持平李叔達啓請, 還收前執義李翻, 前掌令朴增輝·申命圭, 前持平俞櫨·李夏, 前獻納金澄遠竄, 前正言趙聖輔安置之命. 請還收前司諫李屋遠竄之命, …… 請還收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 答曰, 不允.

❖ 현종 8년(1667) 정미년 3월 17일(신묘)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이숙달(李叔達)의 계
- 지평 이숙달(李叔達)이 아뢰어 청하기를, “청컨대 전 집의 이숙(李翻), 전 장령 박증휘(朴增輝)·신명규(申命圭), 전 지평 유현(俞櫨)·이하(李夏), 전 헌납 김정(金澄)을 먼 곳으로 귀양 보내고, 전 정언 조성보(趙聖輔)를 안치(安置)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하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이숙달.

❖ 康熙 六年 丁未 三月 二十日 甲午

- 獻納李有相啓曰, …… 前正言安塾, 當諸臣竄逐之餘, 敢有所論啓者, 豈有他意於其間哉? 只欲循臺閣之故事, 而伸一時之公議而已也. 聖明不諒, 一切斥逐, 遽加情外之罪, 亦有駭四方之觀聽, 大聖人包容之道, 豈宜如是? 言路將塞, 所關非細, 請還收前正言安塾特除大靜縣監之命, …… 答曰, 不允, 下諭事依啓.

❖ 현종 8년(1667) 정미년 3월 20일(갑오)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이유상(李有相)의 계

- 헌납 이유상(李有相)<sup>123)</sup>이 아뢰기를, “〈중략〉 전 정언 안숙(安塾)이 여러 신하들을 귀양 보내는 것에 대해 감히 전하의 잘못을 따져 간(諫)한 것이 어찌 그 사이에 다른 뜻이 있어서였겠습니까? 다만 대각(臺閣)의 고사(故事)에 따라서 한때의 공의(公議)를 펴고자 했을 뿐입니다. 성명(聖明)께서 이를 헤아리지 않고, 모두를 다 물리쳐 쫓아버리고 갑자기 뜻밖의 죄를 더하여 또한 사방에서 보고 듣는 귀와 눈을 놀라게 하니, 대성인(大聖人)의 포용의 도리가 어찌 이와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언로(言路)가 장차 막힐 것과 관계된 바가 작지 않으니 청컨대, 전 정언 안숙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하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下諭)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이유상.

123) 이유상(1623~1673): 본관 연안(延安). 자 세경(世卿). 호 동둔(東屯). 1660년(현종 1) 문과 급제. 응교, 예조 좌랑, 헌납 역임.

❖ 康熙 六年 丁未 三月 二十日 甲午

- 掌令權斗樞啓. 請還收前執義李翻, 前掌令朴增輝·申命圭, 前持平俞櫨·李夏, 前獻納金澄遠竄, 前正言趙聖輔安置之命. …… 請還收安塾大靜縣特除之命 …… 答曰, 不允. 下諭事依啓.

❖ 현종 8년(1667) 정미년 3월 20일(갑오)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권두추(權斗樞)의 계
- 장령 권두추(權斗樞)<sup>124</sup>가 아뢰기를, “청컨대 전 집의 이숙(李翻), 전 장령 박증휘(朴增輝)·신명규(申命圭), 전 지평 유현(俞櫨)·이하(李夏), 전 헌납 김정(金澄)을 먼 곳으로 귀양 보내고, 전 정언 조성보(趙聖輔)를 안치(安置)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하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 하유(下諭)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권두추.

---

124) 권두추(1639~1681): 본관 안동(安東). 자 여강(汝綱). 1655년(효종 6) 문과 급제. 사헌부 장령, 승정원 주서 역임.

❖ 康熙 六年 丁未 三月 二十日 甲午

○ 弘文館校理李有相, 修撰李程等, 伏以人君御世之道, 好惡得其公, 是非得其正, 然後公議得伸, 讒說莫行, 以至培養士氣, 扶植國脈, 其可不深念乎? 伏見殿下之近事, 未允輿情者, 非止一二, 臣等竊不勝慨然也. 諫臣八人, 竝逐荒裔, 此實前古所無之事, 兩司爭執, 今已累月, 而尙不【二字缺】…… 臣等, 且伏見備忘記, 有正言安塾遞差, 除授大靜縣監之教, 辭旨極其嚴峻, 至以深奸【八九字缺】悚之至, 安塾, 雖未行相會, 不與同僚聯名, 其所論【數字缺】公議而執臺體, 則豈有游辭用意, 威制束縛之心乎? 聖明不諒, 遽下情外之罪名, 遠斥海邑, 曾不少貸. 以聖人包容之量, 待臺臣之道, 豈容如是? 甚非所以好察言慎用罰之義也. 嗚呼. 天災孔棘, 時事孔艱, 國勢人心, 無一可恃, 只是聖明在上, 謹行善道, 慰悅輿情, 而近日以來, 宸衷激惱, 過舉層出, 諸臣之以言獲罪者, 大則竄謫, 小則拿罷, 前後相繼, 殆無虛日, 此何等景象耶? 若此不已, 竊恐殿下之國事日非, 殿下之過舉滋深, 而終無一人, 爲殿下論列是非, 任匡救之責也, 豈不重可痛惜乎? 伏願聖明, 深加省察, 少霽雷威, 還收金益廉拿問, 安塾補外之命, 不勝幸甚, 取進止. 答曰, 不允.

❖ 현종 8년(1667) 정미년 3월 20일(갑오)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이유상(李有相)과 이정(李程)의 계

○ 홍문관 교리 이유상(李有相), 수찬 이정(李程)<sup>125)</sup> 등이, “삼가 아뢰옵니다. 임금이 세상을 다스리는 도는 좋아함과 싫어함에 그 공정함을 얻고, 옳음과 그름에 그 바름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한 후에야 공의(公議)가 펴지고 참설(讒說)이 행하지 않아 사기(士氣)를 배양하고 국맥(國脈)을 부식(扶植)하는 데에 이르는 것이니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전하의 근래 일을 보면, 여론에 대해 윤택하지 않는 것이 다만 한 둘이 아니니, 신 등은 삼가 개탄하고 실망하는 마음을 이루다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간신(諫臣) 8인을 모두 먼 변방으로 내쫓은 것은 실로 예전에 없던 일로, 양사(兩司)<sup>126)</sup>가 간쟁하며 의견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미 여러 달이지만 아직도 【2자가 빠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략>

125) 이정(1618~1671): 본관 덕수(德水). 자 운장(雲長). 호 남곡(南谷). 1650년(효종 1) 문과 급제. 정언, 지평, 승지 역임.

126) 양사(兩司):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

신 등이 또한 삼가 비망기(備忘記)<sup>127)</sup>를 보니, 정언 안숙(安塾)을 체차(遞差)하여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하는 하교를 내렸는데, 말씀하신 뜻이 지극히 준엄하고 심지어는 심히 간사하다는 【8~9자가 빠짐】 지극히 황송합니다. 안숙이 비록 상회례(相會禮)<sup>128)</sup>를 하지 않았기에 동료들과 함께 연명(聯名)하지는 않았지만, 그 논의한 것이 공의(公議)를 【몇 글자가 빠짐】하여 대각(臺閣)의 체통을 잡은 것이니 어찌 말 장난을 하면서 제압하고 속박하려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성명(聖明)이 헤아리지 않으시고, 갑자기 뜻밖의 죄명을 내려 멀리 해읍(海邑)으로 내쳐 조금도 관대하게 다스리지 않으니, 성인(聖人)이 포용하는 아량으로 대신(臺臣)을 대하는 도리가 어찌 이와 같을 수 있습니까? 심히 말을 잘 살피고 벌을 신중히 쓰는 의리가 아닙니다. 아! 천재(天災)는 매우 극심하고, 시사(時事)는 심하고 달과서 나라의 형세와 인심을 하나도 믿을 수가 없는데, 다만 성명(聖明)이 위에 있으면서 착한 도리를 삼가 행하며 민심을 위로하여 기쁘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래 이래 전하의 마음이 매우 괴로워 지나친 처사가 거듭 나왔으니, 신하들 중에 말로써 죄를 얻은 것이 크면 멀리 귀양 보내고, 작으면 잡아다가 심문하여 과격하는 것이 앞뒤로 서로 이어지면서 거의 하루도 빈 날이 없으니 이 무슨 광경입니까? 이와 같이 하여 그치지 않는다면 전하의 국사는 날로 잘못되고, 전하의 지나친 처사는 더욱 깊어져서 끝내는 한 사람도 전하를 위하여 옳고 그름을 논하여 늘어놓으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책무를 맡을 자가 없을 것이니, 어찌 거듭 심히 애석해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깊이 살피고 헤아려 전하의 위엄을 조금 풀어 김익렴(金益廉)을 잡아다 심문하고 안숙을 외직으로 좌천시키라는 명을 거두어 준다면 그보다 큰 다행이 없을 것입니다. 재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이유상, 이정, 김익렴.

127) 비망기(備忘記): 임금의 명령이나 의견을 적어서 승지(承旨)에게 전하는 문서.

128) 상회례(相會禮): 처음으로 서로 만나는 예.

❖ 康熙 六年 丁未 三月 二十一日 乙未

- 掌令權斗樞啓請, 還收前執義李翻, 前掌令朴增輝·申命圭, 前持平俞櫨·李夏, 前獻納金澄遠竄, 前正言趙聖輔安置之命. …… 請還收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 答曰, 不允.

❖ 현종 8년(1667) 정미년 3월 21일(을미)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권두추(權斗樞)의 계
- 장령 권두추(權斗樞)가 아뢰어 청하기를, “진 집의 이숙(李翻), 전 장령 박증휘(朴增輝)·신명규(申命圭), 전 지평 유현(俞櫨)·이하(李夏), 전 헌납 김정(金澄)을 멀리 귀양 보내고, 정 정언 조성보(趙聖輔)를 안치(安置)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하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하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권두추.

❖ 康熙 六年 丁未 三月 二十一日 乙未

- 獻納李有相啓請, 還收前執義李翻, 前掌令朴增輝·申命圭, 前持平俞櫨·李夏, 前獻納金澄遠竄, 前正言趙聖輔安置之命. …… 請還收前正言安塾, 特除大靜縣監之命. …….

❖ 현종 8년(1667) 정미년 3월 21일(을미)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이유상(李有相)의 계
- 헌납 이유상(李有相)이 아뢰어 청하기를, “전 집의 이숙(李翻), 전 장령 박증휘(朴增輝)·신명규(申命圭), 전 지평 유현(俞櫨)·이하(李夏), 전 헌납 김정(金澄)을 멀리 귀양 보내고, 정 정언 조성보(趙聖輔)를 안치(安置)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전 정언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이유상.

❖ 康熙 六年 丁未 三月 二十二日 丙申

- 掌令權斗樞啓曰, 請還收前執義李翻, 前掌令朴增輝·申命圭, 前持平俞櫨·李夏, 前獻納金澄遠竄, 前正言趙聖輔安置之命. …… 請還收李敏求敍用之命. 請還收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請還收副護軍金益廉拿問之命. 【同前】答曰, 不允. 李敏采事依啓.

❖ 현종 8년(1667) 정미년 3월 22일(병신)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권두추(權斗樞)의 계
- 장령 권두추(權斗樞)가 아뢰기를, “전 집의 이숙(李翻), 전 장령 박증휘(朴增輝)·신명규(申命圭), 전 지평 유헌(俞櫨)·이하(李夏), 전 헌납 김정(金澄)을 멀리 귀양 보내고, 정 정언 조성보(趙聖輔)를 안치(安置)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이민구(李敏求)<sup>129)</sup>를 서용(敍用)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청컨대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청컨대 부호군 김익렴(金益廉)을 잡아다가 문초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앞과 같음】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 이민채(李敏采)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권두추, 이민채.

---

129) 이민구(李敏求): 이민채(李敏采)의 오기(誤記)임.

❖ 康熙 六年 丁未 三月 二十五日 己亥

- 掌令權斗樞啓曰, 請還收前執義李翻, 前掌令朴增輝·申命圭, 前持平兪櫨·李夏, 前獻納金澄, 遠竄, 前正言趙聖輔安置之命. …… 請還收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請還收副護軍金益廉拿問之命. 【同前】 …… 答曰, 不允. 下諭事依啓.

❖ 현종 8년(1667) 정미년 3월 25일(기해)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권두추(權斗樞)의 계
- 장령 권두추(權斗樞)가 아뢰기를, “청컨대, 전 집의 이숙(李翻), 전 장령 박증휘(朴增輝)·신명규(申命圭), 전 지평 유현(兪櫨)·이하(李夏), 전 헌납 김징(金澄)을 멀리 귀양 보내고, 정 정언 조성보(趙聖輔)를 안치(安置)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청컨대 부호군 김익렴(金益廉)을 잡아다가 문초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앞과 같음】 <하략>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 하유(下諭)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권두추.

❖ 康熙 六年 丁未 三月 二十六日 庚子

- 掌令權斗樞啓曰, 請還收前執義李翻, 前掌令朴增輝·申命圭, 前持平俞櫨·李夏, 前獻納金澄遠竄, 前正言趙聖輔安置之命. …… 請還收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 答曰, 不允.

❖ 현종 8년(1667) 정미년 3월 26일(경자)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권두추(權斗樞)의 계
- 장령 권두추(權斗樞)가 아뢰기를, “청컨대, 전 집의 이숙(李翻), 전 장령 박증휘(朴增輝)·신명규(申命圭), 전 지평 유현(俞櫨)·이하(李夏), 전 헌납 김징(金澄)을 멀리 귀양 보내고, 정 정언 조성보(趙聖輔)를 안치(安置)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하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권두추.

❖ 康熙 六年 丁未 三月 二十六日 庚子

- 大司諫姜栢年, 司諫洪柱三啓請, 還收前執義李翹, 前掌令朴增輝·申命圭, 前持平俞櫨·李夏, 前獻納金澄遠竄, 前正言趙聖輔安置之命. …… 前正言安塾, 言雖過激, 原其本情, 則不過身在臺閣, 欲所懷而已, 其言可用, 則採之, 不可, 則置之, 乃天地包容之道, 而聖明不諒, 遽爾摧折, 既加情外之罪名, 又除絕島之遠邑, 竊恐有損於涵弘之盛德, 而言路之塞, 亦非細慮, 請還收前正言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 答曰, 不允.

❖ 현종 8년(1667) 정미년 3월 26일(경자)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강백년(姜栢年) 등의 계

- 대사간 강백년(姜栢年)<sup>130</sup>, 사간 홍주삼(洪柱三)<sup>131</sup>이 아뢰어 청하기를, “전 집의 이숙(李翹), 전 장령 박증휘(朴增輝)·신명규(申命圭), 전 지평 유현(俞櫨)·이하(李夏), 전 헌납 김징(金澄)을 멀리 귀양 보내고, 정 정언 조성보(趙聖輔)를 안치(安置)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중략> 전 정언 안숙(安塾)은 말이 비록 과격했지만 본래 그 본뜻은 몸이 대각(臺閣)에 있어서 생각하는 바를 하고자 한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말이 쓸 만하면 채택하고, 불가하면 버리는 것이 곧 천지(天地)가 포용하는 도리입니다. 그런데 성명(聖明)께서 헤아리지 않고, 갑자기 배척하여 뜻밖의 죄명을 더하고 또 절도(絶島)의 먼 읍에 제수하였으니, 저르기 깊고 넓은 성덕(盛德)에 손해가 될까 걱정됩니다. 그리고 언로(言路)가 막히는 것은 또한 작은 염려가 아니니 청컨대, 전 정언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하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강백년, 홍주삼.

130) 강백년(1603~1681): 본관 진주(晉州). 자 숙구(叔久). 호 설봉(雪峯)·한계(閑溪)·청월헌(聽月軒). 시호 문정(文貞). 1627년(인조 5) 문과 급제. 승지, 정언, 장령 역임. 1690년(숙종 16) 영의정에 추증, 뒤에 청백리로 녹선(錄選)됨. 저서 《한계만록》, 《설봉집》.

131) 홍주삼(1621~1682): 본관 풍산(豊山). 자 정경(鼎卿). 호 월탄(月灘). 예천군수 역임.

❖ 康熙 六年 丁未 三月 二十七日 辛丑

- 行大司諫姜栢年, 獻納李東老啓, 請還收前執義李翹, 前掌令朴增輝·申命圭, 前持平俞樾·李夏, 前獻納金澄遠竄, 前正言趙聖輔安置之命. …… 請還收前正言安塾大靜縣監除授之命, …… 答曰, 不允.

❖ 現종 8년(1667) 정미년 3월 27일(신축)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강백년(姜栢年) 등의 계
- 행 대사간 강백년(姜栢年), 헌납 이동로(李東老)<sup>132</sup>가 아뢰었다. “청컨대 전 집의 이숙(李翹), 전 장령 박증휘(朴增輝)·신명규(申命圭), 전 지평 유헌(俞樾)·이하(李夏), 전 헌납 김징(金澄)을 멀리 귀양 보내고, 정 정언 조성보(趙聖輔)를 안치(安置)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전 정언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하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강백년, 이동로.

---

132) 이동로(1628~1683): 본관 전주(全州). 자 원룡(元龍). 1654년(효종 5) 문과 급제. 도승지, 평안도사, 홍주목사 역임.

❖ 康熙 六年 丁未 三月 二十七日 辛丑

- 掌令權斗樞啓曰, 請還收前執義李翻, 前掌令朴增輝·申命圭, 前持平俞櫨·李夏, 前獻納金澄遠竄, 前正言趙聖輔安置之命. …… 請還收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 【以上燼餘】

❖ 현종 8년(1667) 정미년 3월 27일(신축)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권두추(權斗樞) 등의 계
- 장령 권두추(權斗樞)가 아뢰기를, “청컨대 전 집의 이숙(李翻), 전 장령 박증휘(朴增輝)·신명규(申命圭), 전 지평 유현(俞櫨)·이하(李夏), 전 헌납 김정(金澄)을 멀리 귀양 보내고, 정 정언 조성보(趙聖輔)를 안치(安置)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하략>. 【이상은 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권두추.

❖ 康熙 六年 丁未 三月 二十八日 壬寅

- 持平李叔達啓曰, 請還收前執義李翻, 前掌令朴增輝·申命圭, 前持平俞櫨·李夏, 前獻納金登遠竄, 前正言趙聖輔安置之命. …… 請還收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 答曰, 不允.

❖ 현종 8년(1667) 정미년 3월 28일(임인)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이숙달(李叔達)의 계
- 지평 이숙달(李叔達)이 아뢰기를, “청컨대 전 집의 이숙(李翻), 전 장령 박증휘(朴增輝)·신명규(申命圭), 전 지평 유현(俞櫨)·이하(李夏), 전 헌납 김정(金澄)을 멀리 귀양 보내고, 정 정언 조성보(趙聖輔)를 안치(安置)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하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이숙달.

❖ 康熙 六年 丁未 三月 二十八日 壬寅

- 行大司諫姜栢年, 獻納李東老啓曰, 請還收前執義李翻, 前掌令朴增輝·申命圭, 前持平俞櫨·李夏, 前獻納金澄遠竄, 前正言趙聖輔安置之命. …… 請還收前正言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 【以上儘餘】

❖ 現종 8년(1667) 정미년 3월 28일(임인)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강백년(姜栢年) 등의 계
- 행 대사간 강백년(姜栢年), 헌납 이동로(李東老)가 아뢰기를, “청컨대 전 집의 이숙(李翻), 전 장령 박증휘(朴增輝)·신명규(申命圭), 전 지평 유헌(俞櫨)·이하(李夏), 전 헌납 김징(金澄)을 멀리 귀양 보내고, 정 정언 조성보(趙聖輔)를 안치(安置)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전 정언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하략>. 【이상은 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강백년, 이동로.

❖ 康熙 六年 丁未 四月 一日 乙巳

○ 院啓, 請還收黃濂敍用之命, 請還收前正言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

❖ 현종 8년(1667) 정미년 4월 1일(을사)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사간원의 계

○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황헌(黃濂)을 서용(敍用)하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청컨대 전 정언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황헌.

❖ 康熙 六年 丁未 四月 一日 乙巳

○ 府啓, 請還收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

❖ 현종 8년(1667) 정미년 4월 1일(을사)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칭컨대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 康熙 六年 丁未 四月 二日 丙午

○ 院啓, 請還收前正言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 答曰, 不允. 下諭事, 依啓.

❖ 현종 8년(1667) 정미년 4월 2일(병오)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사간원의 계

○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칭컨대 전 정언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下諭)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 康熙 六年 丁未 四月 二日 丙午

○ 府啓, 請還收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

❖ 현종 8년(1667) 정미년 4월 2일(병오)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칭컨대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 康熙 六年 丁未 四月 三日 丁未

- 今日引見時, 右議政鄭致和所啓, 今此舉動時, 大臣二員, 當爲隨駕, 且留都大臣, 亦須豫爲定奪, 何以爲之乎? …… 獻納李東老所啓, 請還收前正言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上曰, 不允.

❖ 현종 8년(1667) 정미년 4월 3일(정미)

- 인견 할 때 이동로(李東老) 등이 입시하여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함
- 금일 인견(引見) 할 때에 우의정 정치화(鄭致和)가 아뢰었다. “금번 거동 때 대신 2원(員)이 마땅히 어가를 따라야 하고 또, 유도대신(留都大臣)<sup>133)</sup>을 또한 미리 정탈(定奪)<sup>134)</sup>해야 하는데 어찌해야 합니까?” <중략> 헌납 이동로(李東老)가 아뢰었다. “청컨대, 전 정언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이동로, 정치화.

133) 유도대신(留都大臣): 임금의 거동 때에 서울에 머물러 있으면서 서울을 지키고 정무를 보는 대신.

134) 정탈(定奪): 신하들이 올린 논의나 계획 가운데 임금이 가부를 결정하여 그 가운데 한 가지만 택하던 일.

❖ 康熙 六年 丁未 四月 三日 丁未

○ 府啓, 請還收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以上朝報入錄】

❖ 현종 8년(1667) 정미년 4월 3일(정미)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칭컨대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하략>. 【이상은 조보의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 康熙 六年 丁未 四月 五日 己酉

○ 院啓, 請還收前正言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 答曰, 不允. 下諭事, 依啓.

❖ 현종 8년(1667) 정미년 4월 5일(기유)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사간원(司諫院)의 계

○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칭컨대 전 정언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下諭)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 康熙 六年 丁未 四月 五日 己酉

- 府啓, 請還收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 答曰, 不允. 【以上朝報】

❖ 현종 8년(1667) 정미년 4월 5일(기유)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사헌부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칭컨대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조보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 康熙 六年 丁未 四月 八日 壬子

- 行大司憲朴長遠, 掌令李叔達啓曰, 請還收前執義李翻, 前掌令朴增輝·申命圭, 前持平俞樾·李夏, 前獻納金澄遠竄, 前正言趙聖輔安置之命. …… 請還收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 答曰, 不允.

❖ 현종 8년(1667) 정미년 4월 8일(임자)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박장원(朴長遠) 등의 계
- 행 대사헌 박장원(朴長遠)<sup>135</sup>, 장령 이숙달(李叔達)이 아뢰기를, “청컨대 전 집의 이숙(李翻), 전 장령 박증휘(朴增輝)·신명규(申命圭), 전 지평 유헌(俞樾)·이하(李夏), 전 헌납 김징(金澄)을 멀리 귀양 보내고, 정 정언 조성보(趙聖輔)를 안치(安置)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하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박장원, 이숙달.

---

135) 박장원(1612~1671): 본관 고령. 자 중구(仲久). 호 구당(久堂)·습천(隰川). 시호 문효(文孝). 1636년 (인조 14) 문과 급제. 이조 판서, 대사헌, 개성부 유수 역임. 저서 《구당집》.

❖ 康熙 六年 丁未 四月 八日 壬子

- 行大司諫姜栢年, 獻納李東老啓曰, 請還收前執義李翻, 前掌令朴增輝·申命圭, 前持平俞櫨·李夏, 前獻納金澄遠竄, 前正言趙聖輔安置之命. …… 請還收前正言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 答曰, 不允.

❖ 현종 8년(1667) 정미년 4월 8일(임자)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강백년(姜栢年) 등의 계
- 행 대사간 강백년(姜栢年), 헌납 이동로(李東老)가 아뢰기를, “청컨대 전 집의 이숙(李翻), 전 장령 박증휘(朴增輝)·신명규(申命圭), 전 지평 유현(俞櫨)·이하(李夏), 전 헌납 김징(金澄)을 멀리 귀양 보내고, 정 정언 조성보(趙聖輔)를 안치(安置)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전 정언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하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강백년, 이동로.

❖ 康熙 六年 丁未 四月 九日 癸丑

- 行大司憲朴長遠, 掌令李叔達啓曰, 請還收前執義李翻, 前掌令朴增輝·申命圭, 前持平俞櫨·李夏, 前獻納金澄遠竄, 前正言趙聖輔安置之命. …… 請還收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 答曰, 不允. 下諭事, 依啓.

❖ 현종 8년(1667) 정미년 4월 9일(계축)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박장원(朴長遠) 등의 계

- 행 대사헌 박장원(朴長遠), 장령 이숙달(李叔達)이 아뢰기를, “청컨대 전 집의 이숙(李翻), 전 장령 박증휘(朴增輝)·신명규(申命圭), 전 지평 유현(俞櫨)·이하(李夏), 전 헌납 김징(金澄)을 멀리 귀양 보내고, 정 정언 조성보(趙聖輔)를 안치(安置)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하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下諭)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박장원, 이숙달.

❖ 康熙 六年 丁未 四月 十日 甲寅

○ 院啓, 請還收前正言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答曰, 不允.

❖ 현종 8년(1667) 정미년 4월 10일(갑인)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사간원의 계

○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칭컨대 전 정언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 康熙 六年 丁未 四月 十日 甲寅

○ 府啓, 請還收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

❖ 현종 8년(1667) 정미년 4월 10일(갑인)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사헌부(司憲府)의 계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칭컨대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 康熙 六年 丁未 四月 十一日 乙卯

○ 府·院前啓, 還收前正言安塾特除大靜縣監之命事. 【同上】 入啓. 答曰, 不允.

❖ 현종 8년(1667) 정미년 4월 11일(을묘)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사헌부 등의 입계

○ 사헌부와 사간원이 앞서 아뢰었던, 전 정언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달라는 일을 【위와 같음】 입계(入啓)<sup>136)</sup>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

136) 입계(入啓): 임금에게 아뢰는 글을 올림.

❖ 康熙 六年 丁未 四月 十二日 丙辰

○ 府·院前啓, 還收前正言安塾特除大靜縣監之命事. 【同上】 入啓. 答曰, 不允.

❖ 현종 8년(1667) 정미년 4월 12일(병진)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사헌부 등의 입계

○ 사헌부와 사간원이 앞서 아뢰었던, 전 정언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달라는 일을 【위와 같음】 입계(入啓)하였다.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 康熙 六年 丁未 四月 十三日 丁巳

○ 府·院前啓, 請還收前正言安塾, 特除大靜縣監之命事. 入啓. 答曰, 不允.

❖ 현종 8년(1667) 정미년 4월 13일(정사)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사헌부 등의 입계

○ 사헌부와 사간원이 앞서 아뢰었던, 전 정언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달라는 일을 입계(入啓)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 康熙 六年 丁未 四月 十七日 辛酉

- 行大司諫姜栢年, 正言尹摺啓曰, 請還收前執義李翻, 前掌令朴增輝·申命圭, 前持平俞櫨·李夏, 前獻納金澄遠竄, 前正言趙聖輔安置之命. …… 請還收前正言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同上】答<曰>, 不允.

❖ 現宗 8年(1667) 정미년 4월 17일(신유)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강백년(姜栢年) 등의 계
- 행 대사간 강백년(姜栢年), 정언 윤진(尹摺)<sup>137</sup>이 아뢰기를, “청컨대 전 집의 이숙(李翻), 전 장령 박증휘(朴增輝)·신명규(申命圭), 전 지평 유현(俞櫨)·이하(李夏), 전 헌납 김징(金澄)을 멀리 귀양 보내고, 전 정언 조성보(趙聖輔)를 안치(安置)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전 정언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위와 같음】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강백년, 윤진.

---

137) 윤진(1631~1698): 본관 과평(坡平). 자 자경(子敬). 호 덕포(德浦). 1666년(현종 7) 문과 급제. 예조 참의, 대사헌 역임. 저서 《덕포유고》.

❖ 康熙 六年 丁未 四月 十七日 辛酉

- 行大司憲朴世遠, 持平李世長啓曰, 請還收前執義李翻, 前掌令朴增輝·申命圭, 前持平俞樾·李夏, 前獻納金澄遠竄, 前正言趙聖輔安置之命. …… 請還收前正言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同上】 …… 答曰, 不允. 下諭事, 依啓.

❖ 현종 8년(1667) 정미년 4월 17일(신유)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박장원(朴長遠)<sup>138)</sup> 등의 계

- 행 대사헌 박장원(朴長遠), 지평 이세장(李世長)<sup>139)</sup>이 아뢰기를, “청컨대 전 집의 이숙(李翻), 전 장령 박증휘(朴增輝)·신명규(申命圭), 전 지평 유헌(俞樾)·이하(李夏), 전 헌납 김징(金澄)을 멀리 귀양 보내고, 전 정언 조성보(趙聖輔)를 안치(安置)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전 정언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위와 같음】 <하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下諭)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박장원, 이세장.

138) 박장원(朴長遠): 원문에는 박세원(朴世遠)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이므로 교열자가 바로 잡음.

139) 이세장(1628~1668): 본관 경주(慶州). 자 도원(道遠). 1662년(현종 3) 문과 급제. 사간원 정언, 예조 좌랑, 병조좌랑 역임.

❖ 康熙 六年 丁未 四月 十八日 壬戌

- 行大司憲朴長遠, 持平李世長啓曰, 請還收前執義李翻, 前掌令朴增輝·申命圭, 前持平俞櫨·李夏, 前獻納金澄遠竄, 前正言趙聖輔安置之命. …… 請還收前正言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

❖ 현종 8년(1667) 정미년 4월 18일(임술)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박장원(朴長遠) 등의 계
- 행 대사헌 박장원(朴長遠), 지평 이세장(李世長)이 아뢰기를, “청컨대 전 집의 이숙(李翻), 전 장령 박증휘(朴增輝)·신명규(申命圭), 전 지평 유현(俞櫨)·이하(李夏), 전 헌납 김징(金澄)을 멀리 귀양 보내고, 전 정언 조성보(趙聖輔)를 안치(安置)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전 정언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박장원, 이세장.

❖ 康熙 六年 丁未 四月 十八日 壬戌

- 行大司諫姜栢年, 正言尹摺啓曰, 請還收前執義李翹, 前掌令朴增輝·申命圭, 前持平俞樾·李夏, 前獻納金澄遠竄, 前正言趙聖輔安置之命. …… 請還收前正言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同上】 答曰, 不允.

❖ 현종 8년(1667) 정미년 4월 18일(임술)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강백년(姜栢年) 등의 계
- 행 대사간 강백년(姜栢年), 정언 윤진(尹摺)이 아뢰기를, “청컨대 전 집의 이숙(李翹), 전 장령 박증휘(朴增輝)·신명규(申命圭), 전 지평 유현(俞樾)·이하(李夏), 전 헌납 김징(金澄)을 멀리 귀양 보내고, 전 정언 조성보(趙聖輔)를 안치(安置)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전 정언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위와 같음】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강백년, 윤진.

❖ 康熙 六年 丁未 四月 十九日 癸亥

- 行大司憲朴長遠, 持平李世長啓曰, 請還收前執義李翻, 前掌令朴增輝·申命圭, 前持平俞櫨·李夏, 前獻納金澄遠竄, 前正言趙聖輔安置之命. …… 請還收前正言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 答曰, 不允.

❖ 현종 8년(1667) 정미년 4월 19일(계해)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박장원(朴長遠) 등의 계
- 행 대사헌 박장원(朴長遠), 지평 이세장(李世長)이 아뢰기를, “청컨대 전 집의 이숙(李翻), 전 장령 박증휘(朴增輝)·신명규(申命圭), 전 지평 유현(俞櫨)·이하(李夏), 전 헌납 김징(金澄)을 멀리 귀양 보내고, 전 정언 조성보(趙聖輔)를 안치(安置)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전 정언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하략>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박장원, 이세장.

❖ 康熙 六年 丁未 四月 十九日 癸亥

- 行大司諫姜栢年, 正言尹摺啓曰, 請還收前執義李翹, 前掌令朴增輝·申命圭, 前持平俞樾·李夏, 前獻納金澄遠竄, 前正言趙聖輔安置之命. …… 請還收前正言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同上】 …….

❖ 현종 8년(1667) 정미년 4월 19일(계해)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강백년(姜栢年) 등의 계
- 행 대사간 강백년(姜栢年), 정언 윤진(尹摺)이 아뢰기를, “청컨대 전 집의 이숙(李翹), 전 장령 박증휘(朴增輝)·신명규(申命圭), 전 지평 유현(俞樾)·이하(李夏), 전 헌납 김징(金澄)을 멀리 귀양 보내고, 전 정언 조성보(趙聖輔)를 안치(安置)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전 정언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위와 같음】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강백년, 윤진.

❖ 康熙 六年 丁未 四月 二十日 甲子

- 行大司憲朴長遠, 持平李世長啓曰, 請還收前執義李翻, 前掌令朴增輝·申命圭, 前持平俞櫨·李夏, 前獻納金澄遠竄, 前正言趙聖輔安置之命. …… 請還收前正言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 【同上】 答曰, 不允.

❖ 현종 8년(1667) 정미년 4월 20일(갑자)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박장원(朴長遠) 등의 계
- 행 대사헌 박장원(朴長遠), 지평 이세장(李世長)이 아뢰기를, “청컨대 전 집의 이숙(李翻), 전 장령 박증휘(朴增輝)·신명규(申命圭), 전 지평 유현(俞櫨)·이하(李夏), 전 헌납 김징(金澄)을 멀리 귀양 보내고, 전 정언 조성보(趙聖輔)를 안치(安置)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전 정언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하략> 【위와 같음】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박장원, 이세장.

❖ 康熙 六年 丁未 四月 二十日 甲子

- 行大司諫姜栢年, 正言尹摺啓曰, 請還收前執義李翹, 前掌令朴增輝·申命圭, 前持平俞櫨·李夏, 前獻納金澄遠竄, 前正言趙聖輔安置之命. …… 請還收前正言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同上 答曰, 不允.

❖ 현종 8년(1667) 정미년 4월 20일(갑자)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강백년(姜栢年) 등의 계
- 행 대사간 강백년(姜栢年), 정언 윤진(尹摺)이 아뢰기를, “청컨대 전 집의 이숙(李翹), 전 장령 박증휘(朴增輝)·신명규(申命圭), 전 지평 유현(俞櫨)·이하(李夏), 전 헌납 김징(金澄)을 멀리 귀양 보내고, 전 정언 조성보(趙聖輔)를 안치(安置)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전 정언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위와 같음】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강백년, 윤진.

❖ 康熙 六年 丁未 四月 二十一日 乙丑

- 持平李世長啓曰, 請還收前執義李翻, 前掌令朴增輝·申命圭, 前持平俞櫨·李夏, 前獻納金澄遠竄, 前正言趙聖輔安置之命. …… 請還收前正言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同前】 答曰, 不允.

❖ 현종 8년(1667) 정미년 4월 21일(을축)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이세장(李世長)의 계
- 지평 이세장(李世長)이 아뢰기를, “청컨대 전 집의 이숙(李翻), 전 장령 박증휘(朴增輝)·신명규(申命圭), 전 지평 유현(俞櫨)·이하(李夏), 전 헌납 김징(金澄)을 멀리 귀양 보내고, 전 정언 조성보(趙聖輔)를 안치(安置)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전 정언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앞과 같음】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이세장.

❖ 康熙 六年 丁未 四月 二十一日 乙丑

- 行大司諫姜栢年, 正言尹摺啓曰, 請還收前執義李翹, 前掌令朴增輝·申命圭, 前持平俞樾·李夏, 前獻納金澄遠竄, 前正言趙聖輔安置之命. …… 請還收前正言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同前】 答曰, 不允.

❖ 현종 8년(1667) 정미년 4월 21일(을축)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강백년(姜栢年) 등의 계
- 행 대사간 강백년(姜栢年), 정언 윤진(尹摺)이 아뢰기를, “청컨대 전 집의 이숙(李翹), 전 장령 박증휘(朴增輝)·신명규(申命圭), 전 지평 유현(俞樾)·이하(李夏), 전 헌납 김징(金澄)을 멀리 귀양 보내고, 전 정언 조성보(趙聖輔)를 안치(安置)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전 정언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앞과 같음】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강백년, 윤진.

❖ 康熙 六年 丁未 四月 二十二日 丙寅

○ 院前啓, 請還收前正言安塾特除大靜縣監之命. 答曰, 不允.

❖ 현종 8년(1667) 정미년 4월 22일(병인)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사간원의 전계

○ 사간원의 전계(前啓)<sup>140)</sup>에, “칭컨대 전 정언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

140) 전계(前啓): 전날에 임금에게 올린 글.

❖ 康熙 六年 丁未 四月 二十二日 丙寅

- 府前啓, 請還收前正言安塾特除大靜縣監之命. 【同前】 …… 答曰, 不允. 下諭事, 依啓. 【儘餘】

❖ 현종 8년(1667) 정미년 4월 22일(병인)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사헌부의 전계
- 사헌부의 전계(前啓)에, “청컨대, 전 정언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앞과 같음】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下諭)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 康熙 六年 丁未 四月 二十三日 丁卯

- 行大司憲朴長遠, 持平李世長啓曰, 請還收前執義李翻, 前掌令朴增輝·申命圭, 前持平俞櫨·李夏, 前獻納金澄遠竄, 前正言趙聖輔安置之命. …… 請還收前正言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同前】 答曰, 不允.

❖ 현종 8년(1667) 정미년 4월 23일(정묘)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박장원(朴長遠) 등의 계
- 행 대사헌 박장원(朴長遠), 지평 이세장(李世長)이 아뢰기를, “청컨대 전 집의 이숙(李翻), 전 장령 박증휘(朴增輝)·신명규(申命圭), 전 지평 유현(俞櫨)·이하(李夏), 전 헌납 김징(金澄)을 멀리 귀양 보내고, 전 정언 조성보(趙聖輔)를 안치(安置)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전 정언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앞과 같음】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박장원, 이세장.

❖ 康熙 六年 丁未 四月 二十三日 丁卯

- 行大司諫姜栢年, 正言尹摺啓曰, 請還收前執義李翹, 前掌令朴增輝·申命圭, 前持平俞樾·李夏, 前獻納金澄遠竄, 前正言趙聖輔安置之命. …… 請還收前正言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同前】 答曰, 不允.

❖ 현종 8년(1667) 정미년 4월 23일(정묘)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강백년(姜栢年) 등의 계
- 행 대사간 강백년(姜栢年), 정언 윤진(尹摺)이 아뢰기를, “청컨대 전 집의 이숙(李翹), 전 장령 박증휘(朴增輝)·신명규(申命圭), 전 지평 유현(俞樾)·이하(李夏), 전 헌납 김징(金澄)을 멀리 귀양 보내고, 전 정언 조성보(趙聖輔)를 안치(安置)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전 정언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앞과 같음】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강백년, 윤진.

❖ 康熙 六年 丁未 四月 二十三日 丁卯

- 上御溫泉行宮, 右議政引見. 入侍, 右議政鄭致和, 兵曹判書金佐明, 右副承旨沈梓, 假注書朴紳, 記事官任相元·申晷, 承召進入, 判府事洪命夏. …… 上曰, 馬隊禁軍馬, 孰爲勝耶? 【缺】曰, 前則禁軍馬, 頗好, 而今爲一般. 佐明曰, 今亦稍勝爾. □□曰, 禁軍自備馬, 減其取才, 誰不欲自備, 而國無良馬, 【數字缺】得云. 濟州, 素稱冀北, 而馬多盜失, 生徵牧子, 率【數字缺】充, 故如是. 諸島牧場水草茂盛處, 許耕而收稅, 【數字缺】財貨, 則比舊倍蓰, 而馬不如初, 盡是駑駘矣. …….

❖ 현종 8년(1667) 정미년 4월 23일(정묘)

- 온천행궁(溫泉行宮)에서 우의정을 인견할 때 김좌명(金佐明) 등이 입시(入侍)하여 제도(諸島) 목장의 노둔해진 말 등에 관하여 논의함
- 임금이 온천행궁(溫泉行宮)에 나아가서 우의정을 인견하는 자리이다. 입시(入侍)한 이는 우의정 정치화(鄭致和), 병조판서 김좌명(金佐明), 우부승지 심재(沈梓), 가주서 박신(朴紳), 기사관 임상원(任相元)·신정(申晷)이고, 부름을 받들고 이어서 입시한 이는 판부사 홍명하(洪命夏)이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마대(馬隊)와 금군(禁軍)의 말은 어느 것이 더 나은가?” 【빠짐】이 말하기를, “전에는 금군의 말이 아주 좋았지만 지금은 똑같아졌습니다.”라고 하였다. 김좌명(金佐明)이 말하기를, “지금은 또한 조금 나은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이 말하기를, “금군은 스스로 말을 갖추면 그 취재(取才)를 감하여 주니, 누가 스스로 말을 갖추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나라에 좋은 말이 없으니 【몇 글자가 빠짐】이라고 합니다. 제주(濟州)는 평소 기북(冀北)<sup>141</sup>이라 일컬어지지만 도둑을 맞아 잃어버리는 말들이 많아 목자(牧子)에게 생징(生徵)<sup>142</sup>하여 【몇 글자가 빠짐】충당을 하니, 때문에 이와 같이 된 것입니다. 여러 섬의 목장은 수초(水草)가 무성한 곳에 경작을 허가하여 세금을 거두어 【몇 글자가 빠짐】한 재화는 예전에 비해 여러 갑절이 되었지만 말은 처음만 같지 못하게 되어 모두가 느리고 둔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 기북, 생징, 김좌명.

141) 기북(冀北): 중국 기주(冀州)의 북쪽으로, 명마(名馬)가 많이 나는 곳으로 유명함.

142) 생징(生徵): 세금을 물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세금을 거두는 일. 백징(白徵).

❖ 康熙 六年 丁未 四月 二十四日 戊辰

- 行大司憲朴長遠, 持平李世長啓曰, 當初李翻等之被罪竄逐, 實是聖朝失當之舉, 故臣等, 力請還收, 亟蒙準許者, 已閱月矣. …… 請還收前正言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同前】 答曰, 不允.

❖ 현종 8년(1667) 정미년 4월 24일(무진)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박장원(朴長遠) 등의 계

- 행 대사헌 박장원(朴長遠), 지평 이세장(李世長)이 아뢰기를, “당초 이숙(李翻) 등이 죄를 입어 먼 곳으로 귀양 보내진 것은 실로 성조(聖朝)의 도리에 맞지 않는 조치입니다. 때문에 신 등이 명의 환수를 빨리 준허(準許)해 주기를 극력 청한 것이 이미 한 달이 넘었습니다. <중략> 청컨대 전 정언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앞과 같음】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박장원, 이세장.

❖ 康熙 六年 丁未 四月 二十四日 戊辰

- 行大司諫姜栢年, 正言尹摺啓曰, 李翻等竄逐還收之請, 臣等苦口力爭, 已至累月, …… 請還收前正言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同前】 答曰, 不允.

❖ 현종 8년(1667) 정미년 4월 24일(무진)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강백년(姜栢年) 등의 계
- 행 대사간 강백년(姜栢年), 정언 윤진(尹摺)이 아뢰기를, “이숙(李翻) 등을 먼 곳으로 귀양 보내라는 명을 거두어 달라는 청을 신 등이 입이 닳도록 극력 간쟁한 것이 이미 여러 달 됐습니다. <중략> 청컨대 전 정언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앞과 같음】 답하기를, “윤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강백년, 윤진.

❖ 康熙 六年 丁未 四月 二十六日 庚午

- 行大司憲朴長遠, 持平李世長啓曰, 當初李翻等之竄逐, 實是聖朝失當之舉, 故臣等之論請還收, 閱月于茲矣. …… 請還收前正言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答曰, 不允.

❖ 현종 8년(1667) 정미년 4월 26일(경오)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박장원(朴長遠) 등의 계

- 행 대사헌 박장원(朴長遠), 지평 이세장(李世長)이 아뢰기를, “당초 이숙(李翻) 등이 죄를 입어 먼 곳으로 귀양 보내진 것은 실로 성조(聖朝)의 도리에 맞지 않는 조치입니다. 신 등이 명의 환수를 논하여 청한 것이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중략> 청컨대 전 정언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박장원, 이세장.

❖ 康熙 六年 丁未 四月 二十六日 庚午

- 行大司諫姜栢年, 正言尹摺啓曰, 臣等, 將李翻等事, 論列累月, 誠不格天, 尙未蒙一俞 …… 請還收前正言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同前】 答曰, 不允.

❖ 현종 8년(1667) 정미년 4월 26일(경오)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강백년(姜栢年) 등의 계
- 행 대사간 강백년(姜栢年), 정언 윤진(尹摺)이 아뢰기를, “신 등이 이숙(李翻) 등의 일을 가지고 논열(論列)한 것이 여러 달인데, 정성이 하늘에 이르지 않아 아직까지 한 번의 윤음도 받지 못했습니다. <중략> 청컨대 전 정언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앞과 같음】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강백년, 윤진.

❖ 康熙 六年 丁未 四月 二十七日 辛未

- 行大司憲朴長遠, 持平李世長啓曰, 請前執義李翻, 前掌令朴增輝·申命圭, 前持平俞櫨·李夏, 前獻納金澄, 前正言趙聖輔, 亟命放還. …… 請還收前正言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同前】答曰, 不允.

❖ 현종 8년(1667) 정미년 4월 27일(신미)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박장원(朴長遠) 등의 계
- 행 대사헌 박장원(朴長遠), 지평 이세장(李世長)이 아뢰기를, “청컨대 전 집의 이숙(李翻), 전 장령 박증휘(朴增輝)·신명규(申命圭), 전 지평 유헌(俞櫨)·이하(李夏), 전 헌납 김징(金澄), 전 정언 조성보(趙聖輔)를 방환하라고 빨리 명을 내려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전 정언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앞과 같음】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박장원, 이세장.

❖ 康熙 六年 丁未 四月 二十七日 辛未

- 行大司諫姜栢年, 正言尹摺啓曰, 請前執義李翻, 前掌令朴增輝·申命圭, 前持平俞櫨·李夏, 前獻納金澄, 前正言趙聖輔, 亟命放還. …… 請還收前正言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同前】答曰, 不允.

❖ 현종 8년(1667) 정미년 4월 27일(신미)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강백년(姜栢年) 등의 계
- 행 대사간 강백년(姜栢年), 정언 윤진(尹摺)이 아뢰기를, “청컨대 전 집의 이숙(李翻), 전 장령 박증휘(朴增輝)·신명규(申命圭), 전 지평 유현(俞櫨)·이하(李夏), 전 헌납 김징(金澄), 전 정언 조성보(趙聖輔)를 방환하라고 빨리 명을 내려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전 정언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앞과 같음】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강백년, 윤진.

❖ 康熙 六年 丁未 四月 二十八日 壬申

- 行大司憲朴長遠, 持平李世長啓曰, 請前執義李翻, 前掌令朴增輝·申命圭, 前持平俞櫨·李夏, 前獻納金澄, 前正言趙聖輔, 亟命放還. …… 請還收前正言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同前】答曰, 勿煩.

❖ 현종 8년(1667) 정미년 4월 28일(임신)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박장원(朴長遠) 등의 계
- 행 대사헌 박장원(朴長遠), 지평 이세장(李世長)이 아뢰기를, “청컨대 전 집의 이숙(李翻), 전 장령 박증휘(朴增輝)·신명규(申命圭), 전 지평 유헌(俞櫨)·이하(李夏), 전 헌납 김징(金澄), 전 정언 조성보(趙聖輔)를 방환하라고 빨리 명을 내려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전 정언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앞과 같음】 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박장원, 이세장.

❖ 康熙 六年 丁未 四月 二十八日 壬申

- 行大司諫姜栢年, 正言尹摺啓曰, 請前執義李翻, 前掌令朴增輝·申命圭, 前持平俞櫨·李夏, 前獻納金澄, 前正言趙聖輔, 亟命放還. …… 請還收前正言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同上】答曰, 不允.

❖ 현종 8년(1667) 정미년 4월 28일(임신)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강백년(姜栢年) 등의 계
- 행 대사간 강백년(姜栢年), 정언 윤진(尹摺)이 아뢰기를, “청컨대 전 집의 이숙(李翻), 전 장령 박증휘(朴增輝)·신명규(申命圭), 전 지평 유현(俞櫨)·이하(李夏), 전 헌납 김징(金澄), 전 정언 조성보(趙聖輔)를 방환하라고 빨리 명을 내려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전 정언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위와 같음】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강백년, 윤진.

❖ 康熙 六年 丁未 四月 二十九日 癸酉

○ 傳于張善澂曰, 全羅監司處分付, 大靜縣監安塾到任日子, 使之馳啓.

❖ 현종 8년(1667) 정미년 4월 29일(계유)

□ 전라감사에게 분부하여 안숙(安塾)의 도입 일자를 치계하라는 전교

○ 장선징(張善澂)에게 전교하기를, “전라감사에게 분부(分付)하여 대정현감(大靜縣監) 안숙(安塾)의 도입 일자를 치계(馳啓)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대정현감, 안숙, 장선징.

❖ 康熙 六年 丁未 四月 二十九日 癸酉

- 入診時, 戶曹判書金壽興所啓, 上年則九十以上老人, 有衣資題給之命矣. 今番亦依此題給乎? 上曰, 依爲之. …… 大司憲朴長遠所啓, 請還收前正言安塾特除大靜縣監之命事. 上曰, 不允. 補外之事, 匪今始有, 且與竄逐有異, 而近來罕有此舉, 故以爲異事, 累月爭執, 此不過爲渠從容治裝之地. 故爲如是持久, 事甚猥越矣. 又所啓, 前正言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不可不還收之請, 實是公議所在, 故臣連啓於榻前, 此非爲安塾地, 可見輿情之鬱抑, 而自上特下嚴教, 臣何敢晏然? 請命遞斥臣職. 上曰, 勿辭, 退待勿論<sup>校</sup>[退待物論].

❖ 현종 8년(1667) 정미년 4월 29일(계유)

□ 입진할 때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한 명의 환수 등에 대하여 박장원(朴長遠) 등과 논의함

- 입진(入診)<sup>143</sup>할 때, 호조판서 김수흥(金壽興)이 아뢰었다. “작년에는 90세 이상 노인에게 옷감을 제급(題給)<sup>144</sup>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에 따라 제급합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라고 하였다. <중략> 대사헌 박장원(朴長遠)이 아뢰었다. “청컨대 전 정언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외직(外職)으로 좌천시켜 징계하는 일은 지금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또한 멀리 귀양 보내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하지만 근래 이러한 조치가 드물게 있었기 때문에 괴이한 일이라 여겨 여러 달을 간쟁하며 의견을 고집하고 있다. 이 조치는 그가 조용히 행장을 꾸리게 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때문에 이와 같이 오래도록 지속하는 것은 사세가 심히 외람되어 분수에 맞지 않게 지나친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었다. “전 정언 안숙을 대정현감으로 특제하는 명을 거두어 달라는 청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실로 이것이 공의(公議)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이榻前(榻前)에서 연이어 아뢰는 것은 이것이 안숙의 처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론의 억울함을 알면서도 임금께서 특별히 엄한 가르침을 내리시니, 신이 어찌 감히 편안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신의 직임을 체차(遞差)하도록 명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직

143) 입진(入診): 내의원(內醫院)에서 매달 여섯 차례씩 임금을 진찰하는 것.

144) 제급(題給): 관에서 증명서와 함께 물품(物品)을 내어주는 것.

하지 말고, 물러가 여론을 기다려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대정현감, 안숙, 박장원, 김수흥.

❖ 康熙 六年 丁未 閏四月 一日 乙亥

- 政院啓曰, 濟州牧使洪宇亮拿來事, 命下矣. 依近例, 新牧使交代後, 拿來之意, 敢啓. 傳曰, 知道. 【以上燼餘】

❖ 現宗 8年(1667) 정미년 윤4월 1일(을해)

- 제주목사(濟州牧使) 홍우량(洪宇亮)<sup>145</sup>을 새로운 목사와 교대한 뒤에 잡아오게 할 것을 청하는 승정원의 계
-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홍우량(洪宇亮)을 잡아오라고 명하였습니다. 근래의 전례에 따라 새로운 목사와 교대한 뒤에 잡아올 것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목사, 홍우량.

---

145) 홍우량(1608~?): 본관 남양(南陽). 자 희숙(熙叔). 1637년(인조 15) 무과 급제. 병절교위선전관, 도총도사, 경상좌수사 역임. 제주목사로 1665년(현종 6) 11월에 도입, 1667년(현종 8) 5월 교체.

❖ 康熙 六年 丁未 閏四月 一日 乙亥

○ 院前啓. 請還收前正言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同前】 入啓.

❖ 현종 8년(1667) 정미년 윤4월 1일(을해)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사간원의 전계
- 사간원의 전계(前啓)에, “청컨대 전 정언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한 것을 【앞과 같음】 입계(入啓)<sup>146)</sup>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

146) 입계(入啓): 임금께 구두로 아뢰거나 서장(書狀)으로 아뢰는 것. 계장(啓狀)을 임금에게 올림.

❖ 康熙 六年 丁未 閏四月 一日 乙亥

○ 府前啓. 請還收前正言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同前】 入啓. 答府·院曰, 毋庸瀆擾.

❖ 현종 8년(1667) 정미년 윤4월 1일(을해)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사헌부의 전계

○ 사헌부의 전계(前啓)에, “청컨대, 전 정언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한 것을 【앞과 같음】 입계(入啓)하였다. 사헌부와 사간원에 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 康熙 六年 丁未 閏四月 二日 丙子

- 行大司憲朴長遠, 掌令蘇斗山, 持平李世長啓曰, 請前執義李翻, 前掌令朴增輝·申命圭, 前持平俞櫨·李夏, 前獻納金澄, 前正言趙聖輔等, 亟命放還. …… 請還收前正言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同前】 答曰, 知道.

❖ 현종 8년(1667) 정미년 윤4월 2일(병자)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박장원(朴長遠) 등의 계

- 행 대사헌 박장원(朴長遠), 장령 소두산(蘇斗山)<sup>147)</sup>, 지평 이세장(李世長)이 아뢰기를, “청컨대, 전 집의 이숙(李翻), 전 장령 박증휘(朴增輝)·신명규(申命圭), 전 지평 유현(俞櫨)·이하(李夏), 전 헌납 김징(金澄), 전 정언 조성보(趙聖輔) 등을 방환하라고 빨리 명을 내려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전 정언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앞과 같음】 답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박장원, 소두산, 이세장.

147) 소두산(1627~1693): 본관 진주(晉州). 자 망여(望如). 호 월주(月洲). 1660년(현종 1) 문과 급제. 사간원정언, 사헌부지평, 나주목사 역임. 저서 《월주집》.

❖ 康熙 六年 丁未 閏四月 二日 丙子

- 行大司諫姜栢年, 正言尹摺啓曰, 請前執義李翻, 前掌令朴增輝·申命圭, 前持平俞櫨·李夏, 前獻納金澄, 前正言趙聖輔等, 亟命放還. …… 請還收前正言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同前】答曰, 不允.

❖ 현종 8년(1667) 정미년 윤4월 2일(병자)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강백년(姜栢年) 등의 계
- 행 대사간 강백년(姜栢年), 정언 윤진(尹摺)이 아뢰기를, “청컨대 전 집의 이숙(李翻), 전 장령 박증휘(朴增輝)·신명규(申命圭), 전 지평 유현(俞櫨)·이하(李夏), 전 헌납 김징(金澄), 전 정언 조성보(趙聖輔) 등을 방환하라고 빨리 명을 내려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전 정언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앞과 같음】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강백년, 윤진.

❖ 康熙 六年 丁未 閏四月 三日 丁丑

- 行大司憲朴長遠, 掌令蘇斗山, 持平李世長啓曰, 請前執義李翻, 前掌令朴增輝·申命圭, 前持平俞櫨·李夏, 前獻納金澄, 前正言趙聖輔等, 亟命放還. …… 請還收前正言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同前】 答曰, 不允.

❖ 현종 8년(1667) 정미년 윤4월 3일(정축)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박장원(朴長遠) 등의 계
- 행 대사헌 박장원(朴長遠), 장령 소두산(蘇斗山), 지평 이세장(李世長)이 아뢰기를, “청컨대 전 집의 이숙(李翻), 전 장령 박증휘(朴增輝)·신명규(申命圭), 전 지평 유현(俞櫨)·이하(李夏), 전 헌납 김징(金澄), 전 정언 조성보(趙聖輔) 등을 방환하라고 빨리 명을 내려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전 정언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앞과 같음】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박장원, 소두산, 이세장.

❖ 康熙 六年 丁未 閏四月 三日 丁丑

- 行大司諫姜栢年, 正言尹摺啓曰, 請前執義李翻, 前掌令朴增輝·申命圭, 前持平俞櫨·李夏, 前獻納金澄, 前正言趙聖輔等, 亟命放還. …… 請〈還收〉前正言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同前】答曰, 不允.

❖ 현종 8년(1667) 정미년 윤4월 3일(정축)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강백년(姜栢年) 등의 계
- 행 대사간 강백년(姜栢年), 정언 윤진(尹摺)이 아뢰기를, “청컨대 전 집의 이숙(李翻), 전 장령 박증휘(朴增輝)·신명규(申命圭), 전 지평 유현(俞櫨)·이하(李夏), 전 헌납 김징(金澄), 전 정언 조성보(趙聖輔) 등을 방환하라고 빨리 명을 내려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전 정언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앞과 같음】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강백년, 윤진.

❖ 康熙 六年 丁未 閏四月 六日 庚辰

- 行大司憲朴長遠, 掌令蘇斗山, 持平李世長啓曰, 請前執義李翻, 前掌令朴增輝·申命圭, 前持平俞櫨·李夏, 前獻納金澄, 前正言趙聖輔等, 亟命放還. …… 請前正言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還收事. 答曰, 不允.

❖ 현종 8년(1667) 정미년 윤4월 6일(경진)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박장원(朴長遠) 등의 계
- 행 대사헌 박장원(朴長遠), 장령 소두산(蘇斗山), 지평 이세장(李世長)이 아뢰기를, “청컨대 전 집의 이숙(李翻), 전 장령 박증휘(朴增輝)·신명규(申命圭), 전 지평 유현(俞櫨)·이하(李夏), 전 헌납 김징(金澄), 정 정언 조성보(趙聖輔) 등을 방환하라고 빨리 명을 내려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전 정언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박장원, 소두산, 이세장.

❖ 康熙 六年 丁未 閏四月 八日 壬午

- 吏批啓曰, 濟州牧使洪宇亮, 【數字缺】今當以文官差出, 而海外遐遠之地, 有異他邑, 不可不擇送廉簡有聲績人, 而可擬之人, 絕少, 守令竝擬, 何如? 傳曰, 允.

❖ 현종 8년(1667) 정미년 윤4월 8일(임오)

- 제주목사(濟州牧使)는 문관으로 차출해야 하지만 의망할만한 책임자가 적으니 수령도 아울러 추천하게 할 것을 청하는 이비(吏批)의 계
- 이비(吏批)에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홍우량(洪宇亮)이 【몇 글자가 빠짐】 지금 문관으로 차출(差出)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바다 밖의 먼 지방이라 다른 읍과는 다름이 있으니 엄간(廉簡)하면서 명성과 공적이 있는 인물을 택하여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망(擬望)할만한 인물이 매우 적으니 수령 중에서도 아울러 추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목사, 홍우량.

❖ 康熙 六年 丁未 閏四月 八日 壬午

- 巳時, 上御溫陽行宮, 大臣·原任大臣引見時, 入侍. …… 佐明曰, 臣待罪備局, 敢此仰達矣. 濟州牧使, 以文臣差遣, 意匪偶然, 而擇於守令中, 以洪錫箕差送, 錫箕, 雖有廉勤之稱, 未知其果如何也. 上曰, 大臣之意何如? 命夏曰, 佐明之言, 是也. 洪錫箕, 則仍任舒川, 似當矣. 致和曰, 洪錫箕, 地望素輕, 又不能彈壓【彈壓】, 金佐明之言, 是矣. 上曰, 然則洪錫箕仍授前任, 濟州牧使, 則今日政差出, 可也. 遂罷出. 【以上櫛餘】

❖ 현종 8년(1667) 정미년 윤4월 8일(임오)

□ 온양행궁(溫陽行宮)에서 대신 등을 인견할 때 김좌명(金佐明) 등이 입시하여 홍석기(洪錫箕)를 제주목사로 차견(差遣)하는 일 등에 대하여 논의함

- 사시(巳時)에 임금이 온양행궁(溫陽行宮)에 나아가서 대신(大臣)과 원임대신(原任大臣)<sup>148)</sup>을 인견(引見)할 때 입시하는 자리이다. <중략> 김좌명(金佐明)<sup>149)</sup>이 아뢰기를, “신이 비변사에서 대죄(待罪)<sup>150)</sup>하는 몸으로 감히 아뢰입니다. 제주목사(濟州牧使)를 문신으로 차출하여 파견하는 것은 뜻이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수령 중에서 택하여 홍석기(洪錫箕)<sup>151)</sup>를 차출하여 보내려 합니다. 홍석기는 비록 청렴하고 부지런하다는 칭송이 있지만 그것이 과연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들의 뜻은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홍명하(洪命夏)<sup>152)</sup>가 말하기를, “좌명의 말이 옳습니다. 홍석기는 서천(舒川)을 그대로 맡게 하는 것이 마땅한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정치화(鄭致和)<sup>153)</sup>가 말하기를, “홍석기는 지위와 명망이 평소 가볍고 또, 탄압(彈壓)하는데 능하지 못하니 김좌명의 말이 옳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홍석기

148) 원임대신(原任大臣): 전임 대신.

149) 김좌명(1616~1671): 본관 청풍(淸風). 자 일정(一正). 호 귀계(歸溪)·귀천(歸川). 시호 충숙(忠肅). 1644년(인조 22) 문과 급제. 수찬, 이조참판, 공조판서, 병조판서, 호조판서 역임.

150) 대죄(待罪): 재직(在職)하는 것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

151) 홍석기(1606~1680): 본관 남양(南陽). 자 원구(元九). 호 만주(晩州). 시호 효정(孝定). 1641년(인조 19) 문과 급제. 해주목사, 서천군수, 남원목사 역임. 이조판서에 추증. 저서 《만주집》, 《존주록(尊周錄)》.

152) 홍명하(1607~1667): 본관 남양(南陽). 자 대이(大而). 호 기천(沂川). 시호 문간(文簡). 1644년(인조 22) 문과 급제. 이조좌랑, 대사헌, 형조판서, 영의정 역임. 저서 《기천집》.

153) 정치화(1609~1677): 본관 동래(東萊). 자 성능(聖能). 호 기주(棋洲). 우의정, 좌의정 역임.

를 그대로 전임(前任)에 제수하고, 제주목사는 오늘 정사(政事)에서 차출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파하고 나왔다. 【이상은 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목사, 홍석기, 김좌명, 홍명하, 정치화, 서천.

❖ 康熙 六年 丁未 閏四月 八日 壬午

○ 以朴乃昌爲司饗奉事, …… 李塏爲濟州牧使, …….

❖ 현종 8년(1667) 정미년 윤4월 8일(임오)

□ 이인(李塏)을 제주목사에 제수함

○ 박내창(朴乃昌)을 사옹봉사(司饗奉事)로 삼고, <중략> 이인(李塏)<sup>154</sup>을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이인, 제주목사.

---

154) 이인(李塏): 활자 원문에는 이명(李溟)으로 잘못 되어 있어서 교열자가 바로 잡음.

❖ 康熙 六年 丁未 閏四月 八日 壬午

- 行大司憲朴長遠, 掌令蘇斗山, 持平李世長等啓曰, 前執義李翻, 前掌令朴增輝·申命圭, 前持平俞櫨·李夏, 前獻納金澄, 前正言趙聖輔等, 亟命放還. …… 請還收前正言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同前】 答曰, 不允.

❖ 현종 8년(1667) 정미년 윤4월 8일(임오)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박장원(朴長遠) 등의 계
- 행 대사헌 박장원(朴長遠), 장령 소두산(蘇斗山), 지평 이세장(李世長)이 아뢰기를, “청컨대 전 집의 이숙(李翻), 전 장령 박증휘(朴增輝)·신명규(申命圭), 전 지평 유현(俞櫨)·이하(李夏), 전 헌납 김징(金澄), 전 정언 조성보(趙聖輔) 등을 방환하라고 빨리 명을 내려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전 정언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앞과 같음】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박장원, 소두산, 이세장.

❖ 康熙 六年 丁未 閏四月 八日 壬午

- 行大司諫姜栢年, 正言尹摺啓曰, 請前執義李翻, 前掌令朴增輝·申命圭, 前持平俞櫨·李夏, 前獻納金澄, 前正言趙聖輔等, 亟命放還. …… 請還收前正言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同前】答曰, 不允.

❖ 현종 8년(1667) 정미년 윤4월 8일(임오)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강백년(姜栢年) 등의 계
- 행 대사간 강백년(姜栢年), 정언 윤진(尹摺)이 아뢰기를, “청컨대 전 집의 이숙(李翻), 전 장령 박증휘(朴增輝)·신명규(申命圭), 전 지평 유현(俞櫨)·이하(李夏), 전 헌납 김징(金澄), 전 정언 조성보(趙聖輔) 등을 방환하라고 빨리 명을 내려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전 정언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앞과 같음】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강백년, 윤진.

❖ 康熙 六年 丁未 閏四月 十日 甲申

- 行大司憲朴長遠, 掌令蘇斗山, 持平李世長啓曰, 請前執義李翻, 前掌令朴增輝·申命圭, 前持平俞櫨·李夏, 前獻納金澄, 前正言趙聖輔等, 亟命放還. …… 請還收前正言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同前】 …….

❖ 현종 8년(1667) 정미년 윤4월 10일(갑신)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박장원(朴長遠) 등의 계
- 행 대사헌 박장원(朴長遠), 장령 소두산(蘇斗山), 지평 이세장(李世長)이 아뢰기를, “청컨대, 전 집의 이숙(李翻), 전 장령 박증휘(朴增輝)·신명규(申命圭), 전 지평 유헌(俞櫨)·이하(李夏), 전 헌납 김징(金澄), 전 정언 조성보(趙聖輔) 등을 방환하라고 빨리 명을 내려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전 정언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앞과 같음】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박장원, 소두산, 이세장.

❖ 康熙 六年 丁未 閏四月 十日 甲申

- 行大司諫姜栢年, 正言尹摺啓曰, 請前執義李翻, 前掌令朴增輝·申命圭, 前持平俞櫨·李夏, 前獻納金澄, 前正言趙聖輔等, 亟命放還. …… 請還收前正言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同前】答曰, 不允.

❖ 현종 8년(1667) 정미년 윤4월 10일(갑신)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강백년(姜栢年) 등의 계
- 행 대사간 강백년(姜栢年), 정언 윤진(尹摺)이 아뢰기를, “청컨대 전 집의 이숙(李翻), 전 장령 박증휘(朴增輝)·신명규(申命圭), 전 지평 유현(俞櫨)·이하(李夏), 전 헌납 김징(金澄), 전 정언 조성보(趙聖輔) 등을 방환하라고 빨리 명을 내려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전 정언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앞과 같음】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강백년, 윤진.

❖ 康熙 六年 丁未 閏四月 十一日 乙酉

- 行大司憲朴長遠, 持平李世長啓, 請前執義李翻, 前掌令朴增輝·申命圭, 前持平俞櫨·李夏, 獻納金澄, 前正言趙聖輔等, 亟命放還. …… 請還收前正言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同前】 …….

❖ 현종 8년(1667) 정미년 윤4월 11일(을유)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박장원(朴長遠) 등의 계
- 행 대사헌 박장원(朴長遠), 지평 이세장(李世長)이 아뢰기를, “청컨대 전 집의 이숙(李翻), 전 장령 박증휘(朴增輝)·신명규(申命圭), 전 지평 유현(俞櫨)·이하(李夏), 전 헌납 김징(金澄), 전 정언 조성보(趙聖輔) 등을 방환하라고 빨리 명을 내려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전 정언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앞과 같음】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박장원, 이세장.

❖ 康熙 六年 丁未 閏四月 十一日 乙酉

- 行大司諫姜栢年, 正言尹摺啓曰, 請前執義李翻, 前掌令朴增輝·申命圭, 前持平俞櫨·李夏, 前獻納金澄, 前正言趙聖輔等, 亟命放還. …… 請還收前正言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同上】答曰, 不允.

❖ 현종 8년(1667) 정미년 윤4월 11일(을유)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강백년(姜栢年) 등의 계
- 행 대사간 강백년(姜栢年), 정언 윤진(尹摺)이 아뢰기를, “청컨대 전 집의 이숙(李翻), 전 장령 박증휘(朴增輝)·신명규(申命圭), 전 지평 유현(俞櫨)·이하(李夏), 전 헌납 김징(金澄), 전 정언 조성보(趙聖輔) 등을 방환하라고 빨리 명을 내려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전 정언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위와 같음】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강백년, 윤진.

❖ 康熙 六年 丁未 閏四月 十一日 乙酉

- 【缺】啓曰, 請前執義李翻, 前掌令朴增輝·申命圭, 前持平俞櫨·李夏, 前獻納金澄, 前正言趙聖輔等, 亟命放還. …… 請還收前正言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答曰, 不允. 【儘餘】

❖ 현종 8년(1667) 정미년 윤4월 11일(을유)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계

- 【빠짐】 아뢰기를, “청컨대 전 집의 이숙(李翻), 전 장령 박증휘(朴增輝)·신명규(申命圭), 전 지평 유현(俞櫨)·이하(李夏), 전 헌납 김정(金澄), 전 정언 조성보(趙聖輔) 등을 방환하라고 빨리 명을 내려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전 정언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 康熙 六年 丁未 閏四月 十二日 丙戌

- 右承旨尹飛卿, 左副承旨金字亨等十二日成貼狀啓, …… 濟州牧使緣坐罪人定配, 金廷俊物故啓本一度, 司譯院官員等祿薦狀二度段, 姑爲留院爲白乎旆, □州閏四月朔進上, 咸鏡道閏四月朔進上, 來到爲白有置, 令該院趁即捧上爲白遣. 物目段, 依例後錄, 緣由狀啓爲白臥乎事. 啓下本院. 【缺】咸鏡道進上, 稟古六斗, 搥鯪一百六十貼, 以上【缺】大王大妃殿, 乾大口魚三十尾·乾文魚十尾·乾海蔘四斗·昆布【缺】生松魚十尾·松魚醢二十四貼, 以上咸鏡道進上. 稟古六斗·搥鯪一百六十貼, 以上濟州進上 大殿, 乾大口魚三十五尾·乾海蔘四斗五升, 以上咸鏡道進上. 稟古六斗·搥鯪二百四十貼·甘藷一百六十注之, 以上濟州進上. 中宮殿, 乾大口魚二十尾·□□斗, 以上咸鏡道進上. 稟古六斗·搥鯪一百六十貼, 以上濟州進上. 世子宮, 乾大口魚十五尾·鱧卵三斗五升, 以上咸鏡道進上. 搥鯪一百六十貼, 以上濟州進上.

❖ 현종 8년(1667) 정미년 윤4월 12일(병술)

□ 정배 죄인의 물고 계본 등의 임시 보관에 대한 보고와 제주 등의 윤4월 삭진상에 대한 계하를 청하는 윤비경(尹飛卿) 등의 장계

- 우승지 윤비경(尹飛卿)<sup>155)</sup>, 좌부승지 김우형(金字亨)<sup>156)</sup> 등이 12일 성첩(成貼)하여 장계(狀啓)<sup>157)</sup>하였다. “〈중략〉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연좌죄인(緣坐罪人)으로 정배(定配)된 김정준(金廷俊)의 물고계본(物故啓本)<sup>158)</sup> 1통, 사역원 관원의 등록(等祿)<sup>159)</sup> 천장(薦狀)<sup>160)</sup> 2통은 우선 승정원에 보관하였습니다. 제주(濟州)<sup>161)</sup>의 윤4월 치 삭진상(朔進上)<sup>162)</sup>, 함경도의 윤4월 치 삭진상이 도착하였습니

155) 윤비경(1607~1680): 본관 파평(坡平). 자 충거(沖舉). 1650년(효종 1) 문과 급제. 병조참의, 공조참의, 경주부윤, 회양부사 역임.

156) 김우형(1616~1694): 본관 광산(光山). 자 도상(道常). 호 기오당(寄傲堂). 시호 정혜(貞惠). 1650년(효종 1) 문과 급제. 한성부판윤, 개성유수, 형조판서 역임. 저서 《옥산유고(玉山遺稿)》.

157) 장계(狀啓): 왕명을 받고 지방에 나가 있는 신하가 자기 관하(管下)의 중요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던 일. 또는 그런 문서.

158) 장계(狀啓): 왕명을 받고 지방에 나가 있는 신하가 자기 관하(管下)의 중요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던 일. 또는 그런 문서.

159) 등록(等祿): 춘(春)·하(夏)·추(秋)·동(冬) 4절기를 나누어[分] 봉급[祿]을 지불함.

160) 천장(薦狀): 지급해야 할 봉록(俸祿)을 기록하여 올리는 문서인 듯하나 분명하지 않음.

161) 제주(濟州): 원문에는 ‘州’만 쓰여 있음. 본 기사의 내용에 의거하여 제주로 풀이함.

162) 삭진상(朔進上): 다달이 정례(定例)로 각 도에서 임금에게 바치는 진상.

다. 해당 원(院)에게 즉시 받아가게 하였고, 물목은 예에 따라 후록(後錄)<sup>163)</sup>하였습니다. 연유를 장계합니다. 본원에 계하(啓下)<sup>164)</sup>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빠짐】 함경도 진상, 표고 6말·추복 160첩, 이상 【빠짐】 대왕대비전. 건대구어(乾大口魚) 30미·건문어(乾文魚) 10미·건해삼(乾海蔘) 4말·다시마[昆布]【빠짐】·생송어(生松魚) 10미·송어젓[松魚醢] 20첩 이상 함경도 진상, 표고(藁古) 6말·추복(槌鮓) 160첩 이상 제주(濟州) 진상. 대전. 건대구어 35미·건해삼(乾海蔘) 4말 5되 이상 함경도 진상, 표고 6말·추복 240첩·미역[甘藷] 160주지(注之)<sup>165)</sup> 이상 제주 진상. 중궁전. 건대구어 20미·□□말 이상 함경도 진상, 표고 6말·추복 160첩 이상 제주 진상. 세자궁. 건대구어 15미·연어알[鱒卵] 3말 5되 이상 함경도 진상, 추복 160첩 이상 제주 진상.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목사, 김정준, 삭진상, 함경도, 표고, 추복, 감곽.

163) 후록(後錄): 글이 끝난 뒤에 덧붙인 기록.

164) 계하(啓下): 상소문이나 일반 안건을 임금에게 올리면 임금이 본 뒤 계자인(啓字印)을 찍어 친람(親覽)과 결재(決裁)를 마쳤음을 표시하고 해당 부서로 내려 보내는 것.

165) 주지(注之): 미역·다시마 따위를 조그마하고 둥글넓적하게 만든 덩이를 세는 말. 주지(走之). 미역이나 다시마 따위의 한 묶음을 이르는 말임.

❖ 康熙 六年 丁未 閏四月 十四日 戊子

- 執義吳斗寅啓, 請前執義李翻, 前掌令朴增輝·申命圭, 前持平俞樾·李夏, 前獻納金澄, 前正言趙聖輔等, 亟命放還. …… 請前請□還收前正言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

❖ 현종 8년(1667) 정미년 윤4월 14일(무자)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오두인(吳斗寅)의 계
- 집의 오두인(吳斗寅)<sup>166</sup>이 아뢰기를, “청컨대 전 집의 이숙(李翻), 전 장령 박증휘(朴增輝)·신명규(申命圭), 전 지평 유헌(俞樾)·이하(李夏), 전 헌납 김정(金澄), 전 정언 조성보(趙聖輔) 등을 속히 방환(放還)하라는 명을 내려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전 정언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오두인.

---

166 오두인(1624~1689): 본관 해주(海州). 자 원징(元徵). 호 양곡(陽谷). 인조 26년(1648) 문과 급제. 호 조참판, 경기도관찰사, 공조판서, 형조판서 역임.

❖ 康熙 六年 丁未 閏四月 十九日 癸巳

- 大司憲朴長遠, 執義吳斗寅, 掌令李叔達·蘇斗山, 持平李世長啓曰, 黃壩竄逐之請, 論列已久, 而俞音尙闕, 臣等, 實未曉聖意之所在也. …… 臣等, 以前正言安塾外補還收之請, 閱月爭執, 而俞音尙闕, 臣等, 竊惑焉. 塾之論事, 不過隨事相規, 而殿下, 不諒本情, 遽爾斥補於海島下邑, 職名雖存, 其爲聖朝之過舉, 則與竄逐無異, 此所以輿情之久鬱者也. 況今竄逐諸<臣>皆已蒙宥, 則塾何獨斥補海島遠邑乎? 亦宜竝入於還收之中. 請還收前正言安塾大靜特除之命. 答曰, 不允.

❖ 현종 8년(1867) 정미년 윤4월 19일(계사)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박장원(朴長遠) 등의 계

- 대사헌 박장원(朴長遠), 집의 오두인(吳斗寅), 장령 이숙달(李叔達)·소두산(蘇斗山), 지평 이세장(李世長)이 아뢰기를, “황언(黃壩)을 찬축(竄逐)하라는 청을 하며 논핵(論劾)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윤택한다는 말씀이 아직 까지도 없으니 신 등은 실로 전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중략> 신 등은 전 정언 안숙(安塾)을 지방관으로 보내는 명을 도로 거두어 달라고 청하면서 한 달이 넘도록 간쟁하였습니다. 하지만 윤택하는 말씀이 아직도 없으니 신 등은 당혹스럽습니다. 안숙이 논한 일은 일에 따라서 잘못을 서로 경계하는 것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는 본뜻을 헤아리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도(海島)의 작은 고을로 내쳐 보임(補任)을 하였으니, 직명(職名)은 비록 보존하였지만 그것이 성조(聖朝)의 지나친 처사가 됨은 찬축(竄逐)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이 중론(衆論)이 오래도록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찬축되었던 신하들이<sup>167)</sup> 모두 죄의 사함을 입었는데 안숙을 어찌 유독 해도의 먼 고을로 내쳐 보임하십니까? 또한 환수하는 이들 안에 아울러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청컨대, 전 정언 안숙을 대정(大靜)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 박장원, 오두인, 이숙달, 소두산, 이세장, 황언.

167) <臣>: 문의에 맞게 추정하여 넣은 글자. 원문에는 없음.

❖ 康熙 六年 丁未 閏四月 十九日 癸巳

- 司諫洪柱三, 獻納李東老啓曰, 自古奸人之投章醜正, 嫁禍士林者何限, 而乘時吟毒, 相機呈奸, 欲空人國而後已者, 未有若黃孺之甚者. …… 前正言安塾, 身居臺閣, 意在相規, 而聖明不諒, 遽爾摧折, 特除絕島之遠邑, 補外竄謫, 名雖有異, 其所以被譴, 則一也. 臣等之爭執不已者, 蓋恐爲聖朝之過舉, 非爲安塾地耳. 請還收前正言安塾大靜縣監特除之命. 答曰, 不允.

❖ 현종 8년(1667) 정미년 윤4월 19일(계사)

□ 안숙(安塾)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제수한 명의 환수를 청하는 홍주삼(洪柱三) 등의 계

- 사간 홍주삼(洪柱三), 헌납 이동로(李東老)가 아뢰기를, “예로부터 간사한 이가 상소를 올려 정직한 이를 비방하고 화(禍)를 사람에게 떠넘긴 것이 어찌 한(限)이 있겠습니까만, 때를 틈타 해악을 읊조리다가 기회를 보아 간사함을 드러내어 나라를 텅 비게 한 이후에 그치고자 하는 자로 황연(黃孺)처럼 심한 이는 없었습니다. <중략> 전 정언 안숙(安塾)은 대각(臺閣)의 신분으로 뜻이 서로를 경계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명(聖明)께서 헤아리지 않고 갑작스럽게 배척하여 절도(絶島)의 먼 고을로 특제(特除)하였습니다. 보외(補外)와 찬적(竄謫)은 이름은 비록 다르지만 그것이 견책을 당하는 것에서는 매 한가지입니다. 신 등이 간쟁하며 의견을 고집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은 성조(聖朝)의 지나친 처사를 걱정해서이지 안숙의 처지 때문이 아닙니다. 청컨대, 전 정언 안숙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특제(特除)하라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홍주삼, 이동로, 황연.

❖ 康熙 六年 丁未 閏四月 二十日 甲午

○ 獻納李東老啓曰, 臣近緣同僚有故, 代行城上所之任矣. 大靜縣監安塾, 榻前還收之啓, 有添入文字, 而全不聞知, 仍前傳啓, 及見兩日奉行舉條, 然後始覺脫漏, 臣於此, 不勝瞿然之至. 凡入侍之員, 如有前啓改構之語, 則罷出之後, 例有簡示, 而同僚不此之爲, 及臣簡問連啓之際, 只以謹悉爲答, 臣雖未曉其由, 而臣之初不就議, 矇然連啓之失, 已乖臺體, 今聞物議, 皆以爲非, 臣何敢晏然仍冒乎? 請命遞斥臣職. 答曰, 勿辭.

❖ 현종 8년(1667) 정미년 윤4월 20일(갑오)

□ 안숙(安塾)에게 대정현감을 제수하라고 한 명을 환수하는 문제에 대해 연계(連啓)하여 물의를 일으켰으므로 체직(遞職)을 청하는 이동로(李東老)의 계

○ 헌납 이동로(李東老)<sup>168</sup>가 아뢰기를, “신이 근래 동료의 유고(有故)에 따라 성상소(城上所)<sup>169</sup>의 소임을 대행했었기에 대정현감 안숙(安塾)에 대해榻前에서 환수하라는 계에 문자를 첨입(添入)함이 있었는데도 전혀 들어 알지 못하고 전과 똑같이 계사를 전했습니다. 이틀간 받들어 행한 거조(舉條)<sup>170</sup>를 본 후에야 비로소 탈루(脫漏)를 깨달았으니, 신은 이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무릇 입시(入侍)한 관원이 만약 전계(前啓)에 대해 고쳐 수정한 말이 있다면 파하고 물러나온 뒤에는 으레 간통(簡通)으로 알려주어야 하는데도 동료가 이를 행하지 않았고, 신이 서면으로 물어 연계(連啓)할 때에 이르러서는 다만 ‘잘 알았다.’로 답하였습니다. 신이 비록 그 이유를 깨닫지는 못했습니다만 신이 애초에 의논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아서 모호하게 연계한 잘못은 이미 대간(臺諫)의 체통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지금 물의(物議)를 들으니 모두가 잘못이라고 하니 신이 어찌 감히 태연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청컨대 신을 체척(遞斥)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사직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안숙, 대정현감, 이동로, 연계.

168) 이동로(1628~1683): 본관 전주(全州). 자 원룡(元龍). 1654년(효종 5) 문과 급제. 좌부승지, 도승지, 평안도사, 홍주목사 역임.

169) 성상소(城上所):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원이 대궐문 위에서 백관을 감찰하고 공사(公事)를 출납하던 곳.

170) 거조(舉條): 신하들이 연석에서 전달한 말들 중에 조보(朝報)에 널만한 것을 승지가 뽑아서 조보에 반포하는 것을 말함. 거행조건(舉行條件).

❖ 康熙 六年 丁未 五月 二十一日 甲子

○ 下直, 濟州牧使李堧, 海州牧使李澄.

❖ 現宗 8년(1667) 정미년 5월 21일(갑자)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인(李堧) 등이 하직함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인(李堧)<sup>171)</sup>, 해주목사(海州牧使) 이징(李澄)이 하직(下直)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목사, 이인, 해주목사, 이징.

---

171) 이인(1608~1669): 본관 성주(星州). 자 야수(野叟). 호 소옹(蘇翁). 1636년(인조 14) 사마시 합격. 동부승지, 형조참의, 제주목사 역임. 홍우량(洪宇亮)의 후임으로 제주목사에 부임, 1669년(현종 10) 9월 재임 중 사망.

❖ 康熙 六年 丁未 六月 二十一日 甲午

○ 有政. 以金啓光爲成均博士, …… 金煥爲濟州判官, …….

❖ 현종 8년(1667) 정미년 6월 21일(갑오)

□ 김환(金煥)<sup>172)</sup>을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김계광(金啓光)을 성균박사(成均博士)로 삼고, <중략> 김환(金煥)을 제주판관(濟州判官)으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판관, 김환.

---

172) 김환(?~1689): 무신. 자헌대부 역임. 최진남(崔鎭南)의 후임으로 제주판관에 부임, 1670년(현종 11) 1월 떠남.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으로 참형.

❖ 康熙 六年 丁未 六月 二十三日 丙申

- 引見時, 戶曹判書金壽興所啓, 濟州上年凶荒尤甚, 自春初設賑, 而所用穀物, 以本州奴婢貢米, 許令取用矣. 今見本州移文, 則貢米不足, 故加用耗穀, 而其用下之數, 請爲會減, 何以爲之? 上曰, 飢民幾何, 而所用穀物之數, 亦幾何耶? 壽興曰, 飢民則五千四百三十七名, 而所用穀物, 則奴婢身貢田米一千四十石零, 及會時耗田米一百三十二石零·營租二十二石矣. 上曰, 會減, 可也. 【備局謄錄】

❖ 현종 8년(1667) 정미년 6월 23일(병신)

- 인견(引見)할 때 제주의 흉황(凶荒)을 진구(賑求)할 노비 신공미(奴婢身貢米)가 부족하여 가용(加用)한 모곡(耗穀)을 회감하는 문제에 대해 김수흥(金壽興)과 논의함
- 인견(引見)하는 때에, 호조판서 김수흥(金壽興)이 아뢰었다. “제주(濟州)에 지난해 흉년이 더욱 심하여, 봄이 시작될 때부터 기민을 구휼하였기에 쓸 곡물을 본주(本州)의 노비 공미(貢米)로 가져다 쓰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지금 본주의 이문(移文)을 보니, 공미가 부족하여 모곡(耗穀)을 더하여 썼다고 하는데, 그 지출한 수에 대한 회감(會減)<sup>173)</sup>을 청하니 어찌해야 합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주린 백성은 얼마이고, 쓴 곡물의 수는 또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였다. 김수흥이 말하기를, “주린 백성은 5,437명이고, 사용한 곡물은 노비 신공(奴婢身貢)<sup>174)</sup> 전미(田米) 1,040석 남짓과 회시(會時) 모전미(耗田米) 132석 남짓, 영조(營租) 22석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회감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비변사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김수흥, 제주, 회감.

173) 회감(會減): 회계 장부인 회안(會案)에 기록된 재화를 공용(公用)으로 사용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여 삭감하는 것을 말함.

174) 노비 신공(奴婢身貢): 노비가 신역(身役) 대신에 바치던 공물(貢物).

## ❖ 康熙 六年 丁未 七月 二十二日 甲子

- 審理時, 上曰, 巨濟定配罪人內奴得金, 減等. …… 刑曹判書李慶億所啓, …… 安塾, 聞有年老父母, 情深可矜, 當此大霽之日, 特降德音, 速爲召還, 宜矣. 領議政洪命夏曰, 安塾事, 小臣欲陳達矣. 領中樞李景奭之言, 誠是, 其情理, 實爲矜憐矣. 上曰, 安塾舉措, 予所深惡, 且與定配有異, 故前此不爲允從矣. 今則遇此無前之災, 兩大臣之言如此, 可不勉從乎? 大靜縣監安塾, 遞差. …… 【朝報】

## ❖ 현종 8년(1667) 정미년 7월 22일(갑자)

### □ 심리할 때 이경억(李慶億) 등이 입시하여 대정현감(大靜縣監) 안숙(安塾)의 체차 등에 대하여 논의함

- 심리(審理)할 때, 임금이 말하기를, “거제도(巨濟島)에 정배(定配)된 죄인 중에 내노(內奴)<sup>175)</sup> 득금(得金)을 감등(減等)<sup>176)</sup>하라.”라고 하였다. <중략> 형조판서 이경억(李慶億)<sup>177)</sup>이 아뢰었다. “<중략> 안숙(安塾)은 늙으신 부모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리(情理)가 심히 불쌍하니 이처럼 큰 은전(恩典)을 내리는 날을 맞아 특별히 덕음(德音)을 내려 속히 불러들이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영의정 홍명하(洪命夏)가 말하기를, “안숙의 일을 소신이 진달(陳達)하고자 합니다. 영중추 이경석(李景奭)<sup>178)</sup>의 말<sup>179)</sup>이 실로 옳으니 그 정리가 실로 불쌍하고 가련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안숙의 거조(舉措)는 내가 심히 미워하는 바이다. 또한 정배(定配)와는 다르기에 전에는 이를 윤택하여 따르지 않았었다. 지금 전에 없는 재앙을 당하여 두 대신의 말이 이와 같으니 힘써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대정현감(大靜縣監) 안숙을 체차(遞差)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조보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대정현감, 안숙, 이경억, 홍명하, 이경석.

175) 내노(內奴): 조선시대 내수사(內需司)에 딸린 노비.

176) 감등(減等): 은전(恩典)에 의하여 형벌을 경감함. 여기서는 거제도에서 내지나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일을 말함.

177) 이경억(1620~1673): 본관 경주(慶州). 자 석이(錫爾). 호 화곡(華谷). 시호 문익(文翼). 1644년(인조 22) 문과 급제. 한성우윤, 도승지, 대사헌, 경기도관찰사, 좌의정 역임. 효종 연간에 제주순안어사(濟州巡按御使)로 다녀감. 저서 《화곡유고》.

178) 이경석(1595~1671): 본관 전주(全州). 자 상보(尙輔). 호는 백헌(白軒). 시호 문충(文忠). 검열, 이조좌랑, 승지, 양주목사, 대사간, 대사헌, 이조판서,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역임. 저서 《백헌집》.

179) 영중추 이경석(李景奭)의 말: 형조판서 이경억(李慶億)의 말을 사관이 이경석의 말로 착각하여 오기(誤記)한 듯함. 본 기사 첫 부분은 이경석의 계로 시작되나 이후에는 이경억의 계가 홍명하의 계가 나오기 전까지 이어짐.

❖ 康熙 六年 丁未 七月 二十六日 戊辰

○ 有政. 權斗樞爲刑曹正郎, 呂閔齊爲執義, 趙門赫爲大靜縣監.

❖ 현종 8년(1667) 정미년 7월 26일(무진)

□ 조문혁(趙門赫)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권두추(權斗樞)를 형조정랑으로 삼고, 여민제(呂閔齊)를 집의로 삼고, 조문혁(趙門赫)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삼았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대정현감, 조문혁.

❖ 康熙 六年 丁未 七月 三十日 壬申

○ 謝恩, 大靜縣監趙門赫.

❖ 현종 8년(1667) 정미년 7월 30일(임신)

□ 大靜縣監(大靜縣監) 조문혁(趙門赫)이 사은함

○ 大靜縣監(大靜縣監) 조문혁(趙門赫)이 사은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大靜縣監, 조문혁.

❖ 康熙 六年 丁未 八月 三日 乙亥

○ 下直, 濟州判官金□□.

❖ 現宗 8年(1667) 정미년 8월 3일(을해)

□ 제주판관(濟州判官) 김환(金煥)이 하직함

○ 제주판관(濟州判官) 김환(金煥)<sup>180</sup>이 하직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판관, 김환.

---

180) 김환(金煥): 활자 원문에는 □□으로 되어 있으나 1667년(현종 8) 6월 21일(갑오)의 본서 기록에 의하면 제주판관에 제수된 이는 김환이므로 교열자가 보충함.

❖ 康熙 六年 丁未 八月 二十四日 丙申

- 掌令李東溟啓曰, 近來法綱解弛, 私意橫流, 至於詞訟之際, 循私蔑公者, 比比有之, 識者之寒心, 久矣. 臣伏見濟州人擊錚刑曹文案, 則統制使李枝馨, 曾爲濟州牧使時, 本州良役之人, 稱以其兄家奴婢, 遽自推斷, 勒除軍案, 致令絕島之人, 越海訟冤, 其事曲直, 曾無明覈, 未詳其如何, 而雖以枝馨緘辭, 觀之, 亦謂之其兄家隱漏奴婢, 果有推給之事, 彼此文記, 從公處決, 別無私意於其間. 又曰, 訟法, 自有三度得伸之規, 設有當初誤處之事, 兩邊曲直, 更爲推覈, 似無不可. 良賤辨別, 是何等重事, 而其兄家事, 自爲訟官, 肆然聽理, 略無顧忌, 乃敢曰, 從公處決, 別無私意云乎? 徒知三度得伸之法, 而獨不知一家應避之嫌, 何也? 初既冒法, 自當推官, 及今敗露, 諉之於三度得伸, 而敢以更爲推覈, 似無不可等語, 贅陳間備中, 其蔑法縱恣, 莫此爲甚. 此而置之, 日後效尤, 將不免接迹, 而遐遠殘氓, 無以自存, 決不可推考而止, 請統制使李枝馨, 先罷後推. …….

❖ 현종 8년(1667) 정미년 8월 24일(병신)

- 제주목사(濟州牧使) 때 제주(濟州) 양인을 사사로이 노비로 추단한 통제사 이지형(李枝馨)의 선파 후추(先罷後推) 등을 칭하는 이동명(李東溟)의 계
- 장령 이동명(李東溟)<sup>181)</sup>이 아뢰기를, “근래 법령이 해이되고 사의(私意)가 횡류(橫流)하여 소송을 처리할 때에 이르러 사의에 따르고 공의(公義)를 저버리는 것이 흔히 있으니 식자들이 한심스럽게 여겨 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신이 삼가 제주인(濟州人)이 격쟁(擊錚)한 형조문안(刑曹文案)을 보니, 통제사 이지형(李枝馨)<sup>182)</sup>이 일찍이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있을 때 본주(本州)의 양역(良役)하는 백성을 그 형의 집 노비라 칭하면서 갑자기 스스로 추단(推斷)하여 다그쳐 군안(軍案)에서 없애니, 절도(絶島)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와 송원(訟冤)하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일의 옳고 그름에 대해 일찍이 분명한 조사가 없었으니 어찌해야 할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비록 지형의 함사(緘辭)<sup>183)</sup>를

181) 이동명(1624~1692): 본관 덕수(德水). 자 백종(白宗). 호 학정(鶴汀). 1652년(효종 3) 문과 급제. 경주부윤, 예조참의, 서천군수 역임.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 때 삭탈관작되어 부령으로 유배, 그곳에서 죽었음.

182) 이지형(?~?): 무신. 제주목사로 1660년(현종 1) 2월에 임명되어 동년 5월에 도입하고, 1662년 8월 떠났다. 1661년 12월 제주의 곡식 4천석을 옮겨 호남 연안의 기민을 구휼함.

183) 함사(緘辭): 관원이 저지른 과실에 대하여 서면으로 진술하여 올리는 봉서(封書).

보면 또한 말하기를, ‘형의 집 은루노비(隱漏奴婢)<sup>184</sup>로 추급(推給)한 일에 대한 피차의 문기(文記)<sup>185</sup>가 있으니 공의에 따라 처결한 것으로 별도의 사의가 그 사이에 없었습니다.’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송법(訟法)에는 삼도득신(三度得伸)<sup>186</sup>의 규례가 있으니, 설령 처음에 잘못 처리한 일이 있어도 양쪽의 옳고 그름을 다시 추핵(推覈)<sup>187</sup>하는 것이 안 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하더라도 양천(良賤)의 판별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형의 집에 대한 일에 스스로 송관(訟官)<sup>188</sup>이 되어 방자하게 심리(審理)하고 조금도 뒷일을 염려하고 꺼려하지 않았으면서 감히 공의에 따라 처결했고 별도의 사의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삼도득신의 법만을 알고 유독 일가(一家)를 응당 상피(相避)<sup>189</sup>해야 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처음에 이미 법을 범하여 스스로 추관(推官)<sup>190</sup>을 담당하였고, 지금 탄로가 나게 되자 삼도득신을 핑계대면서 감히 다시 추핵하는 것이 안 될 것은 없을 것 같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문비(問備)<sup>191</sup> 중에 쓸데없이 진술하고 있으니, 그 법을 능멸하면서 자기 멋대로 방자하게 구는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은 없습니다. 이대로 둔다면 뒷날 잘못된 행위를 본받는 것이 장차 발을 붙이는 것을 면할 수 없고, 먼 곳에 사는 힘없는 백성들은 스스로를 보존할 수 없으니 결코 추고(推考)하는 것으로만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통제사 이지형을 먼저 파직하고 나서 추고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격쟁, 이지형, 이동명, 제주목사.

184) 은루노비(隱漏奴婢): 탈세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숨겨 대장에 올리지 않거나 빼버린 노비.

185) 문기(文記): 땅이나 집, 노비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

186) 삼도득신(三度得伸): 송사(訟事)의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세 번까지 사실을 밝혀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

187) 추핵(推覈): 죄인을 심문하여 범죄 사실을 캐냄. 실정을 조사함.

188) 송관(訟官): 송사(訟事)를 맡아 다스리던 벼슬아치.

189) 상피(相避): 친족 또는 기타 관계로 같은 곳에서 벼슬하는 일이나 청송(聽訟), 시관(試官) 따위를 피하는 것.

190) 추관(推官): 죄인을 심문하는 관원.

191) 문비(問備): 죄과가 있는 벼슬아치에 대하여 사헌부의 관원이 서면으로 심문하는 것을 이룸.

❖ 康熙 六年 丁未 八月 二十六日 戊戌

- 持平愼景尹啓曰, 統制使李枝馨, 曾爲濟州牧使時, 本州良役之人, 稱以其兄家奴婢, 遽自推斷, 勒除軍案, 致令絕島之人, 越海訟冤, 其事曲直, 雖未詳知, 而不避一家之嫌, 冒法推給之狀, 殊極驚駭. 此而置之, 則日後效尤, 不免接迹, 而海外殘氓, 無以自存, 決不可推考而止, 請統制使李枝馨, 先罷後推. ……【燼餘】

❖ 현종 8년(1667) 정미년 8월 26일(무술)

□ 제주목사(濟州牧使) 때 제주(濟州) 양인을 사사로이 노비로 추단한 통제사 이지형(李枝馨)의 선파후추(先罷後推) 등을 청하는 신경윤(愼景尹)의 계

- 지평 신경윤(愼景尹)이 아뢰기를, “통제사 이지형(李枝馨)이 일찍이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있을 때 본주(本州)의 양역(良役)하는 백성을 그 형의 집 노비라 칭하면서 갑자기 스스로 추단(推斷)하여 다그쳐 군안(軍案)에서 없애니, 절도(絶島)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와 송원(訟冤)하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일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비록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가(一家)라는 혐의를 피하지 않고 법을 어겨 추급(推給)한 실상은 심히 놀라고 괴이한 일입니다. 이대로 둔다면 뒷날 잘못된 행위를 본받는 것이 장차 발을 붙이는 것을 면할 수 없고, 바다 밖의 힘없는 백성들은 스스로를 보존할 수 없으니 결코 추고(推考)하는 것으로만 그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통제사 이지형을 먼저 파직하고 나서 추고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하략>. 【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이지형, 신경윤, 제주목사.

❖ 康熙 六年 丁未 九月 十五日 丙辰

- 宋時喆, 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濟州山馬監牧官金大吉封進馬二匹, 來到本寺, 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현종 8년(1667) 정미년 9월 15일(병진)

- 봉진마 2필에 대해 나이와 털색을 별단으로 써서 들이겠음을 아뢰는 사복시 제조의 계
- 송시철(宋時喆)이 사복시(司僕寺) 관원으로 제조(提調)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산마감목관(濟州山馬監牧官) 김대길(金大吉)<sup>192)</sup>의 봉진마(封進馬) 2필이 본시(本寺)에 도착했기에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sup>193)</sup>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김대길, 제주산마감목관, 봉진마, 송시철.

---

192) 김대길(1608~1668): 본관 경주(慶州). 자 경보(慶甫). 호 장전(長田). 헌마공신(獻馬功臣) 승록대부(崇祿大夫) 행 동지중추부사(行同知中樞府事) 김만일(金萬鎰)의 셋째 아들. 1630년(인조 8) 무과 급제. 1658년 조정에 말 208필을 헌납하여 산마감목관 직을 세습하게 됨.

193) 별단(別單): 주본(奏本)에 덧붙이는 문서.

❖ 康熙 六年 丁未 十月 十一日 壬午

○ 上曰, 全羅道宋尙周疏末端, 雖有善處漂人等語, 而不必入【缺】密筒中也. 此外亦有議處事乎? 洪命夏曰, 別無議處事. 【缺】其疏中以爲, 濟州異於他地, 儒生赴舉, 請如武科之例, 而儒生則既有子弟之規, 當赴館學之規, 不必以武科爲例, 其地登第者, 雖一子, 亦當稟其父母云, 一子登科, 不可與五子登科者爲例, 此是法外之事, 自下不敢請之啓, 爲防啓之事, 【缺】而若出於特命, 則可也. 上曰, 特爲賜米, 可也. 洪命夏曰, 濟州教授, 請爲擇送, 【缺】以爲教養之地矣. 上曰, 擇送, 可也. …….

❖ 현종 8년(1667) 정미년 10월 11일(임오)

□ 제주(濟州) 유생의 부거(赴舉) 등을 논의함.

○ 임금이 말하기를, “전라도 송상주(宋尙周)의 상소 말단에 비록 표류해온 이들을 선처해 달라는 등의 말이 있지만 반드시 밀통(密筒) 안에 넣을 【빠짐】 필요는 없다. 이밖에 또 논의하여 처리할 일이 있는가?”라고 하였다. 홍명하(洪命夏)가 아뢰기를, “특별히 논의하여 처리할 일은 없습니다. 【빠짐】 상소 가운데, ‘제주가 다른 지방과 달라서 유생(儒生)이 과거를 보러 가는 것을 청컨대, 무과의 예(例)와 같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유생에게는 이미 자제(子弟)의 규례가 있습니다. 마땅히 관학(館學)<sup>194)</sup>의 규례에 나아가야지 무과로써 예를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지방에 과거에 급제한 자가 비록 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또한 그 부모에게 마땅히 녹미(祿米)를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한 아들의 과거 급제를 다섯 아들의 과거 급제와 같은 예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법 밖의 일로 아래에서 감히 요청하여 방계(防啓)<sup>195)</sup>하는 일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빠짐】 하지만 특명에서 나온다면 가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특별히 쌀을 내려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홍명하가 아뢰기를, “제주교수(濟州教授)를 청컨대 가려 보내어 【빠짐】 교양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가려 보내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자제, 제주교수, 홍명하.

194) 관학(館學): 성균관(成均館)과 사학(四學). 사학은 한성부의 오부(五部) 중에서 북부(北部)를 제외한 중부·동부·서부·남부에 둔 학당임.

195) 방계(防啓): 상주(上奏)된 안전에 대하여 담당 부서에서 그 일의 부당성을 제시하여 아뢰는 것을 말함.

1668年



❖ 康熙 七年 戊申 一月 二日 辛丑

○ 有政. 吏批, 以卞槐爲持平, …… 濟州牧使趙碓, …….

❖ 현종 9년(1668) 무신년 1월 2일(신축)

□ 조성(趙碓)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변황(卞槐)을 지평으로 삼고, <중략>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조성(趙碓)을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변황, 제주목사, 조성.

❖ 康熙七年戊申一月二十七日丙寅

- 有政. 吏批, 判書朴長遠未肅拜, 參判趙復陽進, 參議李時術病, 都承旨吳挺緯進. 以申晷·趙根爲注書, …… 盧三錫爲濟州教授, …….

❖ 현종 9년(1668) 무신년 1월 27일(병인)

노삼석(盧三錫)을 제주교수(濟州教授)에 제수함

- 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판서 박장원(朴長遠)은 아직 숙배(肅拜)하지 않았고, 참판 조복양(趙復陽)은 참석했고, 참의 이시술(李時術)은 병이 났고, 도승지 오정위(吳挺緯)는 참석했다. 신징(申晷)·조근(趙根)을 주서로 삼고, <중략> 노삼석(盧三錫)을 제주교수(濟州教授)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교수, 노삼석.

❖ 康熙 七年 戊申 二月 二十四日 丙寅

○ 有政. 吏批, 以宋時烈爲承文都提調, …… 旌義縣監李蘅, …….

❖ 현종 9년(1668) 무신년 2월 24일(병인)

이형(李蘅)을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함

○ 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송시열(宋時烈)을 승문원 도제조로 삼고, <중략> 정의현감(旌義縣監)으로 이형(李蘅)을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송시열, 정의현감, 이형.

❖ 康熙 七年 戊申 二月 二十八日 丁酉

○ 謝恩, 護軍李仁夏, …… 旌義縣監李蘅.

❖ 現宗 9年(1668) 무신년 2월 28일(정유)

□ 정의현감(旌義縣監) 이형(李蘅) 등이 사은함

○ 호군 이인하(李仁夏), <중략> 정의현감(旌義縣監) 이형(李蘅)이 사은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정의현감, 이형.

❖ 康熙七年 戊申 三月 二十三日 辛酉

- 大臣·備局堂上, 引見. 戶曹判書金佐明所啓, 罪人李商翼, 定配於通津矣. …… 又所啓, 旌義縣監李蘊, 因其下直, 見其爲人, 則痿黃喘急, 奄奄有垂絕之狀, 如此病癩之人, 不可使之仍爲赴任, 似當變通矣. 上曰, 實病如此, 則此非厭避之類, 改差, 可也. …… 【已上朝報】

❖ 현종 9년(1668) 무신년 3월 23일(신유)

- 인견(引見)할 때 김좌명(金佐明) 등이 입시하여 정의현감(旌義縣監) 이형(李蘊)의 개차(改差) 등에 대해 논의함
- 대신(大臣)·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할 때, 호조판서 김좌명(金佐明)이 아뢰었다. <중략> 또 아뢰었다. “정의현감(旌義縣監) 이형(李蘊)이 하직(下直)할 때를 보면 그 사람됨이 몸은 야위어 살빛이 누르고 천식은 심하여 숨이 곧 끊어질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질병이 든 사람을 그대로 부임하게 할 수 없으니 변통(變通)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실로 병든 것이 이와 같다면 이는 염피(厭避)<sup>196</sup>하는 부류가 아니니 관원을 교체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하략>. 【이상은 조보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정의현감, 이형, 김좌명.

---

196) 염피(厭避): 변경 지역의 수령에 제수되기 싫어서 회피하는 것.

❖ 康熙七年 戊申 三月 二十五日 癸亥

○ 有政. 吏批, 以宋昌爲正言, …… 旌義縣監金世翊, …….

❖ 현종 9년(1668) 무신년 3월 25일(계해)

□ 김세익(金世翊)을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함

○ 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송창(宋昌)을 정언으로 삼고, <중략> 정의현감(旌義縣監)으로 김세익(金世翊)을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백종진 역주/ 2017>

△ 주제어: 정의현감, 김세익.

❖ 康熙七年 戊申 五月 十一日 戊申

- 以禮曹, 濟州牧所捧世子宮方物馬裝草記, 傳于鄭鎰曰, 自己丑至己亥, 宜有前例, 此草記, 似乎不爲考例而爲之, 使之考前例改入.

❖ 현종 9년(1668) 무신년 5월 11일(무신)

- 제주목(濟州牧)에서 세자궁에 바치는 방물 마장(馬裝)에 관한 예조의 초기(草記)에 대한 전교
- 예조에서 올린 제주목(濟州牧)이 세자궁에 바친 방물 마장(馬裝)의 초기(草記)<sup>197)</sup>에 대해 정륜(鄭鎰)<sup>198)</sup>에게 전교하기를, “기축년(1649, 인조 27)부터 기해년(1659, 효종 10)에 이르기까지 의당 전례가 있었는데, 이 초기는 옛 전례를 살피지 않아 기록한 듯하니 전례를 살피 고쳐 들이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흥기표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목, 세자궁, 마장, 정륜.

---

197) 초기(草記): 조선시대 각 관서에서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 정무상 중대하지 않은 사항을 그 내용만 간단히 적어 올리는 서식. 수령도 국왕에게 초기를 올릴 수 있음. 현존하는 고문서 가운데 여러 건이 남아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은 당시 정치 행정이 이루어지는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는 1차자료임.

198) 정륜(1609~1686): 본관 초계(草溪). 자 극념(克恬). 부친은 정기숭(鄭基崇), 모친은 이덕형(李德馨)의 딸. 1644년(인조 22) 문과 급제, 장령, 정언, 도승지, 예조참판 등을 역임. 현종 9년 당시 직책은 우승지임. 《현종실록》 1668년(현종 9) 3월 8일(병오)에 의하면 “정륜(鄭鎰)을 우승지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음.

## ❖ 康熙七年 戊申 五月 二十二日 己未

- 禮曹啓曰, 以禮曹濟州牧使所捧世子宮方物馬裝草記, 傳曰, 自己丑至己亥, 宜有前例此草記, 似乎不爲考例而爲之, 使之相考前例, 改入事, 傳教矣. 近來三名日大王大妃殿·王大妃殿方物, 及大殿所封弓帑筒箇外, 竝爲權減, 而自前濟州牧, 則弓帑筒箇外, 馬裝獐皮, 亦爲封進. 故未封進馬裝獐皮, 使之追封事, 今年正月間, 具由入啓, 定奪行會, 而濟州牧使李墳, 追封方物中, 世子宮馬裝, 一體封進. 未知其由, 取考己丑以後數年文書, 俱無世子宮封進之例, 今番則因爲捧入, 而方物未復舊之前, 勿爲封進之意, 啓稟矣. 今承下教, 更考己丑以後己亥以前文書, 則自己丑至乙未, 未有封進之事, 而自丙申至己亥, 果爲封進. 以此見之, 則權減後各年所封不一其規, 今後世子宮所封馬裝, 使之仍爲封進, 何如? 傳曰, 使之【缺】年一度可也.

## ❖ 현종 9년(1668) 무신년 5월 22일(기미)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바치는 세자궁의 마장(馬裝)을 그대로 봉진하게 할 것을 청하는 예조의 계

- 예조에서 아뢰기를, “예조에서 올린 제주목(濟州牧)이 세자궁에 바친 방물 마장(馬裝)의 초기(草記)에 대해 전교하기를, 기축년(1649, 인조 27)부터 기해년(1659, 효종 10)에 이르기까지 의당 전례가 있었는데, 이 초기는 옛 전례를 살피지 않아 기록한 듯하니 전례를 살펴 고쳐 들이도록 하는 일을 전교하였습니다. 근래 삼명일(三名日) 대왕대비전, 왕대비전의 방물 및 대전에 봉한 궁대통개(弓帑筒箇)<sup>199)</sup> 외에는 모두 임시로 줄였는데, 전부터 제주목은 곧 궁대통개 외에 마장장피(馬裝獐皮) 또한 봉진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봉진하지 않은 마장장피를 추봉하게 하는 일을 금년 정월 간에 말미를 갖추어 아뢰어 임금의 재결을 받고 공문을 보내 알리니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인(李墳)<sup>200)</sup>이 추봉 방물 중 세자궁 마장 일체를 봉진하였습니다. 그 말미를 알지 못하고 기축년 이후 수년의 문

199) 궁대통개(弓帑筒箇): 궁대는 통상 활을 넣는 통을 말하며, 통개는 화살집과 활을 넣는 통을 한 줄로 묶어 왼쪽 어깨에 매개줄로 연결된 제구로 천이나 가죽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활과 화살을 넣는 활통으로 이해됨.

200) 이인(1608~1669): 본관 벽진(碧珍). 자 야수(野叟), 호 소옹(素翁). 부친 이상급(李尙倂). 1636년(인조 14) 과거 급제. 지평, 예조정랑, 의주부윤, 형조참의 역임. 제주목사로 1667년(현종 8) 6월 도임하여 1669년(현종 10) 9월 재임 중 사망. 1668년 제주향교를 가락천 동쪽에서 서쪽 옛 자리로 이설. 1669년 영혜사(永惠祠)를 장수당(藏修堂) 동쪽에 건립, 이약동(李約東)과 이괴(李楡) 두 목민관을 추향함.

서를 취하여 살펴보니 세자궁에 봉진한 예가 모두 없었는데 금번은 곧 그 때문에 봉입되었습니다. 방물을 예전처럼 다시 내도록 하지 말고 봉진하지 말도록 하는 뜻을 아뢰입니다. 이제 내리신 전교를 받들어 다시 기축년 이후 기해년 전까지의 문서를 다시 살펴보니 기축년 부터 을미년(1655, 효종 6)까지는 봉진한 일이 없었으나 병신년(1656, 효종 7)부터 기해년까지는 과연 봉진하였습니다. 이로 보건대 임시로 줄인 후 해마다 봉진한 것이 그 규례가 한결 같지 아니하여 금후로는 세자궁에 봉진할 마장은 계속해서 봉진하도록 함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빠짐】년 한 번 하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목, 세자궁, 궁대통개, 마장장피, 제주목사, 이인.

## ❖ 康熙七年 戊申 七月 五日 壬寅

- 院啓, 近來銓席注擬, 常患乏人, 清選備望之際, 輒請外任, 雖出於不得已, 而事體之苟簡則甚矣. 至於堂上清望, 其數甚少, 而新除授安邊府使南九萬, 鐵原府使李時術, 相繼外補, 實涉無端, 此不過該曹徒徇自己息偃之私便, 殊不念內外輕重之致, 政體失宜, 物情爲非. 安邊府使南九萬, 鐵原府使李時術, 請命竝遞差, 吏曹當該堂上·郎廳推考. 三水爲邑, 僻在北路一隅, 而王化之所不及也. 從前擇差, 意非偶然, 而新除授郡守鄭斯翰, 爲人愚濫, 曾爲濟州判官時, 多有不廉之誚, 此時撫綏邊氓之任, 不可付諸如此之人. 請三水郡守鄭斯翰遞差, 其代擇送. 守令下直時, 必見臺官, 自是體例, 而靈巖郡守權迪, 下直之際, 適值臺官之出他, 偃然留刺, 及其辭朝之日, 終不來見, 其失體甚矣. 請靈巖郡守權迪推考. 答曰, 依啓.

## ❖ 현종 9년(1668) 무신년 7월 5일(임인)

### □ 제주판관(濟州判官)을 역임했던 정사한(鄭斯翰)의 교체를 청하는 사간원의 계

- 사간원에서 아뢰기를<sup>201)</sup>, “근래에 전석(銓席)<sup>202)</sup>에서 올리는 관리 임명 후보자들은 늘 인재가 달려 모자람을 걱정하는데 후보자 중 적절한 인물을 뽑을 즈음 문득 지방관으로 요청되어 부득이하게 나가 버리니 일의 이치가 참으로 간편하기가 심합니다. 당상관에 맑고 높은 명망을 지닌 이에 이르면 그 수가 너무나 적습니다. 새로 제수된 안변부사(安邊府使) 남구만(南九萬), 철원부사(鐵原府使) 이시술(李時術)은 서로 지방관을 계속 맡게 하여 실로 함부로 처리하는 데 이르렀으니 이는 해당 부서가 다만 자기 편안함만 추구하는 사사로운 편의를 쫓는 것에 불과하고 특히 내직 외직 경중의 이치를 생각지 않아 정치의 요체가 합당치 않고 여론을 보면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안변부사 남구만과 철원부사 이시술은 청컨대 모두 교체하고 이조의 해당 일을 맡은 당상과 낭청을 추고하도록 명을 내리십시오. 삼수(三水)는 그 고을이 북로 한 모퉁이 궁벽한 곳에 있어서 왕의 교화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터 인재를 가려 임명한 것은 뜻이 우연이 아닌데 새로 제수된 군수 정사한(鄭斯翰)<sup>203)</sup>은 사람됨이 어리석고 외람되어 일찍

201) 《현종실록》(현종 9년 7월 4일)에 의하면 대사간 장선징(張善徵), 사간 이유(李旻), 헌납 이관징(李觀徵)이 아뢴 사실로 소개되어 있음. 다만 제주판관을 역임했던 정사한의 교체와 영암군수로 제수된 권적의 추고에 대한 사실은 실록에 전하지 않음.

202) 전석(銓席): 문무관의 인재를 가려 뽑는 자리라는 뜻으로 이조, 병조의 관리 인사 담당 관직을 말함.

203) 정사한(1620~?): 본관 영일(迎日). 자 사흥(士興). 부친은 정탁(鄭倬). 1644년(인조 22) 과거 급제.

이 제주판관(濟州判官)이 되었을 때 청렴치 못하다는 책망을 많이 받았는데, 이 때 변방의 백성을 어루만져 편안하게 하는 직임을 이 같은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청컨대 삼수군수 정사한을 교체하고 그 대신 다른 사람을 가려 뽑아 보내도록 하십시오. 수령이 하직할 때 반드시 대관(臺官)을 뵈는 것이 스스로 근본이 바른 사례라 할 것인데 영암군수(靈巖郡守) 권적(權迪)은 하직할 때 마침 대관이 출타 중이어서 거드름 피우며 명함만 두고 왔으며 임금께 하직인사 드리던 날에도 끝내 와서 보지 않았으니 근본을 잃은 것이 심합니다. 청컨대 영암군수 권적을 추고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7〉

△ 주제어: 안변부사, 남구만, 철원부사, 이시술, 삼수군수, 제주판관, 정사한, 영암군수, 권적.

---

1656년(효종 7) 10월 제주판관으로 도입하고 1657년 5월에 파직되어 이임함. 현종대에는 완도 가리포첨사 및 삼수군수 등을 역임.

❖ 康熙七年 戊申 七月 十四日 辛亥

- 政院啓曰, 卽見全羅監司閔點, 鹿島萬戶金重鳴查覈啓本中, 監造軍官·色吏·船匠·耳匠·山直及舊退船質去人八名, 及濟州牧使推考啓本中, 色吏初頭捧招之上, 戶口有無, 竝皆不爲舉論, 殊欠事日本意, 請全羅監司閔點推考. 傳曰, 允.

❖ 현종 9년(1668) 무신년 7월 14일(신해)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추고계본(推考啓本)에 호구가 거론되지 않아 전라감사(全羅監司) 민점(閔點)의 추고를 청하는 승정원의 계
-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전라감사(全羅監司) 민점(閔點)을 보건대 녹도만호(鹿島萬戶) 김중명(金重鳴)의 사핵계본(查覈啓本)<sup>204</sup> 중 감조군관(監造軍官), 색리(色吏), 선장(船匠), 이장(耳匠), 산직(山直), 헐어서 못쓰게 된 배를 사갈 사람 8명과 제주목사(濟州牧使) 추고계본 중 색리가 처음에 진술 받은 문서 위에 호구(戶口)의 유무가 모두 다 거론되지 않아 유달리 사목의 본의가 빠져 있습니다. 청컨대 전라감사 민점을 추고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택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7〉

△ 주제어: 전라감사, 민점, 녹도만호, 김중명, 제주목사.

---

204) 사핵계본(查覈啓本): 어떤 사건이나 사안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여 그 내용을 임금에게 보고하는 것 또는 그 보고서. 사계(查啓) 또는 사핵(查覈).

❖ 康熙 七年 戊申 八月 八日 甲戌

○ 濟州牧使書目, 旱災太甚, 前頭之事, 實爲罔極事.

❖ 현종 9년(1668) 무신년 8월 8일(갑술)

□ 한재(旱災)가 너무 심하다고 보고하는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서목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서목에 가뭄이 너무 심하여 앞으로의 일이 참으로 망극한 일이 될 듯하다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목사.

❖ 康熙七年戊申八月九日乙亥

- 京畿監司書目, 安城呈, 以前濟州牧使洪宇亮身死, 不得推考事.

❖ 현종 9년(1668) 무신년 8월 9일(을해)

□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홍우량(洪宇亮)의 사망으로 추고할 수 없다는 경기감사의 서목

- 경기감사(京畿監司) 서목 중 안성(安城)의 공문서에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홍우량(洪宇亮)<sup>205</sup>이 죽어서 추고할 수 없는 일이라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목사, 홍우량, 안성.

---

205) 홍우량(1608~?): 본관 남양(南陽), 자 희숙(熙叔). 부친은 홍영(洪榮). 1637년(인조 15) 무과 급제. 효종 때 제주관관(재임: 1650. 03~1651. 06), 현종 때 제주목사(재임: 1665. 11~1667. 05)를 역임. 1665년(현종 6) 복수각, 1666년 동성문을 중수하였으며, 1667년(현종 8)에는 당시 최진남(崔鎭南) 관관과 더불어 충암묘를 현 오현단 경내로 이전함.

❖ 康熙 七年 戊申 十一月 二十日 乙卯

- 午時, 上御養心閣, 還下去差使員, 引見, 入侍, 承旨吳斗寅, 記事官姜碩昌·李寅煥·申翼相, 差使員, 居山察訪金璠·碧河察訪丁之碩, 濟物萬戶趙胤昌. …… 之碩進曰, 臣乃碧河察訪丁之碩也. 上曰, 所屬幾何? 對曰, 竝本驛爲十驛矣. 上曰, 有何弊瘼耶? 之碩曰, 本驛, 乃濟州直路, 備養馬匹, 則足可調用, 而其餘大段弊瘼, 則報于監司, 隨即啓聞變通, 此外別無仰達之事. 第兩年失稔, 沿海尤甚, 此則在於本道監司狀啓中, 而朝家, 必須各別賑救, 可免流亡之患矣. …… 遂罷出. 【以上燼餘】

❖ 현종 9년(1668) 무신년 11월 20일(을묘)

- 양심합(養心閣)에서 지방에 내려갔다 돌아온 차사원(差使員)을 인견하여 정지석(丁之碩) 등이 입시하여 그 고을의 사정에 대해 논의함
- 오시(午時)<sup>206</sup>에 임금이 양심합(養心閣)<sup>207</sup>에 나아가 지방에 내려갔다 돌아온 차사원(差使員)을 인견하였다. 입시는 승지 오두인(吳斗寅), 기사관은 강석창(姜碩昌), 이인환(李寅煥), 신익상(申翼相), 차사원은 거산찰방(居山察訪) 김숙(金璠), 벽하찰방(碧河察訪) 정지석(丁之碩), 제물만호(濟物萬戶) 조운창(趙胤昌)이었다. <중략> 정지석이 나아가 아뢰기를, “신은 벽하찰방 정지석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관할 소속이 몇이나 되는가?”라고 하였다. 대답하기를 “본 역(驛) 포함 10개 역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떤 폐단이 있는가?”라고 하였다. 정지석이 말하기를, “본 역은 제주(濟州) 직로여서 마필을 갖추어 기르는 관리를 잘 골라서 동용해야 할 것이며 그 나머지 대단한 폐단은 곧 감사에게 보고하고 따르느라 아뢰 바가 잘 처리되었고 이 밖에 특별히 아뢰 일은 없습니다. 다만 두 해에 걸친 흉년에 연해안이 더욱 심하여 이는 본도 감사의 장계 속에 있으니 조정에서 꼭 필요한 특별 진휼책을 내려 백성이 유망하는 근심을 면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드디어 끝나고 나갔다. 【이상은 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7>

△ 주제어: 양심합, 차사원, 벽하찰방, 정지석, 제주.

206) 오시(午時): 오전 11시에서 오후 12시.

207) 양심합(養心閣): 창덕궁 대조전의 부속 건물로 남쪽 별각. 현종이 이곳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경연도 열고 신하와 정사를 논의했던 장소였음.

❖ 康熙七年 戊申 十二月 二十日 甲申

- 司饗院啓曰, 今年已盡, 而濟州柑子進上, 尙無形影, 過海遲速, 雖難容人力, 此曾所未有之事, 不可置而不論, 牧使李墳, 推考, 何如? 傳曰, 允. 【已上司饗院謄錄】

❖ 현종 9년(1668) 무신년 12월 20일(갑신)

- 제주(濟州)의 감자(柑子) 진상이 오지 않았으므로 이인(李墳)을 추고하자는 사용원의 계
- 사용원에서 아뢰기를, “금년이 이미 다 되었는데 제주(濟州) 감자(柑子)의 진상이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건너며 빠르고 더딤이 비록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는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논죄하지 않고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목사 이인(李墳)을 추고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사용원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 감자, 이인.

❖ 康熙七年 戊申 十二月 二十七日 辛卯

- 兵曹判書洪重普請對引見時所啓, 直赴殿試之類, 使之許赴於今番別試殿試事, 頃者因傳教, 行會外方矣. 今見濟州牧使公事, 則前日試才時, 直赴殿試者, 雖未及於別試殿試, 聞有庭試取人之舉, 分付起送云, 而直赴庭試, 自下不敢仰請矣. 上曰, 今番庭試許赴, 可也. 又所啓, 頃日因傳教, 六兩矢, 使臺諫着署, 此非規例也. 凡殿試量箭·封標等事, 皆承旨次知, 而獨於六兩, 使臺諫次知, 似涉未妥, 此後則使承旨, 一體主管, 定爲恒式, 何如? 上曰, 依爲之. 【已上朝報】

❖ 현종 9년(1668) 무신년 12월 27일(신묘)

- 제주(濟州)의 시재(試才) 급제자를 정시(庭試)에 곧바로 응시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요청에 대해 가부를 묻는 홍중보(洪重普)의 계
- 병조판서 홍중보(洪重普)<sup>208</sup>가 시정을 건의하기 위해 임금을 인견할 때 아뢰기를,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하는 부류에 대해 금번 별시의 전시에 응시하게 허용하는 일은 지난번 전교에 의해 지방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지금 제주목사(濟州牧使)의 공적인 건의를 보니 ‘예전 시재(試才) 때 (선발한) 전시에 곧바로 응시하는 자는 비록 별시 전시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들으니 정시(庭試)의 인재 뽑을 때가 있다 하여 그때 올려 보내도록 분부해 주십시오.’라고 하니 곧바로 정시에 응시하는 일은 감히 함부로 처리할 수 없어서 우러러 요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금번 정시에 응시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난번 전교로 인해 육량시(六兩矢)<sup>209</sup>는 대간(臺諫)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였으니 이는 규례가 아닙니다. 무릇 전시의 양전(量箭)<sup>210</sup>, 봉표(封標) 등의 일은 모두 승지가 맡고 있는데 유독 육량시만 대간에게 맡기는 것은 온당치 못한듯하니 이후로는 승지로 하여금 일체 주관하게 하는 것을 영원한 규례로 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뢰 대로 하

208) 홍중보(1612~1671): 본관 남양(南陽), 자 원백(遠伯), 호 이천(梨川). 부친은 홍명구(洪明耆). 1645년 문과 급제, 1650년(효종 1) 수찬으로 《인조실록》 편찬에 참여함. 대사헌, 호조판서, 우의정을 역임. 왕의 호위군대로 정초군(精抄軍)을 조직하였는데, 이것이 숙종 때 금위영(禁衛營)으로 개칭됨. 시호 충익(忠翼).

209) 육량시(六兩矢): 6냥(225g) 나가는 화살. 보통 화살이 20~100g인 것을 감안하면 두 배 이상 무거운 화살임. 따라서 육량시는 아무 활로는 쏠 수 없고 정량궁(혹은 육량궁)이라는 활로 쏘아야 함. 정량궁은 길이 168cm의 거대한 활.

210) 양전(量箭): 무과 시험에서 응시자가 발사한 화살의 거리를 재는 일.

라.”라고 하였다. 【이상은 조보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7〉

△ 주제어: 흥중보, 제주목사, 시재, 전시, 정시, 육량시.



1669年



❖ 康熙 八年 己酉 一月 四日 戊戌

○ 吏〈批〉, 以趙聖輔爲正言, …… 崔國成爲旌義縣監, …….

❖ 현종 10년(1669) 기유년 1월 4일(무술)

□ 최국성(崔國成)을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함

○ 이조 비목[吏批]<sup>211)</sup>에 조성보(趙聖輔)를 정언에, 〈중략〉 최국성(崔國成)<sup>212)</sup>을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7〉

△ 주제어: 조성보, 최국성, 정의현감.

---

211) 이비(吏批): 문관의 인사 전형을 담당하는 전형위원회로 이조의 당상인 관서, 참판, 참의와 승지 1인으로 구성됨.

212) 최국성(1626~1684): 본관 경주(慶州). 부친 최동로(崔東老). 1651년(효종 2) 무과 급제. 1669년(현종 10) 3월 정의현감으로 도입하고 동년 6월에 공마선이 파선되자 그 책임을 물어 파직되어 이임.

❖ 康熙 八年 己酉 一月 十二日 丙午

- 上命引見留待守令，開城留守洪處亮，中和府使李延禎，羅州牧使朴贊，陰城縣監金汝南，全義縣監吳道弘，新昌縣監朴世樑，利仁察訪邊國翰，長水察訪文榮後，以次入侍。…… 文榮後，進伏曰，臣長水察訪文榮後也。上曰，濟州出身耶？洪萬容曰，然。上曰，履歷。對曰，登科直出六品，爲承校勘，除授本職耳。上曰，濟州多有儒士耶？對曰，雖無善手，而蒙朝廷勸獎之德，多有讀書者耳。上曰，濟州亦有書冊耶？對曰，經書則自朝宗有入送之規，故可以得見矣。上曰，本驛所屬，幾何？對曰，臣未赴任，未能知也。上曰，本驛在何地？對曰，在新寧。…… 遂罷出。【燼餘】

❖ 현종 10년(1669) 기유년 1월 12일(병오)

□ 제주(濟州) 출신으로 장수찰방(長水察訪)에 제수된 문영후(文榮後)의 하직 인사<sup>213)</sup>

- 임금이 남아서 대령한 수령을 인견하고자 명령을 내리니, 개성유수(開城留守) 홍처량(洪處亮), 중화부사(中和府使) 이연정(李延禎), 나주목사(羅州牧使) 박지(朴贊), 음성현감(陰城縣監) 김여남(金汝南), 전의현감(全義縣監) 오도홍(吳道弘), 신창현감(新昌縣監) 박세량(朴世樑), 이인찰방(利仁察訪) 변국한(邊國翰), 장수찰방(長水察訪) 문영후(文榮後)<sup>214)</sup>가 차례로 입시하였다. <중략> 문영후가 나아가 아뢰기를, “신은 장수찰방 문영후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 출신인가?”라고 물었다. 홍만용(洪萬容)<sup>215)</sup>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력은?”라고 물었다. 대답하기를, “등과하여 곧바로 6품에 나아가 승교감(承校勘)이 되고 본직에 제수 되었을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에도 또한 서책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대답하기를, “경서는 조종 이래로 들여보낸 법이 있어서 얻어 볼 수가 있습니다.”

213) 『현종실록』 권 16, 현종 10년 1월 12일 조에는 “개성유수 홍처량 및 하직 수령을 인견하였다”고 간략히 소개하고 있음.

214) 문영후(1629~1684): 본관 남평(南平). 자 인경(仁卿). 애월읍 어음리 출생. 1664년(현종 5) 8월 제주 시제어사로 온 윤심(尹深)의 시취 때, 문과에 문징후(文徵後), 고흥진(高弘進)과 함께 급제하여 전시직부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1666년 문과 급제. 곡성현감 등을 지냈으며 1684년(숙종 10) 제주향교 교수로 부임. 시문과 글씨에 능하고 천문에 조예가 깊었다. 탐라사절(耽羅四絶)로 불렸는데, 풍채에 양유성(梁有成), 풍수에 고흥진(高弘進), 의술에 진국태(秦國泰), 복서에 문영후를 꼽음.

215) 홍만용(1631~1692): 본관 풍산(豊山). 부친은 홍주원(洪柱元), 모친은 선조와 인목왕후 사이의 첫째 딸인 정명공주(貞明公主). 1662년(현종 3) 문과 장원급제. 교리, 대사헌, 예조판서 등을 역임. 기사환국으로 사직했으며, 왕실의 지친이면서도 직언을 서슴지 않아 숙종이 송시열(宋時烈), 송준길(宋浚吉)을 귀양 보낼 때 적극 구제함. 시호는 정간(貞簡).

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본 역의 관할 소속은 몇인가?”라고 물었다. 대답하기를, “신이 아직 부임하지 않아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본 역은 어느 곳에 있는가?”라고 물었다. 대답하기를, “신녕(新寧)<sup>216</sup>에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드디어 끝나고 나갔다. 【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7〉

△ 주제어: 장수찰방, 문영후, 홍만용, 제주, 신녕.

---

216) 신녕(新寧): 경상북도 영천 지역의 옛 명칭.

❖ 康熙 八年 己酉 一月 十六日 庚戌

- 張善澂, 以司饗院〈言〉啓曰, 濟州十一月朔進上乳柑·洞庭橘·柑子, 今日來到, 而全數腐朽, 體色稍完者, 絕無而僅有. 海外封進之物, 曾無退送之規, 不得已仍爲捧入, 而所封之物, 既有腐傷, 則封進官吏, 不無其責, 推考, 陪持下人, 下陸之後, 中路稽滯, 多至六日, 亦令攸司推治, 何如? 傳曰, 允.

❖ 현종 10년(1669) 기유년 1월 16일(경술)

□ 제주의 진상 감귤이 상하여 이를 봉진한 관리 및 운송 하인을 추고하도록 청하는 사옹원의 계

- 장선징(張善澂)<sup>217</sup>이 사옹원의 말로써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11월 초하루 진상인 유감(乳柑), 동정굴(洞庭橘), 감자(柑子)가 오늘 들어 왔는데 전체가 부패하고 빛깔이 조금이라도 완전한 것이 거의 없고 조금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다 밖에서 봉진한 물품을 일찍이 되돌려 보낸 법이 없어서 부득이 그대로 봉입하였는데 봉한 물건이 이미 썩고 상한 즉 봉진한 관리에게 그 책임이 없을 수 없으니 추고하고, 운송한 하인도 육지에 내린 후 중로(中路)에 머뭇거리며 늦어진 것이 많게는 6일에 이르니 또한 유사에 명령을 내려 추고하여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7〉

△ 주제어: 장선징, 제주, 유감, 동정굴, 감자.

---

217) 장선징(1614~1678): 본관 덕수(德水). 자 정지(淨之), 호 두곡(杜谷). 부친은 장유(張維), 모친은 김상용(金尙容)의 딸. 효종 비 인선왕후(仁宣王后)의 오빠. 인조 때 공신의 아들이라 하여 음보로 관직에 진출, 1662년(현종 3) 철원부사로 있을 때 문과 급제. 교리, 대사헌, 예조판서 등을 역임. 숙종 때 여러 차례 송시열의 신원을 간청하는 상소를 올림. 시호는 정장(正莊).

❖ 康熙 八年 己酉 一月 十六日 庚戌

- 張善澂啓曰, 濟州牧使李墳, 本島田畚改打量事狀啓末端, 只書年月, 不書日字. 昨日紛擾之中, 未及致察, 啓下備局矣. 卽者大臣送言之後, 始乃覺悟. 臣以代房, 難免不察之失, 不勝惶恐. 莫重狀啓, 如是落書, 殊無敬謹之意. 濟州牧使李□請推考. 傳曰, 允.

❖ 현종 10년(1669) 기유년 1월 16일(경술)

□ 장계에 일자를 적지 않은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인(李墳)의 추고를 청하는 장선징(張善澂)의 계

- 장선징(張善澂)이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인(李墳)이 본도 전답의 측량을 고친 일로 올린 장계 말단에 다만 연월만 쓰고 일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어제 어수선하고 혼란스런 속에 미처 자세히 살피지 못하여 비변사에 내려 보낸 즉대신이 말을 해 온 뒤에 비로소 잘못을 알았습니다. 신이 (승지로) 대신 처리하였는데 살피보지 못한 실수를 면키 어려워 황공함을 견뎌내지 못하겠습니다. 막중한 장계에 이처럼 글을 빠뜨렸으니 극히 공경하고 삼가는 뜻이 없습니다. 제주목사 이인(李墳)<sup>218</sup>을 청컨대 추고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7〉

△ 주제어: 장선징, 제주목사, 이인.

---

218) 이인(李墳): 원문에는 이□(李□)라고 되어 있으나, 동일 기록에 제주목사는 이인(李墳)이라 되어 있어 역자가 바로 잡음.

❖ 康熙 八年 己酉 一月 十八日 壬子

○ 下直, 昆陽郡守洪受九, 旌義縣監崔國成, …….

❖ 현종 10년(1669) 기유년 1월 18일(임자)

□ 정의현감 최국성(崔國成)이 하직함

○ 곤양군수(昆陽郡守) 홍수구(洪受九), 정의현감(旌義縣監) 최국성(崔國成), 〈하략〉 등이 임지로 떠난다고 인사 올렸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7〉

△ 주제어: 홍수구, 정의현감, 최국성.

❖ 康熙 八年 己酉 一月 二十三日 丁巳

- 許積進曰, 自上眼候不平, 極爲驚慮, 今聞入侍醫官之言, 則似不至於大段, 不勝喜幸矣. 上曰, 左眼頗似不平, 故欲爲受鍼矣. 許積曰, 戶籍事目, 歲前當爲磨鍊, 而判尹吳挺一, 未及磨鍊, 因事見罷, 明日政, 以着實行公之人差出, 使之速爲磨鍊, 何如? 上曰, 依爲之. …… 閔鼎重曰, 咸鏡道黑角一百三十箇, 下送事, 命下矣. 黑角, 他國所產, 今因下送北道, 其數不多, 內工房所用, 則全用陽角, 其中陰角不用之物, 還下應辦司, 以爲需用, 何如? 上曰, 正陰角則無用矣. 柳赫然曰, 造弓此時爲然. 隆冬盛暑則不可造, 今使外方造作, 以爲不時之需, 而外方物力不敷, 自朝家下送筋角以造, 似好矣. 李浣曰, 以釜山之角, 使統營造弓, 豈不好哉? 上曰, 若有角則造弓不難, 其料布容入, 幾何? 內工房筋角, 無可取用, 使軍器寺役統營匠人, 造弓則尤好矣. 柳赫然曰, 濟州造弓極精, 弓材亦好, 絕島之人, 難以取來, 統營·京中則各令造之, 他營則取其匠手以造, 好矣. 上曰, 兩大將, 主管造弓. 且造箭, 亦使從長, 臂長者, 射之有餘, 臂短者, 可能射之矣, 許積曰, 角指改成之後, 我國之射誤矣, 柳赫然曰, 使兩人射之, 觀其矢道遲速則可知矣. 李浣曰, 使一人射之, 尤可知其利害矣. …… 遂罷出. 【燼餘】

❖ 현종 10년(1669) 기유년 1월 23일(정사)

- 허적(許積) 등이 입시하여 흑각(黑角), 근각(筋角) 등의 활 제작 재료에 대해 논의함
- 허적(許積)이 나아가 말하기를, “임금의 안후(眼候)가 편치 못하다 하여 극히 놀라고 염려스러워 이제 입시한 의관의 말을 들으니 대단한 지경에 이르지 않는 아니한 듯하다 하니 참으로 기쁘고 다행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왼쪽 눈이 매우 편치 못한 듯하여 그 때문에 침을 맞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허적이 말하기를, “호적사목(戶籍事目)은 새해가 되기 전에 마땅히 마련되어야 하는데 관윤 오정일(吳挺一)이 마련치 못했다 하니 그 일로 파면하고 내일 정사에서 착실히 공무를 이행할 인물을 차출하여 그에게 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뢰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중략> 민정중(閔鼎重)<sup>219)</sup>이 말하기를, “함경도로 흑각(黑角) 130개를 내려 보내는 일을 명령 내렸습니다. 흑각은 타국의 산물인 바 이제 북도로 내려 보내면 그 수가 많이 남지 않아 내공방

219) 민정중(1628~1692): 본관 여흥(驪興). 자 대수(大受), 호 노봉(老峯). 부친은 민광훈(閔光勳), 모친은 이광정(李光庭)의 딸. 송시열(宋時烈)의 문인. 1649년(인조 27) 문과 장원급제. 대사성, 이조판서, 좌의정 역임. 1659년 현종이 즉위하자 인조 때 죽음을 당한 소현세자빈 강씨(姜氏)의 억울함을 호소함. 1689년 기사환국 때 벽동(碧潼)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사망. 현종 묘정과 양주의 석실서원(石室書院) 등에 제향. 저서 《노봉집(老峯集)》. 시호는 문충(文忠).

(內工房)에서 쓰는 것은 모두 양각(陽角)을 써야하고 그 중 음각으로 쓸 수 없는 물건은 해당 주관 부서로 되돌려 보내 필요한 용도로 쓰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음각(正陰角)은 쓸 수 없는가?”라고 하였다. 유혁연(柳赫然)<sup>220</sup>이 말하기를, “활을 만드는 것이 이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겨울과 한여름에는 만들 수 없습니다. 지금 지방에서 만들게 하면 때가 아닌 수요가 되어 지방의 물력으로 부족하여 조정에서 내려보내는 근각(筋角)으로 만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완(李浣)<sup>221</sup>이 말하기를, “부산(釜山)의 뿔은 통영(統營)에서 만든 활이니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뿔이 있으면 활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 들어가는 소요 경비가 얼마쯤 되는가? 내공방의 근각은 취하여 쓸 수 없고 군기시(軍器寺)로 하여금 통영 장인에게 일을 시켜 활을 만들게 하는 것이 더욱 좋겠다.”라고 하였다. 유혁연이 말하기를, “제주(濟州)에서 활을 만드는 것이 매우 정밀합니다. 활의 재질도 또한 좋은데 절도의 사람이 취하여 오는 것이 어려우니 통영과 경중에 각각 명을 내려 만들게 하고 다른 영(營)에서 장인과 목수를 취하여 만들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두 대장이 활 만드는 것을 주관하라. 또 화살 만드는 것도 또한 길이에 따라 팔이 긴 자는 쏘는 데 여유를 두고 팔이 짧은 자도 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허적이 말하기를, “각지(角指)<sup>222</sup>를 고쳐 만든 후에는 우리나라의 활쏘기가 잘못되었다.”라고 하였다. 유혁연이 말하기를, “두 사람으로 하여금 쏘게 하여 그 화살이 나간 길의 더딤과 빠름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완이 말하기를, “한 사람으로 쏘게 해도 더욱 그 장단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중략> 드디어 끝나고 나갔다. 【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7>

△ 주제어: 허적, 호적사목, 오정일, 민정중, 흑각, 양각, 음각, 근각, 내공방, 유혁연, 부산, 통영, 이완, 제주, 각지.

220) 유혁연(1616~1680): 본관 진주(晉州). 자 회이(晦爾), 호 야당(野堂). 부친 유효걸(柳孝傑). 대대로 무신 집안에서 성장, 1644년(인조 22) 무과 급제. 남인 계열이면서도 효종대 이완(李浣)과 더불어 쌍벽을 이루면서 북벌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 어영대장, 한성판윤, 공조판서 역임. 1680년(숙종 6) 경신대출척으로 경상도 영해로 유배. 무예에 뛰어나 무신의 시사(試射)에서 줄곧 수석을 차지하였고, 화차(火車)의 사용을 권장함. 시호는 무민(武愍).

221) 이완(1602~1674): 본관 경주(慶州). 자 징지(澄之), 호 매죽헌(梅竹軒). 부친 인조반정 공신인 이수일(李守一). 1624년(인조 2) 무과에 급제. 1636년 병자호란 때 출전해 공을 세웠고, 인조 말년에 어영대장이 됨. 1653년(효종 4)부터 현종 때까지는 16년간 훈련대장을 겸임함. 효종 및 송시열(宋時烈) 등과 함께 북벌에 집착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함. 시호는 정익(貞翼).

222) 각지(角指): 활을 쏘 때 손가락에 끼는 것으로 우리말로는 깍지라고 함. 깍지는 활시위를 당길 때 손가락이 아프기 때문에 손가락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이것을 엄지손가락에 끼고 활시위를 걸어서 당겼음.

❖ 康熙 八年 己酉 三月 二十五日 戊午

- 洪萬容啓曰, 濟州牧使李墳, 田登收稅磨鍊啓本末, 不爲署名, 殊無敬謹之道, 而臣以代房捧入之際, 未及覺察, 啓下之後, 始乃覺悟, 不勝惶恐. 濟州牧使李墳, 請推考. 傳曰, 允.

❖ 현종 10년(1669) 기유년 3월 25일(무오)

- 계본(啓本) 말미에 서명하지 않은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인(李墳)의 추고를 청하는 홍만용(洪萬容)의 계
- 홍만용(洪萬容)이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인(李墳)이 등록된 토지의 수세를 마련하는 계본(啓本)<sup>223)</sup> 말미에 서명을 하지 않아 특히 공경하고 삼가는 도리가 없었습니다. 신이 (승지로) 대신 처리하여 봉입할 때 미처 자세히 살펴볼 수 없었어 결재를 내려 보낸 후에 비로소 잘못을 깨달아 황공함을 견뎌내지 못하겠습니다. 제주목사 이인을 청컨대 추고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택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7〉

△ 주제어: 홍만용, 제주목사, 이인.

---

223) 계본(啓本): 임금에게 보이는 서류.

❖ 康熙 八年 己酉 五月 二十二日 甲寅

- 執義朴增輝啓曰, 臣頃忝本職之日, 與長官會坐, 多官推緘, 相議照勘, 而其中濟州牧使李墳進上柑子腐朽事, 則候風越海, 異於陸路, 封進日字, 既不過限, 濡滯色變, 似非封進官之罪, 擬律低昂, 參以情法, 則論以公罪, 未爲不可. 南兵使李重信啓本誤書事, 則色吏, 先爲勘罪, 而以不應爲公罪, 照入判下. 官吏照律, 不可異同, 至於濟州牧狀啓落書. 竹山府使許珽挾書臣字兩款事, 則律文措語, 雖似差異, 擬律既同, 固無輕重於其間, 而政院啓稟請改, 繼有公事還出給之命. 臣於此, 有不敢晏然之嫌. 且今番監試覆試出榜時, 舉子名字誤書之故, 該曹請試官, 臣亦參在試官之列, 方被推勘, 以此以彼, 決不可一刻仍冒, 請命遞斥臣職. 慶寂啓曰, 執義朴增輝, 以濟州牧使李墳, 南兵使李重信, 竹山府使許珽等推緘照勘. 不能□□□□故政院啓稟請改, 繼有還出給之命. 臣於此, 有不敢晏然之嫌. 且臣以今番監試覆試試官, 誤書舉子名字, 方被推勘, 以此以彼, 決難仍冒, 引嫌而退. 擬律差失, 雖是前事, 方被推勘, 勢難仍在, 請命遞差. 答曰, 依啓.

❖ 현종 10년(1669) 기유년 5월 22일(갑인)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진상한 감자(柑子)가 부오(腐朽)한 사건과 거자(舉子)의 이름을 잘못 쓴 일에 대한 처리를 보고하는 박증휘(朴增輝)의 계
- 집의 박증휘(朴增輝)가 아뢰기를, “신이 근자에 본직을 맡은 날에 장관과 더불어 회의를 하며 많은 관리들의 추함(推緘)<sup>224</sup>을 서로 의논하며 그 피해 상황을 날날이 헤아렸는데 그 중에서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인(李墳)이 진상한 감자(柑子)가 부패한 일은 곧 바람을 기다리며 바다를 건너는 것이 육지와 다르므로 봉진한 일자가 이미 기한을 지난 것이 아니고 막히고 걸려 색이 변한 것이니 봉진한 관리의 죄가 아닌 듯하여 법을 적용하여 경중을 가리는데 정법(情法)을 참작한 즉 공죄(公罪)로 논죄하는 것이 불가하다 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남병사(南兵使) 이중신(李重信)이 계본(啓本)을 잘못 쓴 일은 색리가 먼저 죄인을 신문하여 처벌한 것으로 공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조해보며 재가를 받았습니다. 관리가 법을 대조하는데 같고 다름이 있어서는 불가할 것인데 제주목(濟州牧)의 장계에 빠진 글에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죽산부사(竹山府使) 허정(許珽)은 ‘헛서

224) 추함(推緘): 죄인의 죄과를 추문하여 기록한 공문서류.

(挾書)<sup>225)</sup>와 ‘신자(臣字)<sup>226)</sup>’ 두 건의 일은 형률 조문을 영구어서 만들어 비록 차이가 있는 듯하나 법규를 적용하매 이미 같습니다. 진실로 그 사이에 경중이 없으니 승정원의 계품을 고쳐 이어서 공적인 일에 대해 내린 명령을 되돌려야겠습니다. 신이 이에 대해 감히 편안치 못한 혐의가 있습니다. 또 금번 감시(監試) 복시의 급제자를 발표할 때 응시한 사람의 명단을 잘못 썼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시관을 요청하자 신이 또한 시관의 반열에 참여하여 바야흐로 규명하여 바로 잡았는데 이러나저러나 결국 조금이라도 참을 수 없는 일이니 청컨대 신의 직임을 교체하여 내쫓는 명령을 내리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경최(慶叵)가 아뢰기를, “집의 박증휘가 제주목사 이인, 남병사 이중신, 죽산부사 허정 등의 죄과를 기록한 공문서에 대해 그 피해상황을 낱낱이 헤아렸습니다. 승정원의 계품을 고쳐 이어서 내린 명령을 되돌릴 수가 없어서 신이 이에 대해 감히 편안치 못한 혐의가 있습니다. 또 신이 금번 감시 복시의 시관으로써 응시자의 이름을 잘못 써서 바야흐로 규명하여 바로잡았지만 이러나저러나 결국 참기 어려우니 그 혐의로 인해 퇴직 하겠다 했습니다. 법을 적용하매 잘못된 것이 비록 이전의 일로 바야흐로 규명하여 바로잡았지만 형세가 곤란한 데에 이르렀으니 청컨대 교체의 명령을 내리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7〉

△ 주제어: 박증휘, 제주목사, 이인, 감자, 이중신, 죽산부사, 허정, 경최.

225) 협서(挾書): 과거 시험장에 책을 가지고 들어감. 작은 책이나 종이를 붓대나 두루마리 속에 숨겼다가 몰래 꺼내보는 부정행위의 일종.

226) 신자(臣字): 임금에게 올리는 장계 등 공문서에 신자(臣字)를 써야 하는데 이를 쓰지 않은 사실을 문제시 한듯함.

❖ 康熙 八年 己酉 七月 十八日 己酉

○ 吏批. 以尹飛卿爲左承旨, …… 李□□爲旌義縣監, …….

❖ 현종 10년(1669) 기유년 7월 18일(기유)

□ 이송로(李松老)를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함

○ 이조 비목[吏批]에 윤비경(尹飛卿)을 좌승지(左承旨)로, <중략> 이송로(李松老)<sup>227)</sup>를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7〉

△ 주제어: 윤비경, 이송로, 정의현감.

---

227) 이송로(李松老): 원문에는 '李□□'라고 되어 있는데, 역자가 바로 잡음. 1669년 11월 도입하여 1672년 7월 이임한 정의현감은 이송로임. 《현종실록》(현종 10년 7월 16일)에 의하면 공마선의 침물로 정의현감 최국성이 파직되었다고 하였으니 그의 후임으로 부임함.

❖ 康熙 八年 己酉 七月 二十三日 甲寅

○ 吏, 以金震標爲錦山郡守, …… 盧錠爲濟州牧使, …….

❖ 현종 10년(1669) 기유년 7월 23일(갑인)

□ 노정(盧錠)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sup>228)</sup>

○ 이조 비목[吏批]에 김진표(金震標)를 금산군수(錦山郡守)로, <중략> 노정(盧錠)<sup>229)</sup>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7>

△ 주제어: 김진표, 금산군수, 노정, 제주목사.

---

228) 『현종실록』 권17 현종 10년 7월 23일조에 관련 기사가 있음.

229) 노정(?~1691): 효종 때 제주관관(재임: 1651.07~1653.08)과 현종 때 제주목사(1669.09~1672.05)를 역임. 관관 재임 중인 1653년(효종 4) 네덜란드의 하멜 일행이 대정현 경내에 표도하자 그들을 제주성까지 호송하였으며, 목사 재임 중인 1670년(현종 11)에는 반청한인(反淸漢人)이 정의현 경내에 표도하자 배를 수리하여 돌려보냈음. 제주목사 재임 중 최악의 흉년과 전염병으로 수차례 진휼책을 중앙정부에 요청하여 기민과 병자 구제에 심혈을 기울여, 그 공으로 가선대부에 가자됨. 총융사를 역임했으며, 청백리로 천거되었고 장례비용을 국가에서 제공함.

❖ 康熙 八年 己酉 八月 九日 己巳

- 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濟州年例進上馬八匹, 三名日進上馬六十匹, 凶咎馬雌雄竝六十四匹, 山屯雜種馬十三匹, 駑駘馬雌雄竝二十匹, 合一百六十五匹內, 計諸船敗滄死及病留中路馬外, 一百五十匹, 先到本寺, 故禾毛色, 別單開錄, 有頗之馬, 亦爲懸錄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司僕寺臚錄】

❖ 현종 10년(1669) 기유년 8월 9일(기사)

- 제주(濟州) 연례진상마(年例進上馬) 등 150필 말에 대한 나이와 털색을 별단에 기록하여 들인다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 관원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 연례진상마(年例進上馬) 8필, 삼명일<sup>230</sup>진상마(三名日進上馬) 60필, 흉구마(凶咎馬) 암수 모두 64필, 산둔잡종마(山屯雜種馬) 13필, 노태마(駑駘馬) 암수 모두 20필, 합계 165필 중 여러 배에서 죽거나 익사한 말 및 병으로 중도에 두고 온 말을 제외한 150필이 본 관아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에 기록하고 탈난 말 또한 장부에 기록하여 들일 뜻을 감히 아뢰습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사복시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 연례진상마, 삼명일진상마, 흉구마, 산둔잡종마, 노태마.

---

230) 삼명일(三名日): 임금탄신일, 정월초하루, 동지의 세 명절.

❖ 康熙 八年 己酉 八月 十一日 辛未

○ 下直, 濟州牧使盧鎬, …….

❖ 현종 10년(1669) 기유년 8월 11일(신미)

□ 제주목사(濟州牧使) 노정(盧錠)이 하직함

○ 제주목사(濟州牧使) 노정(盧錠)<sup>231)</sup> 〈하략〉 등이 임지로 떠난다고 인사 올렸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목사, 노정.

---

231) 노정(盧錠): 원문에는 노호(盧鎬)로 되어 있지만, 제주목사를 역임한 이는 노정(盧錠)이 옳기에 노정으로 바로 잡음.

❖ 康熙 八年 己酉 十月 日

- 將之意, 亦何如? …… 朴世堅曰, 故濟州牧使李溟, 受任海外, 仍致身死, 而運喪爲難, 似當趁校[軫]念矣. 上曰, 令所經各邑, 擔持軍題給護送, 可也. …… 【燼餘】

❖ 현종 10년(1669) 기유년 10월 3일<sup>232)</sup>

- 제주(濟州)에서 임무 수행 중 사망한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인(李堧)의 상여 호송에 대해 논의함.<sup>233)</sup>
- 장차의 뜻은 또한 어떠한가? <중략> 박세견(朴世堅)<sup>234)</sup>이 말하기를, “고(故)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인(李堧)<sup>235)</sup>은 바다 밖에서 임무를 받았는데 이에 사망에 이르러 상여를 메고 운반하는데 어려워 생각해 주어야 할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의 상여가 지나는 고을마다 담지군(擔持軍)<sup>236)</sup>을 차출하여 호송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7〉

△ 주제어: 박세견, 제주목사, 이인, 담지군.

232) 『승정원일기』에는 일자가 제시되지 않았으나 『현종실록』에 동일 내용의 기사가 10월 3일로 전하고 있어서 역주자가 보충함.

233) 『현종실록』 권17, 현종10년 10월 3일(계해) 기사에 관련 사실이 있음.

234) 박세견(1619~1683): 본관 반남(潘南). 자 중고(仲固), 호 단애(湍厓). 부친은 박정(朴埏). 1639년(인조 17) 진사시 장원급제, 1654년(효종 5) 과거 급제. 청풍군수, 정언, 병조참의 역임. 지방수령을 역임할 때 청렴하여 백성들로부터 인심을 얻었음.

235) 이인(李堧): 원문에는 이명(李溟)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 제주목사는 이인(李堧)이어서 역주가 바로 잡음.

236) 담지군(擔持軍): 가마나 상여를 메는 사람. 담군(擔軍)이라고도 함.

❖ 康熙 八年 己酉 十月 八日 戊辰

- 박세경, 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濟州山馬監牧官金嗣宗, 封進馬二匹, 來到本寺, 故移送內寺. 木毛色校[禾毛色], 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현종 10년(1669) 기유년 10월 8일(무진)

- 제주산마감목관(濟州山馬監牧官) 김사종(金嗣宗)의 봉진마(封進馬)에 대해 나이와 털색을 별단으로 써서 들인다는 사복시의 계
- 박세경(朴世堅)이 사복시 관원으로 제조의 뜻을 아뢰기를, “제주산마감목관(濟州山馬監牧官) 김사종(金嗣宗)이 봉진한 말 2필이 본 관아에 도착하여 내시(內寺)<sup>237)</sup>로 이송하였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으로 써서 들일 뜻을 감히 아뢰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7〉

△ 주제어: 박세경, 제주, 산마감목관, 김사종.

---

237) 내시(內寺): 내사복시(內司僕寺)의 줄임말. 조선시대 왕의 말과 수레를 관리하던 관청. 내구(內廄)라고도 함.

❖ 康熙 八年 己酉 十月 十六日 丙子

○ 吏〈批〉, 以權大運爲都承旨, …… 李厚先爲濟州判官, …….

❖ 현종 10년(1669) 기유년 10월 16일(병자)

□ 이후선(李厚先)을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함

○ 이조 비목[吏批]에 권대운(權大運)을 도승지로, 〈중략〉 이후선(李厚先)<sup>238)</sup>을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7〉

△ 주제어: 권대운, 이후선, 제주판관.

---

238) 이후선(1609~?): 본관 전의(全義). 자 유백(裕伯). 부친은 이증길(李增吉). 1639년(인조 17) 과거 급제. 정언, 장령 역임. 1651년(효종 2) 양조부 이정표(李廷彪)가 강화부사 정항(鄭沆)과 함께 영창대군 소사(燒死)에 관련 있다 해서 탄핵받았으나, 3년 뒤 이시백(李時白)의 구제 요청으로 직첩을 돌려받음. 1664년(현종 5) 임금의 교지에 응해 양민 보호 및 성학(聖學) 강론 등 10조목의 상소를 올림.

❖ 康熙 八年 己酉 十一月 十六日 乙巳

- 吏曹判書趙復陽, 受由在外, 參判李時術進, 參議金萬基病, 右承旨李翊進. 吏批啓曰, 判書趙復陽, 受由在外, 參議金萬基, 病不進, 小臣獨政未安, 何以爲之? 敢稟. 傳曰, 仍爲之. 李尙眞爲大司憲, …… 尹弼殷爲濟州判官, …….

❖ 현종 10년(1669) 기유년 11월 16일(을사)

□ 윤필은(尹弼殷)을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함

- 이조판서 조복양(趙復陽)이 말미를 받아 지방에 있어서 참판 이시술(李時術)이 나아갔고, 참의 김만기(金萬基)는 병중에 있고, 우승지 이익(李翊)이 나아갔다. 이비(吏批)에서 아뢰기를, “판서 조복양이 말미를 받아 지방에 있고, 참의 김만기는 병으로 나오지 못하여 소신(小臣)이 홀로 정사를 아뢰는 것이 편치 않은데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감히 아뢰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그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이상진(李尙眞)을 대사헌으로, <중략> 윤필은(尹弼殷)<sup>239</sup>을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7〉

△ 주제어: 조복양, 이시술, 김만기, 이익, 이상진, 윤필은, 제주판관.

---

239) 윤필은(1615~?): 본관 파평(坡平). 자 당경(湯卿). 부친은 윤성임(尹聖任). 1656년(효종 7) 과거 급제. 공릉참봉, 시직 역임. 1663년(현종 4) 아산현감 재직 중, 탄핵 당함.

❖ 康熙 八年 己酉 十二月 二十一日 庚辰

○ 下直, 濟州判官尹弼殷, …….

❖ 현종 10년(1669) 기유년 12월 21일(경진)

□ 제주판관(濟州判官) 윤필은(尹弼殷)이 하직함

○ 제주판관(濟州判官) 윤필은(尹弼殷) 〈하락〉 등이 임지로 떠난다고 인사 올렸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판관, 윤필은.

❖ 康熙 八年 己酉 十二月 二十六日 乙酉

○ 吏〈批〉, 以任以道爲監察, …… 鄭台周爲大靜縣監, …… 【政事軸】

❖ 現宗 10년(1669) 기유년 12월 26일(을유)

□ 정태주(鄭台周)를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함

○ 이조 비목[吏批]에 임이도(任以道)를 감찰로, 〈중략〉 정태주(鄭台周)<sup>240</sup>를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하였다. 〈하략〉. 【정사축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7〉

△ 주제어: 임이도, 정태주, 대정현감.

---

240) 정태주(?~?): 조선 현종 때의 대정현감. 재임기간은 1670년(현종 11) 윤2월부터 1671년 6월까지임. 1670년 12월 제주선유어사 이하(李夏)의 서계에 따르면 “전 대정현감 정태주는 진흙의 정사를 간사한 아전에게 일임하였으며 또 탐욕을 부려 법을 어긴 죄가 많아서 … 사형을 감면하여 정배하였다.” 라고 되어 있음.

1670年



❖ 康熙 九年 庚戌 一月 二十七日 乙卯

- 下直 溫陽郡守南斗長 熊川縣監李得彬 大靜縣監鄭台周 釜山僉使李延禎 金城縣令朴鑽 羅暖萬戶姜陞龍.

❖ 現宗 11년(1670) 경술년 1월 27일(을묘)

대정현감(大靜縣監) 정태주(鄭台周) 등이 하직함

- 온양군수(溫陽郡守) 남두장(南斗長)과 웅천현감(熊川縣監) 이득빈(李得彬), 대정현감(大靜縣監) 정태주(鄭台周)<sup>241</sup>, 부산첨사(釜山僉使) 이연정(李延禎), 금성현령(金城縣令) 박빈(朴鑽), 나난만호(羅暖萬戶) 강승룡(姜陞龍) 등이 하직(下直)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대정현감, 정태주.

---

241) 정태주(鄭台周): 1669년(현종 10) 12월 26일(을유)에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 1670년(현종 11) 1월에 하직, 윤2월에 부임, 1671년(현종 12) 신해년 6월에 교체되어 이임. 국사편찬위원회 활자본에는 정석주(鄭石周)로 되어 있으나, 정태주(鄭台周)의 오독이므로 바로 잡음.

## ❖ 康熙 九年 庚戌 閏二月 一日 戊子

- 刑曹啓曰, 本曹囚推河克立, 以濟州人金汝漢, 帖文僞造辭緣推覈事, 上年十二月二十一日啓請囚禁, 以待金汝漢上來矣, 得聞代囚他人, 任意出去云, 極爲警駭. 捉來究問, 則以爲與獄吏李信一相議, 本月二十三日果爲代囚其妻甥金俊一, 而往見病母云. 在囚罪人, 符同獄吏, 私自出去, 情狀可惡. 罪人河克立, 色吏李信一, 與代囚人員金俊一, 刑推定罪. 啓下罪人, 私自代囚, 而慢不省察, 此曾所未有之事, 極爲可駭. 當該獄官, 姑先從重推考, 何如? 傳曰, 依允. 當該獄官, 先罷後推.

## ❖ 현종 11년(1670) 경술년 윤2월 1일(무자)

- 첩문(帖文)을 위조(僞造)하여 수금(囚禁)된 하극립(河克立)이 김준일(金俊一)을 대수(代囚)하도록 한 일로 색리(色里)와 해당옥관(當該獄官) 등을 치죄(治罪)할 것을 아뢰는 형조(刑曹)의 계

- 형조(刑曹)가 아뢰기를, “본조에서 가두어서 추고한 하극립(河克立)은 제주인(濟州人) 김여한(金汝漢)<sup>242)</sup>으로 하여금 첩문(帖文)을 위조한 사연을 추핵(推覈)<sup>243)</sup>한 일로, 지난해 12월 21일 계청(啓請)<sup>244)</sup>하여 잡아 가두도록 했는데, 김여한이 올라오기를 기다려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가두고 임의로 내보냈다는 것을 들으니<sup>245)</sup>, 매우 놀랍고 괴이한 일입니다. 죄인을 붙잡아 와서 캐물으니, 옥리 이신일(李信一)과 상의하여, 이번 달 23일에 과연 그의 처남 김준일(金俊一)을 대신 가두고, 병이 든 어머니를 가서 보었다고 합니다. 간혀 있는 죄인과 한 통속이 된 옥리가 사사로이 마음대로 내보낸 정상이 매우 가증스럽습니다. 죄인 하극립과 색리(色吏) 이신일(李信一), 대신하여 옥에 갇힌 인원인 김준일은 심문하여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계하(啓下)한 죄인을 사사로이 마음대로 대신 갇히게 하고, 게으름만 피우고 살피지 않은 것은 일찍이 없는 일로 매우 해괴합니다. 마땅히 해당 옥관은 우선 먼저 죄과의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 엄중하게 캐묻고 밝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 것에 따라 해당 옥관을 먼저 파면하고 후에 추고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하극립, 제주인, 김여한, 이신일, 김준일.

242) 김여한(金汝漢): 제주 사람으로, 조선 현종 때 첩문(帖文)을 위조함.

243) 추핵(推覈): 죄인을 추궁하여 죄상을 조사함.

244) 계청(啓請): 주청(奏請), 임금에게 아뢰어 청하던 일.

245) 이와 관련한 관략 내용이 『현종실록』 권18 ‘현종 11년(1670) 경술년 윤2월 1일(무자)’ 기사와 『현종 개수실록』 권22 ‘현종 11년(1670) 경술년 윤2월 1일(戊子)’ 기사에 있음.

❖ 康熙 九年 庚戌 閏二月 十一日 戊戌

- 又以司僕寺提調言啓曰 大靜縣監趙門赫遞任進上馬二匹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以爲依例留養內廐之地 而試其才品 則皆是駑劣不可用者 其全不揀擇 苟充塞責之狀 極爲未便 趙文赫推考 何如? 傳曰 允.

❖ 現종 11년(1670) 경술년 윤2월 11일(무술)

- 노열(駑劣)하여 쓸모없는 말을 진상한 대정현감(大靜縣監) 조문혁(趙門赫)을 추고(推考)하자는 사복시의 계
- 또한 사복시 제조의 말로 아뢰기를, “대정현감(大靜縣監) 조문혁(趙門赫)<sup>246</sup>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sup>247</sup> 2필이 올라왔는데, 나이와 털색은 별단(別單)에 써서 들이고, 전례에 따라 내구(內廐)<sup>248</sup>에서 기르게 하였습니다. 그 재품(才品)을 시험하니 모두 미련하고 졸렬하여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 모두를 전혀 가려 쓸 수 없어서 구차하게 책망을 면한 상황이니, 매우 편치 못합니다. 조문혁을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택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대정현감, 조문혁, 체임진상마, 내구.

246) 조문혁(趙門赫): 1667년(현종 8) 10월에 대정현감에 부임, 1670년(현종 11) 경술년 윤 2월에 교체되어 이임.

247)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벼슬아치가 벼슬을 갈아 낼 때 진상하는 말.

248) 내구(內廐): 내사복시(內司僕寺). 조선 시대에, 임금의 말과 수레를 관리하던 관아.

❖ 康熙 九年 庚戌 閏二月 十二日 己亥

- 司僕寺啓曰, 大靜縣監趙門赫遞任進上馬二匹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以爲依例留養內廐之地, 試其才品, 則皆是駑劣不可用者, 其全不揀擇, 苟充塞責之狀, 極爲未便, 趙門赫推考, 何如? 傳曰, 允.

❖ 현종 11년(1670) 경술년 윤2월 12일(기해)

- 노열(駑劣)하여 쓸모없는 말을 진상한 대정현감(大靜縣監) 조문혁(趙門赫)을 추고(推考)하자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대정현감(大靜縣監) 조문혁(趙門赫)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2필이 올라왔는데, 나이와 털색은 별단(別單)에 써서 들고, 전례에 따라 내구(內廐)에서 기르게 하였습니다. 그 재품(才品)을 시험하니 모두 미련하고 졸렬하여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 모두를 전혀 가려 쓸 수 없어서 구차하게 책망을 면한 상황이니, 매우 편치 못합니다. 조문혁을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대정현감, 조문혁, 체임진상마, 내구.

❖ 康熙 九年 庚戌 四月 十二日 戊戌

○ 今四月初十日疏決引見時 左參贊宋浚吉所啓 小臣又有所懷 不得不達矣. 姜碩圭 既已蒙放 則宋之濂 爲和順縣監時 以殺人推官 曾配濟州 累年之後 始得量移 而與 自己殺人者有間. 當此曠蕩之日 如此久遠流配者 亦當分揀矣. 左議政許積曰 渠之 所犯則有之 而但其爲人 甚爲迂闊 實非巧詐用奸而然也. 上曰 減等可也. …… 【以 上禁府臚錄】

❖ 현종 11년(1670) 경술년 4월 12일(무술)

□ 소결(疏決)<sup>249</sup>로 인견할 때에 송준길(宋浚吉) 등이 입시하여 유배 중인 송지렴(宋 之濂) 등의 석방을 청함<sup>250</sup>

○ 을(1670년) 4월 초10일에 임금이 죄수를 너그럽게 처결하려고 인견할 때, 좌참 찬 송준길(宋浚吉)이 아뢰기를 “소신(小臣) 또한 소회가 있어서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석규(姜碩圭)는 이미 방면(放免)하였으니 송지렴(宋之濂)이 화순 현감(和順縣監)으로 있을 때 사람을 죽인 추관(推官)<sup>251</sup>으로 일찍이 제주(濟州)에 귀양을 갔는데 여러 해 뒤에 비로소 양이(量移)<sup>252</sup>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접 살인을 한 것과는 다르니 이렇게 널리 은전을 베푸는 날에 이와 같이 오래도록 멀리 유배되어 있는 사람 또한 분간(分揀)<sup>253</sup>해야 마땅할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좌의정 허적(許積)이 아뢰기를 “저들이 죄를 범한 바가 있으나 다만 그 사람됨이 매우 오활(迂闊)<sup>254</sup>한 것이지 실로 교사(巧詐)<sup>255</sup>하고 용간(用奸)<sup>256</sup>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감등(減等)<sup>257</sup>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하략>. 【이상 의금부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송준길, 강석규, 송지렴, 제주, 화순현감, 허적.

249) 소결(疏決): 죄인을 너그럽게 처결함.

250) 이와 관련된 내용이 <현종개수실록> 권22 현종 11년(1670) 경술년 4월 10일(丙申)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음.

251) 추관(推官): 의금부에서 임금의 특명에 따라 중한 죄인을 신문할 때 죄인을 심문하던 벼슬아치.

252) 양이(量移): 멀리 유배된 사람의 죄를 감등하여 가까운 곳으로 옮기던 일.

253) 분간(分揀): 죄지은 형편을 보아서 용서함.

254) 오활(迂闊): 곧바르지 아니하고 에돌아서 실제와는 거리가 먼. 사리에 어둡고 세상 물정을 잘 모름.

255) 교사(巧詐): 교묘하게 남을 속임.

256) 용간(用奸): 간사한 꾀로 남을 속임.

257) 감등(減等): 왕이 내리는 특전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형벌을 가볍게 함.

❖ 康熙九年庚戌四月十六日壬寅

- 沈粹 以待講院言啓曰 今此王世子冠禮後 濟州牧陳賀方物 今始上來 而世子宮所進物件 無別錄單子 有違前例 殊無敬謹之道 濟州牧使盧錠 推考 何如? 傳曰 允.

❖ 현종 11년(1670) 경술년 4월 16일(임인)

- 왕세자 관례(冠禮) 후 상납한 진하방물(陳賀方物)을 단자에 별도로 기록하지 않은 제주목사(濟州牧使) 노정(盧錠)의 추고(推考)를 청하는 시강원(侍講院)의 계
- 심재(沈粹)가 시강원(侍講院)에서 말하여 아뢰기를, “지금 왕세자 관례(冠禮)가 끝난 뒤에 제주목(濟州牧)의 진하방물(陳賀方物)<sup>258)</sup>이 이제 비로소 올라왔으나, 세자궁에 올린 물건을 별도로 단자(單子)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례를 어긴 것으로, 도무지 공경하고 삼가는 도리가 없으니, 제주목사(濟州牧使) 노정(盧錠)을 추고(推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유히 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심재, 제주목사, 노정, 진하방물.

---

258) 진하방물(陳賀方物):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에 지방 벼슬아치들이 임금에게 축하하기 위해 올리던 지방 물품.

❖ 康熙 九年 庚戌 五月 二十五日 庚辰

- 巳時, 上御養心閣, 大臣·備局堂上, 引見 …… 權大運曰, 【缺】所造弓子, 備局則謂之皆好品矣. 上曰, 何處所造稍優乎? 柳赫然曰, 統營及濟州所造 頗優矣. 洪重普曰 軍器事 待左相出仕 稟處 何如? 上曰 待後日更議 可也. …….

❖ 현종 11년(1670) 경술년 5월 25일(경진)

□ 양심합(養心閣) 인견에 제주(濟州)에서 만든 활 등에 대하여 논의함.

- 사시에 임금이 양심합(養心閣)에 나갔다. 대신과 비변사당상을 인견할 때 <중략> 권대운(權大運)이 말하기를, “【빠짐】에서 만든 활에 대해서, 비변사에서는 모두 좋은 품질이라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느 곳에서 만든 것이 조금 나은가?”라고 하였다. 유혁연(柳赫然)<sup>259</sup>이 말하기를, “통영(統營)과 제주(濟州)에서 만든 것이 자못 우수합니다.”라고 하였다. 홍중보(洪重普)<sup>260</sup>가 말하기를, “군기(軍器)의 일은 좌상(左相)이 출사(出仕)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품처(稟處)<sup>261</sup>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후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의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권대운, 유혁연, 홍중보, 통영, 제주, 활.

259) 유혁연(1616~1680): 본관 진주(晉州), 자 회이(晦爾). 호 야당(野堂). 시호 무민(武愍). 1644년(인조 22) 무과 급제. 삼도수군통제사, 포도대장, 공조판서 등 역임. 1680년(숙종 6)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에 연루되어 영해(寧海)에 유배된 뒤 대정(大靜)으로 위리안치 되었다가 사사(賜死)됨. 뒤에 신원되어 영의정에 추증됨.

260) 홍중보(1612~1671): 본관 남양(南陽). 자 원백(遠伯). 호 이천(梨川). 1645년(인조 23) 문과급제. 이후 춘추관·세자시강원·사헌부·사간원과 성산(城山)현감 등을 거치고, 병조·공조·형조·예조의 참판도 지낸 뒤, 도승지를 네 번, 대사헌을 세 번, 대사간을 두 번이나 역임. 1669년(현종 10) 우의정에 오름. 시호 충익(忠翼).

261) 품처(稟處): 윗사람의 명령을 받아 일을 처리함.

❖ 康熙 九年 庚戌 六月 一日 丙戌

○ 濟州牧使書目 點雨不下 兩麥焦枯 春耕專廢 極爲寒心事.

❖ 현종 11년(1670) 경술년 6월 1일(병술)

□ 가뭄이 심하다는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서목(書目)

○ 제주목사(濟州牧使) 서목(書目)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보리와 밀이 타고 메 말랐습니다. 봄갈이를 할 수가 없어서 매우 한심한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목사, 양맥.

❖ 康熙 九年 庚戌 七月 一日 乙卯

- 司僕寺啓曰 濟州年例進上馬三名日六十四匹 凶咎馬雌雄竝七十三匹 駑駘馬雌雄二十匹 山屯雜種馬二十四匹 合一百八十一匹內 計除船敗滄死及中路病留病故馬外 一百四十一匹 先到本寺 故禾毛色別單開錄 有頗之馬 亦爲懸錄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현종 11년(1670) 경술년 7월 1일(을묘)

□ 제주(濟州)의 연례진상마(年例進上馬)를 보고하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 연례진상마(年例進上馬)<sup>262</sup>는 삼명일(三名日)<sup>263</sup>에 바치는 60필, 흉구마(凶咎馬)<sup>264</sup> 암·수 모두 73필, 노태마(駑駘馬)<sup>265</sup> 암·수 20필, 산둔(山屯)<sup>266</sup>의 잡종마(雜種馬) 20필 등을 합하여 181필인데, 그 안에서 배가 부서져서 물에 빠져 죽은 것과 올라가는 도중에 병에 걸려 남기거나 죽은 말 외에 141필이 먼저 본시(本寺)에 도착했으므로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개록(開錄)하고, 탈이 있는 말 또한 장부에 기록하여 들여보내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도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 연례진상마, 삼명일, 흉구마, 노태마, 산둔잡종마.

262) 연례진상마(年例進上馬): 해마다 정례적으로 진상하는 말.

263) 삼명일(三名日): 삼명절. 임금이 탄신일, 정월 초하루, 동지(冬至)의 세 명절.

264) 흉구마(凶咎馬): 흉변이 있을 때에 노역하는 말.

265) 노태마(駑駘馬): 짐을 실어 나르는 데 쓰는 말.

266) 산둔(山屯): 산둔장(山屯場). 조선시대에 제주목 산간이나 정의현 산간에 설치했던 목장의 하나.

❖ 康熙 九年 庚戌 七月 二日 丙辰

○ 濟州牧使書目 本州染病大熾事.

❖ 현종 11년(1670) 경술년 7월 2일(병진)

□ 제주(濟州)에 전염병(傳染病)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서  
목(書目)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서목(書目)은 본주(제주)에 전염병이 크게 일어난 일이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목사, 염병.

❖ 康熙 九年 庚戌 七月 八日 壬戌

- 司僕寺啓曰 濟州後運歲貢馬二百匹內 來到本寺馬一百五十二匹 中路病留馬三十匹 病故馬一匹 船敗滄死馬十七匹 依例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현종 11년(1670) 경술년 7월 8일(임술)

- 제주(濟州)의 세공마(歲貢馬)에 대해 나이와 털색을 별단으로 서입(書入)하겠다는 사복시(司僕寺)의 계
-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후운(後運)<sup>267</sup> 세공마(歲貢馬)<sup>268</sup> 200필 안에, 본시(사복시)에 도착한 말은 152필이고, 운송 도중에 병이 들어서 머문 말이 30필이고, 병으로 죽은 말이 1필이고, 배가 파손돼서 물에 빠져 죽은 말이 17필이다. 전례에 따라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작성하여 들여보내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 후운, 세공마.

---

267) 운(運): 공물 따위를 운반함 또는 운송함을 뜻하는 말로, 선운(先運)과 후운(後運), 재운(再運), 또는 1운(運), 2운(運) 등이 있음. 제주에서는 22운(運)까지 있었음.

268) 세공마(歲貢馬): 해마다 지방에서 나라에 공물(貢物)로 바치던 말.

❖ 康熙 九年 庚戌 八月 三日 丁亥

- 全羅監司吳始壽狀啓內節該, 今年濟州馬出來時, 長興船所載馬三十五匹, 洋中船敗滄死事, 據兵曹覆啓內, 觀此全羅監司吳始壽啓本, 則事係太僕, 令太僕〈啓〉稟, 何如? 啓. 答曰, 允. 寺覆啓內, 濟州馬三十五匹所載長興船隻, 海中漂泊, 不爲到泊於海南段, 同縣曾已報知於本寺是白如乎, 觀此啓本 則上項船隻 自濟州出來時 未及楸子島 逢風致敗 其所載馬三十五匹段 竝與舞上奴哲龍 一時滄死 沙格金一另等八名瓮 乘帆席漂流之際 鳥島居鮑人奴甘山 持船救出之狀 明白現出於珍島縣監李東泌查報中爲白有臥乎所 事極驚慘是白置. 所囚沙格等八名乙良 卽爲放釋 其致斃馬三十五匹乙良置 竝爲蕩滌之意回移 何如? 答曰 允.

❖ 현종 11년(1670) 경술년 8월 3일(정해)

□ 제주마(濟州馬)를 실은 장흥선(長興船)이 표박(漂泊)한 곡절과 처리에 대하여 아뢰는 전라감사(全羅監司)의 장계

- 전라감사(全羅監司) 오시수(吳始壽) 장계(狀啓)의 요점에, “올해 제주마(濟州馬)가 나올 때, 장흥선(長興船)에 실은 말은 35필인데, 바다 가운데서 배가 부서져서 물에 빠져 죽은 일로 병조의 복계(覆啓) 내용에 따라, 전라감사 오시수의 계본(啓本)을 살펴보니, ‘이 일은 태복(太僕: 사복시)<sup>269)</sup>과 관계된 일이어서 태복(太僕)에서 품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아뢰었다. 답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사복시의 복계(覆啓) 안에, “제주마 35필을 실은 장흥선척(長興船隻)이 바다 가운데서 표박(漂泊)하여, 해남(海南) 지경에 도착하지 않은 것은, 동현(同縣)이 일찍이 이미 본시(사복시)에 기별하여 알려왔습니다. 이번 계본을 살펴보니, 위 배가 제주(濟州)에서 출발해 올 때 추자도(楸子島)에 미치지 못하여 바람을 만나 부서졌습니다. 그 배에 실은 말 35필은 모두 무상노(舞上奴)<sup>270)</sup> 철룡(哲龍)과 함께 일시에 물에 빠져 죽고, 사격(沙格) 김일령(金一另) 등 8명만 돛대와 자리에 올라타서 물에 떠다닐 때 새섬〔鳥島〕에 사는 포인노(鮑人奴)<sup>271)</sup> 감산(甘山)이 배를 가지고 구출해낸 상황이 진도현감(珍島縣監) 이동

269) 태복(太僕): 태복시(太僕寺), 사복시. 고려·조선 시대에, 궁중의 수레와 말을 관리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270) 무상노(舞上奴): 선상노(選上奴)의 오독으로 보임.

271) 포인(鮑人): 전복을 따는 사람으로 번역되고 있으나, 포작(鮑作)·포작(浦作), 포작인(鮑作人), 포작간(鮑作干), 포작한(鮑作漢) 등과 같은 뜻으로 쓰인 말. 곧 바다에서 조개나 미역 따위 해산물을 채

필(李東泌)의 사보(查報)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바, 일이 매우 놀랍고 참혹합니다. 죄로 가둔 사격 등 8명은 곧 석방하고, 죽음을 당한 말 35필도 모두 없애 줄 뜻을 회이(回移)<sup>272)</sup>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오시수, 제주마, 장흥선, 새섬, 포인노, 철룡, 감산, 김일령, 진도현감, 이동필, 사보, 해남, 추자도.

---

취하는 남자, 또는 어물(魚物)을 담당했던 사람, 어포(魚脯)를 떠서 말리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 따위를 이룸.

272) 회이(回移): 같은 등급의 관아 사이에 주고받던 공문서.

❖ 康熙 九年 庚戌 九月 九日 癸亥

- 濟州牧使書目 去七月二十七日曉頭 北風掀天 天地震動 海濤噴亂 便成鹹雨 奔驟山野 草木如沈鹽 今此之變 前古所無事.

❖ 현종 11년(1670) 경술년 9월 9일(계해)

□ 7월 27일 새벽의 변이(變異)를 보고하는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서목(書目)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서목(書目)<sup>273</sup>에 “지난 7월 27일 먼동이 트기 전의 이른 새벽에 북풍(北風)이 갑자기 불어 닥치고,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바다에서 큰 물결이 솟아올라 어지러워지더니, 소금기가 섞인 비를 이루어 산과 들에 흩날리고 풀과 나무들이 소금기에 잠겼습니다. 이번의 변고는 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목사.

---

273) 서목(書目): 보고서에서 중요한 부분만 대강 뽑아서 작성한 목록. 또는 따로 덧붙인 지면.

❖ 康熙 九年 庚戌 九月 二十日 甲戌

- 備邊司啓目 粘連濟州牧使狀啓云云. 庚戌條內奴婢各司奴婢身貢 特爲減除 宜當該曹竝以分付 何如? 啓依允.

❖ 현종 11년(1670) 경술년 9월 20일(갑술)

- 각사(各司)의 노비신공(奴婢身貢)을 특별히 감제(減除)시킬 일을 해당부서에 분부하게 하자는 비변사(備邊司)의 계목(啓目)
- 비변사의 계목(啓目)<sup>274</sup>에, “점련(粘連)한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에 이르기를, ‘경술년의 내노비(內奴婢)<sup>275</sup>와 각사(各司) 노비의 신공(身貢)을 특별히 감제(減除)해주는 것이 마땅해서, 해당 부서에 아울러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아뢴 대로 윤허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목사, 내노비, 노비신공.

---

274) 계목(啓目): 조선 시대에, 중앙의 관부에서 국왕에게 올리던 문서 양식의 하나. 주로 작은 일을 계할 때에 썼다.

275) 내노비(內奴婢): 궁노비. 고려·조선 시대에, 궁중에 속하여 궁중의 공역(供役)이나 내구(內廩)의 잡역 따위를 맡아보던 노비.

❖ 康熙 九年 庚戌 十月 三日 丁亥

- 張善澂啓曰 卽見濟州牧使盧銓狀啓 則以本州判官尹弼殷 重得泄瀉之症 不得察任 今已四朔 姑先罷黜云矣. 弼殷病患輕重 殊未知其如何 而本州乃絕島關防重地 文吏之所素厭避處也. 今者盧銓 不念民弊 不有國體 曲循私願 偃然請罷之狀 極爲駭愕. 牧使盧銓 請從重推考. 傳曰 允.

❖ 현종 11년(1670) 경술년 10월 3일(정해)

□ 민폐(民弊)와 국체(國體)를 헤아리지 않고 윤필은(尹弼殷)의 파출(罷黜)을 청한 노정(盧錠)을 종종추고(從重推考)하기를 청하는 장선징(張善澂)의 계

- 장선징(張善澂)이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노정(盧錠)<sup>276)</sup>의 장계(狀啓)를 즉견(卽見)한즉, ‘본 고을(제주)의 관관 윤필은(尹弼殷)<sup>277)</sup>이 설사 증세가 아주 심하여 일을 맡아보지 못하게 된 지가 지금 이미 녀 달이 되었으니 진실로 먼저 파출(罷黜)<sup>278)</sup>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윤필은의 병환의 경중은 특히 어느 정도 인지 알지 못하여, 본 고을은 곧 절도(絶島)로서 관방(關防)에서 중요한 곳인데도, 문리(文吏)들이 본래부터 꺼리고 피하는 곳입니다. 이번에 노정이 민폐를 염려하지 않고 국체(國體)를 무시하고, 사악하여 빙빙 돌리고 사적으로 위엄 있게 파출을 청하는 문서를 올린 것은 지극히 해악한 일입니다. 목사 노정은 종종(從重)에 따라 추고(推考)할 것을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장선징, 제주목사, 노정, 윤필은.

276) 원문에는 노전(盧銓)으로 되어 있으나, 제주목사는 노정(盧錠)이 옳아서 역주자가 바로 잡음. 이하 노전은 역주문에 모두 노정으로 바꿈. 노정(1634~1690): 1669년(현종 10) 9월에 제주목사에 부임하여 1672년(현종 13) 임자년 5월에 교체되어 떠났음.

277) 윤필은(1615~?): 본관 파평(坡平). 자 탕경(湯卿). 1648년(인조 26) 식년시 생원 합격. 1656년(효종 7) 별시 문과에서 병과로 급제. 1670년(현종 11) 경술년 정월에 제주관관으로 부임, 같은 해 8월에 교체되어 이임.

278) 파출(罷黜): 파면(罷免).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직무나 직업을 그만두게 함.

❖ 康熙 九年 庚戌 十月 三日 丁亥

- 十月初三日午時, 上御養心閣,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 上曰, 濟州諸般蠲減事書來乎? 積, 以長件記披達. 上曰, 御乘馬二十匹乎? 積曰, 然矣. 上曰, 此則除之, 可也. 積曰, 濟州牧官故失布留庫十六同 內需司奴婢所納戊申條一百六十八口內 中鹿皮四十令 首髻十二介 草席三百葉 似當除之. 宗廟薦新三月令青橘【缺】 啓後幾許蠲減事 唯在進上鹿子 獐長脯三十條 圓脯三十條 早藿三十注之 □□二斗五升 各司所納大殿全鰵元貢二千六百三十八貼矣. 上曰 此則推移用之 可也. 積曰 義盈庫常藿九百斤內 遺在三百斤, 奉常寺櫃子一年元貢四百一斗內, 遺在七斗三升, 內贍寺所納藁古·牛尾, 掌苑署所納柑子·青橘, 濟用監所納梔子, 工曹所納獐皮·玳瑁, 典醫監所納香附子·陳皮·海東皮, 尙衣院所納梔子·二羊木·山柚子, 軍器寺所納故失馬背筋元貢二百七十七條, 二羊木十條, 此則皆除之, 宜矣. 濟州到配罪人移配事, 有問于臣等爲之之教, 從當抄錄入啓矣. 上曰, 依爲之.

❖ 현종 11년(1670) 경술년 10월 3일(정해)

□ 양심합(養心閣)에 허적(許積) 등이 입시(入侍)하여 제주(濟州)의 견감(蠲減), 제주 도배죄인(濟州到配罪人)의 이배(移配) 등을 논의함.

- 10월 초 3일 오시(午時)에 임금이 양심합(養心閣)<sup>279)</sup>에 나아가, 대신과 비변사를 인견하여 입시(入侍)할 때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의 제반사항을 견감(蠲減)<sup>280)</sup>해준 일에 대해서 서신(書信)이 왔는가?”라고 하니, 허적(許積)이 긴 발기[長件記]<sup>281)</sup>로서 말하여 전달했다고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승마(御乘馬)가 20필인가?”라고 하니, 허적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없애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니, 허적이 말하기를, “제주 목관(濟州牧官)에서 고실(故失)<sup>282)</sup>한 배는 창고에 16동(同)이 남아 있습니다. 내수사(內需司) 노비가 바친 무신년(戊申年: 1668) 조의 168구 안에, 중녹피(中鹿皮) 40령(令), 수체(首髻) 12개(介), 초석(草席) 300잎[葉]을 마땅히 없애 준 듯함

279) 양심합(養心閣): 대조전 영역을 둘러싼 '口' 자형 행각 중 남동쪽의 집채. 현종 때 신하들이 드나들며 소대하여 사용 빈도가 매우 높았음.

280) 견감(蠲減): 조세 따위의 일부를 면제하여 줌.

281) 건기(件記): 현대국어 '발기'(-記: 사람이나 물건의 이름을 죽 적어 놓은 글)의 옛말 '발기'의 차자표기이다.

282) 고실(故失): 1) 사고로 말미암아 잃음. 2) 고의와 과실을 아울러 이르는 말. 3) 죽어서 없어짐.

니다. 종묘(宗廟)<sup>283</sup> 천신(薦新)<sup>284</sup>으로 3월령(月令)에 청굴(靑橋)【빠짐】. 아된 뒤에 얼마를 건감(蠲減)해 준 일은 오로지 사슴(麀子)과 노루(獐)의 장포(長脯) 30오리(條), 원포(圓脯)<sup>285</sup> 30오리(條)<sup>286</sup>, 조곽(早藿)<sup>287</sup> 30주지(注之)<sup>288</sup>, □□ 2말 5되, 각사(各司) 소납(所納) 가운데, 대전(大殿) 전복(全腹)은 원공(元貢)<sup>289</sup>이 2,638첩(貼)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추이(推移)<sup>290</sup>에 따라 쓰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니, 허적이 말하기를, “의영고(義盈庫)의 상곽(常藿) 900근 중 남아 있는 것이 300근이고, 봉상시(奉常寺)의 비자(樞子)는 1년의 원공(元貢) 401말 중 남아 있는 것이 7말 3되이고, 내섬시(內贍寺)에 소납(所納)하는 표고(藁古)와 우미(牛尾)<sup>291</sup>, 장원서(掌苑署)에 소납하는 감자(柑子)와 청굴(靑橋), 제용감(濟用監)에 소납(所納)하는 치자(梔子), 공조(工曹)에 소납하는 사슴가죽(獐皮)과 대모(玳瑁)<sup>292</sup>, 전의감(典醫監)에 소납하는 향부자(香附子)와 진피(陳皮), 해동피(海桐皮), 상의원(尙衣院)에 소납하는 치자(梔子)와 이양목(二洋木), 산유자(山柚子), 군기시(軍器寺)에 소납하는 고실마(故失馬)의 등살(背筋)의 원공(元貢)이 277오리, 이양목(二洋木)이 10오리인데, 이것은 모두 없애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주에 도배(到配)<sup>293</sup>한 죄인을 이배(移配)하는 일에 대해서는 신하들에게 물어서 하라는 전교가 있었으니, 마땅히 초록(抄錄)<sup>294</sup>에 따라서 계(啓)를 들이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라고 하였다.

283) 종묘(宗廟): 조선 시대에, 역대 임금과 왕비의 위패를 모시던 왕실의 사당. 1394년(태조 3)에 착공하여 정전을 짓고 1421년(세종 3)에 영녕전을 세웠으나 임진왜란 때 타 버리고 1608년(광해군 즉위년)에 다시 세운 것이 지금 종로 3가에 남아 있음.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됨. 사적 제125호.

284) 천신(薦新): 칠 따라 새로 난 과실이나 농산물을 먼저 신위(神位)나 궁궐에 올리는 일.

285) 포(脯): 사슴 고기나 노루 고기 따위를 얇게 저며서 말린 포를 이룸. 장포(長脯)는 고기를 얇고 길게 저며서 말린 포를 이르고, 원포(圓脯)는 고기를 얇고 둥글게 저며서 말린 포를 이룸.

286) 조(條): 가늘고 긴 조각을 세는 단위로, ‘오리’의 한자차용표기임. 원문에는 약제차 ‘조(条)’로 쓰였으나, 활자본에는 정자 ‘조(條)’로 썼음.

287) 조곽(早藿): 제철이 되기 전에 따서 말린 미역.

288) 주지(注之): 미역 따위 길게 된 것을 세는 단위 ‘주지’의 한자차용표기로, 줄(筩)로 쓰기도 했음.

289) 원공(元貢): 상공(常貢), 세공(歲貢)으로 보통 바치는 일정한 공물.

290) 추이(推移): 일이나 형편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하여 나감. 또는 그런 경향.

291) 우미(牛尾): ‘우무(우뭇가사리 따위를 끓여서 식혀 만든 끈끈한 물질. 음식이나 약 또는 공업용으로 쓴다.)’의 제주방언 ‘우미’를 한자차용표기로 쓴 것임.

292) 대모(玳瑁): 대모갑(玳瑁甲). 대모의 등과 배를 싸고 있는 껍데기. 주로 장식품이나 공예품을 만드는 데에 씀.

293) 도배(到配): 예전에, 귀양 가는 죄인이 유배지에 이룸.

294) 초록(抄錄): 필요한 부분만을 뽑아서 적음. 또는 그런 기록.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양심합, 제주, 어승마, 제주목관, 중녹피, 수체, 초석, 청굴, 녹자, 장포, 원포, 조  
곽, 전복, 대모, 감자, 치자, 사슴가죽, 우미, 비자, 표고, 향부자, 진피, 해동피,  
이양목, 산유자.

❖ 康熙 九年 庚戌 十月 四日 戊子

- 又以吏曹言啓曰, 濟州牧使盧銓, 啓罷判官尹弼殷, 而以重患泄瀉, 漸入危境, 救荒主管無人爲辭. 弼殷病勢輕重, 雖未可知, 本州以海外絕島, 人所厭避之地. 又值無前飢饉之日, 牧使之率爾啓罷判官, 誠甚不當. 限賑救問守令圖遞者, 拿問後邊遠定配事, 因傳教行會各道, 在於前月十三日. 本州道里既遠, 且越海津, 弼殷罷黜, 在於行會未及到之前, 則雖不可直施圖遞之罰, 亦不可循例出代, 弼殷罷黜狀啓, 勿施, 何如? 傳曰, 允.

❖ 현종 11년(1670) 경술년 10월 4일(무자)

- 윤필은(尹弼殷)을 파출(罷黜)시킬 것을 청하는 노정(盧錠)의 장계는 그 후임을 차출(差出)하기 어려우므로 시행하지 말자는 이조(吏曹)의 계
- 또한 이조에서 말하여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노정(盧錠)<sup>295</sup>이, 판관(判官) 윤필은(尹弼殷)이 심각한 설사 증세로 점차 위급한 지경에 이르러 구황(救荒)<sup>296</sup>을 주관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파직한다고 아뢰었습니다. 윤필은의 병세의 경중을 비록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본 고을은 바다 밖에 있는 절도(絶島)로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피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전에 없었던 기근을 당하자, 목사가 급하게 판관을 파출(罷黜)해야 한다는 계를 올렸으니, 진실로 부당한 것입니다. 진구(賑救)<sup>297</sup>하는 기간만 수령을 도체(圖遞)<sup>298</sup>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붙잡아와서 문정한 뒤에 변방 먼 곳으로 정배(定配)하는 일을 각도(各道)에서 행회(行會)<sup>299</sup>하라고 전교(傳教)했기 때문에 지난달 13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본 고을은 길이 이미 먼 데다, 또 바다와 나루를 건너야 하니, 윤필은의 파출에 대한 것은 행회에 달려 있는데다 아직 도착하기 전이니, 오로지 바로 도체(圖遞)의 벌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관례에 따라 출대(出代)<sup>300</sup>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윤필은을 파출하라는 장계는 시행하지 말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

295) 국사편찬위원회 활자본에는 일(鎰)로 되어 있으나, 정(錠)의 잘못이므로 바로 잡음.

296) 구황(救荒): 기근(飢饉) 때에 빈민(貧民)을 구(求)함.

297) 진구(賑救): 진시(振施).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함.

298) 도체(圖遞): 자기의 벼슬이 바뀌기를 스스로 꾀함.

299) 행회(行會): 관아의 우두머리가 조정의 지시와 명령을 부하들에게 알리고 그 실행 방법을 의논하여 정하기 위하여 모이던 일. 또는 그런 모임.

300) 출대(出代): 결원이 있을 때에 모자라는 인원을 대신 보충함.

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목사, 노정, 윤필은.

❖ 康熙 九年 庚戌 十月 十三日 丁酉

- 巳時, 上御養心閣,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 許積曰, 頃日濟州牧使, 罷黜本州判官, 故政院請推, 該曹亦請勿施, 使之仍任矣. 今聞判官尹弼殷, 身病極重, 凡干公務, 廢閣已久, 島中民情, 極以爲悶云. 凶年遞易, 雖有弊端, 尹弼殷, 依狀啓施行, 其代, 極擇差送, 何如? 上曰, 依爲之. 許積曰, 濟州牧移給穀物事 曾已稟定 以上教分付 何如? 上曰 依爲之. 許積曰, 濟州凶歉 尤甚於他處 定配罪人移配事 已爲定奪 故令刑曹抄出單子 今日命該曹判書 條陳處決 何如? 上曰 依爲之. 鄭知和 以單子進讀於上前 分輕重移配他處. 金佐明日 前日直赴者 願赴別試 何以爲之? 上曰 直赴殿試之類 竝許赴今番別試 可也. …….

❖ 현종 11년(1670) 경술년 10월 13일(정유)

- 양심합(養心閣)에서 대신·비변사당상을 인견할 때 허적(許積) 등이 입시(入侍)하여 윤필은(尹弼殷)의 파출, 제주목(濟州牧)에서 이급(移給)한 곡물에 대한 것, 제주정배죄인(濟州定配罪人)의 이배(移配) 등을 논의함
- 사시(오전 9시~11시)에 임금이 양심합(養心閣)에 나아가, 대신·비변사당상을 인견하여 입시(入侍)할 때 <중략> 허적(許積)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본 고을의 관관(判官)을 파출(罷黜)해 달라고 했으므로, 정원(政院)<sup>301)</sup>에서 청추(請推)<sup>302)</sup>하고 해조(該曹) 또한 시행하지 말도록 청하니, 그로 하여금 그대로 임무를 맡겼습니다. 지금 들으니, 관관 윤필은(尹弼殷)은 신병이 지극히 위중하여 모든 공무가 폐각(廢閣)된 지 이미 오래 되었으니 섬 안의 민정이 극히 염려된다고 하였습니다. 흉년에 체역(遞易)<sup>303)</sup>하는 것은 비록 폐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윤필은을 장계(狀啓)에 따라 시행하고, 대신할 사람을 각별히 골라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라고 하였다. 허적이 말하기를, “제주목(濟州牧)에서 이급(移給)한 곡물에 대한 것은 일찍이 이미 품정(稟定)<sup>304)</sup>하고 임금의 전교로써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라고 하였다. 허적이 말하기를, “제주(濟州)의 흉겸(凶歉)은 다른 곳보다 더욱 심합니다. 정배죄인(定配罪

301) 정원(政院): 승정원(承政院). 조선 시대에, 왕명의 출납을 맡아보던 관아.

302) 청추(請推): 직무에 허물이 있는 벼슬아치를 추문(推問)할 것을 상부에 요청하던 일.

303) 체역(遞易): 체개(遞改). 관원을 다른 사람으로 갈아들임.

304) 품정(稟定): 웃어른이나 상사에게 여쭙어 의논해서 결정함.

人)을 이배(移配)하는 일은 이미 정탈(定奪)<sup>305</sup>하였으므로 형조(刑曹)에 영을 내려 단자(單子)를 초출(抄出)<sup>306</sup>하게 하고, 금일(今日) 해조판서(該曹判書)에 명하여 조목조목 써서 진술하여 처결(處決)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목사, 허적, 윤필은.

---

305) 정탈(定奪): 임금의 재결(裁決). 신하들이 올린 논의나 계책 가운데 임금이 가부를 결정하여 그 가운데 한 가지만 택하던 일.

306) 초출(抄出):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뽑아냄.

❖ 康熙 九年 庚戌 十月 十四日 戊戌

- 李枝茂, 以備邊司言啓曰, 濟州三邑進上貢物諸種中 司僕寺所納馬糞所用 應爲全減 內需司所納物種 則皆是奴婢貢換作之物 既除內奴婢身貢 則此亦入於應減之中. 司宰監灰全腹則有大中小三色 而遺在頗多 可以推移封進 義盈庫常藿 亦當以遺在封進 奉常寺櫃子 則或以他實果代封 給價封進 或移定所產官 藁古則竝與內贍所納 以遺在充用 牛毛亦一體爲之, 而掌苑署所納甘橘各種及濟用監·工曹·繕工監·尙衣院·軍器寺所納物種, 似無緊用之處, 竝爲蠲減, 宜當. 兩醫司藥材, 島中不爲絕種, 而醫司各用稍緊者若干斤, 使之備送, 至於各殿月令所封及甘橘封進運數, 唯在自上參酌, 付標分書, 別單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현종 11년(1670) 경술년 10월 14일(무술)

□ 제주 세 고을에서 진상한 공물을 처리한 내역을 별단에 써서 들인다는 이지무(李枝茂)의 계

- 이지무(李枝茂)<sup>307</sup>가 비변사의 말로써 아뢰기를, “제주 세 고을의 진상 공물 여러 종류 가운데, 사복시에 소납하는 마장(馬糞)에 소용되는 것은 마땅히 모두 감해주었습니다. 내수사에 소납하는 물종은 모두 노비의 신공으로 품목을 바꾸어 받아들일 물품입니다. 이미 내노비(內奴婢)의 신공(身貢)을 없게 했는데, 이 또한 마땅히 감할 물종에 들어 있습니다. 사재감(司宰監)<sup>308</sup>의 회전복(灰全腹)<sup>309</sup>은 대·중·소 3색이 있는데, 남아있는 것이 자못 많아서, 옮겨 가져다가 봉진하게 하였습니다. 의영고(義盈庫)<sup>310</sup>의 상곽(常藿)<sup>311</sup> 또한 마땅히 남아있는 것을 봉진하였습니다. 봉상시(奉常寺)<sup>312</sup>의 비자(櫃子)는 혹 다른 실과(實果)로 대신 하여 봉진하는데, 값을 지급하여 봉진하고, 혹 산출하는 고을에 옮겨 정하였습니다.”

307) 이지무(1604~1678): 1662년(현종 3)에 장령을 역임하였으며, 이듬해에는 헌납을 지냄.

308) 사재감(司宰監): 조선 시대에, 궁중에서 쓰는 생선·고기·소금·땀나무·숯 따위를 공급하던 관아. 1392년(태조 1)에 설치하여 1882년(고종 19)에 없앴.

309) 원문에는 全腹(전복)으로 표기되었는데, 全腹(전복)의 잘못.

310) 의영고(義盈庫): 조선 시대에, 호조에 속하여 기름, 꿀, 후추 따위의 공급·관리를 맡아보던 관아. 1392년(태조 1)에 두었다가 1882년(고종 19)에 없앴.

311) 상곽(常藿): 보통 품질의 마른 미역.

312) 봉상시(奉常寺): 조선 시대에, 제사(祭祀)와 시호(諡號)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1392년(태조 1)에 설치하여 1409년(태종 9)에 전사서로 고쳤다가, 1421년(세종 3)에 다시 이 이름으로 고치고 1895년(고종 32)에 봉상사로 고침.

니다. 표고는 모두 내섬시(內贍寺)<sup>313</sup>에 소납하는 것과 같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충당해서 쓰게 하였습니다. 우무〔牛毛〕<sup>314</sup> 또한 한결같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원서(掌苑署)<sup>315</sup>에 소납하는 감귤(甘橘) 각 품종과 제용감(濟用監), 공조(工曹), 선공감(繕工監), 상의원(尙衣院), 군기시(軍器寺)에 소납하는 물종은 긴용(緊用)할 곳이 없는 듯하니, 모두 면제하여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양의사(兩醫司)<sup>316</sup>의 약재는 제주 섬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어서, 의사(醫司)에서 각기 소용되는 조금 긴요한 약간의 근을 그로 하여금 준비해서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각 전(殿)의 월령(月令)<sup>317</sup> 소봉(所封)과 감귤 봉진의 운수(運數)<sup>318</sup>는 오직 성상께서 참작(參酌)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부표(付標)<sup>319</sup>하여 분서(分書)하고 별단(別單)<sup>320</sup>에 기입하게 할 것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이지무, 회전복, 상곽, 비자, 우무, 감귤.

313) 내섬시(內贍寺): 조선 시대에, 각 궁궐에 올리던 토산물, 2품 이상 벼슬아치에게 주던 술, 일본인·여진인에게 주던 음식과 필목(疋木) 따위를 맡아보던 관아. 호조에 속하는 것으로, 태종 때 덕친고를 고친 것임. = 내섬(內贍).

314) 우모(牛毛): 현대국어 ‘우무’(우뿔가사리 따위를 끊어서 식혀 만든 끈끈한 물질)의 한자 차용표기이다. 우미(牛尾)로도 표기. 제주방언에서는 ‘우미’로 실현되는데, 옛말이 ‘우미’ 정도로 실현된 듯함.

315) 장원서(掌苑署): 조선 시대에, 대궐 안에 있는 정원의 꽃과 과일나무 따위의 관리를 맡아보던 관아. 건국 초기에는 동산색(東山色), 상림원(上林園)으로 부르다가 1466년(세조 12)에 이 이름으로 고쳤음.

316) 양의사(兩醫司): 혜민서(惠民署)와 활인서(活人署)를 아울러 이르던 말. 혜민서는 조선 시대에 둔 삼의원의 하나. 가난한 백성을 무료로 치료하고 여자들에게 침술을 가르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고, 활인서는 서울에서 의료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임.

317) 월령(月令): 국가에 달마다 정기적으로 바치는 것.

318) 운수(運數): 국가의 공물 따위를 운반하는 수.

319) 부표(付標): 문서 가운데 특별히 유념하거나 후일 참고할 사항에 표지(標紙)를 붙임.

320) 별단(別單): 임금에게 올리는 주본(奏本)에 덧붙이던 문서나 물품 목록 따위.

❖ 康熙 九年 庚戌 十月 十八日 壬寅

- 李枝茂 以刑曹言啓曰 濟州三邑定配罪人移配及蒙放之類 依付標啓下 分秩別單 而今此移配 事異常規 不可自本曹定送 故各其名下 懸錄其移配處所 粘連付標 單子以入 以備睿覽 而其中亡立妻子至介等 則更考亡立定配處 一處移配事 傳教矣. 相考文書 則亡立同配濟州 戊申四月 物故之意 敢啓. 傳曰 知道.

❖ 현종 11년(1670) 경술년 10월 18일(임인)

□ 망립(亡立)이 그 처자(妻子)와 함께 제주(濟州)에 정배(定配)되었다가 무신년(戊申年)에 물고(物故)하였다는 형조(刑曹)의 계

- 이지무(李枝茂)가 형조의 말로써 아뢰기를, “제주(濟州) 세 고을 정배죄인(定配罪人)<sup>321)</sup>을 이배(移配)<sup>322)</sup>하는 것과 몽방(蒙放)<sup>323)</sup>하는 것은 부표(付標)에 따라서 임금에게 재가를 받고, 별단(別單)으로 분질(分秩)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이배하는 일은 상규(常規)와는 다른 것이니, 본조에서 정송(定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기 이름 아래에 그 이배 처소를 현록(懸錄)하고 부표(付標)를 점련(粘連)<sup>324)</sup>하여 단자(單子)에 기입하여 갖추고 예람(睿覽)<sup>325)</sup>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망립(亡立)의 처자(妻子) 지개(至介) 등은 곧 망립의 정배처를 다시 살펴서, 한 곳으로 이배할 일을 전교(傳教)하였습니다. 문서를 살펴보니, 망립은 같이 제주에 이배되었는데, 무신년(1668, 현종 9) 4월에 물고(物故)<sup>326)</sup>한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이지무, 제주, 망립, 지개.

321) 정배죄인(定配罪人): 귀양 보낼 곳이 정해진 죄인.

322) 이배(移配): 귀양살이하는 곳을 다른 곳으로 옮김.

323) 몽방(蒙放): 죄인을 풀어줌. 또는 죄인이 풀려남.

324) 점련(粘連): 증거 서류를 덧붙임. 예전에, 호적에 새로운 사실을 추가할 때에 원대장(元臺帳)에 붙여서 있던 일.

325) 예람(睿覽): 왕세자가 책 따위를 봄.

326) 물고(物故): 죄를 지은 사람이 죽음. 또는 죄를 지은 사람을 죽임.

❖ 康熙 九年 庚戌 十月 十九日 癸卯

○ 吏批 以金德遠爲正言 金萬均爲舍人 金玉鉉爲靈光郡守 李碩蕃爲濟州判官.

❖ 現中 11年(1670) 敬肅年 10월 19일(계묘)

□ 이석번(李碩蕃)을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함

○ 이비(吏批)<sup>327)</sup>에서 김덕원(金德遠)을 정언(正言)으로 삼고, 김만균(金萬均)을 사인(舍人)으로 삼고, 김옥현(金玉鉉)을 영광군수(靈光郡守)로 삼고, 이석번(李碩蕃)<sup>328)</sup>을 제주판관(濟州判官)으로 삼았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이석번, 제주판관.

---

327) 이비(吏批): 문관의 인사 전형을 담당하는 전형위원회. 이조의 당상인 판서, 참판, 참의와 승지 1인으로 구성됨.

328) 이석번(1617~?): 1670년(현종 11) 10월 제주판관을 제수받았으나, 1671년(현종 12) 정월에 제주판관으로 부임하여, 1673년(현종 14) 4월에 교체되고 7월에 제주를 떠났다.

❖ 康熙 九年 庚戌 十月 十九日 癸卯

- 執義申命圭, 持平李宇鼎, 尹趾善啓曰, 今日齊坐, 濟州居兼司僕洪逸者, 呈狀本曹曰, 渠之外曾祖千金, 則果是懷德朴世寬之奴, 而千金之妻, 則金堤金夢舜之婢, 其後轉輾, 相賣爲良, 三代良役, 已至九十餘年, 而不意年前, 懷德朴先一者, 自稱世寬之裔, 誣囑官家, 施以嚴刑, 前後贖良文記及家間財產, 盡爲奪取, 竝渠族屬一百三十餘人, 壓爲己奴, 萬端侵虐而來云, 呼訴其冤, 語甚切至. 渠之所訴, 縱難盡信, 而而所謂三代良役, 將至百年云者, 似不敢誣. 實有如此, 誠可痛駭, 而絕徼之民, 抱此至冤, 無所控訴, 則亦不可循例處之, 所謂懷德朴先一者, 請令該曹急速移牒捉來, 各別明查實狀, 以爲彼此科罪之地. …….

❖ 현종 11년(1670) 경술년 10월 19일(계묘)

- 홍일(洪逸)의 외증조(外曾祖)가 자기 조상의 종이였다고 주장하는 박선일(朴先一)을 잡아 와서 실상을 조사하도록 청하는 신명규(申命圭) 등의 계
- 집의(執義) 신명규(申命圭)와 지평(持平) 이우정(李宇鼎)·윤지선(尹趾善)이 아뢰어 말하기를, “오늘 제좌(齊坐)<sup>329)</sup>에서, 제주(濟州)에 사는 겸사복(兼司僕) 홍일(洪逸)이란 자가 본조에 소장을 내서 말하기를, ‘저의 외증조(外曾祖) 천금(千金)은 회덕(懷德) 박세관(朴世寬)의 사내종이고, 천금(千金)의 처(妻)는 김제(金堤) 김몽순(金夢舜)의 계집종입니다. 그 뒤 이랬다 저랬다하면서 서로 팔려서 양인(良人)<sup>330)</sup>이 되고, 3대에 걸쳐 양역(良役)<sup>331)</sup>을 지낸 지 9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몇 해 전에 회덕(懷德) 박선일(朴先一)이란 자가 자칭 세관(世寬)의 후예라고 하면서 관가에 무축(誣囑)하여 엄형이 시행되었습니다. 앞뒤의 속량(贖良) 관련 문기(文記)와 가간(家間)의 재산은 모두 탈취 당하고, 모두 저희들 족속 130여 인을 강제로 자기의 종으로 삼는 등 만단(萬端)의 침학(侵虐)이 있어서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했다. 그 원통함을 호소하였는데, 말이 매우 진실하고 지극하였습니다. 저들의 호소한 바는 다 믿을 수는 어렵지만, 소위 3대에 걸친 양역(良役)이 거의 백 년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감히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실로 만일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진실로 마음이 아프고 놀랄 만한 것입

329) 제좌(齊坐): 사헌부(司憲府)나 사간원(司諫院)의 관원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 모두 모여 앉는 것.

330) 양민(良民): 조선 시대에, 양반과 천민의 중간 신분으로 천역(賤役)에 종사하지 아니하던 백성.

331) 양역(良役): 조선 시대에,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 장정에게 부과하던 공역(公役). 노역에 종사하는 요역과 군사적인 목적의 군역이 있었음.

니다. 그러니 절요(絶徼)의 백성이 이토록 지극한 원통함을 지녔으면서도 호소할 곳이 없었으므로 관례에 따라 처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위 회덕의 박선 일이라는 사람은 해조(該曹)로 하여금 신속히 이첩(移牒)하여 붙잡아 올 것을 청했으니, 각별히 실상을 분명하게 조사해서 그것으로써 피차(彼此)에게 과죄(科罪)<sup>332)</sup>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신명규, 이우정, 윤지선, 홍일, 제주, 천금, 박세관, 김몽순, 박선일, 회덕, 김제.

---

332) 과죄(科罪): 단죄(斷罪). 죄를 처단함.

❖ 康熙 九年 庚戌 十月 二十二日 丙午

- 安縝, 以刑曹言啓曰, 以濟州三邑定配罪人移配事草記, 傳曰, 知道. 今此移配之流, 當付籤於罪人名下, 書以移配某道某邑而已, 何如是違格粘啓耶? 改入事, 傳教矣. 付籤於原單子事, 臣等不能言及, 以別單書入, 致勤聖教, 不勝惶恐. 捧其別單, 而付籤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 현종 11년(1670) 경술년 10월 22일(병오)

이배자(移配者)에 대해 별단(別單)을 첨서(籤書)에 붙여 써서 들인다는 형조(刑曹)의 계

- 안진(安縝)이 형조의 말로써 아뢰기를, “제주(濟州) 세 고을의 정배죄인(定配罪人)을 이배(移配)하는 일에 대한 초기(草記)<sup>333</sup>를 올렸더니,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이 이배의 무리들은 마땅히 죄인의 이름 아래에 부첨(付籤)<sup>334</sup>해서, 아무 도 아무 고을에 이배한다고 글로 작성했을 따름인데,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격식에 어긋나는 점계(粘啓)<sup>335</sup>가 있는가? 고쳐 들여보낼 것으로 전교(傳教)하였습니다. 원단자(原單子)에 부첨(付籤)한 것은 신들이 말할 수 없고 별단(別單)에 써서 들였는데, 번거롭게 성상의 분부가 내려지게 하였으니,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그 별단을 받들어서 부첨하여 서입(書入)할 뜻으로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안진, 제주.

333) 초기(草記): 서울 각 관아에서 행정에 그리 중요하지 아니한 사실을 간단히 적어 임금에게 올리던 상주문.

334) 부첨(付籤): 문서나 서적 따위에서 고칠 곳이나 부정확한 곳, 또는 참고로 할 부분에 표시를 하기 위하여 종이쪽지를 붙이는 일.

335) 점계(粘啓): 임금에게 서면으로 아뢴 때, 관계되는 서류를 덧붙이어 아뢴. 또는 그렇게 아뢴 것.

❖ 康熙 九年 庚戌 十月 二十三日 丁未

- 日午時, 上御養心閣, 大臣·備局堂上引見 …… 積曰, 濟州馬最關, 而皆屠食云矣. 上曰, 京中牛疫, 今則何如云耶? …….

❖ 현종 11년(1670) 경술년 10월 23일(정미)

- 양심합(養心閣)에서 허적(許積) 등이 입시(入侍)하여 제주마(濟州馬)의 도살 등을 논의함
- 오시(午時)에 임금이 양심합(養心閣)에 나갔다. 대신과 비변사당상을 인견하고 <중략> 허적(許積)이 말하기를, “제주마(濟州馬)에 대한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모두 도살하여 먹었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서울 안에 소 전염병[牛疫]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가?”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허적, 제주마.

❖ 康熙 九年 庚戌 十月 二十四日 戊申

- 安縝 以備邊〈司〉言啓曰 濟州牧廂庫所納雜物 依榻前下教 取考廂庫臚錄 則無灰木 木貫子 非逐年封進之物 而年年所納者 只白蠟·梔子兩種 故別單書入 以竣裁處之意 敢啓. 傳曰 知道.

❖ 현종 11년(1670) 경술년 10월 24일(무신)

□ 제주목(濟州牧) 상고(廂庫)의 소납잡물(所納雜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비변사(備邊司)의 계

- 안진(安縝)이 비변사의 말로써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 상고(廂庫)<sup>336</sup>에서 소납(所納)한 잡물(雜物)은 어전에서 하교(下教)한 것에 따라서 「상고등록(廂庫臚錄)」을 취하여 살펴본 즉, 무회목(無灰木)<sup>337</sup>과 무환자(木貫子)<sup>338</sup>는 매년 봉진(封進)하는 물품이 아니고 해마다 소납한 것은 다만 백랍(白蠟)<sup>339</sup>과 치자(梔子) 등 두 물품입니다. 그러므로 별단(別單)에 써서 들였으니, 재처(裁處)<sup>340</sup>를 기다릴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안진, 제주목, 상고, 상고등록, 무회목, 목관자, 백랍, 치자.

336) 상고(廂庫): 창고의 일종. 대개 주건물에 딸려 있는 행랑의 형태로 되어 있음. 원래 상(廂)은 무(廡)라고도 하여 윗랑 또는 행랑(行廊)을 가리킴.

337) 무회목(無灰木): 제주방언의 ‘무낭·무의낭·무우낭·무히낭·무낭’ 등에 대응하는 차자표기로, 흑산호(黑珊瑚) 또는 산호(珊瑚)를 이룸.

338) 무환자(木貫子): 고문헌에서는 무환자(無患子) 또는 목환자(木患子)로도 표기되었는데, 무환자나무를 이룸.

339) 백랍(白蠟): 쥐똥나무의 껍질. 쥐똥나무는 물푸레나뭇과의 낙엽 활엽 관목으로, 나무껍질은 약용 또는 공업용으로 씀.

340) 재처(裁處): 헤아려 처리함. 또는 짐작하여 처리함.

❖ 康熙 九年 庚戌 十一月 三十日 癸未

- 崔逸 以司僕寺提調意啓曰 濟州山馬場監牧官 例以金萬鎰之子孫 差定矣. 監牧官 金嗣宗 遭其母喪 故萬鎰子孫中 可合其任者 令濟州牧望報 則其回報內 前判官金大振 爲人勤幹云 令兵曹以金大振 啓下監牧官之任 何如? 傳曰 允.

❖ 현종 11년(1670) 경술년 11월 30일(계미)

□ 제주(濟州) 산마장(山馬場) 감목관(監牧官)에 김대진(金大振)의 임명을 청하는 사복시(司僕寺)의 계

- 최일(崔逸)이 사복시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 산마장(山馬場)<sup>341)</sup>의 감목관(監牧官)<sup>342)</sup>을 전례에 따라 김만일(金萬鎰)의 자손으로 차정(差定)하였습니다. 감목관 김사종(金嗣宗)<sup>343)</sup>이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만일(萬鎰)의 자손 가운데 그 직임에 합당한 사람을, 제주목(濟州牧)에 영을 내려 망보(望報)<sup>344)</sup>하게 한즉, 그 회보(回報)<sup>345)</sup> 안에 ‘전 판관 김대진(金大振)<sup>346)</sup>의 사람됨이 부지런하고 성실합니다.’라고 하니, 병조(兵曹)에 영을 내려 김대진을 감목관의 직임으로 재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택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최일, 제주, 산마장, 감목관, 김만일, 김사종, 김대진.

341) 산마장(山馬場): 조선시대에 제주시 조천읍 산간과, 서귀포시 성산읍과 표선면, 남원읍 산간 등에 설치했던 목장 가운데 하나로, 산장(山場)이라고도 했음.

342) 감목관(監牧官): 조선시대에 지방의 목장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종6품의 무관 벼슬.

343) 김사종(金嗣宗): 김만일(金萬鎰)의 후손임. 산마 감목관 김대길(金大吉)의 후임으로, 1666년(현종 7)에서 1670년(현종 11)까지 제주 산마 감목관을 지냄.

344) 망보(望報): 조선 시대에, 벼슬아치의 후보자 세 사람의 이름을 써서 보고하던 일. 또는 그 보고.

345) 회보(回報): 어떤 문제에 관한 물음이나 요구에 대하여 대담으로 보고함. 또는 그런 보고.

346) 김대진(金大振): 김만일(金萬鎰)의 후손. 산마감목관 김사종(金嗣宗)의 후임으로, 1670년(현종 11) 경술년 12월 1일에 제주 산마 감목관이 됨.

❖ 康熙 九年 庚戌 十二月 一日 甲申

- 兵批 以李晩榮·南二星·李翊·李夏爲副護軍 以俞櫨·趙根爲副司果 金大振爲濟州山馬場監牧官.【燼餘】

❖ 現宗 11年(1670) 景崧年 12월 1일(갑신)

김대진(金大振)을 제주산마장감목관(濟州山馬場監牧官)에 제수함

- 병비(兵批)<sup>347</sup>에서 이만영(李晩榮)과 남이성(南二星), 이익(李翊), 이하(李夏)를 부호군(副護軍)으로 삼았다. 유현(俞櫨)과 조근(趙根)을 부사과(副司果)로 삼았다. 김대진(金大振)을 제주산마장감목관(濟州山馬場監牧官)으로 삼았다. 【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김대진, 제주산마장감목관.

---

347) 병비(兵批): 무관의 인사 전형을 담당하는 전형위원회로, 병조의 당상인 판서, 참판, 참의, 참지, 승지 1인으로 구성됨.

❖ 康熙 九年 庚戌 十二月 四日 丁亥

○ 下直 濟州判官李碩蕃.

❖ 현종 11년(1670) 경술년 12월 4일(정해)

□ 제주판관(濟州判官) 이석번(李碩蕃)이 하직함

○ 제주판관(濟州判官) 이석번(李碩蕃)이 하직(下直)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판관, 이석번.

❖ 康熙 九年 庚戌 十二月 八日 辛卯

- 又以禮曹言啓曰 十月初三日大臣·備局堂上引見時 上曰 明年誕日所封三南監·兵營 統營 濟州弓帑筒箇 勿爲封進事 言于該曹事 傳教矣. 明年大殿誕日方物弓帑筒箇 勿爲封進事 依聖教 卽爲知會于三南監·兵·水營及濟州 而更考文書 則濟州所封進弓帑筒箇之外 又有結弓獐皮二十張·織毛馬粧一部 此則何以爲之? 敢稟. 傳曰 一體勿爲封進 可也.

❖ 현종 11년(1670) 경술년 12월 8일(신묘)

□ 내년 대전(大殿) 탄일(誕日) 방물(方物) 가운데 제주(濟州)에서 봉진할 결궁장피(結弓獐皮)와 직모마장(織毛馬粧)에 대해 묻는 예조(禮曹)의 계

- 또한 예조에서 말하여 아뢰기를, “10월 초 3일에 대신(大臣)·비국당상(備局堂上)을 인견할 때, 임금이, ‘다음 해 탄일(誕日)에 3남(三南)의 감영·병영, 통영(統營), 제주(濟州) 등에서 소봉(所封)할 활집(弓帑)과 통개(筒箇) 등을 봉진하지 말 것으로 해조(該曹)에 말한 일’로 전교하였습니다. 다음해 대전(大殿) 탄일 방물(誕日方物)<sup>348)</sup>인 활집(弓帑)과 통개(筒箇)를 봉진하지 말라는 임금의 교명에 따라 즉시 3남(三南)의 감영·병영, 수영(水營), 제주(濟州) 등에 통지하여 알렸습니다. 그러나 문서를 다시 살펴보니, 제주에서 소봉할 활집(弓帑)과 통개(筒箇) 외에, 또한 결궁장피(結弓獐皮)<sup>349)</sup> 20장(張)과 직모마장(織毛馬粧)<sup>350)</sup> 1부(部)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히 품의(稟議)<sup>351)</sup>합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일체를 봉진하지 말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 활집, 통개, 결궁장피, 직모마장, 통영.

348) 탄일방물(誕日方物): 임금 따위의 탄생일에 임금에게 바치던 그 고장의 특산물.

349) 결궁장피(結弓獐皮): 활에 매는 노루 가죽.

350) 직모마장(織毛馬裝): 털로 짠 말 장식.

351) 품의(稟議): 웃어른이나 상사에게 말이나 글로 여쭙어 의논함.

❖ 康熙 九年 庚戌 十二月 十二日 乙未

- 崔逸 以司饗院官員 以提調意啓曰 濟州十月令進上柑橘 今日來納 而權減中 五運·六運·七運柑橘 亦爲封進. 此必本州未及見行會之致 而自遠道既已封進之物 不可退送 仍爲捧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현종 11년(1670) 경술년 12월 12일(을미)

- 제주(濟州)의 10월령(月令) 진상(進上) 감귤(柑橘) 중에 권감(權減)한 5운(運), 6운(運), 7운(運) 감귤(柑橘)이 들어있지만 그대로 봉입(捧入)하겠다는 사옹원(司饗院)의 계
- 최일(崔逸)이 사옹원 관원으로 제조(提調)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10월령(十月令)의 진상 감귤이 오늘 와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임시로 감해준 것 가운데 5운(五運)·6운(六運)·7운(七運)의 감귤 또한 봉진(封進)하였습니다. 이것은 필시 본 고을이 미처 행회(行會)를 보지 못한 소치입니다. 그러므로 멀리 있는 도(道)에서 이미 봉진(封進)<sup>352</sup>해버린 물품을 퇴송(退送)<sup>353</sup>할 수가 없으니, 그대로 받아들일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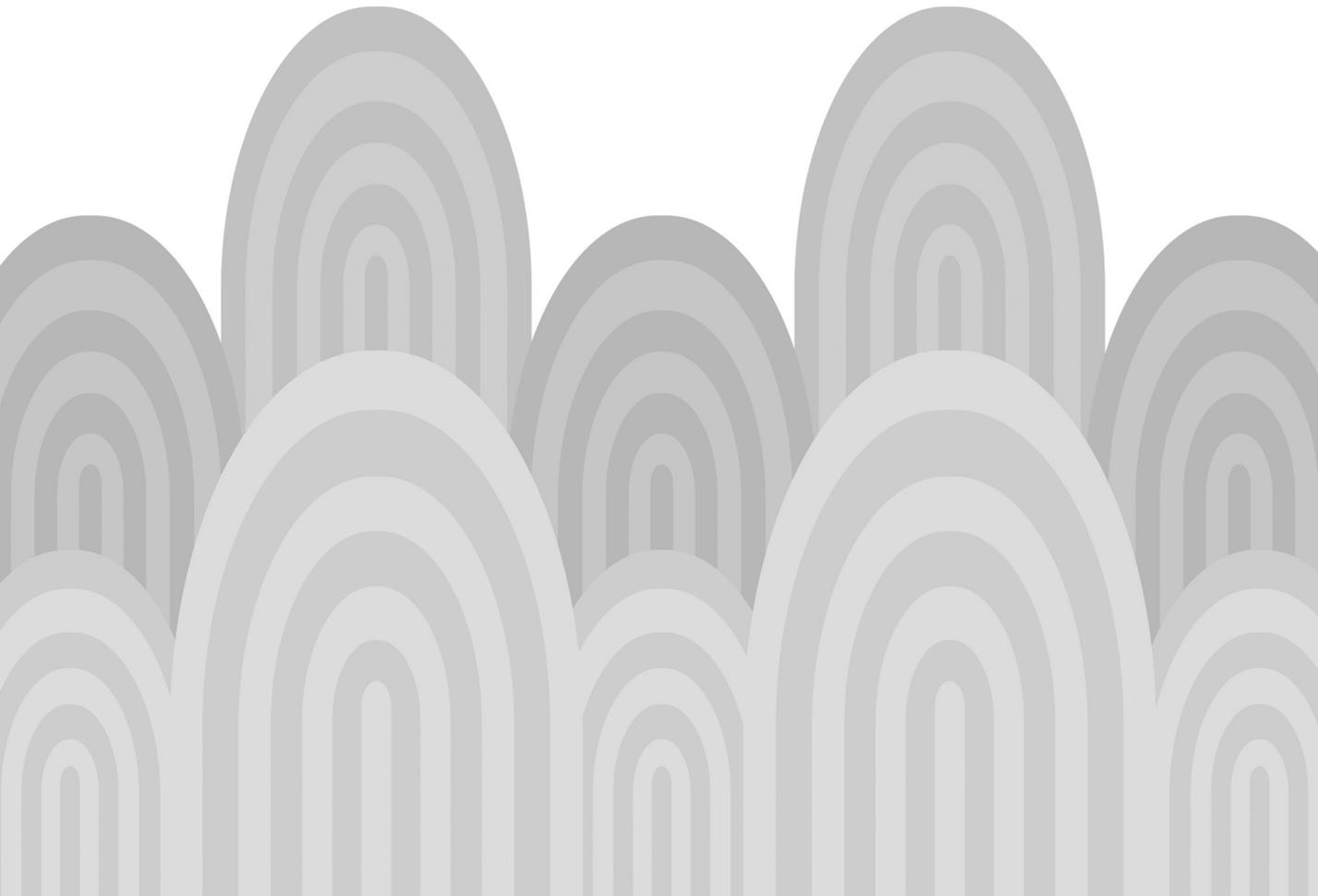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최일, 제주, 진상감귤.

352) 봉진(封進): 물품 등을 밀봉하여 보냄.

353) 퇴송(退送): 보내온 물품 등을 물리쳐 도로 보냄.

1671年



❖ 康熙十年辛亥一月二十三日乙亥

- 引見時 左議政許積所啓 …… 上曰 濟州今式年例貢馬 當爲上來 而不但役使飢民 搜捕有弊 一路各色驅馬軍之弊 不可不慮. 姑令勿爲上送 可也. 【見太僕寺臚錄】

❖ 현종 12년(1671) 신해년 1월 23일(을해)

- 인견할 때 허적(許積) 등이 입시하여 제주(濟州) 식년례(式年例) 공마(貢馬)의 상송(上送)에 대한 문제를 논의함<sup>354)</sup>
- 인견할 때 좌의정 허적(許積)이 아뢰기를,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에서 올 식년례(式年例)<sup>355)</sup> 공마(貢馬)는 당연히 올라와야 하는데, 단지 굶주린 백성을 시켜서 뒤져 붙잡아 오게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로(一路)의 각 아전과 구마군(駒馬軍)의 폐단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잠시 올려 보내지 말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태복시등록에 보임】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 식년례, 공마, 허적.

354) 이와 관련된 내용이 『현종실록』 권19 ‘현종 12년(1671) 신해년 1월 23일(乙亥)’에도 들어있음.

355) 식년례(式年例): 조선시대 자(子)·묘(卯)·오(午)·유(酉)가 드는 해로,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을 식년(式年)이라 하며, 이때 시행하던 과거를 식년시(式年試), 이때 바치던 공마(貢馬)를 ‘식년례(式年例) 공마(貢馬)’라 함.

❖ 康熙十年辛亥二月二日甲申

- 備邊司啓曰 卽接司僕寺文報 則全羅道四牧場 慶尙道兩牧場所在租·太竝二千石 將爲入送濟州 而穀物所載船隻 無以辦出 而慶尙道牧場所送 則令本道左右水使 調送近處兵船 交付於全羅道水使處. 全羅左右水使 則調發各其所屬兵船 趁卽入送 而必須別定領船別將 然後可無虛疎之弊. 以此意分付舉行 何如? 傳曰 允.【見備局謄錄】

❖ 현종 12년(1671) 신해년 2월 2일(갑신)

- 전라도(全羅道) 등의 조(租: 쌀)와 태(太: 콩)를 제주(濟州)로 보낼 선척(船隻)을 판출(辦出)할 수 없어서 해당 도의 병선(兵船)을 조발(調發)할 것 등을 아뢰는 비변사(備邊司)의 계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곧 받아본 사복시의 문보(文報)에 의하면, ‘전라도 4목장(牧場), 경상도 2목장에 있는 쌀[租]과 콩[太]은 모두 2천 섬[石]인데, 장차 제주(濟州)로 들어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곡물을 실을 배를 변통하여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목장에서 보내는 것은 본도(경상도) 좌·우수사(左右水使)<sup>356</sup>로 하여금 가까이 있는 병선(兵船)을 징발하여 보내게 하고, 전라도 수사(水使)에게 교부(交付)하게 하였습니다. 전라 좌·우수사는 소속 병선을 징발하여 진작에 들여보내게 하고, 반드시 특별하게 영선(領船)<sup>357</sup>과 별장(別將)을 정한 뒤에 허소하게 하는 폐단을 없게 하고, 이 뜻을 거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택한다.”라고 하였다. 【비변사등록에 보임】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전라도, 경상도, 제주, 영선.

356) 좌우수사(左右水使): 조선 시대에 두었던 좌수절도사와 우수절도사를 이룸. 좌수사는 좌수영의 으뜸 벼슬이고, 우수사는 우수영의 으뜸 벼슬임.

357) 영선(領船): 조선 시대에, 각 배에 속한 조졸(漕卒)들의 우두머리. 해운관관이 임명함.

❖ 康熙十年辛亥四月三日甲申

- 備邊司 以左右相意啓曰 濟州民事 已到萬分地頭 泛然策應 恐難着實 必有主掌擔當之人 方可及時救活. 左參贊閔鼎重 使之專管料理 以救一島生靈垂盡之命 何如? 傳曰 允. 【見備局謄錄】

❖ 현종 12년(1671) 신해년 4월 3일(갑신)

- 제주도(濟州島)를 구활(救活)하는 일을 민정중(閔鼎重)이 전관(專管)하여 처리하게 하자는 비변사(備邊司)의 계
- 비변사에서 좌·우상(左右相)<sup>358)</sup>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 민사(民事)가 이미 막다른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계책을 통한 응대에는 신중하지 않으니 착실(着實)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두렵습니다. 반드시 주관하여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바야흐로 제 때에 구활(救活)할 것 같습니다. 좌참찬 민정중(閔鼎重)으로 하여금 전관(專管)하여 처리하게 하고, 한 섬의 생령(生靈)들의 끊어져 가는 목숨을 살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비변사등록에 보임】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 민정중.

---

358) 좌·우상(左右相): 좌상(左相)과 우상(右相). 좌상은 좌의정(左議政)이고, 우상은 우의정(右議政)임.

❖ 康熙十年辛亥四月四日乙酉

- 備邊司啓曰 濟州入送種穀運船十五隻 一時漂風 不知去處事 曾已陳達於榻前矣. 其後一隻 則漂到順天 一隻則漂到巨濟 全羅右水使·慶尙監司 次第牒報啓聞 而猶不知十三隻得全與否 方以爲菀矣. 卽接全羅右水使報狀 則二隻已爲得達濟州 九隻漂到興陽邑 沙格·穀物 無一敗失云 極爲多幸 而但二隻去處 尙未探知 更令申飭搜訪之意 敢啓. 傳曰 知道. 【見備局謄錄】

❖ 현종 12년(1671) 신해년 7월 26일(을해)

- 제주(濟州)에 들어가던 종곡(種穀) 운반선이 표풍(漂風)을 만난 결과를 보고하는 비변사(備邊司)의 계<sup>359)</sup>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로 들여보낸 종곡(種穀) 운선(運船) 15척이 일시 바람결에 떠 흘러가서 간 곳을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일찍이 이미 어전에 진달(陳達)하였습니다. 그 뒤에 1척이 순천(順天)에 흘러서 도착하고, 1척이 거제(巨濟)에 흘러서 도착했다고, 전라우수사(全羅右水使)와 경상감사(慶尙監司)가 차례로 첩보(牒報)로서 계문(啓聞)하였습니다. 그러나 13척은 온전한지의 여부(與否)를 알지 못하여, 마야흐로 마음속에 맺혀 있습니다. 곧 전라우수사(全羅右水使)의 보장(報狀)을 접해본즉, 2척은 이미 목적인 제주(濟州)에 도달하고, 9척은 흥양읍(興陽邑)<sup>360)</sup>에 흘러서 도달했는데, 사격(沙格)과 곡물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으니, 매우 다행입니다. 하지만 단지 2척이 간 곳은 아직 찾아서 알아내지 못했으니, 다시 신칙(申飭)을 내려 수소문해서 찾을 뜻을 감히 아뢰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비변사등록에 보임】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 종곡, 순천, 거제, 흥양읍.

359) 『현종실록』 권19 ‘현종 12년(1671) 신해년 7월 26일(乙亥)’ 기사와 『현종개수실록』 권24 ‘현종 12년(1671) 신해년 7월 26일(乙亥)’ 기사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음.

360) 흥양(興陽): 전라남도 고흥지역의 옛 지명.

❖ 康熙十年辛亥八月八日丙戌

○ 大臣請對引見時, 領議政許積所啓, 歲抄雖已停止, 束伍軍及各司諸員·諸色匠人·樂工·奉足等, 則不在於歲抄之中, 各衙門若有督令代定之舉, 則民有難支之弊 何以爲之? 左議政鄭致和曰 歲抄既已停止 則諸員等諸色 亦當在不爲代定之中 而但束伍軍 若不隨得充定 以致闕額甚多之後 則雖值豐年 亦難一時充定 使之隨得代定 宜當矣. 兵曹判書閔鼎重曰 軍兵中物故老除 自得閑丁者 則依前代定亦當矣. 上曰 竝依爲之. 上曰 濟州人民之飢饉 前古所無 不可不別遣宣諭 御史極擇差出事言于吏曹. 【見備局臚錄】

❖ 현종 12년(1671) 신해년 8월 8일(병술)

□ 인견에 허적(許積) 등이 입시하여 세초(歲抄) 정지에 속오군(束伍軍) 등을 포함시키는 문제와 제주(濟州) 파견 어사에 대하여 논의함.<sup>361)</sup>

○ 대신을 청대(請對)하여 인견할 때, 영의정 허적(許積)이 아뢴 바, “세초(歲抄)는 이미 멈추었더라도, 속오군(束伍軍)과 각사(各司)의 제원(諸員), 제색(諸色) 장인(匠人)·악공(樂工)·봉족(奉足) 등은 세초하는 가운데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각 아문(衙門)이 혹 독촉하여 대신 정하게 한다면, 백성이 지탱하기 어려운 폐단이 있을 것이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좌의정 정치화(鄭致和)가 말하기를, “세초를 이미 멈추었으면 제원(諸員)들과 제색(諸色)도 대신 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속오군은 얻는 대로 채워 정하지 않으면 빈 인원이 매우 많아져서 풍년이 되더라도 한꺼번에 채워 정하기 어려울 것이니, 얻는 대로 대신 정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병조판서 민정중(閔鼎重)이 말하기를, “군병(軍兵) 가운데에서 죽었거나 늙어서 제외되어, 절로 한정(閑丁)이 된 자들은 전례대로 대신 정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라고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모두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 인민(人民)의 기근(飢饉)은 전에 없었던 바, 특별히 선유(宣諭)<sup>362)</sup>를 보내지 않을 수 없으니 어사(御史)를 매우 정밀하게 잘 골라서 뽑고 보낼 일로 이조(吏曹)에 말하라.”라고 하였다. 【비변사등록에 보임】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 허적, 정치화, 민정중.

361) 『현종실록』 권19 ‘현종 12년(1671) 신해년 8월 8일(丙戌)’ 기사와 『현종개수실록』 권24 ‘현종 12년(1671) 신해년 8월 8일(丙戌)’ 기사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음.

362) 선유(宣諭): 임금의 훈유(訓諭)를 백성에게 널리 알리던 일.

❖ 康熙十年辛亥八月二十三日辛丑

- 引見時, 掌令鄭華齊所啓, 請五衛將安鏡削去仕版【措辭見上】上曰, 不允. 又所啓, 榻前奏事之際, 大臣之外, 皆當俯首以達, 而工曹判書柳赫然, 天威咫尺之下, 有時起坐, 仰首奏事, 殊失肅敬之儀, 請工曹判書柳赫然推考. 上曰, 依啓【見諫院朝報二十四日中】領議政許積所啓 濟州宣諭御史入往時 不可無慰諭島中之文 宜令藝文館速爲撰進. 且宣諭之舉 不可徒以言語慰悅. 所送麥種之外 加送賑恤廳啓下木 全羅監營所儲三十同 兵營所儲二十同似好 而亦難遍及於一島窮寒之民矣. 上曰 厥數大略 自戶曹 加送三十同 可也. 許積曰 平安兵營 有備局句管之木 以此追償戶曹木 似可矣. 上曰 依爲之.【見備局謄錄】

❖ 현종 12년(1671) 신해년 8월 23일(신축)

- 인견에 허적(許積)이 상주할 때 제주(濟州) 선유어사(宣諭御史)가 가지고 갈 진휼(賑恤) 물품에 대해 논의함<sup>363)</sup>
- 인견할 때, 장령(掌令) 정화제(鄭華齊)가 아뢰기를, “오위장(五衛將) 안경(安鏡)을 사관(仕版)에서 삭거(削去)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글 마디를 엮어서 만든 것은 위에서 볼 수 있음】 임금이 말하기를, “윤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또한 아뢰기를, “어전에서 주사(奏事)할 때, 대신(大臣) 외에 다 마땅히 머리를 조아려 주달해야 하는데, 공조판서 유혁연(柳赫然)은 임금의 지척(咫尺) 아래에서 일어나 앉을 때 머리를 쳐들고 아뢴 일은 특별히 삼가 존경하는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니, 공조판서 유혁연을 추고(推考)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사간원 조보 24일 자에 보임】 영의정 허적(許積)이 아뢰기를, “제주(濟州) 선유어사(宣諭御史)가 들어 갈 때 섬을 위유하는 글이 없을 수 없으니 예문관(藝文館)에서 속히 지어 올리도록 명령내려야 합니다. 또 선유(宣諭)의 일은 한갓 말로만 위로할 수는 없습니다. 보리 씨앗을 보내는 이외에 재가하여 내린 진휼청(賑恤廳) 무명(木)을 추가로 보내도록 하되, 전라감영(全羅監營)에서 저축한 30동(同)과 병영(兵營)에서 저축한 20동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섬 전체 백성에게 두루 미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그 수가 너무 적으니 호조(戶曹)에서 추가로 30동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허적이 말하기를, “평안병영(平安兵營)에,

363) 『현종개수실록』 권24 ‘현종 12년(1671) 신해년 8월 22일(庚子)’ 기사에도 관련 내용이 있음.

비국(備局)에서 관장하는 무명(木)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호조(戶曹)에 상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비변사등록에 보임】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허적, 제주, 선유어사, 정화제, 안경, 유혁연.

❖ 康熙十年 辛亥 八月 二十三日 辛丑

○ 有政. 吏批 以崔商翼爲獻納 …… 陳再昌爲大靜縣監 …… .【見吏曹望單子】

❖ 現宗 12年(1671) 辛亥年 8월 23일(辛丑)

□ 진재창(陳再昌)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함

○ 정사가 있었는데, 이비(吏批)에서 최상익(崔商翼)을 헌납(獻納)으로 삼고, <중략> 진재창(陳再昌)<sup>364</sup>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삼았다. <하략>. 【이조 망단자<sup>365</sup>에 보임】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최상익, 진재창, 대정현감.

---

364) 진재창(陳再昌): 1671년(현종 12)辛亥年 8월에 대정현감에 제수, 1672년(현종 13) 3월에 부임, 1673년(현종 14) 12월에 교체되어 이임.

365) 망단자(望單子): 삼망(三望: 벼슬아치를 발탁할 때 공정한 인사 행정을 위하여 세 사람의 후보자를 임금에게 추천하던 일)의 내용을 기록한 종이.

❖ 康熙 十年 辛亥 九月 一日 己酉

○ 下直 大靜縣監陳再昌.

❖ 현종 12년(1671) 신해년 9월 1일(기유)

□ 大靜縣監(大靜縣監) 진재창(陳再昌)이 하직함

○ 大靜縣監(大靜縣監) 진재창(陳再昌)이 하직(下直)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大靜縣監, 진재창.

## ❖ 康熙十年辛亥九月十二日庚申

- 引見時, 兵曹判書閔鼎重所啓, 兩西船運牟麥, 本爲秋耕播種之用, 而平安道, 則幾盡來到, 黃海道, 則金川都無先運, 外長淵·海州等, 都無所運, 則至今不至. 差使員淹留遲滯之狀, 誠可痛駭, 而監司, 亦不申飭趁期發送, 極爲非矣. 監司, 從重推考, 當該差使員, 拿問定罪, 何如? 上曰, 依啓. 上曰, 卽今民間形勢, 兩年田稅, 決難一時督捧 京畿·三南·原襄等道上年田稅一半 特令退捧於明年 以爲飢民蒙惠之地 可也. 左議政鄭致和所啓 濟州御史 今當下去矣. 本州貢賦雜役 竝皆蠲減 綿布·麥種 亦將特爲分給 此足以慰悅民情 而必有別樣舉措 然後方可聳動人心矣. 上曰 文武舉子 竝令試才以來 而御史辭朝之日 大提學命招 使之書題以入 武舉子試才規矩 亦令兵曹書入. 【見備局謄錄】

## ❖ 현종 12년(1671) 신해년 9월 12일(경신)

- 인견할 때 정치화(鄭致和)가 입시하여 제주어사(濟州御史)의 할 일에 대해 논의함
- 인견할 때, 병조판서 민정중(閔鼎重)이 아뢰기를, “양서(兩西: 황해도와 평안도)에서 선운(船運)<sup>366</sup>한 보리[牟麥]는 본래 가을갈이[秋耕]<sup>367</sup> 씨를 뿌릴 때 쓸 것입니다. 평안도의 보리는 거의 다 와서 도착했는데, 황해도는 김천(金川)에서 모두 선운되지 않고, 외장연(外長淵)과 해주(海州) 등에서도 하나도 선운되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차사원(差使員)이 오래 머물렀는데도, 지체된 상황은 진실로 이상하고 놀랍습니다. 감사(監司) 또한 신속하게 발송하라고 신칙(申飭)하지 않아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감사를 죄의 무거움에 따라 추고(推考)하고, 해당 차사원(差使員) 붙잡아서 문초하고 죄를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민간의 형세가 두 해[兩年]의 전세(田稅)<sup>368</sup>로 인해 결코 일시에 독촉하여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경기(京畿)와 삼남(三南)·원양(原襄) 등의 도(道)는 지난해 전세의 절반을, 다음 해에 물려서 받도록 특별히 영을 내려 굶주린 백성들에게 임금의 은혜를 입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좌의정 정치화(鄭致和)가 아뢰기를, “제주어사(濟州御史)는 지금 마땅히 내려 보내야 합니다. 본 고

366) 선운(船運): 진상 물품 따위를 배로 실어 나름.

367) 가을갈이: 다음 해의 농사에 대비하여, 가을에 논밭을 미리 갈아두는 일.

368) 전세(田稅): 논밭에 부과되는 조세. 고려 시대의 전시과나 조선 시대의 과전법에서 전조(田租)를 받는 사람이 다시 국가에 납부하는 세. 전조의 약 1/10, 수확량의 약 1/100을 냄.

을의 공부(貢賦)와 잡역(雜役)은 모두 다 일부를 면제해주고, 무명(綿布)과 보리씨(麥種) 또한 장차 특별히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민정(民情)을 위안하여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특별한 조치를 내린 연후라야 바야흐로 인심(人心)이 솟구쳐 뛰듯 움직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문무(文武)의 거자(擧子)는 모두 시재(試才)하도록 한 이래, 어사(御史)가 사조(辭朝)<sup>369</sup>하는 날에 대제학(大提學)을 불러들여 그로 하여금 제(題)를 써서 들이게 하고, 무과의 거자를 시재하는 규구(規矩) 또한 병조로 하여금 써서 들이게 하라.”라고 하였다. 【비변사등록에 보임】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민정중, 정치화, 제주어사, 문무거자.

---

369) 사조(辭朝): 새로 임명된 지방관이 부임하거나 외국으로 사신이 떠나기에 앞서 임금께 하직 인사를 드리던 일.

❖ 康熙十年辛亥九月十五日癸亥

- 備邊司啓曰 濟州御史應行節目 磨鍊給送事 因戶曹判書金壽興筭子 覆啓蒙允矣. 相考舊例 參酌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見備局謄錄 郎廳李鎮儀校 郎廳李壽鳳書】

❖ 현종 12년(1671) 신해년 9월 15일(계해)

- 구례(舊例)를 조사하여 제주어사(濟州御史)의 응행절목(應行節目)을 마련하도록 서입(書入)하겠다는 비변사(備邊司)의 계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제주어사(濟州御史)의 응행절목(應行節目)<sup>370)</sup>을 마련하여 급송(給送)한 일은 호조판서 김수흥(金壽興) 차자(筭子)<sup>371)</sup>로 인해 복계(覆啓)하여 몽운(蒙允)<sup>372)</sup>하였습니다. 구례(舊例)를 상고(相考)하고 참작하여 서입(書入)하게 할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비변사등록에 보임】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어사, 응행절목, 김수흥.

370) 응행절목(應行節目): 마땅히 갖추어 행해야 할 조목.

371) 차자(筭子): 조선 시대에, 일정한 격식을 갖추지 않고 사실만을 간략히 적어 올리던 상소문.

372) 몽운(蒙允): 임금에게 상소하여 윤희를 받던 일.

❖ 康熙十年辛亥九月十五日癸亥

- 禮曹啓曰 以戶曹判書金壽興筭子 濟州漢拏山降香致祭事 自備局覆啓 允下矣. 行祭吉日 令日官推擇 則來十月十七日·二十七日·十一月初一日爲吉云 而海外之行待風發船 有難定其遲速. 御史到本縣後 三箇日字中 隨其相值之日 依祀典所載名山節祭例設行 而祭文 令藝文館製進 香幣 令該司磨鍊 祭物則令本縣整備舉行之意 分付何如? 傳曰 允.

❖ 현종 12년(1671) 신해년 9월 15일(계해)

□ 제주(濟州) 한라산(漢拏山)의 강향치제(降香致祭)에 관한 일을 보고하는 예조(禮曹)의 계

- 예조에서 아뢰기를, “호조판서 김수흥(金壽興)의 차자(筭子)로, 제주(濟州) 한라산(漢拏山)의 강향치제(降香致祭)<sup>373)</sup>의 일에 대해서 비변사에서 복계(覆啓)하여 윤허를 내렸습니다. 길일(吉日)에 제를 행하는 것은 일관(日官)으로 하여금 추택(推擇)하게 하니, 오는 10월 17일, 27일, 11월 초1일이 길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다 밖으로의 행차에 바람을 기다렸다가 배를 띄워야 하니, 그 일의 더듬과 빠름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사(御史)가 본 고을에 도착한 뒤에 3개 일자가 가운데 서로 합당한 날을 좇아서 사전(祀典)<sup>374)</sup>에 실린 명산(名山) 절제례(節祭例)<sup>375)</sup>에 따라서 설행하게 했습니다. 제문(祭文)은 예문관(藝文館)으로 하여금 제진(製進)하게 하고, 향폐(香幣)는 해사(該司)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고, 제물(祭物)은 본 고을로 하여금 갖추어 거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김수흥, 제주, 한라산, 강향치제, 사전, 명산절제례.

373) 강향치제(降香致祭): 임금이 지방에 제사에 필요한 물품을 내려 주고 지내게 하는 제.

374) 사전(祀典): 제사(祭祀)를 지내는 예전(禮典).

375) 절제례(節祭例): 절기나 명절을 따라 지내는 제사의 예(例). 절사례(節祀例).

❖ 康熙 十年 辛亥 十一月 六日 癸丑

- 司僕寺啓曰 濟州牧使盧錠遞任進上馬三匹 禾毛色別單書入 依前內廐留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太僕寺謄錄】

❖ 현종 12년(1671) 신해년 11월 6일(계축)

- 제주목사(濟州牧使) 노정(盧錠)의 체임진상마 3필을 별단으로 서입한다는 사복시(司僕寺)의 계
-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노정(盧錠)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3필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에 써서 들고, 전례에 따라 내구(內廐)에서 기르게 할 뜻을 감히 아뢰옵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태복시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목사, 노정, 체임진상마, 내구.

❖ 康熙十年辛亥十二月十一日戊子

- 鄭鑰啓曰 濟州御史 旣已收取試卷上來矣. 明日待開門 大提學命招 科次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현종 12년(1671) 신해년 12월 11일(무자)

- 제주어사(濟州御史)가 시권(試卷)을 모아 가지고 왔으므로 내일 대제학(大提學)을 불러 과차(科次)를 정할 것을 청하는 정약(鄭鑰)의 계
- 정약(鄭鑰)이 아뢰기를, “제주어사(濟州御史)가 이미 시험을 봐 인재를 뽑는 시권(試卷)<sup>376</sup>을 올려 보냈습니다. 내일 문이 열 때를 기다려서 대제학(大提學)<sup>377</sup>을 명초(命招)<sup>378</sup>하여 과차(科次)<sup>379</sup>를 들이는 뜻을 감히 아뢰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정약, 제주어사.

---

376) 시권(試券): 권자(卷子). 과거를 볼 때 글을 지어 올리던 종이.

377) 대제학(大提學): 홍문관과 예문관의 으뜸 벼슬. 정2품으로, 1401년(태종 1)에 태학사를 고친 것임.

378) 명초(命招): 임금의 명으로 신하를 부름.

379) 과차(科次): 조선 시대에,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의 성적 등급. 성적을 9등급으로 나누어 이상(二上), 이중(二中), 이하(二下), 삼상(三上), 삼중(三中), 삼하(三下), 차상(次上), 차중(次中), 차하(次下)로 규정하여 우열을 평가하고 삼하 이상을 급제로 하였음.

❖ 康熙十年 辛亥 十二月 十二日 己丑

- 有政. 吏批 行判書金壽恒 濟州御史試券科次進 參判洪處亮進 參議李端夏進 行都承旨李殷相進.

❖ 현종 12년(1671) 신해년 12월 12일(기축)

이비(吏批)의 관원 현황

- 정사가 있었는데, 이비(吏批)에서 행판서(行判書) 김수항(金壽恒)이 제주어사(濟州御史)의 시권(試券) 과차(科次)를 나아가 아뢰었다. 참판(參判) 홍처량(洪處亮)이 나아가 아뢰고, 참의(參議) 이단하(李端夏)가 나아가 아뢰고, 행도승지(行都承旨) 이은상(李殷相)이 나아가 아뢰었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김수항, 제주어사, 홍처량, 이단하, 이은상.



1672年



❖ 康熙十一年壬子一月二十五日壬申

- 引見時, 吏曹判書金壽恒所啓 東萊府使鄭哲 鍾城府使李觀徵 江界府使權壽 濟州牧使盧錠 俱已瓜滿矣. 瓜滿守令仍任事 曾已定奪 而邊地守令 異於內地 群議皆以爲合有變通之道矣. 上曰 邊地守令之除肇眷赴任 既已瓜滿之後 何可仍任乎? 竝出代 可也. 至於盧錠 則盡心賑政 似當姑爲仍任 而聞其病勢危重 雖欲盡心職事 有不可得 依他許遞 而邊地守令 亦一體施行.

❖ 현종 13년(1672) 임자년 1월 25일(임신)

□ 임기가 찬 변방 수령 정석(鄭哲) 등의 임임(仍任)을 묻는 김수항(金壽恒)의 계

- 인견할 때, 이조판서 김수항(金壽恒)이 아뢰기를, “동래부사(東萊府使) 정석(鄭哲), 종성부사(鍾城府使) 이관징(李觀徵), 강계부사(江界府使) 권주(權壽), 제주목사(濟州牧使) 노정(盧錠) 등이 모두 이미 임기가 끝나는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임기가 찬 수령을 그대로 남겨두는 일에 대해서는 일찍이 이미 임금의 재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방 수령은 내지(內地)와 달라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거쳐서 모두 변통(變通)하는 것이 부합하는 도리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변방 수령은 온 가족을 데리고 부임하지 못하게 했는데<sup>380</sup>), 이미 임기가 찬 뒤에도 어떻게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둘 수가 있는가? 모두 후임을 차출하는 것이 옳다. 노정(盧錠)의 경우, 진심으로 진흙에 관한 정사를 펼쳤으니 마땅히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러나 듣건대 병세가 위중하여 비록 진심으로 직임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다른 예에 따라 특별히 벼슬을 갈아 주고 변방 수령 또한 일체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목사, 노정, 김수항.

380)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활자본에는 “邊地守令之除 肇眷赴任”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邊地守令之除 挈眷赴任”의 잘못이기에 바로 잡아야 함.

❖ 康熙 十一年 壬子 二月 六日 壬午

○ 吏批, 以邊四達爲奉常奉事, …… 趙雄爲濟州牧使, …….

❖ 현종 13년(1672) 임자년 2월 6일(임오)

□ 조용(趙雄)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이비(吏批)에서 변사달(邊四達)을 봉상시사(奉常奉事)로 삼고, <중략> 조용(趙雄)을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삼았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변사달, 조용, 제주목사.

❖ 康熙十一年壬子二月八日甲申

- 都提調以下, 伏障子外, 醫官等, 先入侍, 按出瘡處濃汁畢 …… 積曰, 造家【缺】也. 譯官, 則定送金漢行【缺】牧使睦來善, 既經侍從, 常時則可合【缺】以送, 而來善, 非即今濟州牧之才也. 積曰, 來善雖簡約, 全【缺】濟州疲民, 似非其人矣. 上曰, 大臣之言, 亦如此, 遞差可也. 壽恒曰 臣亦非謂十分恰當也. 箇箇歷數 無可擬商 令廟堂議薦如何? 既遞來善 則更難得人矣. 積曰 令廟堂議薦 不當勒 勿論文武 極擇差送 似可矣. 上曰 然. 東萊新府使 依舊例衣服資裝 量給 促催下送 可也. 遂退出. 【以上燼餘】

❖ 현종 13년(1672) 임자년 2월 8일(갑신)

□ 목래선(睦來善)이 제주목사(濟州牧使)로 합당한 지에 대해 논의함

- 도제조(都提調) 이하는 장자(障子)<sup>381)</sup> 밖에 엮드려 있고 의관(醫官) 등이 먼저 입시(入侍)해서 종기가 난 곳을 살피고 농즙(濃汁)을 죄다 뽑아냈다. <중략> 허적이 말하기를, “조가(造家)【빠짐】 역관(譯官)은 김한행(金漢行)을 정해서 보내고【빠짐】, 목사(牧使) 목래선(睦來善)은 이미 시종(侍從)을 지냈으니 상시로 합당하다【빠짐】 보내니, 목래선은 지금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인재가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허적이 말하기를, “목래선은 비록 지략이 간략합니다만, 제주(濟州)의 피민(疲民)을【빠짐】 합당한 인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大臣)의 말 또한 이와 같으니, 체차(遞差)<sup>382)</sup>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김수항(金壽恒)이 말하기를, “신(臣) 또한 십분(十分) 합당(恰當)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날날을 차례대로 세니 헤아릴 수가 없어서 의정부와 의논하여 추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미 내선(來善)을 교체했으니 다시 사람을 얻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였다. 허적이 말하기를, “의정부의 추천을 억지로 하게 하면 부당하니, 문무를 논하지 말고 잘 택하여 선발하고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신임 동래부사(東萊府使)는 구례(舊例)에 따라 의복 자장(資裝)<sup>383)</sup>을 미루어 짐작하고 살펴서 지급하고 재촉하여 내려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끝나고 나갔다. 【이상은 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김한행, 목래선, 제주목, 허적, 김수항.

381) 장자(障子): 방의 아랫간이나 또는 방과 마루 사이에 가려 막은 문.

382) 체차(遞差): 관리의 임기가 차거나 부적당할 때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일을 이르던 말.

383) 자장(資裝): 몸을 꾸미거나 짐을 꾸리는데 쓰이는 갖가지 물건.

❖ 康熙十一年壬子二月十二日戊子

○ 巳時, 上御養心閣, 東萊府使李夏引見時 …… 頃年濟州漂到人南燮軍云者 卽阿闍陀人也. 見我國人疾盛曰 宿於溫突故也 石上烘火而處之 故有疾也. 渠國 無咳嗽之人 不宿溫突 無冷熱相薄之事故無疾云. 其人亦宿抹樓 而雖有房舍 亦不點火云矣. 積曰 此外別無分付之事 使臨機應變 可矣. 上曰 不可遙度 臨時審處 可矣. 翊相曰 彼若作房 則何以爲之? 積曰 房則必不作矣. 上曰 作則毀之 可矣 …… 積曰, 濟州年例馬, 上年以凶荒, 故不爲上送. 今年則又是式年次例, 何以爲之? 卽今太僕所悶者, 軍兵無【缺】給之馬, 在濟之馬, 則飢民, 盡爲殺食, 故欲爲以來矣. 上曰, 好馬百餘匹, 御乘三匹, 差備馬一半, 使之擇送, 似好矣【缺】積曰【缺】匹數, 更爲稟達矣. 上曰, 依爲之. 遂罷出. 【以上燼餘】

❖ 현종 13년(1672) 임자년 2월 12일(무자)

□ 인견에 허적(許積) 등이 입시하여 제주(濟州) 표도인(漂到人) 남섭군(南燮軍), 제주(濟州) 연례마(年例馬)에 관한 일 등에 대해 논의함.

○ 사시(巳時)에 임금이 양심합(養心閣)에 나아가 동래부사(東萊府使) 이하(李夏)를 인견(引見)할 때 <중략> 요 몇 해 사이에 제주(濟州)에 표도(漂到)한 사람이 남섭군(南燮軍)이었다고 했는데, 그는 곧 아란타인(阿闍陀人)이었다. 우리나라 사람의 질병이 성한 것을 보고 말하기를, “온돌(溫突)에서 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돌 위에 불을 때며 거처했기 때문에 질병이 생긴 것입니다. 저들 나라에는 기침을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온돌에 자지 않으면 냉기와 열기가 서로 침범하는 일이 없으므로 질병이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또한 마루에서 자고, 비록 방사(房舍)가 있는데도 불을 붙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허적이 말하기를, “이외에 특별히 분부할 일이 없다면 임기응변으로 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미루어 헤아릴 수가 없으니 임시로 심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이익상(李翊相)이 말하기를, “저들이 만약 방(房)을 짓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허적이 말하기를, “방(房)은 반드시 못 짓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들었다면 그것을 헐어버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중략> 허적이 말하기를, “제주(濟州) 연례마(年例馬)는 지난해 흉황(凶荒)으로 올려 보내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또 식년(式年) 차례에 해당되니,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바로 지금 태복(太僕)에서 고민하는 것은 군병(軍兵)에게 【빠짐】 말을 주지 못했습니다. 제주의 말은 굶

주린 백성들이 다 죽여서 먹어 버리기 때문에 올라오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좋은 말은 1백여 필인데, 어승마는 3필이고, 차  
비마(差備馬)는 절반이니 그로 하여금 골라서 보내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빠짐】”라고 하였다. 허적이 말하기를, “【빠짐】 필수(匹數)는 다시 품처하여 주달  
하게 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이  
상은 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 표도인, 남섭군, 아란타인, 제주연례마.

❖ 康熙 十一年 壬子 二月 十八日 甲午

- 吏批啓曰 濟州牧使 勿論文武擇差事 曾已定奪 而武臣中擬望之人 亦甚乏少 闔帥營將中可合人員 竝擬何如? 傳曰 允.

❖ 현종 13년(1672) 임자년 2월 18일(갑오)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의망(擬望)에 대한 이비(吏批)의 계

- 이비(吏批)가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는 문무(文武)를 논의하지 말고 택송(擇差)할 일로 일찍이 이미 정탈(定奪)했으나, 무신(武臣) 가운데 의망인(擬望人)<sup>384)</sup>을 고르려고 했으나 몹시 적었습니다. 곤수(閫帥)<sup>385)</sup>와 영장(營將)<sup>386)</sup> 가운데 합당한 사람을 골라서 아울러 의망(擬望)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목사, 의망.

---

384) 의망(擬望): 삼망(三望: 벼슬아치를 발탁할 때 공정한 인사 행정을 위하여 세 사람의 후보자를 임금에게 추천하던 일)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385) 곤수(閫帥/闔帥):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예스럽게 부르던 말. 특히 평안도와 함경도의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통틀어 이르던 말.

386) 영장(營將): 진영장(鎭營將). 조선시대에 둔, 각 진영(鎭營)의 으뜸 벼슬.

❖ 康熙 十一年 壬子 二月 十八日 甲午

○ 有政 以金萬均爲承旨 …… 尹堦爲濟州牧使.

❖ 현종 13년(1672) 임자년 2월 18일(갑오)

□ 윤계(尹堦)를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는데, 김만균(金萬均)을 승지(承旨)로 삼고 <중략> 윤계(尹堦)를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삼았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김만균, 윤계, 제주목사.

❖ 康熙 十一年 壬子 二月 十八日 甲午

○ 濟州牧使尹堦 今加通政.

❖ 현종 13년(1672) 임자년 2월 18일(갑오)

□ 제주목사(濟州牧使) 윤계(尹堦)에게 통정(通政)을 가자(加資)함

○ 제주목사(濟州牧使) 윤계(尹堦)에게 지금 통정(通政)<sup>387)</sup>을 가자(加資)<sup>388)</sup>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윤계, 제주목사.

---

387) 통정(通政): 통정대부(通政大夫). 조선 시대에 둔, 정3품 문관의 품계.

388) 가자(加資): 조선 시대에, 관원들의 임기가 찼거나 근무 성적이 좋은 경우 품계를 올려 주던 일. 또는 그 올린 품계. 왕의 즉위나 왕자의 탄생과 같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일이 있거나, 반란을 평정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 주로 행함.

❖ 康熙十一年壬子二月十八日甲午

- 巳時, 上御養心閣, 大臣·備局堂上引見 …… 積曰, 北路, 與胡地相近, 故其言語, 亦相似矣. 此人雖還送本土, 如此惡民, 逃匿無常, 雖捉送彼中, 亦不無還逃之弊, 若送于絕島如濟州等地 則似爲得宜矣. 上曰 依爲之 …….

❖ 현종 13년(1672) 임자년 2월 18일(갑오)

□ 인견에 허적(許積) 등이 입시하여 악민(惡民) 착송(捉送) 등에 대해 논의함

- 사시에 임금이 양심합(養心閣)에 나아가 대신과 비변사당상을 인견할 때 <중략> 허적이 말하기를, “북로(北路)<sup>389)</sup>는 호지(胡地)<sup>390)</sup>와 서로 가까운 곳이므로 그 언어(言語) 또한 서로 비슷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비록 본토로 환송될지라도 이와 같이 악한 백성이 달아나 몸을 숨기는 것이 늘 변합니다. 비록 저들을 붙잡아서 보내더라도 도로 도망하는 폐단이 없을 수 없습니다. 만약 제주(濟州) 등과 같은 절도(絶島)로 보내버리면 마땅함을 얻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양심합, 북로, 호지, 제주.

389) 북로(北路): 서울에서 함경도로 통하는 길을 이르던 말.

390) 호지(胡地): 오랑캐가 사는 땅. 흔히 중국 동북 지방을 이른다.

❖ 康熙 十一年 壬子 二月 二十日 丙申

- 答吏曹粘連啓目曰 濟州牧使盧錠 加資 判官崔鎮南 准職除授 旌義縣監李松老 兒馬一匹賜給.

❖ 현종 13년(1672) 임자년 2월 20일(병신)

이조(吏曹)의 계목(啓目)에 대한 비답

- 이조(吏曹)의 집련계목(粘連啓目)에 답하여 말하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노정(盧錠)에게 가자(加資)하고, 관관(判官) 최진남(崔鎮南)에게 준직(准職)<sup>391</sup>을 제수하고, 정의현감(旌義縣監) 이송로(李松老)에게 아마(兒馬) 1필을 사급(賜給)하라.”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목사, 노정, 최진남, 정의현감, 이송로.

---

391) 준직(准職): 당하관으로서 가장 높은 당하 정3품 벼슬.

❖ 康熙 十一年 壬子 三月 三日 己酉

○ 答濟州牧使尹堦疏曰 省疏具悉. 爾其入來待命. 【以上記草】

❖ 현종 13년(1672) 임자년 3월 3일(기유)

□ 제주목사(濟州牧使) 윤계(尹堦)의 상소에 대한 비답(批答)

○ 제주목사(濟州牧使) 윤계(尹堦)의 소(疏)에 답하여 말하기를, “소를 보고 잘 알았다. 너는 들어와서 명을 기다려라.”라고 하였다. 【이상은 초기(記草)에 따름】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윤계, 제주목사.

❖ 康熙十一年壬子四月三日戊寅

- 今四月初三日兵曹判書閔鼎重請對引見時, 閔鼎重所啓, 海西穀二萬石, 劃給濟州事, 曾已定奪, 而其中六千石, 爲先分付移轉矣, 近者海西各邑土民累十人, 委來呈訴, 以爲元穀數少, 而移轉居半, 欲救遠民, 而反使本土之民, 不得自活, 其勢誠急, 乞蒙變通之舉云. 當初定數, 意在觀勢裁處, 而本道爲取各路之便, 近日南各邑倉儲, 一從分定數先運, 設有日後變通之舉, 已無及矣, 渠輩稱冤, 誠然矣. 上曰, 頃聞左相之言, 已知本道民人之呼冤, 使之變通矣, 今聞民情如此云, 元數二萬石內, 六千石, 減除, 其代, 則自賑恤廳料理充數, 可也. 又啓曰, 西北邊境犯越罪人定配之類, 今番一併赦宥, 雖出於大需之前, 而此輩當初罪犯甚重, 日後如有前習, 又爲犯越之事, 則依近日新事目中三犯者, 勿論首從梟示之例, 竝爲隨現梟示, 斷不饒貸之意, 旣已定奪榻前矣, 以此意, 咸鏡·平安兩道監司處, 嚴明知委, 何如? 答曰, 允. 【以上戶曹騰錄】

❖ 현종 13년(1672) 임자년 4월 3일(무인)

- 해서(海西)의 곡식 2만 섬을 제주(濟州)에 획급하려 했으나 변통을 해야 한다는 것 등을 논의함.
- 올해 4월 초3일에 병조판서(兵曹判書) 민정중(閔鼎重)의 청대(請對)<sup>392)</sup>로 〈임금이〉 인견(引見)<sup>393)</sup>할 때, 민정중(閔鼎重)이 아뢰기를, “해서(海西)<sup>394)</sup>의 곡식 2만 섬을 제주(濟州)에 획급(劃給)<sup>395)</sup>해 줄 일은 일찍이 이미 임금의 재결이 있어서 그 가운데 6천 섬을 우선 분부한 대로 이전하였습니다. 근자에 해서(海西)의 각 고을의 토착민 수십 인이 몰려와서 소를 올리기를, ‘원곡(元穀)의 수는 적은데, 대부분을 이전하여 원민(遠民)을 구할하려고 하나 도리어 본토 백성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게 됐으니 그 형세가 참으로 급하여, 변통하는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당초 정해진 수는 형세를 보면서 재결하여 처리하라고 했는데, 본도(本道)에서 여러 길로 편의를 취해보니 요사이 남쪽 각 고을의 창고 저장 곡식은 한결 같이 분정(分定)한 수에 따라 먼저 운반하고, 뒷날에 변통할

392) 청대(請對): 신하가 급한 일이 있을 때에 임금에게 뵈기를 청하던 일.

393) 인견(引見):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불러서 만나 봄. 임금이 의식을 갖추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따위의 관리를 만나 보던 일.

394) 해서(海西): 황해도(黃海道). 우리나라 중서부에 있는 도.

395) 획급(劃給): 주어야 할 것을 한 번에 다 주지 아니하고 나누어 줌.

조치를 갖추는 데는 이미 미치지 못하여 저들의 원망의 소리가 참으로 그럴 만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요사이 좌상(左相)의 말에, 이미 본도(本道) 백성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알아서 변통하도록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들으니 민정이 이와 같다고 한다. 원수(元數) 2만 섬 중 6천 섬을 감제(減除)하고, 그 대신에 진휼청(賑恤廳)에서 잘 처리하여 그 수를 충원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또한 아뢰기를, “서북(西北)<sup>396)</sup> 변경(邊境)을 범월(犯越)<sup>397)</sup>한 죄인을 정배(定配)하는 따위를 이번에 한꺼번에 모두 용서한다면 비록 대패(大霽)<sup>398)</sup> 앞에 나가게 하는 것이나 이들은 당초에 죄를 지은 것이 아주 중해서 뒷날에도 이전의 습관처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월(犯越)한 일은 요사이 새로운 사목(事目)에 따라 삼범(三犯)한 자를 가려서 수종(首從)<sup>399)</sup>을 논하지 말고 효시(梟示)하는 예가 있습니다. 아울러 드러난 것에 따라 효시(梟示)하고 단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을 이미 어전에서 재가하였습니다. 이 뜻에 따라 함경(咸鏡)·평안(平安) 양도(兩道)의 감사(監司)에게 엄명(嚴明)하라고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호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민정중, 해서, 제주.

396) 서북(西北):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지방을 통틀어 이르는 말.

397) 범월(犯越): 남의 국경을 침범하거나 남의 나라에 몰래 들어감.

398) 대패(大霽): 임금이 죄를 지은 죄수에게 큰 은전을 베풀어 용서하고 풀어주는 것을 말함. 곧 크게 사면하는 것을 일컫는 말.

399) 수종(首從): 일을 할 때 앞서서 하는 사람과 그 뒤를 따라 하는 사람. 범죄 행위를 실행한 주범자와 종범자(從犯者).

❖ 康熙十一年壬子四月十三日戊子

- 司僕寺啓曰 旌義縣監遞任 進上馬二匹上來 禾毛色 別單書入 而依前例內廄立養事 敢啓. 傳曰 知道. 【以上太僕臚錄】

❖ 현종 13년(1672) 임자년 4월 13일(무자)

- 정의현감(旌義縣監)이 체임(遞任) 진상(進上)한 말 2필을 별단으로 서입하여 내구(內廄)에서 기르겠다는 사복시(司僕寺)의 계
- 사복시(司僕寺)에서 아뢰기를, “정의현감(旌義縣監)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2필이 올라왔는데, 나이와 털색은 별단(別單)으로 작성하여 들여보내고 전례에 따라 내구(內廄)에서 기르게 할 일로 감히 아뢰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태복시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정의현감, 체임진상마, 내구.

❖ 康熙 十一年 壬子 六月 六日 庚辰

○ 以鄭楹爲同義禁 李志行爲旌義縣監 …….

❖ 현종 13년(1672) 임자년 6월 6일(경진)

□ 이지행(李志行)을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함

○ 정익(鄭楹)을 동의금(同義禁)으로 삼고, 이지행(李志行)<sup>400</sup>을 정의현감(旌義縣監)으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이지행, 정의현감, 정익.

---

400) 이지행((李志行): 1672년(현종 13) 임자년 6월 경진(6일)에 정의현감으로 임명되고, 윤7월에 도입하여 1674년(현종 15) 6월에 벼슬을 내놓고 돌아감.

❖ 康熙十一年壬子七月二日乙巳

○ 【缺】入診時 都承旨李殷相所啓 此時守令赴任 一日爲急 【缺】縣監許悽 旌義縣監李志行 除拜已過累朔 諫院〈署〉經 旣已爲之 而憲府雖有二員 又有引避【缺】署經遲速 未可豫料 似當有變通之道矣. 上曰 許悽·李志行 竝除署經趁速發送 可也.

❖ 현종 13년(1672) 임자년 7월 2일(을사)

□ 부임하는 정의현감(旌義縣監) 이지행(李志行) 등이 헌부(憲府) 관원의 인피(引避)로 서경(署經)이 늦어지고 있으니 변통하자는 이은상(李殷相)의 계

○ 【빠짐】 입진(入診)<sup>401</sup>할 때, 도승지(都承旨) 이은상(李殷相)이 아뢰기를, “이번 수령 부임의 일은 하루가 급합니다. 【빠짐】 현감(縣監) 허협(許悽)과 정의현감(旌義縣監) 이지행(李志行)이 제배(除拜)<sup>402</sup>한 지 이미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간원(諫院: 사간원)<sup>403</sup>의 서경(署經)<sup>404</sup>은 이미 하였으나, 헌부(憲府: 사헌부)<sup>405</sup>에 2원(員)이 있는데, 또한 인피(引避)<sup>406</sup> 【빠짐】 하므로, 서경(署經)의 느림과 빠름은 미리 헤아릴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변통하는 일이 있어야 할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허협과 이지행을 아울러서 다 서경을 면제해 주고 신속히 내보내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이은상, 허협, 정의현감, 이지행, 서경.

401) 입진(入診): 의원이 궁중에 들어가 임금을 진찰함.

402) 제배(除拜): 제수(除授). 추천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임금이 직접 벼슬을 내리던 일.

403) 간원(諫院): 사간원(司諫院). 조선 시대에, 삼사 가운데 임금에게 간(諫)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404) 서경(署經): 임금이 새 관원을 임명한 뒤에 그 성명, 문벌, 이력 따위를 써서 사헌부와 사간원의 대간(臺諫)에게 그 가부(可否)를 묻던 일. 고을 원이 부임할 때에 높은 벼슬아치들에게 고별하던 일.

405) 헌부(憲府): 사헌부(司憲府). 고려·조선 시대에, 정사(政事)를 논의하고 풍속을 바로잡으며 관리의 비행을 조사하여 그 책임을 규탄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406) 인피(引避):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일을 피하던 일.

❖ 康熙 十一年 壬子 七月 二日 乙巳

- 巳時【七月初二日】上御養心閣, 藥房入診後, 仍爲受針 …… 殷相曰 此時守令赴任 一日爲急 唐津縣監許俠 旌義縣監李志行 除拜累朔 諫院則旣已署經 而憲府則行 公雖有二員 又有引避之嫌 署經遲速 未可豫料 似當有變通之道矣. …….

❖ 現종 13년(1672) 임자년 7월 2일(을사)

□ 양심합(養心閣)에서 정의현감(旌義縣監) 이지행(李志行)의 수령 부임에 대해 논의함

- 사시(巳時)에 【7월 초2일】 양심합(養心閣)에 나아가 약방(藥房: 내의원)<sup>407</sup>이 입진(入診)한 뒤, 그대로 침을 맞았다. <중략> 이은상(李殷相)이 말하기를, “이러한 때에 수령이 부임하는 것은 하루가 급한데, 당진현감(唐津縣監) 허협(許俠)과 정의현감(旌義縣監) 이지행(李志行)에게 제수한 지 여러 달 사간원은 이미 서경(署經)을 했으나 사헌부가 공무를 집행하는 2원(員)이 있는데 또한 피험(避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경의 느낌과 빠름은 미리 헤아릴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변동하는 일이 있어야 할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이은상, 허협, 정의현감, 이지행, 서경.

---

407) 약방(藥房): 내의원(內醫院). 조선 시대에 둔 삼의원(三醫院)의 하나.

❖ 康熙 十一年 壬子 七月 十一日 甲寅

○ 下直 衿川縣監蔡命【數字缺】川縣監尹宗 旌義縣監李志行 …….

❖ 현종 13년(1672) 임자년 7월 11일(갑인)

□ 정의현감(旌義縣監) 이지행(李志行) 등이 하직함

○ 금천현감(衿川縣監) 채명(蔡命)【여러 글자가 빠짐】 □천현감(□川縣監) 윤실(尹  
宗), 정의현감(旌義縣監) 이지행(李志行), <하략> 등이 하직(下直)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정의현감, 이지행.

❖ 康熙 十一年 壬子 七月 二十五日 戊辰

- 閔宗道 以司僕寺提調意啓曰 濟州先運馬二十八匹 及山馬監牧官金大振所進馬二匹 先到本寺 故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현종 13년(1672) 임자년 7월 25일(무진)

- 제주마(濟州馬) 등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에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司僕寺)의 계
- 민중도(閔宗道)가 사복시 제조로 뜻을 아뢰기를, “제주(濟州) 선운마(先運馬)<sup>408</sup> 28필과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 김대진(金大振)<sup>409</sup>이 진상한 말 2필이 먼저 본시(本寺: 사복시)에 도착했으므로,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서입(書入)하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민중도, 제주, 선운마, 산마감목관, 김대진.

---

408) 선운마(先運馬): 선운세공마(先運歲貢馬). 먼저 운송해서 보낸 세공마(해마다 지방에서 나라에 공물로 바치던 말).

409) 김대진(金大振): 1670년(현종 11) 경술년 12월 갑신(1일)에 제주 산마감목관에 임명됨.

❖ 康熙 十一年 壬子 閏七月 二日 乙亥

- 李穡 以司僕寺言啓曰 濟州再運歲貢馬一百匹內 一匹船中致斃 來到本寺馬九十九匹 依例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현종 13년(1672) 임자년 윤7월 2일(을해)

- 제주(濟州) 세공마(歲貢馬)의 화모색(禾毛色)을 별단에 써서 들인다는 사복시(司僕寺)의 계
- 이해(李穡)가 사복시에서 말하여 아뢰기를, “제주(濟州) 재운(再運)<sup>410</sup> 세공마(歲貢馬) 1백 필 중 1필은 배 안에서 죽고, 본시(本寺: 사복시)에 도착한 말은 99 필입니다. 전례에 따라서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서입(書入)하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이해, 제주, 재운, 세공마.

---

410) 재운(再運): 조선시대에, 공물 따위를 한 해에 두 번째 실어 나름.

❖ 康熙十一年壬子閏七月十四日丁亥

-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 引見 …… 壽興曰, 頃日濟州牧使尹堦啓聞中 旌義縣 有倭楮六百斤云云. 只有虛簿 而無卽今土產 必是古有而今無者 亦可蕩滌矣. 上曰 依爲之. …….

❖ 現종 13년(1672) 임자년 윤7월 14일

- 인견에 김수흥(金壽興) 등이 입시하여 정의현(旌義縣)의 왜저(倭楮) 등에 대해서 논의함
-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대신과 비변사당상을 인견할 때 <중략> 김수흥(金壽興)이 말하기를, “요사이 제주목사(濟州牧使) 윤계(尹堦)의 계문(啓聞) 가운데, 정의현(旌義縣)에 왜저(倭楮)<sup>411)</sup> 6백 근이 있다고 했는데, 다만 허부(虛簿)<sup>412)</sup>가 있을 뿐이고, 지금은 토산품이 없으니, 필시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니, 그것 또한 탕감해 줘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희정당, 김수흥, 제주목사, 윤계, 정의현, 왜저.

411) 왜저(倭楮): 일본 닥나무(안피)라 하기도 하고, 산닥나무라고도 함.

412) 허부(虛簿): 거짓으로 꾸민 장부.

❖ 康熙 十一年 壬子 閏七月 十四日 丁亥

- 呂聖齊 以司僕寺言啓曰 濟州三運進上馬八十匹內 病斃中路者一匹 計除來到本寺馬七十九匹 禾毛色 別單開錄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현종 13년(1672) 임자년 윤7월 14일(정해)

- 제주(濟州)에서 진상(進上)한 말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에 개록(開錄)하여 들인다는 사복시(司僕寺)의 계
- 여성제(呂聖齊)가 사복시에서 말하여 아뢰기를, “제주(濟州) 삼운(三運) 진상마(進上馬) 80필 중 중간에 병으로 죽은 말 1필을 제외하고, 79필이 본시(本寺: 사복시)에 도착해서, 나이와 털색은 별단(別單)으로 개록(開錄)하여 들여보내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여성제, 제주, 삼운, 진상마.

❖ 康熙 十一年 壬子 八月 十七日 己未

- 慶山縣令李元龜 以善賑善治外 別備最多事 加資. 以李枝茂爲刑曹參議 以 …… 以金興運爲濟州牧使. …….

❖ 現宗 13년(1672) 임자년 8월 17일(기미)

김흥운(金興運)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경산현령(慶山縣令) 이원구(李元龜)를 잘 진휼하고 잘 다스린 것 외에 특별히 최다로 갖춘 일로 가자(加資)하였다. 이지무(李枝茂)를 형조참의(刑曹參議)로 삼고, <중략> 김흥운(金興運)<sup>413</sup>을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삼았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김흥운, 제주목사.

---

413) 김흥운(1622~?): 1672년(현종 13) 임자년 8월 17일에 제주목사로 임명 받고, 같은 해 10월에 부임하여 1675년(숙종 1)에 교체되어 이임.

❖ 康熙 十一年 壬子 八月 十九日 辛酉

- 備邊司啓曰 濟州前牧使尹堦 既有拿問之命 新除授牧使金興運 以全羅左水使 時在任所 當待交代 而赴任新水使 不可不急差送 兵曹判書 雖在外 令次官勿拘常規 後政差出 催促下送 以爲次次替代之地 何如? 答曰 允.【以上備局謄錄】

❖ 현종 13년(1672) 임자년 8월 19일(신유)

- 전라좌수사(全羅左水使) 김흥운(金興運)의 후임을 속히 차송(差送)하여야 하니 병조판서가 외방에 있더라도 차관(次官)으로 하여금 차출하게 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備邊司)의 계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 전목사(前牧使) 윤계(尹堦)는 이미 잡아다가 문초하라는 명이 있습니다. 새로 제수된 목사 김흥운(金興運)은 전라좌수사(全羅左水使)로 현재 임소(任所)에 있어서 마땅히 교대를기다리고 있으니 부임할 새로운 수사(水使)를 신속히 뽑아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병조판서가 비록 밖에 있더라도 차관(次官)에게 명하여 일상적인 법규에 구애되지 말고 다음 정사(政事)에서 차출(差出)하여 재촉하여 내려 보내어 차례로 교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이상은 비변사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 윤계, 김흥운, 전라좌수사.

❖ 康熙十一年壬子九月三日乙亥

- 巳時, 上御養心閣, 大臣·備局堂上, 引見, …… 壽恒曰, 自備局問于譯官, 而其答姑未來矣. 濟州前牧使尹堦狀啓 內司奴婢身貢事 李夏書啓 亦言此弊 故榻前定奪 鹿皮·首鬚 比前稍減 實是大惠 而尹堦狀啓 則請限今年 半減其數矣. 上曰 似是別件事也. …….

❖ 현종 13년(1672) 임자년 9월 3일(을해)

- 인견에 김수항(金壽恒) 등이 입시하여 제주(濟州) 내사(內司) 노비(奴婢)의 신공(身貢)을 감하는 일 등에 대해 논의함
- 사시에 임금이 양심합(養心閣)에 나아가 대신과 비변사당상을 인견할 때, <중략> 김수항(金壽恒)이 말하기를, “비변사에서 역관(譯官)에게 물으니, 그 답이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제주(濟州) 전목사(前牧使) 윤계(尹堦)의 장계(狀啓)에 내사(內司) 노비(奴婢)의 신공(身貢)에 대한 일이 있고, 이하(李夏)의 서계(書啓)에도 이 폐단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어전에서 임금의 재가로 사슴가죽(鹿皮)과 다리(首鬚)는 전에 비하여 조금 감해 주었으니, 실로 이것이 큰 혜택입니다. 그러나 윤계의 장계에는 올해에 한해서 그 수를 반으로 줄여 달라고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특별한 일인 것 같다.”라고 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김수항, 제주, 윤계, 이하, 사슴가죽(鹿皮), 다리(首鬚).

❖ 康熙十一年壬子九月四日丙子

○ 李觀徵, 以備邊司言啓曰, 上年濟州宣諭御史李夏入往時, 木綿三十同, 今年濟州牧使尹堦入往時, 木綿五十同, 前後合八十同, 令戶曹入送, 而該曹所儲垂乏, 其代, 自本司料理充給事, 定奪於榻前矣. 本司所管, 只有平安兵營留儲軍木, 而其中一百同, 曾爲除出, 以一同三十兩, 發賣, 換銀以來矣. 木同, 則遠路輸運有弊, 該曹需用, 銀布無間, 以本司所在銀二千四百兩, 依當初折價, 移給該曹之意, 敢啓. 傳曰, 知道.

❖ 현종 13년(1672) 임자년 9월 4일(병자)

□ 호조(戶曹)에 내줄 은(銀)을 무명〔木綿〕으로 이급(移給)하겠다는 비변사(備邊司)의 계

○ 이관징(李觀徵)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지난해에 제주(濟州) 선유어사(宣諭御史) 이하(李夏)가 들어갈 때 무명〔木綿〕 30동(同), 올해 제주목사(濟州牧使) 윤계(尹堦)가 들어갈 때, 무명〔木綿〕 50동 등 앞뒤를 합하여 80동을 호조(戶曹)에 영을 내려서 들여보내게 하였습니다. 해조(該曹)에서 비축해놓은 것이 적어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본사(비변사)에서 잘 처리하여 보충하여 줄 일은 어전에서 임금의 재결을 받았습니다. 본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다만 평안(平安) 병영(兵營)에 비축해 놓은 군목(軍木)<sup>414)</sup>이 있는데, 그 가운데 1백 동은 일찍이 떨어졌고, 1동을 30냥으로 쳐서 내다 팔고 은(銀)으로 바꿔 올렸습니다. 목동(木同)<sup>415)</sup>은 먼 거리를 실어서 운반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해조(該曹)에서 필요한 곳에 쓰는 은(銀)과 베〔布〕는 가까운 것이니, 본사에 있는 은 2천4백 냥을 당초 절가(折價)<sup>416)</sup>에 따라 해조에 이급할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이관징, 이하, 제주목사, 윤계, 평안병영.

414) 군목(軍木): 조선 시대에, 군보(軍保: 軍布)로 받아들여던 포목.

415) 목동(木同): 목(木)은 무명이고, 동(同)은 묶음을 세는 단위로, 1동은 50필. 국가에서 공인한 정포(正布) 1필은 승수(升數)가 5승(1승은 80가닥), 폭은 7촌이고 길이는 35척이었음.

416) 절가(折價): 물건을 교환할 때에, 값을 건주어 받을 물건의 양을 정함. 또는 그렇게 정한 값.

❖ 康熙十一年壬子十月十二日癸丑

○ 又以兵曹言啓曰, 濟州直赴舉子高泰峴·宋昌義·鄭逸·姜武俊·金汝江等呈狀內, 本州宣諭御史試才時入格, 直赴殿試, 承傳事行會, 故今別試殿試, 直赴次上來云云. 凡直赴殿試者, 例付式年, 增廣別試則非所當付, 而在前本州, 如此之類, 以其赴海之故, 曾有特有許赴之時, 渠輩必以此爲例, 有此來訴, 係是絕島遠人, 非如在京在近鄉者, 有難退却, 以致落莫, 何以爲之? 敢稟. 傳曰, 竝令許付於別試殿試, 可也.

❖ 현종 13년(1672) 임자년 10월 12일(계축)

□ 제주(濟州)에서 직부전시(直赴殿試)하기 위해 올라 온 고태현(高泰峴) 등에 대한 처리 방도를 묻는 병조(兵曹)의 계

○ 또한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 직부거자(直赴舉子) 고태현(高泰峴)·송창의(宋昌義)·정일(鄭逸)·강무준(姜武俊)·김여강(金汝江) 등의 정장(呈狀)<sup>417</sup> 안에, ‘본 고을(제주)의 선유어사(宣諭御史)가 시재(試才)할 때 입격(入格)한 사람을 직부전시(直赴殿試)<sup>418</sup>할 수 있게 하고, 임금의 뜻을 전하여 행회(行會)하였으며, 지금 별시(別試)<sup>419</sup>의 전시(殿試)<sup>420</sup>에 직부(直赴)하려고 올라왔다고 합니다. 무릇 직부전시는 전례에 따라 식년(式年)에 붙이는 것이고, 증광(增廣)<sup>421</sup>과 별시(別試)는 마땅히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전에도 본 고을에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으니 바다를 건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특별하게 과거 보는 것을 허락할 때, 저들은 반드시 이런 것을 전례에 따랐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장을 올린 것은 절도(絶島)의 멀리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지 서울에 있거나 근향(近鄉)에 있는 사람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쳐 되돌아 가게하여 서운한 느낌을 주기에는 어려울 듯하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감히 품쳐합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모두 별시의 전시에 붙이도록 허락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 직부거자, 고태현, 송창의, 정일, 강무준, 김여강, 직부전시.

417) 정장(呈狀): 관청에 낸 소장(訴狀)

418) 직부전시(直赴殿試): 합격자의 순서를 가르치는 최종 시험인 전시(殿試)에 직접 응시할 자격을 주던 일. 식년시 문과의 예비 시험인 초시와 본시험인 복시를 면제함.

419) 별시(別試): 조선 시대에, 천간(天干)으로 ‘병(丙)’ 자가 든 해, 또는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보던 임시 과거 시험.

420) 전시(殿試): 조선 시대에, 복사에서 선발된 사람에게 임금이 친히 치르게 하던 과거. 문과 33명, 무과 28명의 합격자를 재시험하여 등급을 결정하였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떨어뜨리는 법은 없었음.

421) 증광(增廣): 증광시(增廣試). 조선 시대에, 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 때 실시하던 임시 과거 시험.

❖ 康熙十一年壬子十月十四日乙卯

- 又以禮曹言啓曰 濟州試取文直赴殿試儒生金繼隆·金繼敞等 以願赴今番別試殿試事呈狀 以冀轉啓 而自前直赴殿試之人 必赴於式年殿試 非有特命 則本曹不敢啓請 故據例退却矣. 伏見兵曹啓辭之批 有濟州武科直赴人 許赴今番殿試之命 今此文科直赴金繼隆·繼敞等 似不可異同 何以爲之? 敢稟. 傳曰 亦爲許赴於別試殿試可也.

❖ 현종 13년(1672) 임자년 10월 14일(을묘)

□ 제주(濟州)의 무과(武科) 직부인(直赴人)을 이번 전시(殿試)에 응시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 묻는 예조(禮曹)의 계

- 또한 예조(禮曹)의 말로써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문과에 시취(試取)하여 전시(殿試)에 직부(直赴)한 유생(儒生) 김계룡(金繼隆)과 김계창(金繼敞) 등이 이번 별시(別試)의 전시에서 과거 보기를 원하는 일로 정장(呈狀)했습니다. 전계(轉啓)로 원하니, 전에 전시에 직부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식년(式年)의 전시에 나가 과거를 봤으니, 특명(特命)이 있지 않으면 본조(本曹)가 감히 계청(啓請)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례에 근거하여 물려야 합니다. 병조(兵曹)의 계사(啓辭)에 대한 비답(批答)을 엿드려 살펴건대, 제주(濟州)에서 무과(武科)에 직부한 사람은 이번 전시에 허부(許赴)하라는 명이 있으니, 이번 문과에 직부한 김계룡·계창 등도 다르게 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를 감히 품쳐합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또한 별시의 전시에 허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 전시직부, 김계룡, 김계창, 별시.

❖ 康熙十一年壬子十一月八日己卯

○ 又以兵曹言啓曰【七八字缺】新出身元數五百五十四人內 壯元一人 禁軍九十八人 計除 而平安道三十一人 咸鏡道十二人 濟州三人 旌義三人 則依例本道各鎮分防. 其餘四百六人 則所當依舊例北道赴防 而北道今年凶荒 無異去歲云. 四百餘人赴防 則必致主客俱困之患. 勢當別樣變通 而臣曹不敢擅便 令備邊司稟處 何如? 傳曰 允.

❖ 현종 13년(1672) 임자년 11월 8일(기묘)

□ 비변사(備邊司)에서 제주목과 정의현의 부방(赴防) 인원(人員)을 품처(稟處)할 것을 아뢰는 병조(兵曹)의 계

○ 또한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7~8자가 빠짐】 신출신(新出身)<sup>422)</sup>의 본래 수(元數) 554인 중, 장원(壯元) 1인, 금군(禁軍)<sup>423)</sup> 98인을 헤아려서 제(除)하고, 평안도(平安道) 31인, 함경도(咸鏡道) 12인, 제주(濟州) 3인, 정의(旌義) 3인 등은 전례에 따라서 본도(本道)의 각 진(鎭)에 나누어서 방수(防戍)하게 했습니다. 그 나머지 406인은 마땅히 구례(舊例)에 따라서 북도(北道)<sup>424)</sup>의 부방(赴防)<sup>425)</sup>에 힘쓰게 해야 합니다만 북도는 올해 흉황(凶荒)을 당했으니, 지난해와 다름이 없게 한다고 합니다. 400여 인을 부방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주객(主客) 모두가 곤경을 헤멜 것이 틀림없으니, 형세가 마땅히 특별한 양으로 변통하게 해야 합니다. 저의 부서(병조)에서 감히 제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어서 비변사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 정의, 북도.

422) 신출신(新出身): 조선 시대에 문과·무과·잡과 등의 과거 시험에 새로 합격한 사람을 이르는 말.

423) 금군(禁軍): 조선시대에 설치되었던 국왕의 친위군.

424) 북도(北道): 경기도 이북의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를 통틀어 이르는 말. 북관(北關)은 ‘함경도’의 다른 이름.

425) 부방(赴防): 조선 시대에, 다른 지방의 군대가 서북 변경을 방어하기 위하여 과건 근무를 하던 일.

❖ 康熙十一年壬子十一月十八日己丑

○ 巳時, 上御養心閣, 備局堂上引見 …… 萬基曰, 濟州狀啓, 下賑恤廳已久, 而未及回啓矣. 大概, 各司奴婢願納賑米者, 滿四十石, 方許免賤者, 此乃事目, 而濟州【一字缺】石眞五·萬松者只納二十石 所謂萬松之祖金萬鎰者 曾在甲辰年間 納馬六十匹 不請賞賜 故司僕寺入啓定奪 聽其自願 許其子孫免役. 大抵免役者 實與未免役有異 待海外遐氓之道 亦與常例不同 而濟州牧使狀啓中 此等曲折 不爲明白陳啓 但以免役者 納米二十石爲稟 固爲疏漏 而今若不許免賤 則渠之失望甚矣. 維重曰 定式之外 切不可輕許也. 萬基曰, 此則有異, 以其祖納馬之功, 已爲免役矣. 上曰, 自賑恤廳回啓, 可也. …….

❖ 현종 13년(1672) 임자년 11월 18일(기축)

□ 양심합(養心閣)에서 비변사당상을 인견하고 제주의 진미(賑米) 납부와 면역(免役), 면천(免賤) 등에 관하여 의논함.

○ 사시에 임금이 양심합(養心閣)에 나아가 비변사당상을 인견할 때 <중략> 김만기(金萬基)<sup>426</sup>가 말하기를, “제주(濟州)의 장계(狀啓)를 진휼청(賑恤廳)에 내린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아직 회계(回啓)하지 못하였습니다. 대개 각사(各司) 노비가 진미(賑米) 납부하기를 원하는 것은 40섬을 채워서, 바야흐로 면천(免賤)을 허락하는 것이 사목(事目)인데, 제주(濟州) 【1자가 빠짐】 석(石)과 진오(眞五), 만송(萬松)이란 자는 단지 20섬을 냈습니다. 소위 만송(萬松)의 할아버지인 김만일(金萬鎰)<sup>427</sup>이란 자는 일찍이 갑진년(甲辰年: 1604) 사이에 말 60필을 납부했는데도 상을 내려주기를 청하지 않아 그 때문에 사복시(司僕寺)에 들어온 계(啓)를 임금의 재결을 받고 스스로 원하는 것을 들으니, 그 자손의 역(役)을 면해주기를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무릇 역을 면하는 것은 실로 역을 면하지 못하는 것과 다름이 있지만, 바다 밖 먼 지방의 백성을 기다리게 하는 도리도 상례(常例)와 같지 않은 것입니다.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 속에는 이런 사실의

426) 김만기(1633~1687): 본관 광산(光山). 자 영숙(永淑). 호 서석(瑞石), 정관재(靜觀齋). 형조참판 김장생(金長生)의 증손임. 1652년(효종 3) 사마시 거쳐 1653년(효종 4) 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 영동녕부사, 총융사 등 역임.

427) 김만일(金萬鎰): 헌마공신(獻馬貢臣). 1550년(명종 5) 7월 정의현(旌義縣)에서 출생. 경주 김씨 입도조(入島祖)인 김검룡(金儉龍)의 7세손이며, 자녀로 김대명(金大鳴)·김대길(金大吉)이 있음. 당시 김만일이 소유한 말이 1만 필에 달했다고 함.

곡절(曲折)을 명백하게 진계(陳啓)하지 않고 다만 역을 면하는 것으로 쌀 20섬을 납부하도록 품쳐하는 것은 진실로 꼼꼼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만약 면천을 허락하지 않으면 저들의 실망이 클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민유중(閔維重)<sup>428)</sup>이 말하기를, “정식(定式) 외로 절대로 가벼이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김만기(金萬基)가 말하기를, “이는 다른 것입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말을 납부한 공으로 이미 역을 면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진휼청(賑恤廳)에서 회계(回啓)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오창명 역주/ 2017〉

△ 주제어: 양심합, 김만기, 제주, 면천, 진오, 만송, 김만일, 갑진년, 제주목사.

---

428) 민유중(1630~1687): 본관 여흥(驪興). 자 지숙(持叔). 호 둔촌(屯村). 시호 문정(文貞). 숙종의 비 인현왕후의 아버지임. 1649년(효종 즉위년) 진사가 됨. 1651년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 성균관전적, 병조 정랑, 성균관대사성, 공조판서 등 역임. 저서 《민문정유집(閔文貞遺集)》.

❖ 康熙十一年壬子十一月二十二日癸巳

○ 辰時一刻, 上御熙政堂, 以龍袍玉帶, 殿坐於朱紅交椅前, 置朱紅長案, 設兩紅爐於御座兩傍, 二小宦, 侍立左右焉. 是日諸臣, 皆具黑團領, 各抱諸道罪囚文案入侍矣. 左議政金壽恒, 禮曹判書鄭致和, 左參贊趙珩, 吏曹判書李慶億, 大司憲閔維重, 戶曹參判金萬基等, 班於東而西其向. 判中樞府事鄭致和, 完陽君李元老, 刑曹判書南龍翼, 東原君濩, 工曹參判洪處厚, 刑曹參判洪處大等, 班於西而東其向. 都承旨姜栢年, 左承旨金禹錫, 右承旨呂聖齊, 左副承旨崔逸, 右副承旨閔宗道, 同副承旨慶寂等, 班於南行第一行. 錦昌副尉朴泰定, 刑曹參議李枝茂, 兵曹參議朴世堅等, 班於南行第二行. 正言李堂揆, 班於南行第二行而少東. 校理李奎齡, 修撰崔後尙等, 班於南行第二行而少西. 假注書李聃命, 記事官陸昌明等, 班於南行第三行而偏於東. 假注書申琬, 記事官崔錫萬等, 班於南行第三行而偏於西. 入侍諸臣, 皆俯伏. 須臾, 閔宗道進前稟事, 李聃命·陸昌明等, 進伏於御座之東. 申琬·崔錫萬等, 進伏於御座之西. 是時入侍諸臣, 各自考閱京外文案, 而上亦置京外罪囚文案於朱案之上, 而親自披覽矣. …… 慶寂, 以濟州罪人姜致宗等推案進讀. 右人, 啓目中私自添書罪也. 上曰, 高汝崧, 已死乎? 姜致宗招辭讀之. 慶寂讀之. 上曰, 讀致宗結案及大明律. 慶寂又讀之, 其律斬罪也. 上曰, 此罪, 何如? 鄭致和曰, 情狀可惡, 律外何達? 金壽恒曰, 雖是絕島愚民無識之致, 而既有其律, 律外何達? 鄭致和曰, 自有當律, 律外何達? 李慶億曰, 情犯可惡, 律文明白, 別無可論矣. 諸臣皆曰, 律外何達? 上曰, 似當依律. 慶寂遂退. 上曰, 此是比律乎? 南龍翼曰, 乃當律也, 非比律也. …… 日暮, 諸臣皆罷出.

❖ 현종 13년(1672) 임자년 11월 22일(계사)

- 희정당(熙政堂)에 여러 신하들과 함께 제주(濟州) 죄인 강치종(姜致宗)의 문안(文案)에 대해 적용 법률 및 해당 형벌을 논의함
- 진시일각(辰時一刻)<sup>429)</sup> 임금이 희정당(熙政堂)<sup>430)</sup>에 나아갔다. 용포에 옥대를 차고 주홍색 의자 앞에 나와 앉았는데, 주홍색 긴 책상을 두고 어좌 양쪽 곁에는 두

429) 진시일각(辰時一刻): 진시는 오전 7~9시이며, 일각은 한 시간 중 첫째 시각인 15분을 말한다. 대략 오전 7시 30분을 가리킴.

430) 희정당(熙政堂): 조선후기 창덕궁의 편전. 정면 11칸, 측면 5칸의 팔작지붕으로 침전인 대조전 바로 앞 남쪽에 소재. 창덕궁의 본래 편전은 선정전이었으며, 희정당은 내전에 속한 건물이었으나 조선후기부터 이 건물을 편전으로 사용하게 됨. 보물 제815호 지정.

개의 빨강계 달아오른 화로를 설치하였으며 두 명의 환관이 좌우에 모시고 섰다. 이날 여러 신하들은 모두 흑단령(黑團領)을 갖추 입고 각기 여러 도(道)의 죄수 문안을 가지고 입시하였다. 좌의정 김수항(金壽恒), 예조판서 정지화(鄭知和)<sup>431</sup>, 좌참찬 조형(趙珩), 이조판서 이경억(李慶億), 대사헌 민유중(閔維重), 호조참판 김만기(金萬基) 등은 동쪽에 줄지어 서쪽을 향했고, 판중추부사 정치화(鄭致和), 완양군(完陽君) 이원로(李元老), 형조판서 남용익(南龍翼), 동원군(東原君) 집(漣), 공조참판 홍처후(洪處厚), 형조참판 홍처대(洪處大) 등은 서쪽에 줄지어 동쪽을 향했다. 도승지 강백년(姜栢年), 좌승지 김우석(金禹錫), 우승지 여성제(呂聖齊), 좌부승지 최일(崔逸), 우부승지 민종도(閔宗道), 동부승지 경최(慶叡) 등은 남쪽 줄 첫째 열에 줄지었고, 금창부위(錦昌副尉) 박태정(朴泰定), 형조참의 이지무(李枝茂), 병조참의 박세견(朴世堅) 등은 남쪽 줄 둘째 열에 줄지었다. 정언 이담규(李堂揆)는 남쪽 줄 둘째 열 조금 동쪽에 줄지었고, 교리 이규령(李奎齡), 수찬 최후상(崔後尙) 등은 남쪽 줄 둘째 열 조금 서쪽에 줄지었다. 가주서 이담명(李聃命), 기사관 목창명(睦昌明) 등은 남쪽 줄 셋째 열 동쪽 치우친 곳에 있고, 가주서 신완(申琬), 기사관 최석만(崔錫萬) 등은 남쪽 줄 셋째 열 서쪽 치우친 곳에 있었다. 여러 신하들이 입시하여 모두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있었다. 잠시 뒤에 민종도가 아뢰는 일로 어전에 나아갔고, 이담명, 목창명 등은 어좌 동쪽에 나아가 엎드렸으며, 신완, 최석만 등은 어좌 서쪽에 나아가 엎드렸다. 이때 입시한 여러 신하들은 각자 경외(京外)의 문안들을 살펴보고, 임금 역시 주홍색 책상 위에 있는 경외 죄수의 문안을 두고 친히 펼쳐 보았다. <중략> 경최(慶叡)<sup>432</sup>가 제주(濟州) 죄인 강치종(姜致宗) 등의 추안을 나아가 읽었다. “위 사람은 계목 속에 사사로이 자신이 글을 더 써넣은 죄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고여급(高汝炭)은 이미 죽었는가? 강치종의 진술서를 읽어보아라.”라고 하였다. 경최가 읽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강치종의 결안(結案)<sup>433</sup> 및 대명률(大明律)을 읽어보아라.”라고 하였다. 경최가 또 읽었다. 적용 법률은 참수형 죄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죄는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정치화<sup>434</sup>가

431) 정지화(鄭知和): 원문에는 정치화(鄭致和)로 되어 있으나, 정치화는 바로 다음에 판중추부사로 소개되어 있으며, 당시 예조판서는 정지화이므로 역자가 바로 잡음.

432) 경최(1626~1688): 본관 청주(淸州). 자 낙선(樂善). 호 신강(新江). 부친 경유준(慶有俊). 1653년(효종 4) 문과 급제. 장령, 경기도관찰사, 도승지 역임. 1667년(현종 8)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옴.

433) 결안(結案):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에 대해 임금의 최종결재에 따라 사형집행 전에 형을 확정짓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 및 그 문서.

434) 정치화(1609~1677): 본관 동래(東萊). 자 성능(聖能). 호 기주(棋洲). 부친 정광성(鄭廣成). 영의정 정태화(鄭太和)의 동생이며, 좌의정 정지화(鄭知和)의 4촌. 1628년(인조 6) 문과 급제. 3사의 청요 직을 거쳐 6조판서와 좌의정 역임. 1640년에는 심양에서 소현세자(昭顯世子)를 모시기도 함. 1660

말하기를, “정상이 나쁜데 적용 법률 외에 무엇을 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김수항<sup>435)</sup>이 말하기를, “비록 이 절도의 어리석은 백성의 무식한 소치이나 이미 그 법률이 있으니 적용 법률 외에 무엇을 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정치화가 말하기를, “마땅한 법률이 있으니 적용 법률 외에 무엇을 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경억<sup>436)</sup>이 말하기를, “정상과 범법이 나쁘고 법 조목이 명백하니 특별히 논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여러 신하도 모두 말하기를, “적용 법률 외에 무엇을 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적용 법률에 의거함이 마땅한 듯하다.”라고 하였다. 경최가 드디어 물러났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경우는 비율(比律)<sup>437)</sup>인가?”라고 하였다. 남용익이 말하기를, “당율(當律)<sup>438)</sup>이고 비율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날이 저물자 여러 신하가 모두 끝내고 나갔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7〉

△ 주제어: 희정당, 경최, 제주, 강치증, 고여급, 정치화, 김수항, 이경억, 비율, 당율.

---

년과 1664년 동지사로 두 차례나 중국 연경에 다녀옴. 현종이 즉위하면서 서인과 남인 사이에 중도 노선을 지키고자 했던 그의 가문에게는 큰 시련이 있었음.

435) 김수항(1629~1689): 본관 안동(安東). 자 구지(久之). 호 문곡(文谷). 조부 김상헌(金尙憲), 부친 김광찬(金光燦). 송시열(宋時烈) 등과 교유. 1651년(효종 2) 문과 장원급제. 6조 판서, 영의정 역임. 1689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에게 사사됨. 현종 묘정 배향. 저서 《문곡집(文谷集)》 28권. 시호 문충(文忠).

436) 이경억(1620~1673): 본관 경주(慶州). 자 석이(錫爾). 호 화곡(華谷). 부친 이시발(李時發). 1644년(인조 22) 문과 장원급제. 대사헌, 이조판서, 좌의정 역임. 1651년(효종 2) 4월 제주안핵어사로 임명되어 제주 방문. 동년 10월 당시 제주목사 김수익(金壽翼)과 정의현감 안집(安緝)의 분란을 조사하고 대정향교 이설 등을 요청하는 치계를 올림. 1659년 효종 사망으로 1차 예송 때는 윤선도(尹善道)를 공격하여 남인과 대립. 저서 《화곡유고》. 시호 문익(文翼).

437) 비율(比律): 법률 적용을 유추 해석하는 것. 법률의 조문에 기재된 것이 사리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죄를 결정하는 조문이 없을 때에는 그 범죄에 가장 가까운 조문에 의거하고, 다만 형량을 가감하여 형조에서 임금이 윤허를 받아 시행함.

438) 당율(當律): 죄에 해당하는 법률. 그 죄를 처벌할 법률 조문.

❖ 康熙十一年壬子十二月四日乙巳

○ 時, 上御熙政堂啓覆時, 左議政金壽恒, 【缺】鄭知和, 左參贊趙珩, 右尹李後山, 東行, 行判中樞府事鄭致和, 刑曹判書南龍翼, 工曹判書張善澂, 靈陽【缺】刑曹參判洪處大, 西行, 戶曹參議李翊相, 執義【缺】李日井, 刑曹參議李枝茂, 兵曹參議朴世堅, 校理申【缺】崔後尙, 南行, 都承旨姜栢年, 左承旨金禹錫, 右承旨呂聖齊, 右副承旨閔宗道, 同副承旨慶畝, 【缺】李璥, 記事官申善溫, 假注書兪命鼎【缺】入侍. …… 濟州圖<sup>核</sup>【濟州道】出加資罪人姜致宗, 【缺】書於高斗瞻. 上曰, 此罪, 何如? 鄭致和曰, 情狀過甚【缺】. 南龍翼曰, 雖以絕島, 朝廷每加寬典, 【缺】難曲貸也. 上曰, 此結案, 及於立春前耶? 金壽恒曰, 恐不【缺】處之之舉矣. 上曰, 依律. …… 上曰, 今此啓覆判付, 雖非該房, 他承旨亦【缺】去, 可也. 遂罷出.

❖ 현종 13년(1672) 임자년 12월 4일(을사)

□ 희정당(熙政堂)에 여러 신하들과 함께 제주(濟州) 죄인 강치종(姜致宗)의 계복(啓覆)을 논의함

○ 진시(辰時)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납시어 계복(啓覆)<sup>439)</sup>할 때 좌의정 김수항(金壽恒), 【빠짐】<sup>440)</sup> 정지화(鄭知和), 좌참찬 조형(趙珩), 우윤 이후산(李後山)은 동쪽 줄, 행판중추부사 정치화(鄭致和), 형조판서 남용익(南龍翼), 공조판서 장선징(張善澂), 영양(靈陽)【빠짐】형조참판 홍처대(洪處大)는 서쪽 줄, 호조참의 이익상(李翊相), 집의(執義)【빠짐】이일정(李日井), 형조참의 이지무(李枝茂), 병조참의 박세견(朴世堅), 교리 신(申)【빠짐】<sup>441)</sup> 최후상(崔後尙)은 남쪽 줄, 도승지 강백년(姜栢年), 좌승지 김우석(金禹錫), 우승지 여성제(呂聖齊), 우부승지 민중도(閔宗道), 동부승지 경취(慶畝), 【빠짐】이돈(李璥), 기사관 신선온(申善溫), 가주서 유명정(兪命鼎)【빠짐】등이 입시하였다. <중략> 제주도(濟州道)에서 온 가자(加資) 죄인 강치종(姜致宗)은 고두첨(高斗瞻)에게 글을 (사사로이 더 써 넣었

439) 계복(啓覆):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에 대해 최종 심리 및 판결을 위하여 국왕에게 계문을 올리던 제도. 고려 문종 이래로 사죄인은 반드시 삼복주(三覆奏)하기로 되어 있으며 조선시대에도 계승됨. 목숨을 중히 여기는 뜻에서 나온 제도이며, 세 번에 걸쳐 국왕에게 계문을 올려 국왕의 결재를 받아 형량을 확정하여 집행함.

440) 【빠짐】: 본서 바로 앞 기록(현종 13; 1672년 11월 22일)을 감안하여 추정하면 ‘예조판서’임.

441) 【빠짐】: 본서 바로 앞 기록(현종 13; 1672년 11월 22일)을 감안하여 추정하면 최후상(崔後尙)의 당시 관직은 ‘수찬(修撰)’임. 다만 교리인 ‘신(申)’ 다음에 이름은 불명임.

다) 【빠짐】. 임금이 말하기를, “이 죄는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정치화가 말하기를, “정상이 꽤심하여 【빠짐】”라고 하였다. 남용익<sup>442)</sup>이 말하기를, “비록 절도여서 조정에서 매번 관대한 은전을 더했지만 【빠짐】 법을 어겨가며 용서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결안(結案)은 입춘(立春) 전에 시행하는가?”라고 하였다. 김수항이 말하기를, “【빠짐】 처리하는 결정을 내려도 두려운 바는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법률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이 계복의 결정은 비록 해당 승지방이 아니어도 타 승지 또한 【빠짐】 나감이 옳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끝나고 나갔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7〉

△ 주제어: 희정당, 계복, 제주도, 강치종, 고두첨, 정치화, 남용익, 김수항.

---

442) 남용익(1628~1692): 본관 의령(宜寧). 자 운경(雲卿). 호 호곡(壺谷). 부친 남득명(南得明). 1648년(인조 26) 문과 급제. 대사성, 형조판서 역임. 1655년(효종 6) 통신사의 종사관으로 일본에 다녀옴. 1689년(숙종 15) 소의 장씨(昭儀 張氏)가 왕자를 낳아 숙종이 그를 원자로 삼으려 하자, 여기에 극언으로 반대하다가 명천으로 유배되어 3년 뒤 그곳에서 사망. 저서로는 《기아(箕雅)》, 《부상록(扶桑錄)》, 《호곡집(壺谷集)》을 남김. 시호 문헌(文憲).

❖ 康熙十一年壬子十二月十三日甲寅

- 大臣·備局堂上引見時, 兵曹判書金萬基所啓, 納粟人有身役, 則以年滿六十給帖事, 事目至嚴, 而今此濟州納粟人成冊中, 有鄉吏二人, 正兵二人, 願受通政帖, 正兵一人, 則願受主簿帖, 而年皆未滿五十, 或未滿四十, 鄉吏給帖之後, 當爲免役, 正兵則年未滿之類, 似難給帖免役, 而絕島之人, 既已納粟, 則到今防塞, 亦未妥當, 何以爲之. 左議政金壽恒曰, 正兵免役, 不可開路, 而既捧其粟, 亦不可不許, 且絕島之事, 破格許之, 似爲無妨, 而當初守令, 矇不致察, 混同募粟, 似當有施罰之道矣. 上曰, 依爲之. 守令則姑先推考可也. 【以上備局謄錄】

❖ 顯宗 13년(1672) 임자년 12월 13일(갑인)

□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제주(濟州)의 납속인(納粟人) 가운데 만 60세가 안 된 정병에게 급첩(給帖)하여 면역(免役)시킬지의 여부를 논의함

-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할 때 병조판서 김만기(金萬基)<sup>443</sup>가 아뢰기를, “납속인(納粟人)이 신역이 있는 즉 나이 만 60으로 급첩(給帖)하는 일은 사목이 지엄한데 지금 이 제주(濟州)의 납속인성책(納粟人成冊) 중에 향리 2인, 정병 2인이 있어 통정의 첩지를 원하여 주었고, 정병 1인은 주부의 첩지를 원하여 준 것이 나이가 모두 50이 안되었거나 혹은 40이 차지 않아 향리가 급첩한 후에 마땅히 면역이 되었습니다. 정병으로 나이가 차지 않은 부류는 첩지를 지급하여 면역하기가 어려운데 절도의 사람은 이미 납속하여 지금에 이르러 하지 못하게 막는 것도 타당치 않아 어찌해야 합니까?”라고 하였다. 좌의정 김수항(金壽恒)이 말하기를, “정병의 면역을 새로 시작하는 것은 불가하고, 이미 납속하여 봉입한 것도 불허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또 절도의 일은 파격적으로 허락하는 것이 무방할 듯하니 당초의 수령이 몽매하여 잘 살피지 못하여 혼동하고 납속을 모집하였으니 마땅히 벌을 내리는 도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고 수령을 곧 먼저 추고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비변사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7〉

△ 주제어: 김만기, 제주, 납속인성책, 김수항.

443) 김만기(1633~1687): 본관 광산(光山). 자 영숙(永淑). 호 서석(瑞石), 정관재(靜觀齋). 김장생(金長生)의 증손으로, 부친은 김익겸(金益兼). 송시열(宋時烈)의 문인. 1653년(효종 4) 문과 급제. 병조판서, 훈련대장 역임. 1659년 효종 사망으로 1차 예송 때 기년설(稊年說)을 주장해 3년설을 주장하는 남인 윤선도(尹善道)를 공격. 숙종 즉위 후 광성부원군(光城府院君)에 봉해졌으며, 총융사를 겸직해 병권을 장악함. 아들 김진규(金鎭圭), 손자 김양택(金陽澤)의 3대가 문형(文衡)을 맡음. 현종 묘정에 배향, 시호 문충(文忠). 저서 《서석집(瑞石集)》.

❖ 康熙 十一年 壬子 十二月 三十日 辛未

○ 大臣·備局堂上引見時, 兵曹判書金萬基所啓, 濟州月令進上, 自上付標蠲減, 各司上納, 因大臣陳達, 亦爲一體蠲減矣, 今後何以爲之乎? 上曰, 此則因濟州凶荒時, 爲裁減矣. 今年則農事何如云耶? 左議政金壽恒曰, 今年亦未免失稔云矣. 上曰, 濟州各樣蠲減之類, 限明年冬等, 姑勿復舊, 日□□□□□減事, 分付舉行, □至於□□月令已過, 必已封進, 勿爲舉論, 可也. 【以上戶曹謄錄】

❖ 현종 13년(1672) 임자년 12월 30일(신미)

□ 흥년으로 제주(濟州)의 월령진상(月令進上) 및 각사(各司)의 상납을 건감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sup>444)</sup>

○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할 때 병조판서 김만기(金萬基)가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월령(月令)<sup>445)</sup> 진상은 위에서 조세 면제의 표지를 붙였고 각 관아의 상납은 대신이 진술하여 알린 대로 또한 일체 면제하였으니 금후에는 어찌 해야 합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제주의 흥년 때문에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금년의 농사는 어떻다고 하는가?”라고 하였다. 좌의정 김수항(金壽恒)이 말하기를, “금년 또한 흥년을 면치 못했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의 각종 조세 면제 종류는 내년 겨울까지 한하여 잠시 복구하지 말고 □□□□□□감면의 일은 분부대로 거행하고, □□□□□월령이 이미 지났으니 반드시 이미 봉진한 것은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호조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7〉

△ 주제어: 김만기, 제주, 월령, 김수항.

444) 『현종실록』 권20, 현종 13년 12월 30일 조에 관련 기사가 간략히 기록되어 있음.

445) 월령(月令): 《예기(禮記)》의 편명(篇名)인데, 일 년 열두 달의 정령(政令)을 기록하였음.



1673年



❖ 康熙十二年癸丑一月八日己卯

- 李觀徵啓曰, 傳曰, 崔山海之爲濟州牧使, 在於何年? 且濟州庚寅以後殺人, 何以處之乎? 考出以啓事, 命下矣, 取考耽羅志, 則崔海山, 世宗朝甲寅年, 以前參判爲牧使, 越三年丙辰, 官府失火, 文籍盡爲灰燼云, 而但海山, 與山海名字倒錯, 似是禁府文書差誤之致也. 且本州庚寅以後, 殺人處置事, 使該曹搜考前後文書, 則金壽益狀啓一張之外, 他無見存者云, 敢啓.

❖ 현종 14년(1673) 계축년 1월 8일(기묘)

- 최해산(崔海山)의 제주목사(濟州牧使) 재임기간과 경인년(庚寅年) 이후 살인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알아보라는 전교에 대한 이관징(李觀徵)의 계
- 이관징(李觀徵)<sup>446)</sup>이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최산해(崔山海)가 제주목사(濟州牧使) 된 것이 몇 년인가? 또 제주(濟州) 경인년(庚寅年)<sup>447)</sup> 이후의 살인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살펴보고 아뢰는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탐라지(耽羅志)를 취해 살펴보니 곧 최해산(崔海山)<sup>448)</sup>은 세종 때 갑인년(1434, 세종 16)에 전 참판으로 목사가 되었으며 3년이 지난 병진년(1436, 세종 18)에 관부의 실화로 문적이 다 잿더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해산(海山)이 산해(山海)라는 이름으로 잘못 바뀌었는데 이는 의금부 문서가 잘못된 소치입니다. 또 본주 경인년 이후 살인을 처리한 일은 해당 부서로 하여금 전후 문서를 살펴보게 하니 김수익(金壽翼)<sup>449)</sup> 장

446) 이관징(1618~1695): 본관 연안(延安). 자 국빈(國賓). 호 근옹(芹翁), 근곡(芹谷). 부친 이십(李禱). 1653년(효종 4) 문과 급제. 남인의 영수 허목(許穆) 등을 구제하려다 좌천되기도 하였고, 1689년 기사환국 이후 예조판서, 이조판서를 지내다 치사(致仕)하여 봉조하(奉朝賀)가 됨. 5년 뒤인 1694년 갑술환국 때는 관직에서 쫓겨남. 시호 정간(貞簡). 저서 《근곡집(芹谷集)》.

447) 경인년(庚寅年): 최해산의 제주목사 재임기간은 1434년(세종 16) 10월부터 1437년(세종 19) 2월까지이며, 김수익의 제주목사 재임기간은 1649년(인조 27) 9월부터 1651년(효종 2) 7월까지임. 이 사이의 경인년은 1470년(성종 1), 1530년(중종 25), 1590년(선조 23), 1650년(효종 1)의 네 번임. 따라서 ‘경인년’은 김수익 목사 때인 1650년(효종 1)을 가리키는 듯함.

448) 최해산(1380~1443): 본관 영주(永州). 최무선(崔茂宣)의 아들. 부친 유고인 《화약수련법》의 비법을 전수받음. 군기감승, 중추원부사 역임. 1409년(태종 9)에는 화차 발사시험을 함. 1434년(세종 16) 10월 제주안무사로 도임하여 1437년 2월 이임함. 1435년 관부가 실화로 소실되자 홍화각 등 제주목 관아 200여 칸을 새로 건축했으며, 4서5경 및 소학과 성리대전 등을 제주향교로 들여와 교학이 크게 진흥됨. 화약병기를 비롯한 군 장비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큼.

449) 김수익(1600~1673): 본관 안동(安東). 자 성로(星老). 호 청악(靑岳). 부친 김광위(金光燁). 1630년(인조 8) 문과 급제. 피산군수, 응교, 의주부윤 역임. 1649년(인조 27) 9월 제주목사로 부임하였으나 1651년(효종 2) 7월 정의현감 안집(安緝)과의 불화로 파직되어 이임. 시호 충경(忠景). 저서 《청악집(靑岳集)》.

계 한 장 외에는 다른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7〉

△ 주제어: 이관징, 최산해, 제주목사, 탐라지, 최해산, 김수익.

---

원문에는 ‘金壽益’으로 되어 있으나, 제주목사 역임자는 ‘金壽翼’이므로 역주자가 바로 잡음.

❖ 康熙十二年癸丑一月十一日壬午

○ 午時，上御養心閣，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左議政金壽恒，知事柳赫然，兵曹判書金萬基，同副承旨鄭皙，校理李堂揆，持平任相元，正言洪萬鍾，都摠管趙師錫，假注書南益熏·權愼，記注官吳得天，記事官睦昌明。金壽恒曰，日氣復寒，聖候，若何？上曰，無大段症恙矣。壽恒曰，臂疼與前一様乎？上曰，尙不快愈矣。……皙曰，忠清兵使朴振翰，留待於外矣。上曰，引見。振翰入侍。上曰，何年出身？振翰曰，辛卯年出身。上曰，年歲，幾何？振翰曰，五十二歲。上曰，履歷，幾何？振翰曰，守令，則歷海美·寶城·瑞興，營將，則經羅州矣。上曰，營將，何年爲之乎？振翰曰，丁未年爲之矣。上曰，其時則鍊習不廢，束伍軍，能爲坐作之節乎？振翰曰，向日，則兵使巡歷，營將專管訓練，故不但坐作，頗能精銳矣。上曰，近緣饑饉，不遑軍務，數年以來，幾至廢墜，雖不能如前鍊習，申飭營將，凡干軍務，着實舉行，可也。振翰曰，此乃臣之職任，敢不盡心。上曰，近日武弁，一經闔帥，便棄弓馬之才，將焉用之？振翰曰，臣年不至老，何敢拋棄？赫然曰，年來守令闔帥之人，多廢技業，極爲未安。朴振翰，亦善射之人，而自得土疾之後，未免拋棄矣。上曰，土疾，得於何處？振翰曰，得於寶城矣。上曰，土疾，有不仁之症，故未能習射乎？振翰曰，臂痛不利引弓，自上年始得差愈矣。壽恒曰，先朝，每加申飭武藝矣，今無勸獎之事，故如是矣。上曰，弓馬專廢之後，雖曰武將，無可用矣。壽恒曰，文官決科之後，亦廢書冊，固爲非矣，至於武官，則尤爲不當矣。上曰，此輩，羞恥而不爲乎？壽恒曰，人情易於怠惰，且無責罰，安得不然？上曰，年前觀武才時，無乘快走馬之人，□文尤爲可憎，故略施決棍矣。赫然曰，臣嘗見延陽君，出示狹袖曰，此物，便於馳射，至死不脫，先朝，每加申飭，到今衣袖更濶，此無非任便之習，事甚未便矣。上曰，兵使何處人？年今五十二，則丙子之亂，年少而過矣。振翰曰，臣是嶺南人。丙子年方十五，不見兵禍矣。壽恒曰，經亂已久，故漸無經事之人，是亦可慮。上曰，不但弓才馬才，最緊，而前見將官輩，無馳馬者矣。壽恒曰，觀武才之舉，廢之亦久，似無激勸之事矣。上曰，武士自便之習，誠爲可惡，不可不別樣檢飭。赫然曰，戰馬最難。上曰，我國本無好馬，而江華牧場之馬，體小不實，未知何故？赫然曰，胡馬貿來，雖有人言，旣已貿來之後，則便爲我國之物，而近來此路永塞，以此戰馬，尤難辦得矣。上曰，京畿近處，有馬場好處乎？待濟州馬種上來，別樣放牧，一如舟彌島，則似好矣。壽恒曰，必有可合牧放之處，從容詢訪後，可以定矣。上曰，何島之馬，稍勝乎？赫然曰，椴島稍愈矣。上曰，頃見尹相亨所捉之馬，不下於胡馬，我國不善牧養，而欲資於他國之產，事甚不當矣。罷出。【燼餘】

❖ 현종 14년(1673) 계축년 1월 11일(임오)

□ 양심합(養心閣)에서 김수항(金壽恒) 등을 인견하고 제주마(濟州馬)를 방목하기에 합당한 곳을 논의함

○ 오시(午時)에 임금이 양심합(養心閣)에 나아가 입시한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할 때 좌의정 김수항(金壽恒), 지사(知事) 유혁연(柳赫然), 병조판서 김만기(金萬基), 동부승지 정석(鄭皙), 교리 이당규(李堂揆), 지평 임상원(任相元), 정언 홍만중(洪萬鍾), 도총관 조사석(趙師錫), 가주서 남익훈(南益熏), 권선(權愼), 기주관 오득천(吳得天), 기사관 목창명(睦昌明)이 입시하였다. 김수항이 말하기를, “일기가 다시 추워졌는데 전하의 건강은 어떤지요?”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단한 병 증세는 없다.”라고 하였다. 김수항이 말하기를, “팔의 통증은 전에 비해 그대로인가요?”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히려 낫지 못하다.”라고 하였다. <중략> 정석<sup>450</sup>이 말하기를, “충청병사(忠淸兵使) 박진한(朴振翰)<sup>451</sup>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인견하라.”라고 하였다. 박진한이 입시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느 해에 급제하였는가?”라고 물었다. 박진한이 말하기를, “신묘년(1651년, 효종 2)에 급제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이는 얼마인가?”라고 물었다. 박진한이 말하기를, “52세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력은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박진한이 말하기를, “수령은 해미(海美), 보성(寶城), 서흥(瑞興)을 지냈고, 영장(營將)은 나주(羅州)를 지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영장은 어느 해에 했는가?”라고 물었다. 박진한이 말하기를, “정미년(1667년, 현종 8)에 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때는 군사훈련이 끊이지 않아 속오군도 좌작(坐作)의 절차를 했는가?”라고 물었다. 박진한이 말하기를, “지난날 병사가 순력하면 영장이 훈련을 전적으로 관장했기 때문에 단지 좌작 뿐 아니라 자못 정예에 능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최근에는 기근으로 말미암아 군무에 신경쓸 겨를이 없어 수년 이래로 거의 폐지한 데에 이르렀다. 비록 예전처럼 연습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영장들을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며 무릇 군무를 중요하게 여겨 착실히 거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박진한이 말

450) 정석(1619~1677): 본관 해주(海州). 자 백야(白也). 호 악남(岳南). 부친 정효준(鄭孝俊). 1649년(인조 27) 문과 급제. 장령, 수찬, 예조참판 역임. 1679년(숙종 5)에 《명사(明史)》가운데 잘못 기술된 인조반정 기사를 바로잡기 위하여 청나라에 파견되기도 함. 저서 《악남집》.

451) 박진한(1622~?): 본관 밀양(密陽). 자 우경(羽卿). 부친 박유(朴瑠). 1651년(효종 2) 무과 급제. 강계부사, 충청병마절도사 역임. 여러 차례 뇌물 수령 및 제공 등 부패로 탄핵을 받고 유배되기도 함. 1675년(숙종 1) 의정부에서 당상관 이상의 쓸 만한 무신을 뽑는 데 선택되어 곤수(閫帥)에 오름.

하기를, “이는 신의 직임입니다. 감히 마음을 다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근래의 무관들은 한 번 곤수(閫帥)<sup>452</sup>를 지내면 문득 궁마의 재주를 버리니 장차 어찌 쓰겠는가?”라고 물었다. 박진한이 말하기를, “신의 나이 노인에 이르지 않았으니 어찌 감히 포기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유혁연이 말하기를, “지난 몇 해 수령과 곤수의 사람들이 많이 그 무예의 업을 폐했다고 하니 극히 미안하게 됐습니다. 박진한 또한 활 잘 쏘던 사람이었는데, 풍토병을 얻은 이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풍토병은 어디에서 얻었는가?”라고 물었다. 박진한이 말하기를, “보성에서 얻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풍토병은 (팔의) 마비 증상이 있기 때문에 활쏘기 연습을 할 수 없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박진한이 말하기를, “팔의 통증이 활을 잡아당기는데 불리하였는데 지난해부터 비로소 조금 나았습니다.”라고 하였다. 김수항이 말하기를, “선왕(효종)은 매번 무예를 단단히 타일러 경계함을 더했지만 지금은 무예를 권장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같이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궁술 마술을 전폐한 후에 비록 무장이라도 쓸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김수항이 말하기를, “문관은 과거에 급제한 이후 또한 책임기를 폐하는 것이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무관에 이르러서는 더욱 부당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런 무리들은 수치스럽지 아니한가?”라고 물었다. 김수항이 말하기를,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게을러졌는데 또한 이를 꾸짖어 벌을 주지 않으니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몇 해 전 무예 재주를 참관하던 때 빠른 속도로 달리는 말을 타는 사람이 없어서 □□이 더욱 가증스러워 곤장을 쳐서 다스렸다.”라고 하였다. 유혁연이 말하기를, “신이 일찍이 연양군(延陽君)<sup>453</sup>을 볼 때 그가 좁은 소매를 내보이며 말하기를, ‘이 물건이 달리며 활쏘기에 편하여 죽음에 이르러도 벗을 수 없으니 선왕께서 항상 단단히 타일러 경계를 더했다.’라고 하였는데 지금에 이르러 옷소매가 다시 넓어졌으니 이는 편하게 연습하려는 것이어서 일이 매우 편치 않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병사는 어디 사

452) 곤수(閫帥): 병사와 수사. 즉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예스럽게 부르던 말. 대궐 밖의 신하라는 뜻의 곤외지신(閫外之臣)에서 나온 말로, 대궐 밖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뜻에서 변경으로 나가는 장군을 말함.

453) 연양군(延陽君): 이시백(李時白, 1581~1660). 본관 연안(延安). 자 돈시(敦詩). 호 조암(鈞巖). 부친은 연평부원군(延平府院君) 이귀(李貴). 이시방(李時昉)의 형. 성혼(成渾), 김장생(金長生)의 문인. 1623년 인조반정 때 2등 공신 연양군(延陽君)에 봉해졌으며, 이듬해 이괄의 난 때도 반란군 격파에 공을 세움. 1649년 인조는 세자(효종)에게 그를 소개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팔다리처럼 생각하니 너도 뒷날 나와 같이 대접하라.”라는 주문을 하기도 함. 일곱 번 판서를 역임했고 영의정까지 올랐으나 청빈하게 살았다 함. 시호 충익(忠翼).

람인가? 나이가 지금 52세이면 병자호란 때는 나이가 어릴 때 겪었나?”라고 물었다. 박진한이 말하기를, “신은 영남(嶺南) 사람입니다. 병자년에 15세여서 병화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였다. 김수항이 말하기를, “난이 지난 지 이미 오래되어서 점차 난을 경험한 사람이 없어져가니 이것 또한 염려스럽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단 궁술, 마술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전에 보았던 장수의 무리 중 말 타고 달리는 자가 없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김수항이 말하기를, “무과를 참관하는 것을 폐한 지 또한 오래니 힘써 권장하는 일이 없는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무사들이 스스로 편하게 연습하는 것은 참으로 나쁜 것이다. 특별히 점검하여 바로잡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유혁연이 말하기를, “전쟁에 쓰는 말이 가장 어렵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본래 좋은 말이 없고 강화(江華) 목장의 말도 체구가 작고 부실하니 어떤 이유인지 알지 못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유혁연이 말하기를, “호마(胡馬)를 사들이라는 비록 사람들의 말이 있어도 이미 사들여 온 후에는 변하여 우리나라의 물건이 되어버리고 근래에는 이 길마저 영원히 막혀 이런 전마를 더욱 변통하여 얻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기 근처에 마장으로 좋은 곳이 있는가? 제주(濟州)의 마종(馬種)이 올라오기를 기다려 특별히 방목하는데 예를 들면 신미도(身彌島)<sup>454</sup> 같은 곳이 좋을 듯하다.”라고 물었다. 김수항이 말하기를, “반드시 방목하기에 합당할 만한 곳이 있을 터이니 유심히 찾아다닌 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느 섬의 말이 조금 좋은가?”라고 물었다. 유혁연이 말하기를, “가도(假島)<sup>455</sup>가 조금 낫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윤상형(尹相亨)이 잡아온 말을 보니 호마보다 못하지 않던데 우리나라의 목양이 좋지 않아서 다른 나라의 말을 사들이고자 하는 일이 매우 부당하다.”라고 하였다. 끝나고 나갔다. 【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7〉

△ 주제어: 정석, 박진한, 김수항, 유혁연, 연양군, 강화, 제주, 신미도, 가도, 윤상형.

454) 신미도(身彌島): 원문에는 주미도(舟彌島)로 되어 있지만 신미도가 옳음. 역자가 바로잡음. 신미도는 《신증동국여지승람》(권53, 평안도 선천군 산천)에 의하면 “선천군의 남쪽 30리에 있다. 높은 봉우리와 험한 벼랑이 바다 위의 큰 산을 이루고 있으며, 목장이 있다.”고 함. 인조 때 임경업(林慶業)이 이곳에서 장차 나라를 침범할지 모를 오랑캐를 물리치기 위하여 무술을 연마하던 곳이기도 함.

455) 가도(假島): 평안북도 철산군 백량면에 속하는 섬으로 피도(皮島)라고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가도장이라는 목장이 있어 감독관을 두고 말을 사육하였는데 목장의 둘레가 41리에 이르렀다고 함.

❖ 康熙 十二年 癸丑 一月 二十三日 甲午

○ 巳時, 上御養心閣, 大臣·備局堂上, 引見. 左議政金壽恒, 禮曹判書鄭知和, 知事柳赫然, 判尹閔熙, 兵曹判書金萬基, 左副承旨朴世堅, 副校理李堂揆, 假注書李弘迪·李塾, 記注官金斗翼, 記事官陸昌明入侍. 金壽恒進曰, 日氣稍和, 臂疼之候, 不審, 何如? 上曰, 視前稍安矣. …… 兵曹判書金萬基啓曰, 慶尙右兵使李時挺, 以春操停止事, 狀聞矣. 今春形勢, 果難循例設行, 故自備局覆啓蒙允, 既已回移, 而他道, 亦不可異同, 大臣方入侍, 詢問定奪何如? 左議政金壽恒曰, 近來連值凶荒, 諸道操鍊, 停廢已久, 其在軍政, 亦涉可慮, 而上年秋操, 既令停止, 則今春習操, 似難爲之矣. 上曰, 各道春操及兵使巡歷, 一體姑停, 依去秋營將巡歷點閱等事, 各別着實舉行之意, 分付, 可也. 左議政金壽恒啓曰, 巡製, 當爲設行, 而大司成未差, 今月雖未得爲之, 而自前或有隨後, 遣承旨賜柑之時, 似聞濟州柑子進上, 亦不多來, 而既有故規, 故敢此仰達矣. 上曰, 果園封植之後, 勢必繁盛, 而以濟州年終所報觀之, 則當初定式, 實非偶然, 而數十年來, 虛疏莫甚, 只以金橘一種言之, 近來僅得薦新, 而今則俱爲闕封, 其在事體, 豈容如是, 前後不察之狀? 自禮曹各別申飭, 定其年限, 依【缺七八字】且唐柚子, 有進上之事, 而無太廟薦新之舉, 事甚未安, 今後, 則先薦太廟, 可也. 朴世堅曰, 然則薦新唐柚子, 使之別封以進乎? 上曰, 別封, 則稍待樹木長盛後, 爲之, 姑以進上所封, 先薦太廟後, 內入事, 分付該曹, 可也. …… 【燼餘】

❖ 현종 14년(1673) 계축년 1월 23일(갑오)

□ 양심합(養心閣)에서 인견하고 제주(濟州)의 감자(柑子), 금귤(金橘), 당유자(唐柚子) 등의 진상에 대해 논의함

○ 사시(巳時)<sup>456)</sup>에 임금이 양심합(養心閣)에 나아가 대신 및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였다. 좌의정 김수항(金壽恒), 예조판서 정지화(鄭知和), 지사 유혁연(柳赫然), 관운 민희(閔熙), 병조판서 김만기(金萬基), 좌부승지 박세견(朴世堅), 부교리 이당규(李堂揆), 가주서 이홍적(李弘迪), 이돈(李塾), 기주관 김두익(金斗翼), 기사관 목창명(睦昌明)이 입시하였다. 김수항이 나아가 말하기를, “일기가 조금 온화합니다. 팔의 통증 상태를 자세히 알지 못하니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보다는 조금 편안하다.”라고 하였다. <중략> 병조판서 김만기가 아뢰기를, “경상우병사 이시정(李時挺)이 봄철 군사훈련(春操)을 정지시키는 일로 장계를 아뢰어 왔습니다. 올 봄의 형세는 과연 전례에 따라 시행하기 어려워서 비변사에

456) 사시(巳時): 오전 9시~11시.

서 거듭 아뢰어 윤희를 받아 이미 해당 관아에 내려 보냈는데 타도 또한 다르면 안 되어서 대신들이 바야흐로 입시하였으니 임금의 결정에 대해 상의하는 것이 어떻 습니까?”라고 하였다. 좌의정 김수항이 말하기를, “근래 연이은 흉년 때문에 여러 도의 군사훈련을 폐지한 지 이미 오래되어 군정에 있어서 염려스러운 바가 있지만 지난해 가을 군사훈련도 이미 정지 명령을 내렸으니 올 봄 훈련도 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각 도의 봄 군사훈련 및 병사(兵使)가 순력(巡歷)하는 것은 일체 잠시 정지하고, 지난 가을 영장(營將)이 순력 점검했던 일에 의거 각별히 성실하게 거행할 뜻을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좌의정 김수항이 아뢰기를, “순제(巡製)<sup>457)</sup>는 마땅히 시행해야 하는데 대사성(大司成)이 아직 임명되지 않아 이번 달은 비록 할 수 없어도 전부터 혹 뒤따랐던 바가 있으며, 승지를 사감(賜柑)<sup>458)</sup>의 제술에 파견할 때 들으니 제주(濟州)의 감자(柑子) 진상 역시 많이 올라오지 않은 듯하다고 하니 이미 옛 규례가 있어서 감히 이를 우려 아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과원(果園)에 흙을 북돋우고 나무를 심은 후에 형세가 반드시 번성하였는데 제주에서 연말에 보고한 바를 본 즉 당초의 정식은 실로 우연이 아니어서 수십 년 오는 동안 허술한 게 매우 심하여 단지 금굴(金橘) 한 종을 말했고 근래에는 겨우 새 것을 올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빠졌으니 일의 본체가 어찌 이처럼 되어 전후로 살피지 못한 상황이 되었는가? 예조부터 각별히 경계하도록 타이르고 그 연한을 정해 【7~8자 빠짐】의거하라. 또 당유자(唐柚子)는 진상의 일에 있어서 태묘(太廟)에 새 것을 올리는 의식이 없으면 일이 매우 편치 않으니 지금 이후로는 먼저 태묘에 올려야 좋겠다.”라고 하였다. 박세견이 말하기를, “그러면 새로운 당유자를 올리는 것은 별봉(別封)을 기다린 후에 진상할까요?”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별봉은 차차 수목이 장성하기를 기다린 후에 하고 잠시 봉해 올린 진상으로 먼저 태묘에 올린 후 궁중에 들이는 일을 해당 부서에 분부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였다. <하략>. 【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7>

△ 주제어: 양심합, 김수항, 김만기, 이시정, 제주, 감자, 금굴, 당유자, 태묘, 박세견.

457) 순제(巡製): 조선시대 서울의 중등교육기관인 사학(四學)에서 행하는 이십사순(二十四巡) 제술(製述)을 가리킴. 1년에 24회 시험을 돌아가며 시행함. 사학 즉 사부학당(동부, 서부, 남부, 중부)의 유생들은 15일은 제술(製述), 15일은 경사(經史)를 강독하여 우수한 사람 5명을 뽑아 소과(생원, 진사 시험)에 직접 응시하게 했음.

458) 사감(賜柑): 황감제(黃柑製) 또는 황감과(黃柑科). 매년 12월 전후 제주도의 특산물인 감굴이 진상되어 올 때 성균관의 명륜당에 관학(성균관과 사학) 유생들을 모아놓고 감굴을 나누어준 뒤 치렀던 과거. 1564년(명종 19) 처음 시행되었으며, 합격자는 당일에 결정함. 합격자는 직부전시(直赴殿試) 혹은 직부회시(直赴會試)함.

❖ 康熙十二年癸丑二月六日丙午

○ 巳時, 上御養心閣, 還下去箋文差使員, 引見. 入侍, 德源府使李必馨, 谷山府使羅八紀, 平海郡守朴材, 甑山縣令黃道光, 開城教授金嶷, 尼山縣監安重, 沙斤察訪朴世圭, 桃源察訪尹揆, 景陽察訪李泳, 同副承旨鄭皙, 假注書任堂, 記注官吳得天, 記事官睦昌明. …… 羅八紀, 伏于前. 上曰, 履歷何官耶? 八紀曰, 已經藍浦·濟州判官, 熙川等郡也. 上曰, 爾之出身, 何榜? 對曰, 幸忝於辛卯別試. 上曰, 何年赴此任也. 對曰, 己酉八月, 赴任所. 上曰, 庚辛兩年, 何以過之而賑救, 何如? 飢民幾何? 八紀曰, 飢民一百八十餘名. 上曰, 地狹而然歟? 何其飢民之小也? 八紀曰, 此外移來移去之民, 亦皆賑之, 而其民則不在於此數. 上曰, 海西農事, 稍勝於他道云耶? 鄭皙曰, 然. 八紀曰, 臣有所陳達矣. 本府境內十二面中, 十一面, 則監營屯田, 處處有之, 而屯田入作之民, 則自本官不得差役, 勅使時人夫之役, 極其浩多, 而屯民則無一名調發, 至於諸色軍兵歲抄時, 閑丁可合者, 非不有之, 而亦不得下手, 此爲本府之大弊矣. 上曰, 言于該曹, 如可變通, 則變通可也. 上曰, 值此大侵, 本土之流民, 必多, 務令勞來安集. …… 遂罷出. 【燼餘】

❖ 현종 14년(1673) 계축년 2월 6일(병오)

□ 양심합(養心閣)에서 전문차사원(箋文差使員)을 인견하여 경력을 묻고 유민(流民)의 안집(安集)과 전야(田野)의 개벽(開闢)을 당부함

○ 사시(巳時)에 임금이 양심합(養心閣)에 나아가 지방에 내려갔다 돌아온 전문(箋文) 차사원을 인견하였다. 입시는 덕원부사 이필형(李必馨), 곡산부사 나팔기(羅八紀)<sup>459</sup>, 평해군수 박재(朴材), 증산현령 황도광(黃道光), 개성교수 김억(金嶷), 니산현감 안중(安重), 사근찰방 박세규(朴世圭), 도원찰방 윤섬(尹揆), 경양찰방 이영(李泳), 동부승지 정석(鄭皙), 거주서 임당(任堂), 거주관 오득천(吳得天), 기사관 목창명(睦昌明)이었다. <중략> 나팔기가 어전에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떤 관직을 역임했는가?”라고 물었다. 나팔기가 말하기를, “남포(藍浦)와 제주(濟州) 판관(判官), 희천(熙川) 등지의 군수를 지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는 언제 과거에 급제했는가?”라고 물었다. 대답하기

459) 나팔기(1623~1676): 본관 나주(羅州). 자 숙거(叔舉). 호 월암(月岩). 부친 나환(羅暉). 진북 김제 출신. 1651년(효종 2) 무과 급제. 감찰을 거쳐 남포현감, 곡산군수 역임. 제주판관 재임기간은 1662년(현종 3) 8월부터 1664년(현종 5) 11월까지임.

를, “외람되게도 신묘년(1651, 효종 2) 별시에 급제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느 해에 이 임지로 부임했는가?”라고 물었다. 대답하기를, “기유년(1669, 현종 10) 8월에 임소로 부임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신(庚辛)<sup>460</sup> 두 해는 어찌 지내고 진휼은 어떠했는가? 굶주린 백성은 몇이나 되는가?”라고 물었다. 나팔기가 말하기를, “기민이 180여 명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땅이 좁아 그런 것인가? 어찌 기민이 적은가?”라고 물었다. 팔기가 말하기를, “이 밖에 옮겨오거나 옮겨간 백성 역시 모두 진휼하여 그 백성이 이 숫자에 그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해서(海西, 황해도) 지방의 농사는 타도에 비해 조금 낫다고 하는가?”라고 물었다. 정석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 나팔기가 말하기를, “신이 진술하여 올린 바가 있습니다. 본부(곡산부) 경내 12면 중에 11면은 감영의 둔전이 곳곳에 있고 둔전에서 경작하는 백성은 본관에서 일을 시킬 수 없으며 칙사가 올 때 인부의 역이 매우 많아서 둔전의 백성은 한 명이라도 징발할 수 없습니다. 각 방면의 군병들을 세초(歲抄)<sup>461</sup>할 때에 이르면 한정(閑丁)<sup>462</sup>으로 합당한 자가 없지는 않으나 또한 하수를 얻을 수 없어 이것이 본부의 가장 큰 폐단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해당 부서에 말해 변통할 만하면 변통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런 큰 흉년을 당하여 본토의 유민들이 반드시 많을 것이다. 힘써서 위로하고 편안히 살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중략> 드디어 끝나고 나갔다. 【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7〉

△ 주제어: 양심합, 곡산부사, 나팔기, 제주판관, 정석.

460) 경신(庚辛): 경술년과 신해년. 즉 1670년(현종 11)과 1671년(현종 12)의 두해.

461) 세초(歲抄): 조선시대에 군병을 보충하던 일. 군병 중에서 질병, 도망, 사망자들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하여 추리고 새로운 병사들로 충원하던 일을 말함.

462) 한정(閑丁): 15세부터 60세 사이의 장정으로서 국역에 나가지 않는 사람.

❖ 康熙 十二年 癸丑 二月 九日 己酉

- 以兵曹年例邊將應薦不薦單子, 傳于李觀徵曰, 濟州牧使金興運, 則全羅監司狀啓中, 有頃啓之言, 而何以混入於不薦人員中耶?

❖ 現宗 14年(1673) 계축년 2월 9일(기유)

- 병조의 연례 변방 장수 응천불천(應薦不薦) 단자에 제주목사(濟州牧使) 김흥운(金興運)을 불천 인원 속에 들어간 이유를 묻는 전교
- 병조의 연례 변방 장수 응천불천(應薦不薦) 단자에 대해 이관징(李觀徵)에게 전교하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김흥운(金興運)<sup>463</sup>은 전라감사(全羅監司)의 장계 속에는탈계(頃啓)<sup>464</sup>의 말이 있는데, 어찌하여 불천(不薦) 인원 속에 섞여 들어가 있는가?”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7〉

△ 주제어: 이관징, 제주목사, 김흥운, 전라감사.

---

463) 김흥운(1622~?): 본관 나주(羅州). 자 군원(君遠). 호 구암(龜菴). 부친 김진(金鎭). 1644년(인조 22) 무과 급제. 제주관관과 제주목사 역임. 관관 재임기간은 1647년(인조 25) 9월부터 1650년(효종 1) 3월까지이며, 목사 재임기간은 1672년(현종 13) 10월부터 1675년(숙종 1) 6월까지임.

464) 탈계(頃啓): 뜻밖에 일어난 사고 때문에 어떠한 일을 시행할 수 없게 된 뜻을 임금에게 상주(上奏)하는 일, 또는 그 보고.

❖ 康熙 十二年 癸丑 二月 九日 己酉

- 鄭皙, 以兵曹言啓曰, 以兵曹年例, 邊將應薦不薦單子, 傳曰, 濟州牧使金興運, 則全羅監司狀啓中, 有頃啓之言, 而何以混入於不薦中耶事, 傳教矣. 各處邊將可合人薦舉單子, 啓下本曹, 而濟州牧使金興運薦單, 不在其中, 故依例抄出請推矣. 今承下教, 問于吏曹, 則本道監司, 以金興運, 守令邊將薦舉單子, 時未出來事, 具由馳啓, 本月初三日, 啓下吏曹, 而吏曹, 未及移送本曹, 以致抄入於不薦之中, 濟州牧使金興運單子中, 付標拔去之意, 敢啓. 傳曰, 知道.

❖ 현종 14년(1673) 계축년 2월 9일(기유)

□ 제주목사(濟州牧使) 김흥운(金興運)에 대해 변방 장수의 천거단자에서 누락된 이유를 아뢰는 병조의 계

- 정석(鄭皙)이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병조의 연례 변방 장수 응천불천(應薦不薦)의 단자에 대해 전교하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김흥운(金興運)은 전라감사(全羅監司)의 장계 속에는탈계(頃啓)의 말이 있는데, 어찌하여 불천(不薦) 속에 섞여 들어가 있는가의 일에 대해 전교하였습니다. 각처의 변방 장수로 합당한 인물의 천거 단자를 임금께서 결재하여 본조(병조)에 내려 보냈는데 제주목사 김흥운의 천거 단자는 그 속에 없어서 예에 의거 골라서 뽑아내도록 추고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내리신 전교를 받들어 이조에 문의한 즉 본도 감사가 김흥운의 수령 변방 장수의 천거 단자를 그때 나오지 않은 일로 연유를 갖추어 써서 달려 아뢰어 온 것이 2월 3일입니다. 이조에 결재를 내렸는데 이조는 본조에 미처 이송하지 않아 불천인(不薦人) 속에서 뽑아 들었으니 제주목사 김흥운의 단자에 불인 표지를 떼 내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7〉

△ 주제어: 정석, 제주목사, 김흥운.

❖ 康熙十二年癸丑二月十九日己未

- 受灸入侍時, 左議政金壽恒所啓, 厚陵王后陵上石物動退處, 奉審事, 啓下之後, 卽當往審, 而禮曹判書在外, 參判出使, 只有參議, 而今日試官望, 磨鍊之後, 又有廿日宗廟奉審之舉, 臣亦當爲進往, 勢將過此後, 奉審厚陵矣. 上曰, 其勢然矣, 厚陵石物, 今番摘奸時, 執頗, 而傾頽之患, 在於春水前, 則監司奉審時, 及參奉, 亦何不趁卽頗報耶? 金壽恒曰, 令該曹查啓乎? 上曰, 分付該曹, 查覈, 可也. 又所啓, 濟州牧使金興運, 以前任水使時, 故失馬事, 有降資之命, 而濟州牧使, 則例以堂上差送, 故降資之後, 則不可仍在該曹, 該曹欲出其代, 而尹堦纔遞, 金興運赴任未久, 今又遞易, 似爲頻數矣. 上曰, 金興運推考, 加資, 則還給, 可也. 【朝報】

❖ 현종 14년(1673) 계축년 2월 19일(기미)

□ 당상관인 제주목사(濟州牧使)의 품계에 김흥운(金興運)이 합당치 못해 교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김수항의 계

- (임금에게) 뜰을 뜨며 입시할 때 좌의정 김수항(金壽恒)이 아뢰기를, “후릉(厚陵)<sup>465</sup> 왕후릉(王后陵)에 연결된 곳이 벌어져 틈이 생겨 봉심(奉審)<sup>466</sup>하는 일을 임금께서 재가한 후 곧 마땅히 가서 살펴봐야 하는데 예조판서는 지방에 있고 참관은 사신으로 나가있어 단지 참의만 있는데 금일 시관(試官) 추천을 마련한 뒤로 또 20일 있으면 종묘 봉심을 거행해야 하며 신 또한 거기에 나아가야 해서 형세가 장차 이를 지난 후에 후릉을 봉심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형세가 그렇구나. 후릉 석물은 금번에 살펴 조사할 때 잘못을 집어내 기울어 무너지는 걱정이 봄물 흐르기 전에 있었는데, 감사가 봉심할 때 참봉 또한 어찌 곧바로 사고에 대해 알리지 않았는가?”라고 물었다. 김수항이 말하기를, “해당 부서에 명령을 내려 조사하여 아뢰도록 할까요?”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해당 부서에 분부하여 조사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김흥운(金興運)이 예전 수사(水使)의 직임 때 사고로 말을 잃은 일로 품계를 낮추는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목사는 전례에 따라 당상관으로 뽑아 파견하기 때문에 품계를 낮춘 후에는 이어서 보임할 수 없었으나, 해당

465) 후릉(厚陵): 조선 2대 정종과 그의 비 정안왕후 김씨의 능. 경기도 개풍군 영정리에 있음.

466) 봉심(奉審): 임금의 명을 받들어 능침이나 묘우를 보살핌.

부서에서 교체하여 내고자 하여 윤계(尹埵)<sup>467</sup>로 겨우 교체하였습니다. 김홍운이 부임한 지 오래지 않아 이제 또 교체하는 것이 매우 잦은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김홍운 추고 때 강등된 품계를 다시 회복시켜, 가자(加資)는 돌려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조보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7〉

△ 주제어: 김수항, 후릉, 봉심, 제주목사, 김홍운, 윤계.

---

467) 윤계(1622~1692): 본관 해평(海平). 자 태승(泰升), 호 하곡(霞谷). 부친은 윤면지(尹勉之). 1662년(현종 3) 문과 급제. 대사간, 한성판윤, 공조판서 역임. 제주목사 재임기간은 1672년(현종13) 5월부터 동년 10월까지임. 제주목사 재임 중 한학과(漢學科) 개설 및 의국(醫國)을 설치함. 1689년 기사환국 때 남인이 정권을 장악하자, 송시열(宋時烈)의 당(黨)으로 몰려 강진에 귀양 갔다가 그 곳에서 사망. 저서 《하곡집》. 시호 익정(翼正).

❖ 康熙 十二年 癸丑 二月 二十日 辛酉

○ 有政. 以孟胄瑞爲兵曹參知, …… 濟州牧使金興運, 今加通政加資, …….

❖ 현종 14년(1673) 계축년 2월 20일(신유)

□ 제주목사(濟州牧使) 김흥운(金興運)을 통정대부로 가자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맹주서(孟胄瑞)를 병조참지로 삼고, <중략> 제주목사(濟州牧使) 김흥운(金興運)을 통정대부로 가자(加資)<sup>468</sup>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7>

△ 주제어: 맹주서, 제주목사, 김흥운.

---

468) 가자(加資): 조선시대 관리의 품계를 한 등급 올려주거나 혹은 정3품 통정대부 이상의 품계로 올려 주는 것을 말함.

❖ 康熙十二年癸丑三月二十日庚寅

- 李世翊, 以禮曹言啓曰, 卽接典牲署所報, 則湖西分養黑牛六首, 纔已自濟州出來, 去月晦前, 始爲上京, 而體少瘦瘠, 不合於祭用, 本署前養黑牛, 只有二首, 而一首, 自前病瘠, 亦不可用, 前頭夏享大祭實豫差, 欲推移封進辭意, 具由入啓, 黑牛三首, 令該曹斯速買給云, 自湖西上來黑牛六首, 渡海遠來, 瘦瘠體少, 而前在一首, 本來病瘠滋甚, 前頭夏享大祭, 無以推移封進, 果如本所之所報, 黑牛三首, 趁夏享大祭前, 令該曹折價買給, 何如? 傳曰, 允.

❖ 현종 14년(1673) 계축년 3월 20일(경인)

- 호서분양흑우(湖西分養黑牛) 6수(首)가 제주(濟州)로부터 왔으나 제용(祭用)에 합당치 않으니 흑우 3수를 하향대제(夏享大祭) 전에 해당 부서에서 가격을 낮춰 팔도록 청하는 예조의 계
- 이세익(李世翊)<sup>469</sup>이 예조의 말로써 아뢰기를, “방금 접수한 전생서(典牲署)의 보고에 의하면 ‘호서분양흑우(湖西分養黑牛) 6수(首)가 겨우 제주(濟州)로부터 나와 지난 달 그믐 전에 비로소 서울에 올라왔는데 체구가 작고 수척하여 제수(祭需)로 합당치 않습니다. 본서에서 전에 기르던 흑우는 단지 2수가 있고 1수는 전부터 병 때문에 수척하여 또한 사용하기가 불가해서 이전 하향대제(夏享大祭)<sup>470</sup>의 실예차(實豫差)<sup>471</sup>들이 점점 봉진하여 사의를 표하고자 이유를 갖추어 아뢰고 있으며 흑우 3수는 해당 부서에서 속히 팔도록 명령 내려 달라.’고 합니다. 호서로부터 올라 온 흑우 6수는 바다 건너 먼데서 오니 수척하고 체구가 작으며 전에 있던 1수는 본래 병으로 수척함이 더 심해졌으며 이전 하향대제의 관원도 없고 점점 봉진하는 것이 과연 본소에서 보고한 바와 같습니다. 흑우 3수는 하향대제 전이라도 해당 부서에 가격을 낮춰 팔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이 어떤지

469) 이세익(1626~1705): 본관 부평(富平), 자 숙필(叔弼), 호 철애(鐵厓), 부친 이홍재(李弘載), 1650년(효종 1) 문과 급제. 숙종대 황해도관찰사, 나주목사(羅州牧使) 역임. 1699년(숙종 25) 효종, 현종, 숙종 삼대에 걸쳐 시종(侍從)을 지내고 나이 70세 넘은 신하를 가자(加資)할 때 포함되었으나, 효종대 시종 지낸 일이 없던 사실이 드러나 탄핵 받고 관직을 박탈당함.

470) 하향대제(夏享大祭): 매년 음력 4월 초순 날을 골라 여름 절기를 맞이하는 제사로 왕이 종묘에서 지냄. 새 계절을 맞아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는 제사임.

471) 실예차(實豫差): 실차(實差)와 예차(豫差). 정직과 임시직의 해당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모든 관원을 말함. 실차는 정해진 숫자의 정식 관원이며, 예차는 임시직에 해당하는 관원으로 미리 해야 할 임무를 맡은 관원임.

요?”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7〉

△ 주제어: 이세익, 호서분양흑우, 제주, 하향대제.

❖ 康熙 十二年 癸丑 四月 二十日 己未

- 崔逸, 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濟州判官李碩蕃遞任, 進上馬三匹, 禾毛色別單書入, 依前內廐質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현종 14년(1673) 계축년 4월 20일(기미)

- 제주판관(濟州判官) 이석번(李碩蕃)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에 대해 나이와 털색을 별단에 써서 들이며 내구(內廐)에서 기르겠다는 사복시의 계
- 최일(崔逸)<sup>472</sup>이 사복시 관원으로 제조의 뜻을 아뢰기를, “제주판관(濟州判官) 이석번(李碩蕃)<sup>473</sup>의 체임 진상마 3필에 대해 나이와 털색을 별단으로 써서 들이고, 전례에 의거 내구(內廐)에서 기르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7〉

△ 주제어: 최일, 제주판관, 이석번, 체임진상마.

---

472) 최일(1615~1686): 본관 화순(和順). 자 일지(逸之). 호 석헌(石軒). 부친 최상현(崔象玄). 장유(張維)의 문하에서 수학. 1646년(인조 24) 문과 급제. 홍천현감, 장성부사 재임시 선정을 베풀고 기민을 구제함. 1665년(현종 6) 《효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고, 병조, 호조참판을 역임. 숙종은 그의 청빈함을 가상히 여겨 초모(貂帽)를 하사한 바 있음.

473) 이석번(1617~?): 본관 영천(永川). 자 무경(茂卿). 부친은 이상진(李尙晉). 1663년(현종 4) 문과 급제. 교서관박사, 결성현감을 역임할 때 사헌부 관원의 탄핵을 받아 파직됨. 제주판관 재임기간은 1671년(현종 12) 1월부터 1673년(현종 14) 7월까지임.

❖ 康熙 十二年 癸丑 五月 十二日 辛巳

○ 以成虎徵爲掌令, …… 李雲林爲濟州判官, …….

❖ 현종 14년(1673) 계축년 5월 12일(신사)

□ 이운림(李雲林)을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함

○ 성호징(成虎徵)을 장령(掌令)으로, <중략> 이운림(李雲林)<sup>474</sup>을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하였다. <하략>.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7>

△ 주제어: 성호징, 이운림, 제주판관.

---

474) 이운림(1624~1688): 본관 진의(全義). 자 덕무(德茂). 부친은 이시익(李時益), 충북 괴산(槐山) 출신. 1657년(효종 8) 문과 급제. 선교랑, 청송부사 역임. 제주판관 재임기간은 1673년(현종 14) 7월부터 1676년(숙종 2) 5월까지임.

❖ 康熙 十二年 癸丑 六月 十二日 庚戌

○ 下直, 濟州判官李雲林.

❖ 현종 14년(1673) 계축년 6월 12일(경술)

□ 제주판관(濟州判官) 이운림(李雲林)이 하직함

○ 제주판관(濟州判官) 이운림(李雲林)이 임지로 떠난다고 인사 올렸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판관, 이운림.

❖ 康熙十二年 癸丑 七月 十一日 戊子(戊寅)

- 巳時, 上御熙政堂受鍼, 藥房都提調右議政金壽興, 提調左參贊張善澂, 右承旨李之翼, 假注書李聃命, 記事官尹致績·陸昌明, 醫官金有鉉·白光玠·崔聖任·李後聃·金萬直·鄭斯玄入侍. …… 壽興曰, 舊陵齋室石, 輸運事, 才已啓辭, 而閔維重出往小浮石所, 牒報都監, 以爲小浮石, 工役甚鉅, 而齋室所入之石, 浮取之數, 既多, 輸運之役, 又難, 舊齋室之石, 自陵所至江邊, 不過十里, 而移載於船, 卸下於新陵之底, 與其浮取新石, 陸軍四十里之功, 此爲便宜云. 臣意, 亦如是, 故敢達矣. 上曰, 利川石品, 亦無形矣. 壽興曰, 雖堅品, 則常石矣. 上曰, 丁字閣與齋室, 事體有異, 尤當用以精石, 而利川石品, 頗劣, 【缺】前日餘石, 可至百餘箇, 擇其大者, 運送新陵, 以造丁字閣. 【缺】曰, 聖教至當矣. 上曰, 浮石於京江近地, 以爲水運【缺】運四十里之難矣, 而當初何不爲此計耶? 之翼曰, 自小丘至【缺】上曰, 小丘, 則猶不甚邇, 而今則浮取於沔河里, 沔河里, 則去江邊【缺】善澂曰, 果然矣. 上曰, 齋室石, 與丁字閣石, 大小何如耶? 舊齋室石, 用於新陵丁字閣耶? 壽興曰, 礎石, 則未知其可用, 而階石, 則似可推移用之矣. 善澂曰, 臣以祭官, 曾詣章陵見之, 則丁字閣石, 與齋室石, 別無異同矣. 壽興曰, 使出去石手, 計數而來似可矣. 上曰, 依爲之. 壽興曰, 頃日榻前, 下詢諸石長廣之如何, 而退考謄錄, 則長五尺, 廣四尺五寸, 厚六寸九分矣, 近日連有風雨, 江華石, 以此似不能來矣. 上曰, 水路雖險, 致精則不敗, 近以濟州事見之, 則連數年輸運之船, 一不致敗, 可驗於此矣. 壽興曰, 艱險處不敗, 平易處致敗, 實由於用心與放意也. 上曰, 自濟州至大陸, 其間柚子外, 無他島可以依泊處云矣. 壽興曰, 然矣. …… 諸臣退出. 【以上燼餘】

❖ 현종 14년(1673) 계축년 7월 11일(무자[무인])

- 희정당(熙政堂)에 김수흥(金壽興) 등이 입시하여 구릉(舊陵) 재실석(齋室石)의 수운(水運)에 대한 제주(濟州)의 경험치를 참고하도록 논의함
- 사시(巳時)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침을 맞았는데, 약방도제조 우의정 김수흥(金壽興), 제조 좌참찬 장선징(張善澂), 우승지 이지익(李之翼), 가주서 이담명(李聃命), 기사관 윤치적(尹致績), 목창명(睦昌明), 의관 김유현(金有鉉), 백광현(白光玠), 최성임(崔聖任), 이후담(李後聃), 김만식(金萬直), 정사현(鄭斯玄)이 입시하였다. <중략> 김수흥이 말하기를, “옛 룡의 재실(齋室) 돌을 날라 오는 일은 방금 전 이미 계사를 올렸으며, 민유중(閔維重)이 소(小) 부석소(浮石

所)<sup>475</sup>에 나가 도감에 알리니 소부석(小浮石)이 되면 공역이 매우 크고 재실에 들어갈 돌이 붙었다 때 낼 수가 이미 많고 실어 나르는 일도 또한 어렵다 합니다. 옛 재실의 돌은 능소로부터 강변에 이르기까지 불과 10리여서 배로 실어 옮겨 새 능의 바닥에 풀어 내리면 붙었다 때 낸 새 돌에 비해 육운(陸運)<sup>476</sup>으로 40리의 공이 되니 이것이 편리하고 마땅하다고 합니다. 신의 뜻 또한 이와 같아서 감히 진달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천(利川)의 돌 품질 또한 볼 것 없다.”라고 하였다. 김수홍이 말하기를, “비록 단단하다 해도 평범한 돌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자각(丁字閣)은 재실에 비해 일의 본체가 다르니 더욱 마땅히 좋은 돌을 써야 하는데 이천의 석품은 매우 뒤떨어지니 【빠짐】 예전의 남은 돌 쓸 만한 100여 개 중 큰 것을 골라서 새 능으로 운송하여 정자각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빠짐】이 말하기를 “임금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한강 근처에서 뜬 돌은 수운으로 하면 되지, 【빠짐】 육운 40리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당초에 어찌하여 이런 계산을 하지 못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지익이 말하기를, “작은 구릉부터 【빠짐】에 이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작은 구릉은 오히려 너무 가깝지 아니하여 지금 살하리(鎭河里)에서 붙였던 돌을 때 낸다는데 살하리는 강변과의 거리가 【빠짐】”라고 하였다. 장선징이 말하기를, “과연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재실 돌은 정자각 돌에 비해 크고 작음이 어떠한가? 옛 재실의 돌은 새 능의 정자각에 쓸 만한가?”라고 물었다. 김수홍이 말하기를, “초석은 쓸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계단석은 옮겨서 사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장선징이 말하기를, “신이 제관(祭官)으로 일찍이 장릉(章陵)<sup>477</sup>에 나아가 본 즉 정자각 돌은 재실 돌과 더불어 별로 다름이 없었습니다.”라고 하였다. 김수홍이 말하기를, “석수를 나가게 해서 (필요한 돌의) 숫자를 계산해서 오라고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뢰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김수홍이 말하기를, “지난번 어전에서 임금께서 여러 돌의 길이와 너비가 어떠한 지 물어보셔서 물러나와 등록을 살펴보니 길이는 5척, 너비는 4척5촌 두께는 6촌9분이었습니다. 요사이 연이어 비바람이 쳐서 강화(江華) 돌을 이 때문에 날라 올 수 없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수로가 비록 험난해도 정밀함을 다한 즉 실패하지 않는다. 가까이 제주(濟州)의 일로써 보건대 수년을 이어

475) 부석소(浮石所): 석재를 떠내는 곳, 즉 채석장을 말함.

476) 육운(陸運): 원문에는 육군(陸軍)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상 육운이 옳아 역자가 바로 잡음.

477) 장릉(章陵): 조선 인조의 아버지로 추존된 원종과 그의 비 인현왕후 구씨의 능.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에 있으며, 사적 제202호로 지정됨. 원종의 묘는 처음 양주에 있던 것을 1627년(인조 5) 김포에 개장하여 흥경원(興慶園)이라 하였고, 1632년 능으로 봉하여 장릉이라 함.

오면서 날라 운송하는 배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으니 여기서 본받을 만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김수홍이 말하기를, “험난한 곳은 실패하지 않고 쉬운 곳은 실패하게 되는 것은 실로 마음을 쓰느냐 방심하느냐에 달렸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에서 육지에 이르는 동안 그 사이에 추자(楸子)<sup>478)</sup> 외에는 다른 섬이 없거늘 의지하며 배달 곳이 가하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였다. 김수홍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여러 신하가 물러나 나갔다. 【이상은 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7〉

△ 주제어: 민유중, 김수홍, 장선징, 이지익, 부석소, 이천, 살하리, 장릉, 강화, 제주, 추자.

---

478) 추자(楸子): 원문에는 유자(柚子)라고 되어 있지만 내용상 추자가 옳아 역자가 바로 잡음.

❖ 康熙十二年癸丑八月十四日辛亥

○ 引見入侍時, …… 閔維重曰, 訓練都監春秋兩等吐木價, 各下地木七同四十匹, 鐵炭價, 各玄木二同, 自戶曹輸送, 乃是流例, 此必當初無他財力辦出之勢, 不得不取用於戶曹, 而糧餉廳別設, 專爲軍需之用, 則吐木價, 鐵炭價, 不當自戶曹措備, 自今以後, 糧餉廳所儲, 輸送, 何如? 上曰, 依爲之. 又所啓, 每年節使方物所入鮑甲, 例以濟州貢物取用矣, 癸丑條濟州貢物, 以凶荒未及復舊, 故今番方物所用鮑甲, 不得已給價責出於平民, 其弊不些, 貢物雖爲蠲減, 鮑甲, 則似當變通矣. 上曰, 鮑甲, 別爲分定取用, 可也. 金萬基所啓, 濟州寺婢承生, 上年所納之粟, 十石五斗零, 似當免賤, 而其情願, 則其舅, 曾前受嘉善之資而作故, 願受本品實職贈帖, 且爲其姑康氏夫人帖云, 其舅, 則固宜依例受贈職帖, 而其姑, 時方生存, 夫人給帖, 有異於恤用規例, 何以爲之乎? 上曰, 依願夫人帖成給, 可也. …… 【以上朝報】

❖ 현종 14년(1673) 계축년 8월 14일(신해)

□ 제주의 포갑(鮑甲) 방물 흥작으로 인한 견감 대책과 시비(寺婢) 승생(承生)의 납속에 대한 개인 청원을 논의함

○ 인견하여 입시할 때 〈중략〉 민유중(閔維重)<sup>479)</sup>이 말하기를, “훈련도감의 봄, 가을 두 차례 시험에 소요되는 목가(木價)<sup>480)</sup>는 각각 하지목(下地木)<sup>481)</sup> 7동(同) 40필, 철탄가(鐵炭價) 각각 현목(玄木)<sup>482)</sup> 2동을 호조에서 실어 보냈는데 이는 이전부터의 관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초에 다른 재력으로 변통하여 마련할 형세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불 호조에서 가져다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양향청(糧餉廳)<sup>483)</sup>을 별도로 설치하여 오로지 군수의 용도로 삼았기 때문에 소요 경

479) 민유중(1630~1687): 본관 여흥(驪興). 자 지숙(持叔), 호 둔촌(屯村). 부친은 민광훈(閔光勳), 모친은 이광정(李光庭)의 딸. 숙종 비 인현왕후(仁顯王后)의 아버지. 1651년(효종 2) 문과 급제. 대사헌 등 내직과 전라도, 평안도관찰사 등 외직을 두루 역임. 1680년(숙종 6) 경신대출척으로 남인이 실각하자, 다시 조정에서 호조판서, 병조판서 등을 역임하며 서인 정권을 주도. 임금의 장인으로 여양부원군(驪陽府院君)에 봉해지고, 외척으로 병권과 재정권을 모두 관장하자 비난이 일어 관직에서 물러남. 저서 《민문정유집(閔文貞遺集)》. 시호 문정(文貞).

480) 목가(木價): 조선시대 대동미 대신 바치던 무명.

481) 하지목(下地木): 최하등 품질의 포목. 포목은 품질의 정도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뉘는데, 상등을 천목(天木), 중등을 지목(地木), 최하등을 하지목(下地木)이라 함.

482) 현목(玄木): 바래지 않아 빛깔이 누렇게 거무스름한 무명.

483) 양향청(糧餉廳): 1593년(선조 26) 훈련도감 발족과 더불어 설치된 훈련도감 소속의 재정 관서. 훈련도감에서 소요되는 의복, 무기, 비품 등의 물품을 조달하고 급료 등의 재정을 관리 운영함.

비 및 철탄가를 호조에서 조처하여 준비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지금 이후부터는 양향청에서 마련해 둔 것을 실어 보내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또 아뢴 바, “매년 절사(節使)<sup>484</sup> 방물로 들어가는 포갑(鮑甲)<sup>485</sup>은 예에 따라 제주(濟州) 공물을 취하여 썼습니다. 올해(계축년, 1673) 몫의 제주 공물은 흉작으로 복구되지 않기 때문에 금번 방물에 쓰일 포갑은 부득이 그 값을 평민에게 책임 지워 내놓게 하여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공물을 일부 면제하여 포갑을 변통하는 것이 마땅한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포갑을 별도로 나누어 정해서 가져다 쓰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김만기(金萬基)가 아뢴 바, “제주의 시비(寺婢) 승생(承生)이 지난해 납속한 것이 10석 5두령(斗零)으로 마땅히 면천(免賤)해야 하는데 그가 진정 바라는 바는 시아버지가 일찍이 전에 가선대부의 품계를 제수 받았는데 작고하여 본품 실직의 추증 직첩 제수와 또 시어머니 강씨(康氏)부인의 첩지가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 시아버지는 예에 의거 증직 첩지를 제수함이 마땅하나 시어머니는 현재 생존해있어 부인에게 첩지를 주는 것이 활용(恤用) 규례에 다름이 있으니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바란 대로 부인에게 첩지를 내어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조보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7〉

△ 주제어: 민유중, 양향청, 포갑, 제주, 김만기, 승생.

484) 절사(節使): 절일사(節日使). 절일(명절 등)을 축하하기 위해 보내는 사신. 여기서는 중국에 보내는 사신인 성절사(聖節使) 등을 지칭하는 듯함.

485) 포갑(鮑甲): 전복(全鰓).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인사편, 기용류, 잡기, 나전변증설)에 다음과 같이 해설되어 있음. “포갑(鮑甲)은 우리나라에서는 복갑(鰓甲)이라 부른다. 구공합(九孔蛤), 구공나(九孔螺)라고도 한다. 탐라 및 울릉도에서 나는 것이 가장 큰데 혹 1척 다되는 것도 있으며, 가장 작은 것은 석결명(石決明)이라 부른다. 기타 연해에서 나는 것은 혹은 크고 혹은 작다(鮑甲我東則稱鰓甲 一名九孔蛤 一作九孔螺 產於耽羅及鬱陵島者最大 或有盈尺者 最小者 名石決明 其他沿海所產 或大或小).

❖ 康熙 十二年 癸丑 八月 二十三日 庚申

- 吳斗寅啓曰, 今年濟州歲貢馬, 元數二百匹內, 二匹, 到靈巖, 故失, 一匹, 靈光沙工義春處, 逢授, 一匹, 行到衿川放逸, 來到實數, 一百九十六匹, 禾毛色, 別單開錄以入, 而今年歲貢, 比前最晚, 八月將盡, 始爲來到, 本州之不爲趁早裝載上送, 殊甚稽緩, 濟州牧使金興運, 推考, 何如? 傳曰, 允.

❖ 현종 14년(1673) 계축년 8월 23일(경신)

- 제주(濟州) 세공마(歲貢馬) 196필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에 써서 들이고, 시기가 늦었다는 이유로 제주목사(濟州牧使) 김흥운(金興運)의 추고를 건의하는 계
- 오두인(吳斗寅)<sup>486</sup>이 아뢰기를, “금년 제주(濟州)의 세공마(歲貢馬)는 원래 200필인데 그 중 2필은 영암(靈巖)에 도착하며 잃어버렸고, 1필은 영광(靈光) 사공의춘(義春)에게 주었으며, 1필은 금천(衿川)에 도착하여 잃어버려 올라 온 실제 수는 196필입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에 기록하여 들이고 금년 세공은 전에 비해 가장 늦어 8월이면 마땅히 끝내야하는데 이제 처음 들어왔으니 본주가 좀 더 일찍이 배에 실어 올려 보내지 못하여 더디고 늦어진 것이 매우 심하니 제주목사(濟州牧使) 김흥운(金興運)을 추고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7〉

△ 주제어: 오두인, 제주, 세공마, 영암, 영광, 의춘, 금천, 제주목사, 김흥운.

---

486) 오두인(1624~1689): 본관 해주(海州). 자 원징(元徵), 호 양곡(陽谷). 부친은 오상(吳翔). 1649년(인조 27) 문과 장원급제. 헌납, 사간, 형조판서 역임. 1689년 기사환국 이후 서인이 실각하자 관직에서 쫓겨났고, 인현왕후 민씨가 폐위되자 이에 반대하는 소를 올렸다가 의주로 유배 도중 파주에서 죽었음. 1694년 영의정에 추증. 저서 《양곡집》. 시호 충정(忠貞).



1674年



❖ 康熙十三年甲寅一月四日己巳

- 司僕寺啓曰, 大靜縣監陳再昌遞任進上馬二匹上來, 禾毛色別單書入, 而依前例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馬籍謄錄】

❖ 현종 15년(1674) 갑인년 1월 4일(기사)

- 大靜縣監(大靜縣監) 진재창(陳再昌)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2필에 대해 나이와 털색을 별단으로 써서 들이고 내구(內廐)에서 기르겠다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대정현감(大靜縣監) 진재창(陳再昌)<sup>487</sup>이 체임하면서 진상마 2필이 올라 와서 나이와 털색을 별단으로 써서 들이고 전례대로 내구(內廐)에서 기를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마적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7〉

△ 주제어: 대정현감, 진재창, 체임진상마.

---

487) 진재창(1625~?): 본관 흥덕(興德), 자는 여배(汝拜). 부친은 진정도(陳正道). 1651년(효종 2) 별시 급제. 1671년(현종 12) 6월 대정현감으로 부임하여 1674년(현종 15) 5월 이임함. 1681년(숙종 7) 봉산군수 역임.

❖ 康熙十三年甲寅一月八日癸酉

- 禮曹啓曰, 濟州牧使所封今正朝方物, 今始上來, 依例看品, 別單書入, 而上年冬至方物中, 弓帛內邊粧飾, 不爲入絲, 以鑱染造成, 故本曹請推, 依見樣入絲封進事分付矣. 今此所封之帛, 亦以鑱染造作封進, 而考其封進牒報日子, 則在於十一月十一日, 本曹行關, 則在於同月十七日, 本曹關文, 未及到彼, 故必致如是封進, 今姑捧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禮曹典客司日記】

❖ 현종 15년(1674) 갑인년 1월 8일(계유)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봉진한 정조방물(正朝方物)은 개조하라는 관문이 늦어진 연유로 우선 봉입한다는 예조의 계

- 예조에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봉한 금번 정조(正朝)<sup>488</sup>의 방물이 이제 비로소 올라 왔습니다. 전례에 의거 물건의 품질을 살펴보고 별단으로 써서 들이고, 지난해 동지(冬至)<sup>489</sup> 방물 중 궁대(弓帛)<sup>490</sup> 안 가장자리 장식을 입사(入絲)<sup>491</sup> 하지 않고 납염(鑱染)<sup>492</sup>으로 만들어 그 때문에 본 관아에서 추고를 청하고 입사 건본에 의거 봉진하는 일을 분부하였습니다. 지금 이 봉진한 궁대 또한 납염으로 만들어 봉진했는데, 그 봉진했던 첩보의 일자를 살펴보니 11월 11일로 되어 있고 본 관아에서 보낸 공문은 동월 17일로 되어 있어서 본 관아의 관문이 미처 제주에 도착하기 전이어서 반드시 이처럼 봉진했다고 보아 이제 짐짓 봉입할 뜻으로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예조 전객사일기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목사, 궁대, 입사, 납염.

488) 정조(正朝): 새해 아침. 음력 정월 초하룻날 아침. 원단(元旦), 원조(元朝), 원삭(元朔), 원정(元正), 세조(歲朝), 세수(歲首)와 같은 말.

489) 동지(冬至): 24절기 중 하나로 대설과 소한 사이에 있음. 음력 11월 중, 양력 12월 22일경. 일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

490) 궁대(弓帛): 활집. 활을 넣어 두는 자루.

491) 입사(入絲): 금속 표면에 흠을 파고 금선(金線)이나 은선(銀線)을 두드려 박아 넣어 장식하는 상감기법. 입사는 우리나라 금속공예 중에서도 섬세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전통공예기법임.

492) 납염(鑱染): 쇠붙이로 만든 그릇이나 물건 따위에 땀납을 올림.

❖ 康熙 十三年 甲寅 二月 二日 丙申

- 行都政, 以洪處大爲兵曹參判, …… 申澤爲大靜縣監, …… 李復明爲鐵山府使, …… 李益泰爲兵曹佐郎, …… 任弘望爲典籍, …… 【已上政事軸】

❖ 現宗 15年(1674) 갑인년 2월 2일(병신)

신태(申澤)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함

- 도정(都政)<sup>493</sup>을 시행하였다. 홍처대(洪處大)를 병조참판(兵曹參判), <중략> 신태(申澤)<sup>494</sup>을 대정현감(大靜縣監), <중략> 이복명(李復明)을 철산부사(鐵山府使), <중략> 이익태(李益泰)를 병조좌랑(兵曹佐郎), <중략> 임홍망(任弘望)을 전적(典籍)으로 <중략> 제수하였다. 【이상은 정사축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7>

△ 주제어: 대정현감, 신태.

---

493) 도정(都政): 도목정사(都目政事). 고려, 조선 시대 해마다 음력 6월과 12월에 이조와 병조에서 중앙과 지방 관리의 치적을 종합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승진, 좌천, 파면을 시키던 일. 도목(都目), 도목정(都目政)이라고도 함.

494) 신태(?~?): 1674년(현종 15) 5월 대정현감으로 부임하여 1677년(숙종 3) 1월 모친상을 당해 이임함.

❖ 康熙 十三年 甲寅 三月 二日 丙寅

- 下直, 宣沙浦僉使梁偕, 高山里僉使金益壽, 大靜縣監申□, 麒麟察訪李栽, 鐵山府使李俊明, 開雲鎮萬戶黃翼聖, 安奇察訪金夏鉉, 長水察訪李蓍吉. 【燼餘】

❖ 現宗 15年(1674) 갑인년 3월 2일(병인)

□ 大靜縣監(大靜縣監) 신탉(申澤) 등이 하직함

- 선사포침사(宣沙浦僉使) 양해(梁偕), 고산리침사(高山里僉使) 김익수(金益壽), 대정현감(大靜縣監) 신□(申□)<sup>495)</sup>, 기린찰방(麒麟察訪) 이재(李栽), 철산부사(鐵山府使) 이준명(李俊明)<sup>496)</sup>, 개운진만호(開雲鎭萬戶) 황익성(黃翼聖), 안기찰방(安奇察訪) 김하현(金夏鉉), 장수찰방(長水察訪) 이저길(李蓍吉) 등이 임지로 떠난다고 인사 올렸다. 【불타고 남은 기록임】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7〉

△ 주제어: 대정현감, 신탉.

---

495) 신□(申□): 본서(승정원일기) 현종 15년(1674) 갑인년 2월 2일(병신)에 의하면 대정현감에 제수된 인물은 신탉(申澤)으로 되어 있음.

496) 이준명(李俊明): 본서(승정원일기) 현종 15년(1674) 갑인년 2월 2일(병신)에 의하면 철산부사에 제수된 인물은 이복명(李復明)으로 되어 있음.

❖ 康熙十三年甲寅五月十二日乙亥

- 禁府, 魏天會 海南, 丁炯 蔚山, 申命圭 珍島, 李鼎基 巨濟, 韓時說 宣川定配, 朴振翰 德豐驛徒一年, 金謹行 碧蹄驛徒三年定配, 啓. 申命圭 大靜縣, 李鼎基 旌義縣定配事, 付標以下.

❖ 현종 15년(1674) 갑인년 5월 12일(을해)

□ 의금부에서 신명규(申命圭)와 이정기(李鼎基)를 각각 대정현(大靜縣)과 정의현(旌義縣)에 유배함

- 의금부에서 “위천회(魏天會)를 해남에, 정형(丁炯)을 울산에, 신명규(申命圭)를 진도에, 이정기(李鼎基)를 거제에, 한시열(韓時說)을 선천에 정배(定配)하고, 박진한(朴振翰)은 덕풍역(德豐驛)에 도(徒) 1년, 김근행(金謹行)은 벽제역(碧蹄驛)에 도(徒) 3년 정배합니다.”라고 아뢰었다. 신명규<sup>497)</sup>는 대정현(大靜縣)에, 이정기<sup>498)</sup>는 정의현(旌義縣)에 정배하는 일을 부표(付標)<sup>499)</sup>하여 내렸다.<sup>500)</sup>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7〉

△ 주제어: 신명규, 이정기, 대정현, 정의현.

497) 신명규(1618~1688): 본관 평산(平山). 자는 원서(元瑞) 또는 군서(君瑞), 호는 묵재(默齋) 또는 적안(適安). 부친은 신상(申愴). 1662년(현종 3) 문과 급제. 지평, 정언, 사간 등 주로 대간을 역임. 1673년 산릉도감(山陵都監) 낭청이 되어 영릉(寧陵)을 옮길 때 감독을 태만히 했다는 죄로 대정현에 유배되었다가 1683년(숙종 9) 그의 아들 신임(申鎰)의 신원으로 풀려남. 저서 《묵재기문록(默齋記聞錄)》.

498) 이정기(1624~?): 본관 전의(全義), 자는 군섭(君燮). 부친은 이구준(李耆俊). 1650년(효종 1) 과거 급제, 1669년(현종 10)에 회덕현감에 제수.

499) 부표(付標): 문서 가운데 특별히 유념하거나 후일 참고할 사항에 표지를 붙임.

500) 《현종실록》에는 현종 15년(1674) 5월 12일의 기사로 소개되어 있으며, “신명규 등에게 사형을 면해 주고 외딴 섬으로 귀양 보내되, 신명규는 대정현으로 이정기는 정의현으로 귀양 보내라.”라고 되어 있음.

❖ 康熙十三年甲寅七月二十七日己丑

- 司僕寺啓曰, 濟州後運歲貢馬二百匹, 上年馬出來時, 本州色吏逢授, 故失代徵之馬一匹, 合二百一匹內, 中路病留二匹, 故失二匹, 越海船中故失二匹, 計除一百九十五匹, 來到本寺. 故禾毛色別單開錄, 有頃之馬, 亦爲懸錄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太僕馬籍謄錄】

❖ 현종 15년(1674) 갑인년 7월 27일(기축)

- 제주(濟州) 세공마(歲貢馬) 195필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에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에서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후운 세공마(歲貢馬) 200필과 지난해 말이 나올 때 본주의 향리가 맡았는데 사고로 잃어버려 대신 징수한 말 1필, 합계 201필 중 도중에 병으로 남겨진 2필, 사고로 잃은 2필, 바다를 건너는 배 속에서 사고로 잃은 2필을 제외한 합계 195필이 본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에 기록하고 탈이 난 말 또한 장부에 적어 들일 뜻을 감히 아뢰옵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태복시 마적등록에 의함】

〈제주학연구센터/ 홍기표 역주/ 2017〉

△ 주제어: 제주, 세공마.



## 인명 색인

### ㄱ

- 강무준 370  
 강백년 161, 162, 165, 175, 182, 185,  
 187, 189, 191, 195, 198, 200,  
 202, 204, 212, 214, 221, 223,  
 225  
 강석규 292  
 강치중 377, 379  
 경최 276, 377  
 계선 55  
 고두침 379  
 고여급 377  
 고의중 128  
 고처명 122  
 고태현 370  
 고흥진 98, 146  
 광성구 69  
 권대운 283, 294  
 권두추 153, 156, 158, 159, 160, 163  
 권령 116, 118  
 권순창 107  
 권적 256  
 김계룡 371  
 김계창 371  
 김근행 145  
 김대길 76, 243  
 김대진 320, 321, 362  
 김만균 350  
 김만기 33, 127, 284, 374, 380, 381,  
 391, 408  
 김만일 320, 374  
 김몽순 316  
 김사중 282, 320  
 김석주 105  
 김세익 251  
 김수익 139, 141, 385  
 김수항 25, 26, 92, 145, 341, 344, 346,  
 368, 377, 379, 380, 381, 389,  
 391, 397  
 김수홍 92, 207, 235, 337, 338, 364,  
 406  
 김시휘 94, 95, 105  
 김여강 370  
 김여한 110, 113, 115, 289  
 김우명 93  
 김우형 128  
 김원상 112, 114  
 김익건 47  
 김익경 146  
 김익렬 108  
 김익렴 155  
 김일령 300  
 김정준 228  
 김제 316  
 김좌명 130, 146, 196, 218, 250  
 김준일 289  
 김중명 257

김진표 278  
김징 150  
김천일 94  
김한행 346  
김환 234, 239  
김휘 74  
김홍운 366, 367, 394, 395, 397, 398,  
409

**L**

나팔기 58, 60, 393  
남구만 256  
남용익 82, 379  
노삼석 247  
노정 278, 280, 293, 303, 308, 339,  
344, 353

**□**

만송 374  
맹주서 398  
무신 134  
무인 55  
문영후 98, 99, 268  
문징후 98  
민우 24  
민유중 127, 406, 408  
민점 146, 257  
민정중 273, 328, 330, 336, 356  
민종도 362  
민희 41

**ㅂ**

박선일 316  
박세건 281, 282, 391  
박세관 316  
박세모 47, 109, 118  
박이명 63, 66, 67, 68, 70  
박이첨 78  
박장원 174, 176, 183, 184, 186, 188,  
194, 197, 199, 201, 203, 207,  
211, 213, 215, 220, 222, 224,  
230  
박정 146  
박중휘 150, 276  
박진한 389  
변사달 345  
변황 246

**人**

성호징 402  
소두산 147, 211, 213, 215, 220, 222,  
230  
송상주 90  
송시열 248  
송시철 105, 128, 148, 243  
송준길 58, 292  
송지렴 86, 292  
송창 78  
송창의 370  
승생 408  
신경윤 242  
신명규 150, 316, 416

신승구 105  
신택 414, 415  
심재 293



아적 55  
안경 332  
안숙 147, 148, 150, 151, 152, 153,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7,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9,  
230, 231, 232, 236  
안응려 36  
안진 138, 317, 319  
양계달 62  
여성제 147, 365  
연양군 389  
오두인 229, 230, 409  
오상훈 48, 49  
오섬 79  
오시수 33, 300  
오정위 27, 132  
오정일 273  
우여도 116, 118, 121

원만리 141  
유계 63  
유병연 95  
유옥 110, 113, 115  
유옥 36, 37  
유창 57  
유현 150  
유혁연 130, 145, 273, 294, 332, 389  
육상 134  
윤강 31  
윤계 350, 351, 354, 364, 367, 368,  
369, 397  
윤비경 55, 277  
윤상형 389  
윤심 85, 90  
윤지선 316  
윤진 182, 185, 187, 189, 191, 195,  
198, 200, 202, 204, 212, 214,  
221, 223, 225  
윤집 141  
윤필은 284, 285, 303, 308, 310  
의춘 409  
이경석 24, 236  
이경억 89, 236, 377  
이관 121  
이관징 369, 385, 394  
이괴 25, 26, 32  
이규명 123  
이단상 71  
이단하 341  
이덕구 96, 102  
이동로 162, 165, 170, 175, 231, 232  
이동명 241  
이동직 132

- 이동필 300  
 이만지 31, 51, 57  
 이명동 96  
 이민서 117  
 이민채 130, 158  
 이백령 37  
 이상직 34, 35  
 이상진 284  
 이석번 314, 322, 401  
 이성징 104  
 이세익 400  
 이세장 183, 184, 186, 188, 190, 194,  
 197, 199, 201, 203, 211, 213,  
 215, 220, 222, 224, 230  
 이송로 277, 353  
 이숙 150  
 이숙달 150, 151, 164, 174, 176, 230  
 이순선 107  
 이시방 24  
 이시술 256, 284  
 이시정 391  
 이신일 289  
 이완 131, 273  
 이우정 316  
 이운림 402, 403  
 이원로 132  
 이원정 144  
 이유룡 119  
 이유상 152, 155, 157  
 이은상 341, 359, 360  
 이이시 116, 117, 120  
 이익 284  
 이익한 59, 62, 79, 82  
 이인 219, 233, 254, 261, 270, 274,  
 276, 281  
 이정 105, 155  
 이정기 416  
 이준구 48, 135  
 이충신 71, 87, 112, 132, 276  
 이지무 312, 313  
 이지익 122, 406  
 이지행 358, 359, 360, 361  
 이지형 33, 38, 44, 56, 241, 242  
 이징 233  
 이천기 88, 89, 90  
 이태연 50, 54, 76  
 이하 150, 368, 369  
 이형 248, 249, 250  
 이혜 363  
 이홍연 104  
 이후 66, 67, 68  
 이후선 283  
 임금 134  
 임식 65  
 임이도 286

**ㄸ**

- 장선징 107, 146, 205, 269, 270, 303,  
 406  
 정계주 136, 137  
 정기풍 69  
 정덕화 93  
 정륜 252  
 정만화 44, 45, 46  
 정사담 84  
 정사한 256

정석 389, 393, 395  
 정세보 41  
 정숙주 104, 105  
 정약 340  
 정익 64, 358  
 정인경 50  
 정일 370  
 정지석 260  
 정치화 170, 218, 330, 336, 377, 379  
 정태주 286, 288  
 정대화 42, 92, 103, 130  
 정화제 332  
 조문혁 237, 238, 290, 291  
 조복양 66, 67, 68, 284  
 조성 246  
 조성보 150, 266  
 조용 345  
 조윤석 34  
 진재창 333, 334, 412

## ㄷ

차사원 260  
 천금 316  
 철룡 300  
 최국성 266, 271  
 최산해 385  
 최상익 333  
 최일 320, 324, 401  
 최진남 106, 107, 108, 353  
 최해산 385

최후상 130  
 춘룡 55

## ㅎ

하극립 289  
 허적 92, 131, 133, 134, 273, 292,  
 310, 318, 326, 330, 332, 346  
 허정 112, 114, 276  
 허협 359, 360  
 현우성 74  
 홍만용 268, 274  
 홍명하 42, 84, 218, 236, 244  
 홍석기 218  
 홍수구 271  
 홍우량 61, 119, 122, 123, 127, 128,  
 130, 135, 137, 208, 216, 259  
 홍위 24  
 홍일 316  
 홍주국 120  
 홍주삼 161, 231  
 홍중보 82, 93, 131, 263, 294  
 홍치량 341  
 홍치우 62  
 홍치원 132  
 홍치윤 38, 40  
 홍치후 137  
 황도창 117  
 황연 230, 231  
 황헌 166

## 역 주 자

---

홍 기 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  
김 일 우 (사)제주역사문화나눔연구소 소장 · 이사장  
백 종 진 제주문화원 사무국장  
오 창 명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

제주역사 자료총서 6

## 承政院日記 濟州記事 II

- 顯宗代 -

---

발행인 김 동 전  
발행일 2018년 8월 일  
발행처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 3층  
전화 : (064) 726-5623 팩스 : (067) 747-6140  
홈페이지 : www.jst.re.kr  
인쇄처 일신옵셋인쇄사 TEL. (064) 758-1500

---

ISBN : 978-89-6010-628-4 93090

- 이 책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